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3969호

2024. 4. 11.(목)



서울특별시

목 차

◈ 자치법규 등

[규 칙]

제4624호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5
제4625호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6
제4626호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8
제4627호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13
제4628호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17

[입법예고]

제2024-1089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25
제2024-1095호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9
제2024-1110호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36
제2024-1114호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9
제2024-1115호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48
제2024-1116호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55
제2024-1120호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59
제2024-1132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62

◈ 고 시

제2024-182호 도시계획시설(복주산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124
제2024-183호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 고시 ····· 140
제2024-185호 도시관리계획(몽촌토성역세권(방이동 56번지 일원)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141

제2024-186호 특별건축구역 지정 해제 고시 ····· 152
제2024-187호 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결정 포함) 및 지형도면 고시 ····· 154
제2024-188호 「홍제재정비촉진지구」 홍제2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174
제2024-189호 서초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서초아파트지구 3주구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00
제2024-190호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04
제2024-191호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11
제2024-194호 동진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47
제2024-196호 도시관리계획(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57

◈ 공 고

제2024-1056호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과태료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381
제2024-1058호 의료해외진출법 위반 유치기관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공고 ····· 386
제2024-1059호 녹색교통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389
제2024-1061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 391
제2024-1073호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392
제2024-1074호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 399
제2024-1086호 2024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시비 보조금 지원 공고 ····· 400
제2024-1119호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사항 공고 ····· 406
제2024-1121호 지방보조사업자 보조금 반납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410
제2024-1126호 정보공개서 (직권) 등록취소 사실 통지문 공시송달 공고 ····· 411

◈ 서울특별시교육청

[입법예고]

제2024-159호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417
제2024-161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422

◈ 구 고 시

제2024-66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구로구) ····· 430
제2024-44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동작구) ····· 431
제2024-49호 도시계획시설(봉은역사공원 조성)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고시 (강남구) ····· 452
제2024-52호 도시계획시설(광장)사업 실시계획(최초) 고시(강남구) ····· 454

◈ 구 공 고

제2024-468호 도시계획시설(배봉산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동대문구) ····· 457
제2024-517호 도시관리계획(화계역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안) 재열람 공고 (강북구) ····· 458
제2024-596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서대문구) ····· 459
제2024-691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금천구) ····· 461
제2024-1015호 개포주공5·6·7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따른 소공원(개포25) 조성계획(안) 열람공고(강남구) ····· 464
제2024-1021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안) 열람공고(강남구) ····· 469
제2024-720호 도시관리계획(오금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송파구) ····· 471

◈ 사업소고시

제2024-11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473
제2024-11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474
제2024-11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474
제2024-11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475
제2024-11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475

◈ 사업소공고

제2024-116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사전통지분)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미래한강본부) ····· 476
제2024-117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수시분)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미래한강본부) ····· 487

◈ 기 타

제2024-18호 청문 실시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강남소방서) ····· 489
제2024-12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 491
제2024-127호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 492
제2024-13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 493
제2024-13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 494

◈ 정 정

제2024-1142호 서울특별시 조례 일련번호 정정 공고 ····· 495

자치법규 등

[규 칙]

◈ 서울특별시규칙 제4624호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4월 11일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이 된다”를 “책임운영기관 업무 담당사무관이 맡는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조례 개정으로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직급이 하향됨에 따라 위원회 간사의 직급을 조정하여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간사의 직급 조정
–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에서 “책임운영기관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변경

◈ 서울특별시규칙 제4625호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4월 11일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부모로서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인 사람
1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2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로서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인 사람. 단, 제3조제1항제19호 및 제20호 지원의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함.
17. 「아동복지법」제3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립지원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3조제1항에 제18호부터 제2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아동양육비
19. 자립촉진수당
20. 검정고시 등 학습비
21. 대중교통비
22. 문화활동비

제3조제2항에 제17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제2조제1항제15호의 지원대상자 : 제1항제18호 및 제19호의 지원금
18. 제2조제1항제16호의 지원대상자 : 제1항제18호부터 제20호까지의 지원금
19. 제2조제1항제17호 중 아동복지법 제38조제2항제3호의 지원대상자 : 제1항제21호의 대중교통비
20. 제2조제1항제17호 중 아동복지법 제3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지원대상자 : 제1항제22호의 문화활동비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미래를 준비해야하는 청소년기에 임신·출산·양육을 경험하면서 자녀양육·학업 부담, 취업 준비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청소년(한)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아동양육비, 자립촉진수당, 검정고시 등 학습비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자립준비청년 교통비 및 보호대상 아동 문화활동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활 안정 지원대상자에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부모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2에 따른 청소년한부모를 추가

나. 취약계층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아동양육비, 자립촉진수당, 검정고시 등 학습비를 추가

다. 아동양육비, 자립촉진수당, 검정고시 등 학습비 추가에 따른 지원대상자별 지원내용을 개정

라. 생활안정 지원대상자에 「아동복지법」 제3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립지원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추가(제2조제1항제17호 신설)

마. 생활안정 지원내용에 대중교통비 및 문화활동비를 추가 (제3조제1항에 제21호 부터 제22호 신설)

바. 지원대상자별 지원내용 개정(제3조제2항제19호 및 제20호 신설)

◈ 서울특별시규칙 제4626호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4월 11일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별표 2”를 “제27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고용노동부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숙사비 단가
3. 시장이 정하는 식사비 단가

제5조제4항 중 “제5조 제2항”을 “제5조제2항”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때에는「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제29조제1호”를 “때에는「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9조제1호”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한 교육훈련생에 대하여는 해당”을 “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3회:”를 “3회의 경우:”로, “본다”를 “간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유”를 “구분란에 명시된 사유”로, “출석 인정일수를 적용하여 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를 “출석인정일수를 한도로 훈련에 출석한 것으로 간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별표와”를 “별표 1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용 신청서”를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일시사용 허가 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관련하여”를 “관련하여 이”로, “내용이외”를 “내용 이외”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위원 구성에 있어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제4호 중 “조례 및 시행규칙 등 제반법규와”를 “조례와 이 규칙 등 제반법규 및”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제16조”를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제목 중 “제11조제2항제2호 관련”을 “제12조제2항제2호 관련”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일시사용 시설 및 사용료(제13조 관련)

(단위: 원)

일시사용 유형	기준	사용료	직업교육훈련 시설현황
운동장	1시간 (시설별)	50,000	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 운동장(4,073㎡) ※ 전체 면적 중 일부만 사용하는 경우 사용면적에 대해서만 부과할 수 있음
		5,000	서울특별시 중부·남부기술교육원 중부캠퍼스 운동장(421㎡)
		10,000	서울특별시 중부·남부기술교육원 남부캠퍼스 운동장(3,456㎡)
강의실(1실기준)	1시간 (1실)	20,000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공통 (실당 50인 미만 수용가능)
강 당	1시간	50,000	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250명), 서울특별시 중부·남부기술교육원 중부캠퍼스(300명), 서울특별시 북부기술교육원(300명)
	1시간	100,000	서울특별시 중부·남부기술교육원 남부캠퍼스(800명)

※ 그 밖의 시설(컴퓨터실, 농구장 등)은 주변지역의 시설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시의 사전승인을 얻어 원장이 결정한다.

※ 사용에 따른 시설물 파손 발생 시 사용자는 그에 상당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table>
<tr><td colspan="6">응 시 원 서</td></tr>
<tr><td>성 명</td><td colspan="3"></td><td rowspan="2">접수번호</td><td rowspan="2"></td></tr>
<tr><td>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3"></td></tr>
<tr><td>주민등록상
주 소</td><td colspan="3">(우 :)</td><td>제 1 지망</td><td></td></tr>
<tr><td rowspan="2">연 락 처</td><td>전화번호</td><td colspan="2">(휴대전화)
(일반전화)</td><td>제 2 지망</td><td></td></tr>
<tr><td>전자우편</td><td colspan="2"></td><td>우선선발</td><td></td></tr>
<tr><td>최 종 학 력</td><td colspan="3"></td><td>가점대상</td><td></td></tr>
<tr><td colspan="6">자기 소개서</td></tr>
<tr><td>자기소개
(가치관 및
신념을
중심으로 작성)</td><td colspan="5"></td></tr>
<tr><td>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에
지원한
이유(지원동기)</td><td colspan="5"></td></tr>
<tr><td>교육과정을
통해 이루고
싶은 목표</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6">주민등록 현황, 취업확인 등의 자료조회를 위해 개인정보를 사용함에 동의하며,
서울특별시 00기술교육원의 교육훈련생 모집에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00기술교육원장</td></tr>
</table>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식사비 단가 규정 및 상위법 인용 규정 등을 현행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운영비 산출 규정 정비(제3조제4항)
   - 서울시 기술교육원 식사비 단가 인상으로 고용노동부 기준(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과 일치하지 않게 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나. 상위법 인용 규정 현행화(제8조제2항)
   -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다. 문구 및 서식 정비 등

◈ 서울특별시규칙 제4627호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4월 11일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협의회 구성)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 등 심리·사회적 당사자로 인권활동을 한 사람
2.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기관장 또는 부서장
3. 정신의학, 정신간호학, 사회복지학 등 보건·복지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의 경력을 가진 사람
4. 정신질환자 당사자 단체에서 임·직원 또는 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거나 인권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5. 그 밖에 보건복지 및 사회복지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정신건강과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업무와 관련된 사무관을 대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⑦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립생활지원 담당 사무관이 맡는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제척 · 기피 · 회피) 위원의 해촉, 제척 · 기피 · 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제1항 및 제9조에 따른다.

제5조(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협의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는 회의일시 및 장소, 참석위원, 심의 · 자문내용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이 조례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청 렴 서 약 서

○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위 본인은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협의회」의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협의회의 심의·의결과정에서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협의회 직무와 관련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위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협의회 구성(제2조)
 나. 위원장의 직무(제3조), 위원의 해촉, 제척 · 기피 · 회피(제4조)
 다. 협의회 운영(제5조), 수당 등(제6조)

◈ 서울특별시규칙 제4628호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4월 11일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조례」”로, “조례의”를 “그 조례의”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추진하며, 다음 각 호의 1”을 “추진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로, “및”을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서울시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서울특별시의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사업”으로, “기관·단체”를 “법인·단체”로 한다.

제3조 제2호 중 “서울시내”를 “서울특별시 내”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서울시장이 남북교류협력”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사업”으로, “기관·단체”를 “법인·단체”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서울특별시 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설치 목적과 부합 여부

제4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 중 “적정여부”를 각각 “적정 여부”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부담능력여부”를 “부담능력 여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서울시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7조 중 “지원자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이나 사업비를” 을 “제4조제1항제1호 사업계획서의 사업비 등 내용을” 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조례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제3호 중 “사업자” 를 “기금을 지원받은 자” 로 한다.

제9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2. 현금출납부(별지 제4호서식)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위원회 위원)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위원장의 직무 등)” 을 “(위원장 등의 직무)” 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맡는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제1항 중 “정기회의 및” 을 “정기회의와” 로, “년2회” 를 “연 2회” 로, “때” 를 “때에”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7일전” 을 “15일 전” 으로 한다.

제15조 중 “두며” 를 “두되” 로 하고, “남북교류협력사무를 담당하는 담당관·과장이 된다” 를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 사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맡는다” 로 한다.

제16조 중 “작성, 비치” 를 “작성·비치” 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지원신청서

<table>
<tr><td>기 관
(단체)명</td><td></td><td>대표자</td><td>성 명</td><td colspan="2"></td></tr>
<tr><td></td><td></td><td></td><td>생 년 월 일</td><td colspan="2"></td></tr>
<tr><td>주 소</td><td colspan="3" rowspan="2"></td><td>전화번호</td><td></td></tr>
<tr><td></td><td>FAX</td><td></td></tr>
<tr><td>사 업 명</td><td colspan="5"></td></tr>
<tr><td>사업목적</td><td colspan="5"></td></tr>
<tr><td>사업개요</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6">소요경비 재원</td></tr>
<tr><td>총사업비</td><td>기금지원금</td><td>자체부담금</td><td>후 원 금</td><td colspan="2">기 타</td></tr>
<tr><td></td><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사업기간</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6">지원자금의 송금을 위한 금융기관 (단위 : 원)</td></tr>
<tr><td>금융기관명</td><td>예 금 계 좌</td><td>예 금 주</td><td colspan="3">기금지원신청금</td></tr>
<tr><td></td><td></td><td></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6">「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td></tr>
<tr><td>첨부서류</td><td colspan="5">①사업계획서 1부
②단체의 정관 및 현황(개인은 이력서) 1부
③예금통장 사본 1부
④기타 서울특별시장이 정하는 관계서류 또는 자료</td></tr>
</table>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갑지)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정산서

1. 사 업 명 :

2. 집행현황

(단위 : 원)

내 역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비 고
합 계				
지 원 자 금				
자체부담금				
기 타 재 원				

붙임 ①사업 추진실적(을지) 1부
②사업비 세부집행 내역(을지) 1부
③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각 1부
④행사유인물 및 사진 등 각 1부
⑤기타 증빙자료 각 1부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단체명
대표자 ㊞

서울특별시장 귀하

(을지)

1. 지원사업 추진실적

사업개요	
추진실적	
효 과	
문 제 점 및 건 의	

2. 사업비 세부집행내역

(단위 : 원)

항 목	집 행 내 역	집 행 액	비 고
계			

[별지 제3호서식]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관리대장

(단위 : 원)

연월일	예 치	해 약	잔 액	금융기관	상품명	계좌번호

[별지 제4호서식]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현금출납부

(단위 : 원)

연월일	적 요	수 입	지 출	잔 액	결 재		
					담당	기 금 출납원	기 금 운용관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구성을 조정하고, 회의소집 사전통보 기간을 늘려 서울트별시 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함

나.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조례"로 함(제1조, 제2조)

다.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으로 함(제3조)

라.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서울특별시 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로 함(제4조)

마.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 "행정국장, 경제정책실장, 문화본부장, 관광체육국장, 물순환안전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함(제10조)

바. 위원회 소집 통지 기일 "7일전"을 "15일 전"으로 함(제13조)

사. 별지 제1호~제4호의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함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089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4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상상마루(뚝섬 자벌레(서울 생각마루) 3층) 운영이 종료됨(2023. 8.)에 따라 시설 이용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100L짜리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수거용 종량제 봉투 제작을 금지하는 것으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환경부지침, 2022. 1. 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상마루(뚝섬 자벌레(서울 생각마루) 3층) 이용료 관련 규정 삭제(안 별표 1 제5호)

나. 한강공원 쓰레기규격봉투 가격 표에서 “100L” 삭제(안 별표 4)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미래한강본부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과(전화: 02-3780-07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이메일 · 등기우편 · 온라인

(1) 이 메 일: sun0905@seoul.go.kr

(2) 등기우편: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3) 온 라 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시민편익시설

구 분	기 준 및 이 용 료		이용시간
야외원형극장	1시간 기준 1일 사용 시	12,500원 120,000원	06:00~24:00
야외무대 사 용	1회당 - 주 간 (08:00~18:00) - 야 간 (18:00~다음 날 08:00)	80,000원 160,000원	00:00~24:00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한강공원 쓰레기규격봉투 가격(제14조 관련)

구 분	용 량	가 격
일반쓰레기용	5ℓ	100원
	10ℓ	200원
	50ℓ	1,100원
비 고	1. 규격봉투의 색상은 일반쓰레기용 규격봉투 중 5ℓ 및 10ℓ 봉투는 흰색, 50ℓ는 주황색으로 하고, 일반쓰레기용 공공용봉투는 엷은 청색, 재활용쓰레기용 공공용봉투는 투명색으로 한다. 2. 규격봉투의 종류, 재질, 구조, 모양, 치수 및 봉투의 표시 등은 KS규격 또는 중소기업벤처부장관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에 따른다. 다만,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질, 구조, 치수 및 봉투의 표시 등을 한강공원의 실정에 맞게 따로 정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별표 1] 공원이용시설 이용료 및 이용시간(제7조 관련)

1. ~ 4. (생 략)

5. 시민편익시설

구 분	기 준 및 이 용 료			이용시간
야외 원형극장	1시간 기준 1일 사용 시	12,500원 120,000원		06:00~ 24:00
야외무대 사 용	1회당 -주간(0800~ 1800) -야간(1800~다음날0800)	80,000원 160,000원		00:00~ 24:00
상상마루 (뚝섬 자벌레 (서울생각 마루) 3층)		정기 (1개월)	수시 (1일 이하)	10:00~ 22:00
	자유석 (1석당)	40,000원	5,000원/일	
	1인석 (마루 1~5)	50,000원	5,000원/일	
	모임공간 (마루6~7)	100,000원	10,000원/일	
	회의실 (마루 8)	-	5,000원/1시간	

6. ~ 8. (생략)

[별표 4] 한강공원 쓰레기규격봉투 가격(제14조 관련)

구 분	용 량	가 격
일반쓰레기용	5ℓ	100원
	10ℓ	200원
	50ℓ	1,100원
	100ℓ	2,200원
비 고	1. 규격봉투의 색상은 일반쓰레기용 규격봉투 중 5ℓ 및 10ℓ 봉투는 흰색, 50ℓ 및 100ℓ는 주황색으로 하고, 일반쓰레기용 공공용봉투는 엷은 청색, 재활용쓰레기용 공공용봉투는 투명색으로 한다. 2. 규격봉투의 종류, 재질, 구조, 모양, 치수 및 봉투의 표시 등은 KS규격 또는 중소기업벤처부장관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에 따른다. 다만,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질, 구조, 치수 및 봉투의 표시 등을 한강공원의 실정에 맞게 따로 정할 수 있다.	

개 정 안

[별표 1] 공원이용시설 이용료 및 이용시간(제7조 관련)

1. ~ 4. (현행과 같음)

5. 시민편익시설

구 분	기 준 및 이 용 료		이용시간
야외 원형극장	1시간 기준 1일 사용 시	12,500원 120,000원	06:00~ 24:00
야외무대 사 용	1회당 -주간(0800~ 1800) -야간(1800~다음 날0800)	80,000원 160,000원	00:00~ 24:00

6 ~ 8. (현행과 같음)

[별표 4] 한강공원 쓰레기규격봉투 가격(제14조 관련)

구 분	용 량	가 격
일반쓰레기용	5ℓ	100원
	10ℓ	200원
	50ℓ	1,100원
비 고	1. 규격봉투의 색상은 일반쓰레기용 규격봉투 중 5ℓ 및 10ℓ 봉투는 흰색, 50ℓ는 주황색으로 하고, 일반쓰레기용 공공용봉투는 엷은 청색, 재활용쓰레기용 공공용봉투는 투명색으로 한다. 2. 규격봉투의 종류, 재질, 구조, 모양, 치수 및 봉투의 표시 등은 KS규격 또는 중소기업벤처부장관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에 따른다. 다만,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질, 구조, 치수 및 봉투의 표시 등을 한강공원의 실정에 맞게 따로 정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095호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4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민선 8기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을 조례에 반영하고 시민 인지도 확대를 위해 마을세무사 명칭을 '동행세무사'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동행세무사 운영 조례'로 변경
나. '마을세무사' 용어를 '동행세무사'로 변경(안 제1조~제11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세제과(전화 : 2133-33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2) 팩 스: 02-2133-1033
3) 이메일: brad3198@seoul.go.kr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동행세무사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마을세무사”를 “동행세무사”로 한다.

제2조의 제목 “(마을세무사 운영)”을 “(동행세무사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를 “동행세무사(이하 “동행세무사”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마을세무사”를 “동행세무사”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마을세무사는 세무사 활동 경력이”를 “동행세무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마을세무사”를 “동행세무사”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마을세무사”를 “동행세무사”로, “해촉 할”을 “해촉할”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마을세무사”를 “동행세무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하는 등 마을세무사”를 “상담하는 등 동행세무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마을세무사”를 “동행세무사”로 한다.

제6조 중 “마을세무사”를 “동행세무사”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신청인이 마을세무사”를 “신청자가 동행세무사의”로, “대면상담”을 “대면 상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마을세무사”를 “동행세무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상담자의 신청에 대해서는 즉시 상담을 원칙으로”를 “상담신청자가 세무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동행세무사는 즉시 상담에 응해야”로, “상담할”을 “즉시 상담할”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마을세무사의”를 “동행세무사의”로, “마을세무사에게”를 “동행세무사에게”로, “마을세무사는”을 “동행세무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마을세무사”를 “동행세무사”로, “별도의”를 “시장이 정하는 별도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마을세

무사”를 “동행세무사”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마을세무사”를 “시장은 동행세무사”로, “신청인”을 “신청자”로 한다.

제10조 중 “마을세무사 제도”를 “동행세무사 제도”로, “마을세무사를”을 “동행세무사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마을세무사 운영”을 “동행세무사 운영”으로, “마을세무사와”를 “동행세무사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마을세무사는 이 조례에 따른 동행세무사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동행세무사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에게 세금 관련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동행세무사---------- ---------- ----------.
제2조(마을세무사 운영)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무전문가인 세무사의 재능기부 통로를 마련하고 시민의 무료 세무상담(이하 "세무상담"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 세무행정에 대한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각 동별로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를 운영한다.	제2조(동행세무사 운영) ------- ---------- ---------- ---------- ---------- ---------- ---------- ---------- 동행세무사(이하 "동행세무사"라 한다)----------.
제3조(역할) ① 마을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 3. (생 략)	제3조(역할) ① 동행세무사----- ----------. 1. ~ 3. (현행과 같음)
제4조(위촉 등) ① 마을세무사는 세무사 활동 경력이 「세무사	제4조(위촉 등) ① 동행세무사는 ----------

법」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된 세무사 중에서 필요한 인원을 시장이 위촉한다.	----------.
②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동행세무사----------.
제5조(해촉) 시장은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제5조(해촉) ---- 동행세무사---------- 해촉할 ------.
1. 마을세무사의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1. 동행세무사----------
2.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거나 무성의하게 하는 등 마을세무사로서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 상담하는 등 동행세무사----------
3. 상담 실적이 지나치게 적거나 그 밖에 마을세무사의 지위를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	3. ---------- 동행세무사----------
제6조(상담대상) 마을세무사의 세무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서울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으로 한다.	제6조(상담대상) 동행세무사----------
제7조(상담방법) ① 세무상담은 전화·전자우편·팩스 등의 비대면 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마을	제7조(상담방법) ① ---------- 신청자가 동행

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대면상담 등의 방법으로 한다.	세무사의 ---------- 대면 상담 ----------.
② 마을세무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대면 상담 외에 주민센터나 상담 신청자의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② 동행세무사---------- ----------.
③ 상담자의 신청에 대해서는 즉시 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 등으로 상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후 가능한 날에 신속히 상담에 응해야 한다.	③ 상담신청자가 세무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동행세무사는 즉시 상담에 응해야 ---------- 즉시 상담할 ----------.
제8조(상담결과 처리) ① 시장은 마을세무사의 운영현황 파악을 위해 마을세무사에게 상담내용과 실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마을세무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상담결과 처리) ① ----- 동행세무사의 ---------- 동행세무사에게 ---------- 동행세무사는 ----------.
② 마을세무사는 제3조제2호의 불복청구를 지원했을 경우에는 별도의 서식을 작성하여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행세무사---------- 시장이 정하는 별도의 ----------.
③ 시장은 제출받은 상담실적을 분석하여 마을세무사 제도의 보완과 발전방안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③ ---------- 동행세무사 ---------- -----.

제9조(수당 등) ① (생 략)	제9조(수당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마을세무사가 주민센터나 상담 신청인의 사업장 등 세무사 사무소가 아닌 곳에서 대면 상담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적정한 수준의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동행세무사-------- 신청자---------- 동행세무사의 사무소---------- ----------.
제10조(자치구 협조) 서울시는 자치구와 협조하여 마을세무사 제도의 대시민 홍보·실적 등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마을세무사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자치구 협조) ---------- 동행세무사 제도---------- 동행세무사를 ----------.
제11조(표창) ① 시장은 마을세무사 운영에 탁월한 활동성과를 낸 마을세무사와 담당 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표창) ① ---- 동행세무사 운영---------- 동행세무사와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110호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4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시민들의 상수도요금 전자고지 및 자동납부 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동납부 및 전자고지 모두 신청 시 상수도요금 3천원을 할인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자고지(체납분에 대한 전자고지 포함) 및 자동납부 모두 신청 시 첫 가입 할인액 규정 신설(안 제27조제1항제5호 나목)
- 신청 후 최초 상수도요금 부과액 중 3,000원 할인(2024. 6. 3. 신청분부터 2026. 12. 31. 신청분까지 적용하며, 상수도요금 부과액이 3,000원 미만인 경우 그 부과액을 한도로 할인)
- 현재 전자고지 및 자동납부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체납분에 대한 전자고지에 동의하는 경우에도 동의 후 최초 상수도요금 부과액 중 3,000원 할인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서울아리수본부 요금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아리수본부 요금제도과(전화 : 02-3146-11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이 메 일: shsarang@seoul.go.kr
(2) 등기우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3) 온 라 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규칙 제1110호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조례 제31조제1항제6호의 경우 다음 각 목과 같이 할인한다.

가. 수도요금 1회당 할인액 : 20,000원 이하 200원, 20,000원 초과 시 1퍼센트(이 경우 총 할인액은 1,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전자고지 및 자동납부 모두 신청 시 할인액 : 신청 후 최초 상수도요금 부과 시 3,000원(상수도요금 부과액이 3,000원 미만인 경우 그 부과액을 한도로 할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7조제1항제5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신청분부터 2026. 12. 31. 신청분까지 적용하며,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전자고지 및 자동납부를 모두 신청한 사람이 체납분에 대한 전자고지에 동의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1.~4. 생략 5. 조례 제31조제1항제6호의 경우, 수도요금 1회당 할인율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20,000원 이하 : 200원 나. 20,000원 초과 : 1퍼센트. 이 경우 총 할인액은 1,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7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1.~4. 생략 5. ----------, 다음 각 목과 같이 할인한다. 가. 상수도요금 1회당 할인액 : 20,000원 이하 200원, 20,000원 초과 시 1퍼센트(이 경우 총 할인액은 1,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전자고지 및 자동납부 모두 신청 시 할인액 : 신청 후 최초 상수도요금 부과 시 3,000원(상수도요금 부과액이 3,000원 미만인 경우 그 부과액을 한도로 할인한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114호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4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서울런 4050 정책 수립 및 추진에 따른 인생이모작 지원 대상의 확대 및 시립도심권50플러스센터 운영 종료에 따른 변경 사항을 현행화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년층”을 “중장년층”으로 변경하고, “50세 이상 65세 미만”을 “4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변경함
나. <별표1>의 50플러스센터 관련 내용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평생교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평생교육과(전화 : 2133-39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5층 평생교육과
2) 팩 스: 02-2133-1013
3) 이메일: hahaher@seoul.go.kr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장년층”을 “중장년층”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 “장년층(長年層)”이란 50세”를 “ “중장년층”이란 40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장년층”을 “중장년층”으로 한다.

제3조 중 “장년층”을 “중장년층”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년층”을 “중장년층”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각 호의 사업 대상 연령을 제2조제1호에 따른 장년층 이외로 할”을 “중장년층이 아닌 사람도 제1항의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할”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원사업”을 “제1항의 지원사업”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지원시설(이하 “시설 “이라 한다)”을 “지원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설”을 “인생이모작 지원시설”로 한다.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시설은”을 “지원시설의 종류는”으로, “시설의”를 “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장년층”을 각각 “중장년층”으로 한다.

제6조의4제1항제5호 중 “장년층”을 “중장년층”으로, “시가”를 “서울특별시가”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장년층”을 “중장년층”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시설의 위탁)”을 “(위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설”을 “인

생이모작 지원시설”로, “관련”을 “50플러스재단 등 관련”으로 한다.

제8조 중 “시설”을 “인생이모작 지원시설”로, “범위 내”를 “범위”로, “지원 할”을 “지원할”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장년층”을 각각 “중장년층”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인생이모작지원시설 명칭 및 위치(제6조의2 관련)

시 설 명	명 칭	소 재 지
50플러스캠퍼스	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	은평구 통일로 62길7
	서울시50플러스 중부캠퍼스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서울시50플러스 남부캠퍼스	구로구 오류로 36-25
	서울시50플러스 북부캠퍼스	도봉구 마들로 13길84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중장년층----------.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장년층(長年層)"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1. "중장년층"이란 40세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란 장년층의 인생이모작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3. ---------- 중장년층----------.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 중장년층----------.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① ----- 중장년층----------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 대상 연령을 제2조제1호에 따른 장년층 이외로 할 수 있다.	② ---------- ---------- 중장년층이 아닌 사람도 제1항의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할 ---------- ---.
제5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자치구 및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 등) ① -------- ---------- ---------- ---------- ---------- 범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 제1항의 지원사업-- ----------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	제6조(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① ---------- ---------- ---------- 지원시설----

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
② 시설은 제4조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②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제6조의2(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구분)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의2(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구분) ---------- 지원시설의 종류는 ---------- 그 ----------.
1. 50플러스캠퍼스 : 장년층의 다양한 욕구에 기반한 상담, 교육, 일, 여가·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광역거점 시설	1. ---------- 중장년층----------
2. 50플러스센터 : 장년층의 교육·상담, 사회공헌 및 사회참여활동 등의 서비스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지역기반 시설	2. ---------- 중장년층----------
제6조의4(사용료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줄일 수 있다.	제6조의4(사용료의 감면 등)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장년층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가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자치구는 제외한다) :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줄임	5. 중장년층---------- -------- 서울특별시가 --- ---------- ---------- ----------
6. 장년층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련단체가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줄임	6. 중장년층---------- ---------- ----------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7조(시설의 위탁) ① 시장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위탁 등) ① -------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 -- 50플러스재단 등 관련 ----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자치구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자치구에서 직접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자치구에 대한 지원) ---- ----------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 범위---------- ---------- 지원할 ----- ---.
제9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	제9조(위원회의 설치) --------- ---------- ---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장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장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4. (생 략)

[별표 1]

인생이모작지원시설 명칭 및 위치(제6조의2 관련)

시 설 명	명 칭	소 재 지
50플러스캠퍼스	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	은평구 통일로 62길7
	서울시50플러스 중부캠퍼스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서울시50플러스 남부캠퍼스	구로구 오류로 36-25
	서울시50플러스 북부캠퍼스	도봉구 마들로 13길 84
50플러스센터	도심권50플러스센터	종로구 수표로 26길 28

회----------.

1. 중장년층 ----------

2. 중장년층 ----------

3.·4. (현행과 같음)

[별표 1]

인생이모작지원시설 명칭 및 위치(제6조의2 관련)

시 설 명	명 칭	소 재 지
50플러스캠퍼스	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	은평구 통일로 62길7
	서울시50플러스 중부캠퍼스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서울시50플러스 남부캠퍼스	구로구 오류로 36-25
	서울시50플러스 북부캠퍼스	도봉구 마들로 13길 84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115호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4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서울런 4050 정책 수립 및 추진에 따른 인생이모작 지원 대상의 확대에 따른 변경 사항을 현행화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년층”을 “중장년층”으로 변경하고, “50세 이상 65세 미만”을 “4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평생교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평생교육과(전화 : 2133-39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5층 평생교육과
2) 팩 스: 02-2133-1013
3) 이메일: hahaher@seoul.go.kr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시 장년층”을 “서울특별시 중장년층”으로 한다.

제2조 중 “ “장년층”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를 “ “중장년층” 라 함은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로, “50세”를 “40세”로 한다.

제5조제3호부터 제7호까지 중 “장년층”을 각각 “중장년층”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시장이 장년층”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중장년층”으로 한다.

제6조 중 “구체적”을 “구체적인”으로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거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제3항 중 “부득이 한”을 “부득이한”으로 한다.

제12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3조 전단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장년층”을 “중장년층”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시와”를 “서울특별시와”로 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연도마다 다음”을 “다음”으로, “회계연도”를 “매 회계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의회”를 “서울특별시의회”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서울특별시”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을 “등과 맞지 않는 경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사회를 맞아 서울시 장년층의 은퇴 전후의 새로운 인생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50플러스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년층"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 "중장년층"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 40세 ----------.
제5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5조(재단의 사업)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장년층 관련 정책 연구·개발 및 성별 통계 구축 등	3. 중장년층 ----------
4. 장년층 전직 및 취업지원서비스, 사회공헌활동 지원, 문화·여가 지원 사업, 가족 생활 지원 및 상담서비스 등	4. 중장년층 ----------
5. 장년층 인력 개발 및 사회참	5. 중장년층 ----------

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
6. 장년층 관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6. 중장년층 ----------
7. 장년층 관련 시설 종사자 교육	7. 중장년층 ----------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9. 그 밖에 시장이 장년층 관련 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9. -----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중장년층 -----
제6조(재산)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구체적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재산) ---------- ---------- 구체적인 ----------.
제7조(정관) ① (생 략)	제7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고,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거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이사회) ①·② (생 략)	제10조(이사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이사장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③ ------ 부득이한 ----------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 기재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출연금 교부)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2조(출연금 교부) ---------- ---------- ---------- 범위---------- ----------.
제13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수익사업) ---------- --- 범위------ ---------- ---------- ----------.
제14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제14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시장은 장년층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① ----- 중장년층 ---------- ---------- ---------- --------.
② 재단은 시와 그 산하 기관에게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 서울특별시와 ------ ---------- ----------.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생 략)	제16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결산서류를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다음 ---------- ---------- 매 회계연도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재단은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2에 따라 예산서 및 결산서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 ---------- ---------- -------- 서울특별시의회 --- ---------- ----------.
제17조(지도·감독) ① (생 략)	제17조(지도·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② ---------- ---------- -- 서울특별시---------- ------- 등과 맞지 않는 경우 ----------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116호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4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은 국내협력계정과 국제협력계정으로 두 계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하나의 조례로 규정되어 있어, 시의회의 기금 심의 등에 비효율성이 존재하는 바, 조례를 계정별로 분리하여 규정함으로써 기금 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외협력기금 조례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 (기존)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변경)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나. 대외협력기금 국내·국제협력계정 분리로 인한 기금 명칭 변경
- (기존)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 (변경) 국제개발협력기금

다.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신규 조례 신설로 인해 기존 대외협력기금 조례에서 국내협력계정 내용 삭제
- 목적(안 제1조) : 국내 타지방자치단체 문구 삭제,
- 국내 타지방자치단체 및 외국지방정부의 범위(안 제2조) : 국내 타 지방자치단체 범위 삭제
- 기금의 용도(안 제5조) : 국내협력계정의 용도 삭제
- 기금관리(안 제6조) : 국내협력계정 기금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 삭제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7조) : 국내협력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삭제

라. 조직개편 및 업무이관에 따른 국제협력계정 분임기금운용관 변경
- 기금관리(안 제6조) : 분임기금운용관(국제협력과장 → 국제개발협력추진반장) 변경

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 위촉위원 구분
- 위원회의 구성(안 제8조) :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 하고 당연직 위원으로 소관국장을 명시

바. 국내·국제협력계정 조례 분리로 인한 '계정별' 문구 삭제(안 제6조~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국제교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국제교류과(전화: 02-2133-07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 · 이메일 · 등기우편 · 온라인

(1) F A X : 02)2133-0704

(2) E-mail : gogoyoudream@seoul.go.kr

(3)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국제교류과(국제개발협력추진반)

(4)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와 외국 지방정부와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지방정부의 범위) 이 조례에서 '외국 지방정부'란 서울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해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외국의 지방정부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국제개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상 발생하는 수익금
3.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4. 그 밖의 수입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 지방정부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업경비
2. 외국 지방정부가 당면한 재해에 대한 구호경비
3. 기금의 운용·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제6조(기금관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경제정책실장
2. 분임기금운용관 : 국제개발협력추진반장
3.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국제개발협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이하 “위원회”라 한다)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지출 대상사업 및 지출규모의 결정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및 결산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들 중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시 국제개발협력기금 담당 국장급 공무원
2. 위촉위원

가. 지방자치,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개발원조와 관련이 있는 법인·단체 임·직원

나. 지방자치,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개발원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분임기금운용관이 맡는다.

제8조의2(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및 제9조에 따른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120호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4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2023년 8월 버스요금이 오름에 따라 저소득 가구 중·고등학생 교통비 지원금액을 인상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저소득 가구 중·고등학생에게 지원하는 교통비 기준 개정(안 별표 제1호 가목)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전화: 02-2133-73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이 메 일 : alswn5284@seoul.go.kr
(2) 등기우편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복지정책과
(3) 온 라 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관련 경비	
가. 중·고등학생에게 지원하는 경우	1인당 연간 왕복 통학 교통비 - 산출기준 : 서울시 간·지선 버스 청소년 요금(교통카드 기준) × 2회(1일) × 20일 × 12개월
나.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온라인 교육 콘텐츠 수강권 지원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별표]
<u>지원내용별 지원수준(제4조 관련)</u>
<table><tr><th>지원내용</th><th>지원수준</th></tr><tr><td>1. 교육관련 경비</td><td></td></tr><tr><td>가. 중·고등학생에게 지원하는 경우</td><td>1인당 연 35만원 내외의 왕복 통학 교통비</td></tr><tr><td>나.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경우</td><td>온라인 교육 콘텐츠 수강권 지원</td></tr></table>
2. ~ 13. (생 략)</td><td>[별표]
<u>지원내용별 지원수준(제4조 관련)</u>
<table><tr><th>지원내용</th><th>지원수준</th></tr><tr><td>1. 교육관련 경비</td><td></td></tr><tr><td>가. 중·고등학생에게 지원하는 경우</td><td>1인당 연간 왕복 통학 교통비
- 산출기준 : 서울시 간·지선 버스 청소년 요금(교통카드 기준) × 2회(1일) × 20일 × 12개월</td></tr><tr><td>나.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경우</td><td>온라인 교육 콘텐츠 수강권 지원</td></tr></table>
2. ~ 13. (현행과 같음)</td></tr>
</table>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132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4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전반적인 체계·용어·표현 등을 정비하여 보다 간결하고 명확히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구성체계 재정비

○ 장과 절의 명칭 변경 등 (안 제4장, 제8장)
○ 위계에 맞게 조문의 체계와 순서를 변경 (안 제4조, 제8조, 제9조)
○ 조문 번호 변경 (안 제5조, 제11조~제44조, 제48조, 제52조~제58조, 제64조~제68조)
○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별표로 이관 (안 제33조, 별표 2~15)
○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 재배치 (안 제34조)
○ 건폐율에 관한 규정을 세분화 (안 제44조~제47조)
○ 용적률에 관한 규정을 세분화 (안 제48조~제51조)
○ 조문의 순서에 따라 별표의 순서를 조정 (안 별표 16~19)

나.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

○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의견청취 방법 변경 (안 제7조)
○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사항의 처리 중 불필요한 조항 삭제 (안 제19조)
○ 뉴타운지구 및 균형발전지구에 대한 근거 법령(「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용어(재정비촉진지구) 수정 (안 제23조)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건축물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개정사항 반영
(안 제34조, 제35조, 제40조, 안 별표 4~6, 별표 8~12)
○ 분과위원회 구성 근거 추가 및 구성 인원수 변경 (안 제56조)
○ 도시계획정책자문단 명칭 변경 및 인원제한 폐지 등(안 제64조)
○ 노인복지주택 근거 법령(「노인복지법」) 수정(안 별표 2)

다. 불명확한 문구 등 용어 · 표현 등 재정비

○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세분 명칭 변경 (안 제9조, 제40조)

○ 한자 표기 및 근거 법령 등 오기 정정 (안 제34조, 제40조)

○ 유사문구 등 표현 방식 통일 및 반복되는 불필요한 문구 삭제 (안 별표 2~15)

○ 시장 결정 권한의 도시계획시설 · 지구단위계획을 자치구에 권한이 위임된 도시계획시설 · 지구단위계획과 함께 결정할 경우 서울시 일괄결정의 근거 및 권한위임사무 명확화 (안 별표 19)

라. 종전 부칙 실효 등에 따른 개정 조례 부칙 신설 (안 부칙 제1조~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도시계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전화: 02-2133-83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이메일 · 등기우편 · 온라인

(1) E-mail : shj174@seoul.go.kr

(2) 전 화 : (02) 2133 - 8329

(3)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도시계획과

(4)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이 조례의 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시계획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성장 · 계획 · 관리 및 지역균형발전을 지향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② 시의 도시계획 및 관리는 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전 과정에 주민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2장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제3조(공청회의 개최 및 방법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주관하는 자에게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청취된 의견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청회를 주관하는 자 및 공청회에 참여한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법 제1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도시기본계획(이하 "시도시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4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에 대하여 시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시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관할구역에 관한 계획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 그 밖의 도시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은 시도시기본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속가능한 시도시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조사 내용에 도시생태현황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⑤ 시장은 시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성 · 계층 · 인종 · 지역 간 평등의 원칙 아래 다양한 집단의 입장을 고려한 계획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시도시기본계획의 실현정도 및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서울의 전반적 도시변화를 상시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시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인 수립을 위하여 관계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5조(생활권계획의 수립 · 관리)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을 생활권 단위로 상세화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생활권은 일상적인 생활활동이 이루어지는 1개 이상 동 규모의 지역생활권과 1개 이상의 자치구 규모인 권역생활권으로 구분한다.
③ 시장은 구청장에게 지역생활권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관할구역에 관한 계획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역생활권계획안은 시도시기본계획 및 권역생활권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생활권계획의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중심지 육성방안, 생활서비스시설(생활SOC) 확충방안, 연차별 집행계획 등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자치구와 협의하여 구청장에게 실행계획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생활권계획 수립, 운영 및 실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제6조(제안서의 처리절차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는 제안서에 법 제25조제2항 및 영 제18조에 따라 작성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시관리계획도서(계획도 및 계획조서)
2. 계획설명서(법 제13조에 따른 기초조사결과, 재원조달방안, 경관계획, 환경성 검토결과, 교통성 검토결과 및 토지적성평가 등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기초조사 내용의 적정성 여부
2. 자연 및 생활환경의 훼손가능성 여부
3. 인구 · 교통유발의 심화 여부
4.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 정비 및 개량에 관한 적정성 여부
5. 용도지역 ·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지정의 적합성 여부
6.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적정성 여부

7. 도시생태의 훼손가능성 여부 및 생태면적률 계획의 적정성 여부
8. 그 밖에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된 주민제안에 대하여는 제안한 주민에게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도시관리계획 입안시 주민의 의견청취)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 청취 시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다음 각 목의 매체에 각각 공고하여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시의 공보나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
 나. 시를 포함한 입안하는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다.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2.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입안 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의견청취 관련 사항을 우편 발송 등을 통해 알릴 수 있다.
 가. 등기부에 표기된 토지 및 건물 소유자(세입자 포함)
 나. 도시관리계획 입안·변경 대상지에 접한 대지 및 건물 소유자(세입자 포함)
 다. 20m 이하 도로에 접한 경우 도로 반대편에 접한 대지 및 건물 소유자(세입자 포함)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경우 도면 등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안의 세부사항을 첨부파일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제5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장 용도지구 · 용도구역의 지정

제8조(용도지구 · 용도구역의 지정) 시장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지역문화진흥법」제18조에 따른 역사문화자원의 관리·보호와 문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문화지구를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 또는 변경결정할 수 있다.

제9조(용도지구 · 용도구역의 세분) ① 시장이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특화경관지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 문화재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역사문화적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 주요 자연경관의 조망 확보 또는 가로공간의 개방감 등 조망축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수변특화경관지구 :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②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중요시설물보호지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중요시설물보호지구 :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국가중요시설물보호지구 :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제5장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그 밖의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리한다.

제11조(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조성계획) 영 제25조제3항제3호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범위 이내의 변경"이란 "50퍼센트 미만의 변경"을 말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 제11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 또는 법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른 서울특별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이하 "시공동위원회"라 한다)에 자문을 할 수 있다.

제12조(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따른다.

제13조(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른 공동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4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제4조를 준용한다.

제15조(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 결정 등) ① 법 제47조에 따라 매수청구된 토지에 대한 매수여부 결정 및 통지와 매수 등의 절차 이행은 제10조 및 제67조에 따라 해당 도시계획시설을 설치·관리할 자가 행한다.

② 도시계획시설을 설치·관리할 자가 불분명하거나 시가 관리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시설의 매수청구에 대한 절차 등의 이행은 제10

조 및 제67조에 따라 해당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인가 · 허가 · 승인 또는 신고 등의 사무(주된 용도의 사무처리를 말한다)를 처리하는 자가 행한다.

제16조(매수불가 토지 안에서의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의 허용범위) ① 영 제41조제5항 단서에 따라 법 제4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 ·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별 건축기준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연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② 영 제41조제5항 단서에 따라 법 제4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6장 지구단위계획

제17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①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도시미관의 증진과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및 높이 등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로 지역 특성화 및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준공업지역 내 주거 · 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5. 단독주택 등 저층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계획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지역균형발전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적 개발 및 공공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
7. 민자역사를 개발하려는 지역
8. 공공성 있는 전략개발을 실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시장은 토지소유자 등이 공동주택(아파트에 한한다)을 건축하려는 경우, 그 규모 등이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 또는 지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주택 건축예정부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해당 지역에 토지이용 및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영 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사시설은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자동차 · 건설기계운전학원, 유통업무설비, 전기 · 가스 ·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종합의료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④ 영 제43조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5천제곱미터를 말한다.

제18조(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① 시장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법 제28조에 따른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전에 지정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공동위원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공동위원회에 자문하려는 때에는 구역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결과 및 개략적인 구역의 지정구상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처리 등)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는 경우 동 위원회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건을 붙여 의결할 수 있다.

제20조(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 법 제51조와 영 제43조 및 이 조례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법 제52조의2제1항제3호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2.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
3. 공공임대산업시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업 관련시설 또는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권장업종과 관련된 시설로서, 시장 또는 구청장이 산업 지원 또는 창업 지원, 영세상인 지원을 위해 임대로 공급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시설물 및 이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
4. 공공임대상가(「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제3조제2호에 의한 상가로서, 시장 또는 구청장이 영세상인 지원을 위해 임대로 공급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시설물 및 이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
5. 공공임대업무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로서,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지역혁신 역량강화 및 전략산업을 육성·관리·지원하기 위하여 임대로 공급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시설물 및 이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

제21조(공공시설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 산정방법) ①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등 설치비용과 부지가액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은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부지가액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인근 지역의 실거래가 등을 참고하여 산정한다. 다만, 감정평가를 시행하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산정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사용 및 납부 등) ① 법 제52조의2제5항에 따른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의 사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 또는 구청장은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중 법 제52조의2제5항 전단에서 정하는 비용을 장

기미집행 시설의 설치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비용 이외의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공공시설등 공급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에 우선 사용할 수 있다.
가. 용도지구 중 고도지구, 경관지구, 취락지구
나. 용도구역 중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다. 가목부터 나목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으로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저층주거지 또는 시도시계획위원회나 시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지역
3.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제1호 및 제2호의 범위에서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의 사용대상 세부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4.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른 구체적 개발계획과 그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설치 제공 또는 공공시설등 설치를 위한 비용 납부(이하 "공공기여"라 한다)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5. 도시공간본부장은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중에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영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감정평가를 통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전후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 이내에서 결정하며,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의 산정방법은 제21조를 적용한다.
③ 영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설치비용 납부액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은 착공일부터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 신청 전까지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시행자는 건축허가 등 이전에 현금납부액, 납부방법 및 기한 등을 포함하여 시장 및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3조(반환금의 관리 등) ① 영 제46조제2항에 따른 반환금에 관한 사항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에 한한다.
② 반환금의 반환기간은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이며, 건축허가(다른 법률에서 건축허가를 의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얻기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금의 일부 반환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반환된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하며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행위제한 내용의 제공) 시장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용도제한
2.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
3.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4. 그 밖에 시장이 지구단위계획 중 시민에게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역세권 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 수립) ① 영 제46조제11항에 따라 용적률 완화를 위하여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비용은 증가하는 용적률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부지면적 기준으로 환산하여 적용한 토지가치를 말한다.
② 영 제46조제11항에 따른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비용의 70퍼센트를 말한다.

제26조(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존치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제7장 개발행위의 허가

제2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단서에 따라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게가 30톤 이하, 부피가 30세제곱미터 이하 및 수평투영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2. 채취면적이 1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3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3.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30톤 이하 및 전체부피 3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는 행위

제28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 ① 시장은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1. 공익상 적정 여부
2. 이해관계인의 보호 여부
3. 주변의 환경 · 경관 · 교통 및 미관 등의 훼손 여부
4. 역사적 · 문화적 · 향토적 가치 및 보존 여부
5. 조경 및 재해예방 등의 조치 필요 여부
6.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시설의 확보 여부 등
② 시장은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및 대상토지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허가에 대하여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영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용도지역별 개발행위의 규모를 초과하는 개발행위허가에 대하여는 해당 개발행위가 영 제55조제3항제3의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해당 자치구에 설치된 구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제29조(이행보증금 등) ①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이행보증금의 예치가 제외되는 공공단체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 또는 자치구에서 설립한 공사 및 공단 등으로 한다.
② 영 제59조제2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에 필요한 총공사비의 20퍼센트(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은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를 받은 자"라 한다)가 착공 후 허가기간 내에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해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이행 등의 조치를 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허가를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치된 이행보증금으로 공사중단 등에 따른 재해방지를 위하여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제3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영 별표 1의2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31조(기반시설의 부담 등) 기반시설 용량의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허용하는 기반시설연동제의 적용에 관하여는 법·영이 정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개발행위허가 제한시 주민의 의견청취) ① 시장은 법 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려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 열람공고와 동시에 등기부에 표기된 토지 및 건물소유자(세입자 포함)에게 의견청취 관련 사항에 관하여 우편(전자우편 포함)을 발송하거나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해 알릴 수 있다.

제8장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제1절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제33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에 규정된 건축물
2.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에 규정된 건축물
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에 규정된 건축물
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
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에 규정된 건축물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에 규정된 건축물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에 규정된 건축물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에 규정된 건축물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에 규정된 건축물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1에 규정된 건축물
11.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에 규정된 건축물
12.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에 규정된 건축물

13.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4에 규정된 건축물
14.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에 규정된 건축물

제2절 용도지구· 용도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34조(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와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관람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다만,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변에 위치하여 경관지구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지역으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다목의 한국전통호텔업으로 등록받아 건축하는 한국전통호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또는 고압가스충전소·판매소·저장소로서 저장탱크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나. 위험물제조소저장소취급소
   다. 유독물보관저장판매시설
   라. 화약류 저장소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주차장
   나. 주유소와 함께 설치하는 자동세차장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중 촬영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시설

②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높이는 3층 이하, 12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구청장이 시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시재생위원회(이 호 다목에 한함)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다음 각 목의 비율 이하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다.

가.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변에 위치하여 경관지구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지역 : 40퍼센트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건축규제 완화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할 수 있고 주변지역의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는 지역 : 건폐율 50퍼센트

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으로서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할 수 있고 주변지역의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는 지역 : 50퍼센트

2. 자연경관지구 안의 토지로서 대지면적 33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을 4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 규모 및 지역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제44조 각 호에 따른 건폐율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서 정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나. 저층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토지로서 2층(8미터) 이하로 높이를 추가로 제한하여 건축하는 경우(다만, 경사지붕으로 조성할 때의 지붕 높이와 층고 1.8미터 이하 다락의 층수는 높이 산정에서 제외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구청장이 시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시재생위원회(이 호의 라목에 한함)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4층 이하, 16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가. 인접지역과의 높이 차이가 현저하여 높이 제한의 실효성이 없는 지역으로서 건축규제를 완화하여도 조망축을 차단하지 않고 인접부지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역

나.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변에 위치하여 경관지구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지역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할 수 있고 주변지역의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는 지역

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으로서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할 수 있고 주변지역의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는 지역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시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시재생위원회

(이 호의 나목에 한함)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 높이를 5층 이하, 20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중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구역

나.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으로서 같은 법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라 용적률이 완화되는 경우

3.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서 정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토지 규모 및 지역 현황 등을 고려하여 4층 이하, 16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층수·높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때에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 식수(植樹) 등의 조경을 하여야 한다. 다만, 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이하 "건축 조례"라 한다) 제24조제4항 각 호의 건축물과 학교건축물의 수직 증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으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세차장 및 차고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중 교정시설 및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②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6층 이하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8층 이하로 할 수 있다.

제36조(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제한) ①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제35조제1항 각 호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으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4층 이하로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 또는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이하 "경관 조례"라 한다)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6층 이하로 할 수 있다.

제37조(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제35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을

건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으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6층 이하로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 또는 경관 조례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8층 이하로 할 수 있다.

제38조(수변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수변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 · 형태 · 배치 · 색채 및 조경 등은 수변경관과 조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수변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7층 이상인 건축물은 양호한 수변경관의 보호 형성을 위해 건축물의 높이, 형태, 배치, 색채 및 조경 등에 대하여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수변특화경관지구 안에서 6층 이하의 건축물로서 해당 허가권자가 산지, 구릉지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수변경관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수변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9조(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6조제1호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안에서는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 · 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시설 이외에는 이를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시장 또는 구청장이 그 문화재의 보존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문화재청장과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는 해당 시설물의 보호 · 관리에 지장을 주는 건축물과 시설은 이를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시장 또는 구청장이 그 시설물의 보호 ·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영 제7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및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하여는 그 지구의 지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0조(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①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공용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 · 식물원과 집회장 중 회의장 · 공회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국인투자기업" 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하는 투자사업인 공연장 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인 경우의 공연장과 공연장 중 바닥면적 2,500제곱미터 이하의 음악당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도매시장

나. 소매시장(대형점 · 백화점 · 쇼핑센터는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관광숙박시설 중 관광호텔 내 위락시설은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는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주차장

나. 주유소와 함께 설치한 자동세차장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축사 · 가축시설 · 도축장 · 도계장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시설

②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항시설법」에 따라 제한되는 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또는 「소음 · 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다만, 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와 항공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태양에너지 · 연료전지 · 지열에너지 · 수소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시설은 제외한다)

③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국가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는 해당 시설물의 보호 · 관리에 지장을 주는 건축물과 시설은 이를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시장 또는 구청장이 그 시설물의 보호 ·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국방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영 별표 23 제1호의 각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23 제2호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을 건축할 수 있다.

제42조(그 밖의 용도지구 · 용도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 · 영 제80조 및 영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 종류 및 규모 등의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은 그 용도지구의 지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방화지구
2. 개발진흥지구
3. 문화지구

제43조(건축선 후퇴부분 등의 관리)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법」 제4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선 후퇴부분에는 공작물 · 담장 · 계단 · 주차장 · 화단 · 영업과 관련된 시설물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권자가 차량의 진 · 출입을 금지하기 위하여 볼라드 · 돌의자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때
2. 조경을 위한 식수를 하는 때
3. 공공보도의 보행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지하철출입구 또는 환기구 등을 건물 또는 대지 내에 설치하는 때
4. 보행자의 편익 또는 가로미관 향상을 위하여 공간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고시한 경우 또는 허가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

제3절 건폐율 및 용적률

제44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별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40퍼센트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6. 준주거지역 : 60퍼센트
7. 중심상업지역 : 60퍼센트
8. 일반상업지역 : 60퍼센트
9. 근린상업지역 : 60퍼센트
10. 유통상업지역 : 60퍼센트
11. 전용공업지역 : 60퍼센트
12. 일반공업지역 : 60퍼센트
13. 준공업지역 : 60퍼센트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제45조(그 밖의 건폐율) ① 법 제77조제3항 및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에

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1. 취락지구 : 60퍼센트(집단취락지구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가. 공원시설 : 20퍼센트
   나.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 : 60퍼센트
3.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 60퍼센트

② 도시계획시설인 학교(유치원은 제외한다) 또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학교(유치원은 제외한다)로서 학교 전체가 이전한 부지(이하 "학교이적지"라 한다)는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4조를 적용한다.

1. 이전 후 10년이 경과된 학교이적지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소유하는 학교이적지가 영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공·문화체육시설로 개발되는 경우
3. 개발이 완료된 학교이적지에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피난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의 비상용승강기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다만, 추가 설치된 부분의 면적에 한한다)

제46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44조 및 제45조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역을 정하고,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10분의 5까지 낮출 수 있다.

제47조(건폐율의 완화) ① 제44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중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폐율을 8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2.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완화하는 비율은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3. 법 제77조제4항제2호 및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나.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4.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에서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5.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30퍼센트를 말한다.
6.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가.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및 농수산업 관련 시

험 · 연구시설

나.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 · 보관시설

7.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를,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를 이하로 한다.

② 제44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할 수 있다.

1. 한양도성과 그 일부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서울도심 등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중 소단위 및 보전 정비형의 건폐율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 제84조제1항의 범위에서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정할 수 있다.

2. 산업 · 유통개발진흥지구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영 제84조제1항의 건폐율 범위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 다만, 제51조제2항제1호마목에 따라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적률 완화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대상 전통시장의 경우 구청장이 주변의 교통 · 경관 · 미관 · 일조 · 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칠 영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건폐율은 각 목 이하로 한다.

가.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나. 제3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다. 상업지역 : 80퍼센트. 다만,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48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법 제78조제1항 · 제2항 및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별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20퍼센트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50퍼센트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6. 준주거지역 : 400퍼센트
7. 중심상업지역 : 1천퍼센트(단, 서울도심 : 800퍼센트]
8. 일반상업지역 : 800퍼센트(단, 서울도심 : 600퍼센트)
9. 근린상업지역 : 600퍼센트(단, 서울도심 : 500퍼센트)
10. 유통상업지역 : 600퍼센트(단, 서울도심 : 500퍼센트)
11. 전용공업지역 : 200퍼센트
12. 일반공업지역 : 200퍼센트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14.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
15. 생산녹지지역 : 50퍼센트
16. 자연녹지지역 : 50퍼센트

제49조(그 밖의 용적률) ① 법 제78조제3항 및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안에서의 용적률은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법 제51조 · 영 제43조 및 이 조례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제48조 내지 제51조와 법 제52조 및 영 제46조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③ 학교이적지에 대한 용도지역별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다만, 이전 후 10년이 경과된 학교이적지는 제48조를 적용한다.

가. 상업지역: 500퍼센트

나. 준주거지역: 320퍼센트

다. 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라. 제1종일반주거지역: 120퍼센트

마. 제2종일반주거지역: 160퍼센트

바. 제3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제50조(용적률의 강화) 제48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할 수 있다.

1. 제48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상업지역 안에서 별표 8 제1호 가목, 별표 9 제1호 나목, 별표 10 제1호 가목에 따른 주거복합건물(공동주택과 주거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건축하는 때에는 별표 16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2. 준공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목 이하로 한다.

가. 공동주택 · 노인복지주택 · 오피스텔 · 다중생활시설(그 밖의 용도와 함께 건축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의 용적률은 250퍼센트로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공공시설등 제공 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400퍼센트까지 할 수 있다.

나. 가목 본문에도 불구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 제2항 또는 별표 17에 따른 산업지원시설인 기숙사 및 오피스텔의 경우에 용적률은 400퍼센트로 한다.

다. 가목 본문에도 불구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산업단지인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의 각종 계획에 의하여 기숙사를 건축할 경우의 용적률은 400퍼센트로 한다.(공동주택,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이외의 용도와 함께 건축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라. 가목 본문에도 불구하고 준공업지역 안에서 별표 12 제1호다목에 따른 산업복합건물(별표 17 제3호에 따른 산업시설과 공동주택 등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별표 18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제51조(용적률의 완화) ① 제48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8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제48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따라 임대주택의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는 용적률은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임대주택 유형별 임대의무기간에도 불구하고 20년 이상 임대운영할 계획으로 건축하는 임대주택은 가목을 적용할 수 있다.

가. 임대의무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 제48조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나.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 제48조에 따른 용적률의 15퍼센트
다. 임대의무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 제48조에 따른 용적률의 10퍼센트

2. 영 제85조제3항제6호에 따라 감염병 대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3.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완화하는 비율은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4. 영 제85조제8항 각 호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48조, 제49조제3항, 제50조 규정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되는 비율 이하로 한다. (1+1.3α)×제48조, 제49조제3항, 제50조 규정에 따른 용적률(다만,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제48조제3호는 180퍼센트 이하, 제48조제4호는 2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5. 영 제85조제10항제3호에 따라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이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6.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영 제85조제10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 범위에서 영 제42조의3제2항 및 제46조제1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추가 건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제48조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나. 제85조제1항의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의 범위

②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각 호에 따라 정할 수 있다.

1. 지구단위계획으로 고시하거나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용적률을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가.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서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설치하는 시설의 경우 100퍼센트 이하

나. 제48조제3호부터 제10호까지의 지역에서 국·공유지에 「문화예술 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문화시설 중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공연장을 건축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의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의 범위 내

다. 제48조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지역(서울도심 지역을 포함한다)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다목의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을 위한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할 경우 제48조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 내

라. 공공보도의 보행환경 개선과 도시미관향상을 위하여 지하철출입구·환기구·배전함 등(이하 "지하철출입구등"이라 한다)을 건물 또는 대지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설치하여 기부채납하거나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른 영 제85조제1항의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의 범위 내

1) 지하철출입구등을 대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요건의 산식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가) 대지에 설치할 경우 : 용적률 × (지하철출입구등의 건폐면적 / 대지면적) 이내
나) 건물에 설치할 경우 : 용적률 × (지하철출입구등의 연면적 / 건물 연면적) 이내

2) 지하철출입구등의 연결을 위한 통로를 설치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등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에 상응하는 가액(價額)의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이때, 통로의 설치비용 등에 상응하는 부지가액의 산정방법은 제21조를 따른다.

마. 산업 · 유통개발진흥지구,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특정관리대상 아파트의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초과하여 100퍼센트 이하(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과 초과 용적률 100퍼센트 이하의 용적률을 합한 전체 용적률이 영 제85조제1항의 용적률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 제85조제1항의 용적률 이하)의 범위 내

바. 제48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지역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제48조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계획시설인 학교 부지 밖에 건설하는 기숙사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2) 도시계획시설인 학교 부지 안의 기숙사

2. 규칙으로 정하는 지역 안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국민임대주택, 제3호의 행복주택이나 제4호의 장기전세주택이 포함된 공동주택 또는 주거복합건물을 건립하는 경우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300퍼센트 이하로 하고, 준주거지역은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3. 준주거지역에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증가하는 용적률의 2분의1에 해당하는 용적률)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4. 제48조제8호의 지역에서 서울도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의 용적률은 800퍼센트 범위에서 도시 ·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서 정하는 용적률을 적용한다.

5. 도시계획시설인 대학에 세부시설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의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 내에서 제48조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고, 이 경우 완화되는 용적률은 세부시설조성계획으로 고시하는 혁신성장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제48조제3호부터 6호까지와 제50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대상 전통시장의 용적률은 일반주거지역은 400퍼센트 이하로, 준주거지역은 450퍼센트 이하로, 준공업지역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7. 제6호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을 검토하여 주변의 교통 · 경관 · 미관 · 일조 · 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칠 영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가결한 경우에는 준주거지역에 위

치한 전통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8. 감염병 대응 등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인 종합의료시설 부지(도시계획시설 대학 내 의료시설 포함)에 지구단위계획으로 고시하는 경우(대학은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으로 고시) 영 제85조제1항의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 내에서 제48조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고, 이 경우 완화되는 용적률의 2분의1 이상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공공이 필요한 의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절 기존 건축물의 특례

제52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제5절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제53조(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 기준 면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6호나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중 개발제한구역인 부분의 해제 기준 면적은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제9장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제1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등

제54조(기능) 시도시계획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
2.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계획에 대한 사항
3.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에게 위임된 경우 그 심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55조(구성 및 운영) ① 시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의 의원 4명 이상 5명 이하
2. 시 공무원 4명
3. 토지이용·건축·주택·경관·교통· 환경·방재·문화·정보통신·도시설계 ·조경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17명 이상 21명 이하
④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해촉된 후 1년 이내에 재위촉되는 경우에는 이를 연임으로 본다.
⑥ 위원장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시도시계획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시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진다.
⑩ 시도시계획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맡고, 서기는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맡는다.
⑪ 시도시계획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56조(분과위원회) ① 시도시계획위원회는 영 제1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17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하 “분과위원”이라 한다)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분과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분과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 중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한 분과위원회의 심의 · 의결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 의결로 본다. 이 경우 간사는 분과위원회의 심의 · 의결사항을 차기 시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7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영 제11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위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의개최 전까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제척결정을 한다.

제58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위원이 해당분야에 대한 자격을 상실한 때
4.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 등을 누설한 때
5. 위원이 제57조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
6. 제55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감사원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징계의결 요구된 경우
7. 1년 단위(위촉일부터 기산(起算)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출석률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② 제1항제7호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한다.

1. 위원의 1년 단위 참석대상 회의 개최 횟수가 1회인 경우
2. 잔여임기 1년 미만 등으로 1년 단위 출석률 적용이 어려운 경우
3. 천재지변, 응급상황, 그 밖에 위원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③ 위원이 각종 범죄 또는 법률위반이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해촉된 경우 재위촉할 수 없다.

제59조(자료제출 및 제안설명) ① 시도시계획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에 관하여 해당 자치구 또는 관련 전문가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② 시도시계획위원회는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입안권자에게 통보하고 입안권자는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0조(회의의 비공개) ① 시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개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에 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 공개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1조(회의록) ① 위원장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을 2명 이하의 속기사로 하여금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시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및 심의자료의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1. 심의 종결된 안건의 경우 심의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한다.
2. 보류된 안건의 경우 최초 심의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한다.
3. 제2호의 기간이 지나 재상정된 보류 안건의 경우 심의 종결 또는 보류에도 불구하고 심의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자료는 심의결과에 상관없이 심의 후 바로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다.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회의록 및 심의자료의 공개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62조(수당 등) 시장은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속기사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3조(공동위원회의 운영) ① 제54조, 제55조제4항부터 제11항, 제56조제1항제6호부터 제5항까지,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은 시공동위원회의 운영에 준용한다.

② 구청장은 제67조제1항에 따른 권한위임사무 처리를 위해 자치구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64조(도시공간 정책자문단 설치·운영 등) 시장은 도시공간계획의 합리적인 수립·운영 등을 위하여 도시공간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 자문할 수 있다. 자문위원은 도시경관·도시설계·교통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 전문가와 문화·미래·역사·관광 등

인문사회 관련분야 전문가 및 시의원으로 구성하며,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절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제65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시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도시계획상임기획과를 기획단으로 본다.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입안한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검토
2. 시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
3. 다음 각 목의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및 상정안건 검토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도시계획위원회

나.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

다.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위원회

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위원회

4. 그 밖의 도시계획에 대한 심사·자문 및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도시계획상임기획과의 사무

제66조(기획단의 구성) 기획단에는 법 제116조에 따른 전문위원을 포함한 임기제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10장 보칙

제67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별표 19의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제1항의 위임사무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임사무 중 별표 19의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68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대상)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9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토지이용 관련 정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5조제2항에 따른 '학교이적지'

2. 별표 1 제1호라목(2)(마)에 따른 ‘사고지’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
3. 별표 1 제1호가목(4)에 따른 ‘비오톱1등급 토지’ <제4조제4항의 도시생태현황 조사결과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이고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인 토지)
4. 제4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서울도심’
5.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고시한 건축선

제69조(과태료의 징수절차 등) 영 제134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 및 이의제기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70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1]

개발행위허가 기준(제30조 관련)

1. 분야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허 가 기 준
가. 공통분야	(1) 조수류, 수목 등의 집단서식지가 아니고,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을 것 (2) 개발행위로 인하여 해당 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이 훼손되지 아니하고, 국방상 목적 등에 따른 원형 보전의 필요성이 없을 것 (3)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표고, 경사도, 임상, 인근 도로의 높이, 물의 배수 등을 참작하여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준의 적용은 일필지 단위로 함. 다만,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따라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지목이 "대"인 토지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은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ha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산림청장이 가장 최근 고시한 산림기본통계를 말한다) 상 서울특별시 ha당 평균입목축적의 30%(녹지지역에서는 20%) 미만인 토지 ㈏ 평균경사도 18도(녹지지역에서는 12도) 미만인 토지. 다만, 일필지 내에 격자(10m×10m)가 1개 이상일 경우(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건축허가·신고를 받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 격자별 산출된 평균경사도 중 최댓값을 적용한다. (4) 제4조제4항의 도시생태현황 조사결과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이고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으로 지정된 부분은 보전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따라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지목이 "대"인 토지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 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비오톱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비오톱"이란 특정한 식물과 동물이 하나의 생활공동체를 이루어 지표상에서 다른 곳과 명확히 구분되는 생물서식지를 말한다. ㈏ 비오톱유형평가는 5개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서식지기능, 생물서식의 잠재성, 식물의 층위구조, 면적 및 희귀도를 종합하여 평가한다. ㈐ 개별비오톱평가는 자연형 비오톱유형과 근자연형 비오톱유형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3개의 등급으로 구분하며 자연성, 생물서식지기능, 면적, 위치 등을 평가항목으로 고려한다.
나. 도시관리계획	(1) 용도지역별 개발행위의 규모 및 건축제한 기준에 적합할 것 (2)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 도시계획사업	(1) 도시계획사업부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영 제61조에 따라 허용되는 개발행위를 제외한다) (2) 개발시기와 가설시설의 설치 등이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검토분야	허 가 기 준
라. 주변지역과의 관계	⑴ 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형태 및 색채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도시관리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⑵ 개발행위로 인하여 해당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 및 위해의 발생 등이 우려되는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만, 환경오염·생태계파괴 및 위해발생 등의 방지가 가능하여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의 방지,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을 허가조건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가 있어 보전의 필요가 있는 경우 ㈏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보호 야생동·식물,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이 자생하고 있거나, 생물종 다양성이 풍부한 습지 등과 연결되어 생태보전이 필요한 경우 ㈐ 개발행위로 인하여 위해·붕괴 등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 ㈒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로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그 사실이 명시된 경우 ⑶ 개발행위로 인하여 임야 및 녹지축이 단절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로 배수가 변경되어 하천·호소·습지로의 유수를 막지 아니할 것
마. 기반시설	해당 행위가 도로·급수시설 또는 배수시설의 설치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각각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수도법」 제18조, 「하수도법」 제12조 및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⑴ 도로의 설치를 포함하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행위지역 이외의 모든 도로의 기능과 조화되도록 하고, 인근도로와 연결하여 도로로서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이 이미 결정되어 있을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하고, 보행자전용도로 이외에는 계단 형태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 하수를 충분하게 배출할 수 있는 배수구 등 필요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 다른 도로와의 연결이 예정되어 있거나 차를 돌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경우 등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막다른 길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검토분야	허 가 기 준
마. 기반시설	⑵ 급수시설의 설치를 포함하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수도, 그 밖의 급수시설은 해당 행위지역의 규모·형상 및 주변의 상황과 대상건축물 등의 용도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예상되는 수요에 지장이 없는 규모 및 구조로 하고, 급수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배수본관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단부가 없는 그물 형태로 하고, 외력인 토압 등의 하중과 내력인 수압에 의하여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급수시설은 얼어서 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토양이 얼지 아니하는 깊이 이상으로 이를 묻거나 덮개 등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⑶ 하수도 등 배수시설의 설치를 포함하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행위지역의 규모, 형상 및 주변의 상황과 지반의 성질, 대상건축물 등의 용도, 해당 행위지역 안으로 유입되는 지역 밖의 하수상황 또는 강수량 등에 의하여 예상되는 오수 및 빗물을 유효하게 배출하고, 그 배출에 의하여 해당 행위지역 안 및 그 주변지역에 피해를 끼치지 아니할 규모 및 구조로 하며, 배수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을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해당 행위지역 안의 하수를 충분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행위지역 밖의 하수도·하천 그 밖의 공공의 수역 또는 해역에 연결되도록 하고 이 경우 방류선에서의 배수능력의 부족으로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행위지역 안의 하수를 저류하는 유수지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하수의 배출은 분류식으로 하되, 해당 행위지역 밖의 조건 등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합류식으로 할 수 있다. ㈑ 하수의 배출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암거방식에 따르고, 자연환경을 심하게 파괴할 오수를 방출할 경우에는 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배수시설의 구조는 자중·수압·토압 또는 차량 등의 하중 및 지진 등에 대한 내구력이 있고, 누수되거나 지하수가 침입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구조물은 지하수의 부력에 견딜 수 있도록 축조하여야 한다. ㈔ 배수관은 도로 또는 배수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없는 장소에 매설하고, 관경은 20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하수처리시설의 처리능력은 1일에 처리할 수 있는 평균하수처리량으로 하고, 그 하수처리시설과 연결되는 도수관의 처리능력은 1일에 통과시킬 수 있는 최대하수량으로 한다.
바. 그 밖의 사항	⑴ 공유수면 매립의 경우에는 그 매립목적이 도시계획에 적합할 것 ⑵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입목의 벌채가 수반되지 아니할 것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허 가 기 준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1)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 또는 설치의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법」과 법 및 영 그리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그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에 관하여는 「건축법」에 따른다. 이 경우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와 동시에 할 수 있다. (2)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를 대신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를 대신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행하는 1천20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창고 등 상수도나 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공간계획 대상 면적 중 생태적 기능 또는 자연순환기능이 있는 토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인 생태면적률을 지목이 변경되는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대상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제외) 30%이상, 그 이외 용도의 건축물 20%이상 ㈏ 녹지지역 내 건축물 50% 이상 ㈐ ㈎ 와 ㈏에도 불구하고 지형 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 토지의 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생태면적률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녹지지역 내 건축물 50% 이상 ㈏ 그 외 지역의 건축물 30% 이상

검토분야	허 가 기 준
나. 토지의 형질변경	(1) 토지의 지반이 연약한 지반인 때에는 그 두께·넓이·지하수위 등의 조사와 지반의 지지력·내려앉음·솟아오름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여 흙바꾸기·다지기·배수 등의 방법으로 이를 개량할 것 (2)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및 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옹벽 또는 석축의 설치 등 다음의 안전조치를 할 것 ㈎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 토사가 무너져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한다. ㈑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과의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옹벽은 토사의 붕괴 또는 침하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다. 토석채취	(1) 주변의 상황·교통 및 자연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2) 소음·진동 또는 분진 등에 의하여 인근에 피해가 없는 지역에 한하도록 할 것 (3)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허가는 시가화대상이 아닌 지역으로서 인근에 피해가 없는 경우에 한하도록 할 것. 다만, 국민경제상 중요한 광물자원의 개발을 위한 경우로서 인근의 토지이용에 대한 피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토지분할	(1) 녹지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29조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 분할할 것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이하 이 칸에서 “분할제한면적”이라 한다) 미만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녹지지역 안에서의 기존묘지의 분할 ㈏ 사설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분할(「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사설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중 도로로서의 용도가 폐지되는 부분을 인접 토지와 합병하기 위하여 하는 분할

검토분야	허 가 기 준
라. 토지분할	㈑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토지경계선을 시정하여 해당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분할 후 인접토지와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이 경우 허가신청인은 분할 후 합병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거나 그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분할 후 남는 토지의 면적 및 분할된 토지와 인접 토지가 합병된 후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지 아니할 것. ○ 분할 전후의 토지면적에 증감이 없을 것 ○ 분할하고자 하는 기존토지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고, 분할된 토지와 인접 토지를 합병한 후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지 아니할 것 ⑶ 너비 5미터 이하로 분할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
마.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해당 행위로 인하여 위해의 발생, 주변 환경의 오염 및 도시경관의 훼손 등의 우려가 없고, 해당 물건을 쉽게 옮길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⑴ 물건적치로 인하여 소음, 악취 및 침출수 등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⑵ 물건적치로 인하여 시각통로 차폐, 도시미관 훼손 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별표 2]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제1호 관련)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2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2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으로서 19세대 이하인 것(허가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타종시설 및 옥외확성장치가 없는 것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박물관·미술관·기념관)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타종시설 및 옥외확성장치가 없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아동관련시설
   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별표 3]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제2호 관련)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3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3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타종시설 및 옥외확성장치가 없는 것에 한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박물관·미술관·기념관)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타종시설 및 옥외확성장치가 없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아동 관련시설
   나. 노인복지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별표 4]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제3호 관련)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4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4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종교집회장
   나. 사진관, 표구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일반음식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마.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
   사. 독서실, 기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아.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
   자.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및 동·식물원(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12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다만,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박물관·미술관·기념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봉안당은 유골 750구 이하에 한한다. 다만,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의료법」 제3조3호에 따른 요양병원을 말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학원은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너비 1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하며,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12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군부대시설(2016년 12월 31일 현재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입지한 시설에 한정한다)인 대지 안에 건축하는 경우
   나.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주거·복지·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중 발전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태양에너지·연료전지·지열에너지·수소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소에 한정한다)

[별표 5]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제4호 관련)

1. 영 별표 5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5층 이하의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스카이라인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도시경관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고시한 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층수는 7층 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 시공동위원회, 시도시재정비위원회, 시도시재생위원회 또는 시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등 시도시계획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층수를 완화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대상 전통시장 : 15층 이하
      2) 균형발전사업지구·산업개발진흥지구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7조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이하 "특정관리대상 아파트"라 한다) : 10층 이하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를 건축하는 경우 : 평균층수 13층 이하
   나. 제1호 이외의 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를 건축하는 경우 경관관리 또는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시도시계획위원회, 시공동위원회, 시도시재정비위원회, 시도시재생위원회 또는 시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등 시도시계획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층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1호가목에 따른 "평균층수"는 아파트의 지상 연면적을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면적으로 나누어 환산한 층수를 말한다.
3.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5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5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에 해당하는 건축물
      1) 공연장(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2) 종교집회장
      3) 자동차영업소(너비 20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4) 서점
      5) 총포판매소(너비 20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6) 사진관, 표구점
      7)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관련 시설(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8)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9) 일반음식점
      10)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1)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
      12) 독서실, 기원
      13)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

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

14)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

15) 다중생활시설(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16)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로서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 중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17) 노래연습장(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다음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공연장·집회장(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는 제외하며,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2) 전시장 및 동·식물원(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소매시장 및 상점(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20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2)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종전의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3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병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야영장시설은 제외하며, 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너비 1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금융업소 및 사무소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창고, 하역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다음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주유소·석유판매소 및 액화가스판매소

2)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3)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4) 도료류 판매소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다음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주차장

2) 세차장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가) 너비 12미터(일반택시운송사업용 및 자동차대여사업용 차고는 6미터, 마을버스운송사업용의 차고는 8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나) 입지, 출입구, 주변교통량,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주민 열람 후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 위치한 대지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다음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작물재배사

2) 종묘배양시설

3)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4) 식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다목까지 시설과 유사한 것(동·식물원은 제외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중 발전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2호에 따른 태양에너지·연료전지·지열에너지·수소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소와 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에 한한다)

4. 제3호가목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시장과의 협의 및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 위치한 대지에 한해 제3호가목의 1), 7), 16), 17) 각각의 건축물 접도조건을 완화하여 건축하게 할 수 있다.

[별표 6]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제5호 관련)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6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6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하며, 자동차영업소는 1천제곱미터 미만, 총포판매소는 2천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너비 20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공연장·집회장(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는 제외하며,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다만, 예식장을 제외한 용도의 건축물은 너비 20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전시장 및 동·식물원(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소매시장 및 상점(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20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나.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병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야영장 시설은 제외하며,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의 경우 너비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너비 8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다만, 지식산업센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의 것에 한한다),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및 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 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창고, 하역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주유소·석유판매소 및 액화가스판매소

나. 「대기환경 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라. 도료류 판매소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1) 너비 12미터(일반택시운송사업용 및 자동차대여사업용 차고는 6미터, 마을버스운송사업용의 차고는 8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2) 입지, 출입구, 주변교통량,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주민 열람 후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 위치한 대지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작물재배사

나. 종묘배양시설

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라. 식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다목까지 시설과 유사한 것(동·식물원은 제외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중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한다),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구청장이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에 한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중 발전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2호에 따른 태양에너지·연료전지·지열에너지·수소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소와 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에 한한다)

[별표 7]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33조제6호 관련)

준주거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7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7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철도시설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및 집배송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는 제외한다)
   나.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다.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라.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마. 도시가스 제조시설
   바. 화학류 저장소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정비공장 중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위한 시설
   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가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교정시설,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구청장이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
   나.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2호에 따른 태양에너지·연료전지·지열에너지·수소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소와 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는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별표 8]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3조제7호 관련)

1. 중심상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8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8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별표 16에 따라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휴게소, 공원·유원지,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2. 영 별표 8 제1호의 다목과 라목 규정에 따라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주거지역 경계가 너비 6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 도로 너비를 거리 산정 시 포함하여 계산한다. 이하 같다) 이내의 지역 안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과 제16호 위락시설로의 용도로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으며,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 초과, 200미터까지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에 맞지 않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별표 9]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3조제8호 관련)

1. 일반상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9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9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별표 16에 따라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자연권 수련시설, 유스호스텔, 야영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 인쇄업, 금은세공업,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과 지식산업센터를 제외한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저장소 ·취급소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다음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작물 재배사
      2) 종묘배양시설
      3)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4) 식물과 관련된 1)부터 3)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2. 영 별표 9 제1호의 가목 및 나목 규정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과 제16호 위락시설의 경우 별표 8 제2호에 따른다.

[별표 10]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3조제9호 관련)

1. 근린상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0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0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별표 16에 따라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 인쇄업, 금은세공업,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과 지식산업센터를 제외한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다음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작물 재배사
      2) 종묘배양시설
      3)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4) 식물과 관련된 1)부터 3)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2호에 따른 태양에너지·연료전지·지열에너지·수소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소와 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는 제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관망탑, 휴게소, 공원·유원지,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2. 영 별표 10 제1호의 나목 및 다목, 제2호마목 규정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과 제16호 위락시설의 경우 별표 8 제2호에 따른다.

[별표 11]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3조제10호 관련)

1. 유통상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1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1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중 폐차장(폐차영업소는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2호에 따른 태양에너지·연료전지·지열에너지·수소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소와 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는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2. 영 별표 11 제1호마목 및 제2호자목 규정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 위락시설의 경우 별표 8 제2호에 따른다.

[별표 12]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3조제11호 관련)

준공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4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4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공장부지(이적지 포함)에 건축하는 공동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단,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 지구단위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정비사업 또는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의 도시개발사업은 별표 17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산업시설의 설치 또는 산업부지를 확보하고 산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의2. 제1호의 본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 7. 30. 현재 주택지 등으로 둘러싸여 산업부지의 활용이 어렵고, 주변과 연계하여 개발이 불가능한 3천제곱미터 미만의 공장이적지의 경우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을 건축할 수 있다.(허가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 한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별표 13]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제12호 관련)

보전녹지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5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5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같은 호 다목의 목욕장 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는 것과 같은 호 라목의 산후조리원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작물재배사

나. 종묘배양시설

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라. 식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것

[별표 14]

생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제13호 관련)

생산녹지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6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6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종교집회장
   나. 사진관, 표구점
   다.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라. 일반음식점
   마.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바.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
   사. 독서실, 기원
   아.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
   자.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판매시설에 한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한한다)
   나.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및 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창고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5]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제14호 관련)

자연녹지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7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7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 장외 발매소 및 마권 전화투표소는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업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후계수산업경영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전업수산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지식산업센터·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레미콘공장 또는 아스콘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창고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제조소는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별표 16]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

(별표 8 제1호가목, 별표 9 제1호나목, 별표 10 제1호가목, 제50조제1호 관련)

1. 상업지역 내에서 주거복합건물의 주거외 용도 비율

가.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부대시설의 면적을 포함한다)은 전체 연면적의 20퍼센트(의무 비율) 이상으로 한다. 이때 주거용 외의 용도 비율(의무 비율)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도시재정비위원회 또는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등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부대시설의 면적을 포함한다)을 전체 연면적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시장이 주거기능의 입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선정한 지역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대상 재래시장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5) 시장이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선정한 지역

2. 상업지역 내에서 주거복합건물의 용적률

상업지역 내에서 주거복합건물의 용적률은 제48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정한 용적률 이하로 하되 주거용 용적률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주거용 부대시설의 용적률을 포함한다)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증가하는 용적률의 2분의1에 해당하는 용적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중심상업지역 및 서울도심을 제외한 일반상업지역은 600퍼센트 이하, 서울도심 내의 일반상업지역과 근린상업지역은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도입하는 경우, 해당 용적률과 같은 비율의 주거용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생활권계획을 포함한다)상의 중심지 육성방향에 부합하는 용도로 시도시계획위원회, 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 도시계획 심의를 위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용도

2) 그 밖에 지역의 전략적 육성, 시 정책목적 달성 등을 위해 시도시계획위원회, 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 도시계획 심의를 위한 해당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라.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1호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도시재정비위원회 또는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등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주거용 부대시설의 용적률을 포함한다)은 가목과 나목에서 정한 주거용 용적률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별표 17]

준공업지역 내 공장부지(이적지 포함)에 대한 공동주택 허용기준

(제33조제11호 별표 12 관련)

1. 공장의 범위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의 공장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및 제20호 바목의 자동차 관련시설 중 자동차정비공장

다. 현재 공장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있더라도 지목이 "공장용지"로서 나대지이거나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2. 산업부지 확보비율

가. 도시계획조례 별표 12 제1호의 단서에서 정하는 산업부지 확보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사업구역 내 공장비율이 10% 미만인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구역내 공장비율(2008.1.31 기준)	사업구역 면적대비 산업 부지 확보비율	비 고
10~20% 미만	10% 이상	사업구역은 준공업지역만을 대상으로 산정한다.
20~30% 미만	20% 이상	
30~40% 미만	30% 이상	
40~50% 미만	40% 이상	
50% 이상	50% 이상	

나. 산업부지에 설치하는 산업시설의 용적률은 공동주택 부지의 용적률 이상으로 한다.

다. 산업부지 중 공공시설로 제공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부지는 산업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제3호다목에 따른 산업시설 중 「의료법」제3조의3의 종합병원 또는「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목의 산업부지 확보비율을 1단계(10%) 하향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산업부지에 설치할 수 있는 산업시설의 범위

가. 「서울특별시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0호의 산업시설

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에 따른 산업지원시설(해당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의 100분의 30이하에 한정한다). 단, 기숙사 및 오피스텔은 산업지원시설 바닥면적 합계의 3분의1 이하인 경우만 허용한다.

다.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시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시설 또는 산업지원시설로 인정하는 경우

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단독 또는 민간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 기숙사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로 대체할 수 있다.

4. 그 밖의 사항

가.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노후건축물 적용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나. 공공시설부지의 위치·용도·비율과 공공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완화 등에 대하여는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시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별표 18]

준공업지역 내 공장부지(이적지포함)에 대한 공동주택 허용기준

(제33조제11호 별표 12 관련)

1. 준공업지역 내 산업복합건물의 용적률 적용방법

가.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에 대한 산업시설 바닥면적의 합계의 비율에 따라서 산업복합건물의 용적률을 차등 적용한다.

나. 사업구역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까지인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단독 또는 민간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면적을 2만제곱미터까지 완화할 수 있다.

다. 산업시설 바닥면적의 합계 비율은 별표 17에 따른 산업부지 확보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한다.

전체 바닥면적 대비 산업시설 바닥면적의 합계 비율	용적률
30% 미만	250% 이하
30~40% 미만	270% 이하
40~50% 미만	290% 이하
50~60% 미만	310% 이하
60~70% 미만	330% 이하
70~80% 미만	350% 이하
80~90% 미만	370% 이하
90% 이상	400% 이하

2. 산업복합건물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가. 산업시설은 별표 17 제3호에 따른 산업부지에 설치할 수 있는 산업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제14호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그 밖에 시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시설로 한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단독 또는 민간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업시설 바닥면적의 10%까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

나. 산업시설 외의 시설은 별표 12에 따라서 공동주택 등 준공업지역 내 허용되는 시설로 한다.

[별표 19]

권한위임 사무(제67조 관련)

사 무 명	관계법령
1. 다음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관한 사무 (시 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입안할 수 있으며, 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공동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할 수 있음) 가. 용도지역 나. 용도지구 다. 도시계획시설(철도, 궤도 신설은 제외한다) 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초조사 포함) 마. 다목 또는 라목의 입안에 대한 주민 제안서의 처리	○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영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조례 제6조, 제7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변경결정 및 고시에 관한 사무(시장이 직접 입안한 도시계획시설, 시장이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포함하여 입안하는 도시계획시설, 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치는 도시계획시설은 제외하며, 시장이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시설내 자치구로 결정권한이 위임된 도시계획시설을 중복결정 또는 변경결정하는 경우와 용도지구 내 자치구로 결정권한이 위임된 도시계획시설의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의 범위를 결정·변경결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도로(폭 12미터 이하 또는 구도에 한함) 나. 광장(폭 12미터 이하 도로 또는 구도에 접속되는 경우에 한함) 다. 주차장(부지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에 한하되,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함) 라. 하천(소하천에 한함) 마. 체육시설(부지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에 한하되,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함) 바. 공공공지(부지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에 한하되, 3천제곱미터 초과 공공공지의 면적 축소 또는 폐지는 시장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함) 사. 공공청사(동주민센터, 파출소, 소방파출소, 우체분국, 보건지소에 한함) 아.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시설의 건폐율·용적률·높이의 변경결정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에 한함) 자. 문화시설(부지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에 한하되, 전시시설, 국제회의시설 등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대상은 제외함) 차. 수도(저수용량이 5천톤 이하의 배수지 및 가압장에 한함)	○법 제29조·제30조 영 제23조·제25조

카. 전기공급설비(소형변전소 154Kv 미만 및 이와 관련되는 송배전시설에 한함) 타. 가스공급설비(가스배관시설로 한정함) 파. 방수설비 하. 사회복지시설 거. 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차집관거는 제외함) 너. 청소년수련시설(부지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에 한함) 더. 공원(어린이공원, 소공원으로 한정하되, 면적의 축소 또는 폐지는 시장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함) 러. 시장(市場)(부지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에 한함)	
3. 다음의 경미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결정에 관한 사무 가. 단위 도시계획시설 부지면적의 5퍼센트 미만인 시설부지의 변경결정(공원·녹지 및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포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시설을 제외하며, 도로의 경우에는 시종점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중심선이 종전에 결정된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지형사정으로 인한 도시계획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된 시설부지의 변경인 경우 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도로 모퉁이변을 조정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의 변경결정 라. 도시계획결정의 내용중 면적 산정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결정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건축법」 제26조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결정 마. 가목과 나목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에 따른 시가지·특화경관지구의 변경결정	○법 제30조제5항 단서 영 제25조제3항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의 변경결정에 관한 사무(다만, 특별계획구역과 시장이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하여 입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 및 지목의 경우에는 2회 이상 나누어 변경하는 때에는 총 변경되는 합을 말한다. 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영 제25조제3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나. 가구(영 제42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다. 획지면적의 변경(신설, 폐지를 포함한다.) 라. 건축물 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하되,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층수변경은 제외한다) 마.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	○법 제30조제5항 단서 영 제25조제4항 조례 제19조

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바. 건축선(건축한계선, 건축지정선, 벽면지정선 등을 포함한다)의 변경 또는 신설, 폐지의 경우 사.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아.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해당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권자를 시장으로 지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자.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5퍼센트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 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다만, 용도지역의 세분 또는 변경은 제외한다) 차.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용적률 완화(친환경 에너지 상한용적률에 한함)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 카. 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교통처리계획 중 주차장출입구·차량출입구·보행자출입구의 위치변경(신설, 폐지를 포함한다)과 그 위치변경에 따른 차량출입 불허구간의 변경 타. 지하 또는 공중공간에 설치할 시설물의 높이·깊이·배치 또는 규모 파. 대문·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 또는 색채 하. 간판의 크기·형태·색채 또는 재질 거. 장애인·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계획 너.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계획 더. 생물서식공간의 보호·조성·연결 및 물과 공기의 순환 등에 관한 계획 러.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머. 공개공지, 보행전용통로, 보차혼용로 등 대지내 공지 위치 변경(신설, 폐지를 포함한다.) 버. 건축물 권장용도, 허용용도, 불허용도의 변경(다만,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허용용도 및 불허용도는 제외한다) 서. 제2호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변경결정 및 고시에 관한 사무(시장이 직접 입안한 도시계획시설, 시장이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포함하여 입안하는 도시계획시설, 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치는 도시계획시설은 제외하며, 시장이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내 자치구로 결정권한이 위임된 도시계획시설을 중복결정 또는 변경결정하는 경우와 제2호에 따라 사전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4의2.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범위에서의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무(용도지역·용도지구의 변경결정이 수반되거나 시장이 하는 건축허가, 시의 사업승인 대상과 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은 제외)	○법 제30조 영 제25조
5. 지형도면 등의 작성 및 고시에 관한 사무(다만, 시장이 결정 또는 변경결정한 도시관리계획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제외한다)	○법 제32조·제63조 영 제27조·제60조

6.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지구단위계획의 실효고시에 관한 사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가. 시장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공고한 도시계획시설	○법 제48조, 제53조 영 제42조, 제50조
6의2. 도시계획시설의 정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의 지방의회 보고에 관한 사무(시장이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법 제48조 영 제42조
7.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청구가 있은 토지의 매수여부의 결정, 매수결정의 통지 및 매수절차 이행 등 매수청구 일체의 사무(구청장이 결정한 시설과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구청장이 매수의무자인 도시계획시설에 한한다)	○법 제47조, 영 제41조 조례 제10조, 제15조
8. 개발행위의 허가 및 준공과 관련한 다음의 사무(제28조제3항의 사무는 제외한다.)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다만, 개발행위가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건축법」의 규정에 따른다) 나. 토지의 형질변경 다. 토석의 채취 라. 토지분할 마. 물건을 쌓는 행위	○법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영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영 제55조제3항제3의2 제외) ○영 제58조부터 제59조까지 ○조례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조례 제28조제3항 제외)
9. 법 제78조제7항제2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용적률 완화에 관한 규정을 중첩 적용하여 완화되는 용적률이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에 관한 사무	○ 법 제78조제7항제2호
10.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에 관한 사무(시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할 수 있다)	○법 제63조 영 제60조 조례 제32조
11.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공고 및 매년 2단계 집행계획의 검토(시장이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및 시행자 지정(시행자가 지방공사인 경우,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통지한 시설과 공항은 제외한다) 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의 작성, 인가 및 고시, 실시계획을 위한 공람공고 및 그에 따른 공시송달 (시장이 시행하거나, 시장이 시행자를 지정한 사업과 공항은 제외한다)	○법 제85조, 영 제95조 ○법 제86조, 영 제96조 ○법 제88조부터 제94조까지 영 제97조부터 제101조까지

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완료보고서의 수리 및 준공검사, 준공검사필증 교부, 공사완료공고(시장이 시행하거나, 시장이 시행자를 지정한 사업은 제외한다)	○법 제98조, 영 제102조
12. 기초조사 및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조사·측량 등에 따른 타인의 토지 출입허가에 관한 사항(시장이 시행하거나 시장이 시행하는 자를 지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법 제130조
13.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감독처분(자치구에 위임된 사무에 한한다)	○법 제133조
14.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및 고시에 관한 사항(시 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수립 및 고시할 수 있음)	○법 제67조, 제68조 ○영 제67조
15. 사업부지 면적(기부채납 면적 포함)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의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또는 변경 승인 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변경결정에 관한 사무 가.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나. 용도지역 변경 또는 층수완화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다. 시장이 처리해야 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변경)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주거지역의 용적률 변경 및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 변경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 제51조제2항제3호와 별표 16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 규정은 2025년 3월 27일까지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가 의제되거나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까지 적용한다.

제3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2항제1호 및 제49조제3항 단서는 2000년 7월 1일 이후 이전한 학교이적지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에 적용례) 제58조제1항제7호 규정은 종전 조례(서울특별시 조례 제8862호를 말한다.) 시행 당시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일(2023.7.24.) 이전에 위촉된 위원의 경우 임기 만료 전까지는 공포한 날로부터 1년 단위의 출석률을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청서를 접수하였거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 신청(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와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건축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아파트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변경)고시된 잠실지구, 반포지구, 화곡지구, 암사 · 명일지구 및 청담 · 도곡지구 안에서의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당해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에 의한다.

제7조(자연경관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도시계획조례(서울특별시 조례 제4082호를 말한다.) 제8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지구는 영 제31조제2항제1호가목에 의한 자연경관지구로 본다.

제8조(미관광장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조제2항제4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미관광장은 영 제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광장 또는 경관광장으로 결정 · 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9조(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관한 경과 조치) ① 종전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 및 종전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한 사항과 종전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 또는 운영지침으로 정한 사항은 영 제25조제4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지구단위계획 중 이 조례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당해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변경절차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조(시가지경관지구의 높이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① 종전 조례(서울특별시 조례 제7441호를 말한다) 시행(2020.1.9.) 당시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구역은 2020.1.9. 이전에 지구단위계획으로 고시한 건축물의 높이계획을 따른다.

② 종전 조례(서울특별시 조례 제7441호를 말한다) 시행일(2020.1.9.)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건축허가 신청(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와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기 위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건축신고를 접수한 경우까지는 종전 조례(서울특별시 조례 제7423호를 말한다)를 적용한다.

제11조(중요시설물보호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48조에 따른 다음 표 왼쪽 칸의 중요시설물보호지구 건축물의 건축제한은 제40조 개정 규정에 따른 다음 표의 오른쪽 칸의 중요시설물보호지구로 각각 세분된 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으로 본다.

종전의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공용중요시설물보호지구
2. 공항시설보호지구	2.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3. 중요시설보호지구	3. 국가중요시설물보호지구

제12조(준공업지역 내 공장부지에 대한 공동주택 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08.7.30. 이전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서울특별시규칙 제3602호를 말한다.) 별표 4 규정의 비공업기능 우세지구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은 당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종전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5981호를 말한다) 시행일(2015.7.30.) 이전에 산업부지 확보비율이 포함되어 정비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경우는 종전의 규정(서울특별시조례 제5925호를 말한다)을 적용한다.

제13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5376호를 말한다) 시행 당시(2012.11.1.) 「자연공원법」에 따라 공원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집단시설지구에서의 건폐율은 제45조제1항제2호가목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서울특별시조례 제5349호를 말한다)에 따른다.

② 종전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5376호를 말한다) 시행 당시(2012.11.1.) 「자연공원법」에 따라 공원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밀집마을지구 및 공원집단시설지구에서의 용적률은 제49조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서울특별시조례 제5349호를 말한다)에 따른다.

③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 조례」에 따라 뉴타운사업을 시행하는 지구 안의 제2종전용주거지역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완화받은 경우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다.

④ 제47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한 서울도심 중 종전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6242호를 말한다) 제54조제5항 규정에 의한 4대문안 이외의 상업지역은 제48조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단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182호

도시계획시설(복주산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8호(2008.2.5.)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384호(2021.7.22.)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종 결정(변경)되었으며, 서대문구고시 제2011-54호(2011.9.1.)로 공원조성계획이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159호(2021.4.1.)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복주산근린공원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11 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결정취지 :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내 복주산근린공원 조성(변경)을 위하여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13-61일대 복주산근린공원
- 면 적 : 37,623㎡

다. 조성계획결정(변경) 조서·도면 : 붙임 참고
※ 첨부된 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라.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02-2133-2067)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푸른도시과(☎02-330-1396)

북아현 재정비촉진지구 내 복주산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총 괄 표 (서대문구 북아현동 113-61일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39,039.00	13,170.56	2	87.40	87.40	489	37,623.00	12,783.61	2	87.40	87.40	489	부지 감 1,416㎡ 시설 감386.95㎡
기반시설	소 계	10,281.34	10,281.34	-	-	-	-	9,876.11	9,876.11	-	-	-	-	감405.23㎡
	도 로	7,385.81	7,385.81	-	-	-	-	6,980.58	6,980.58	-	-	-	-	감405.23㎡
	광 장	2,895.53	2,895.53	-	-	-	-	2,895.53	2,895.53	-	-	-	-	
조경시설		882.63	882.63	-	-	-	188	882.63	882.63	-	-	-	188	
휴양시설		274.01	274.01	-	-	-	45	274.01	274.01	-	-	-	45	
관리시설		49.92	49.92	1	49.92	49.92	221	49.92	49.92	1	49.92	49.92	220	
편익시설		41.12	41.12	1	37.48	37.48	1	41.12	41.12	1	37.48	37.48	1	
운동시설		914.66	914.66	-	-	-	7	1,201.09	1,201.09	-	-	-	28	증286.43㎡
유희시설		726.88	726.88	-	-	-	27	458.73	458.73	-	-	-	7	감268.15㎡
녹지 및 기타		25,868.44	-	-	-	-	-	24,839.39	-	-	-	-	-	감1,029.05㎡
공원시설율 (법정40%이하)		(13,170.56㎡ / 39,039.00㎡) × 100% = 33.74%						(12,783.61㎡ / 37,623.00㎡) × 100% = 33.98%						
공원건폐율 (법정15%이하)		(87.4㎡ / 39,039.00㎡) × 100% = 0.22%						(87.4㎡ / 39,079.40㎡) × 100% = 0.22%						

나. 시설조서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계				39,039.00	13,170.56			87.4	87.4	489			37,623.00	12,783.61			87.4	87.4	489	
기반시설	소 계			10,281.34	10,281.34								9,876.11	9,876.11						감 405.23㎡
	도 로	소 계		7,385.81	7,385.81						소 계		6,980.58	6,980.58						감 405.23㎡
		소로	부지내	412.57	412.57						소로	부지내	571.51	571.51						증 158.94㎡
		산책로	부지내	6,973.24	6,973.24						산책로	부지내	6,409.07	6,409.07						감 564.17㎡
	광 장	소 계		2,895.53	2,895.53						소 계		2,895.53	2,895.53						
		광장-가	부지내	137.22	137.22						광장-가	부지내	137.22	137.22						
		광장-나	부지내	71.31	71.31						광장-나	부지내	71.31	71.31						
		광장-다	부지내	322.74	322.74						광장-다	부지내	322.74	322.74						
		광장-라	부지내	712.84	712.84						광장-라	부지내	712.84	712.84						
		광장-마	부지내	266.01	266.01						광장-마	부지내	266.01	266.01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광장-바	부지내	214.10	214.10						광장-바	부지내	214.10	214.10						
		광장-사	부지내	88.10	88.10						광장-사	부지내	88.10	88.10						
		광장-아	부지내	186.99	186.99						광장-아	부지내	186.99	186.99						
		광장-자	부지내	431.48	431.48						광장-자	부지내	431.48	431.48						
		광장-차	부지내	226.39	226.39						광장-차	부지내	226.39	226.39						
		광장-카	부지내	238.35	238.35						광장-카	부지내	238.35	238.35						
조경시설	소 계			882.63	882.63				188				882.63	882.63				188		
	바닥분수	①	부지내	57.60	57.60				1		①	부지내	57.60	57.60				1		
조경시설	벽천	②	부지내	72.25	72.25					1	②	부지내	72.25	72.25					1	
	화계B	④	부지내	13.62	13.62					1	④	부지내	13.62	13.62					1	
	화계C	⑤	부지내	7.56	7.56					1	⑤	부지내	7.56	7.56					1	
	화계D	⑰	부지내	41.40	41.40					1	⑰	부지내	41.40	41.40					1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목재데크A	⑥	부지내	141.34	141.34					1	⑥	부지내	141.34	141.34					1	
	목재데크B	⑦	부지내	35.35	35.35					1	⑦	부지내	35.35	35.35					1	
	전망데크A	⑧	부지내	152.17	152.17					1	⑧	부지내	152.17	152.17					1	
	전망데크B	⑨	부지내	60.66	60.66					1	⑨	부지내	60.66	60.66					1	
	테라스데크	⑩	부지내	167.49	167.49					1	⑩	부지내	167.49	167.49					1	
	스탠드	⑫	부지내	33.55	33.55					1	⑫	부지내	33.55	33.55					1	
	전시가벽	⑬	부지내	3.46	3.46					2	⑬	부지내	3.46	3.46					2	
	디딤석	⑭	부지내	69.20	69.20					173	⑭	부지내	69.20	69.20					173	
	전통담장	㊽	부지내	26.98	26.98					2	㊽	부지내	26.98	26.98					2	
휴양시설	소 계			274.01	274.01					45			274.01	274.01					45	
	그늘시렁A	⑱	부지내	65.34	65.34					1	⑱	부지내	65.34	65.34					1	
	그늘시렁B	⑲	부지내	26.39	26.39					1	⑲	부지내	26.39	26.39					1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그늘시렁C	⑳	부지내	33.18	33.18					1	⑳	부지내	33.18	33.18					1	
	그늘시렁D	㉑	부지내	31.71	31.71					2	㉑	부지내	31.71	31.71					2	
	평의자	㉒	부지내	-	-					13	㉒	부지내	-	-					13	
	등의자	㉓	부지내	-	-					3	㉓	부지내	-	-					3	
	장식벤치	㉔	부지내	9.60	9.60					4	㉔	부지내	9.60	9.60					4	
휴양시설	야외탁자	㉕	부지내	-	-					9	㉕	부지내	-	-					9	
	앉음벽	㉖	부지내	25.26	25.26					4	㉖	부지내	25.26	25.26					4	
	육각정자	㊾	부지내	32.42	32.42					1	㊾	부지내	32.42	32.42					1	
	휴게공간	㊿	부지내	50.11	50.11					-	㊿	부지내	50.11	50.11					-	
	야외테이블	⑤①	부지내	-	-					6	⑤①	부지내	-	-					6	
관리시설	소 계			49.92	49.92			49.92	95.24	221			49.92	49.92			49.92	49.92	220	감1기
	보안등		부지내	-	-					77		부지내	-	-					76	
	녹지등	㉙	부지내	-	-					42	㉙	부지내	-	-					42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투사등	㉚	부지내	-	-					30	㉚	부지내	-	-					30	
	CCTV	㉛	부지내	-	-					23	㉛	부지내	-	-					23	
	금연안내판	㉜	부지내	-	-					13	㉜	부지내	-	-					13	
	계도안내판	㉝	부지내	-	-					3	㉝	부지내	-	-					3	
	종합안내판	㉞	부지내	-	-					6	㉞	부지내	-	-					6	
	방향이정표	㉟	부지내	-	-					25	㉟	부지내	-	-					25	
	놀이시설안내판	㊱	부지내	-	-					1	㊱	부지내	-	-					1	
	휀스	㊲	부지내	-	-					(601.6m)	㊲	부지내	-	-					(460.6m)	(감 141m)
	관리소	㊳	부지내	49.92	49.92			49.92	49.92	1	㊳	부지내	49.92	49.92			49.92	49.92	1	
편의시설	소 계			41.12	41.12			37.48	37.48	1			41.12	41.12			37.48	37.48	1	
	화장실B	㊵	부지내	41.12	41.12			37.48	37.48	1	㊵	부지내	41.12	41.12			37.48	37.48	1	

구분		전								후								비고
		변			정					변			정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 연면적								바닥면적 / 연면적		
당초 시설현황	소계			914.66	914.66				7			1,201.09	1,201.09				28	증217기 (증1,오류정정 증20) 증286.43㎡ (증18.28㎡, 오류정정 증 268.15㎡)
	베드민턴장		부지내	863.36	863.36				2		부지내	863.36	863.36				2	
변경 시설현황	주민생활체육	㉮	부지내	51.3	51.3				5	㉮	부지내	337.73	337.73				26	증217기 (증1,오류정정 증20) 증286.43㎡ (증18.28㎡, 오류정정 증 268.15㎡)
	소계			726.88	726.88				27			458.73	458.73				7	감207기 감268.15㎡ (오류정정)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체력단련시설		부지내	726.88	726.88					20		부지내	-	-					-	감20기 (감726.88㎡) (오류정정)
	놀이터		부지내	-	-					-		부지내	458.73	458.73						증 458.73㎡ (오류정정)
	경사놀이대	㊶	부지내	-	-					1	㊶	부지내	-	-					1	
	경사형오름판	㊷	부지내	-	-					1	㊷	부지내	-	-					1	
	놀이계단	㊸	부지내	-	-					1	㊸	부지내	-	-					1	
	그네	㊹	부지내	-	-					1	㊹	부지내	-	-					1	
	시소	㊺	부지내	-	-					1	㊺	부지내	-	-					1	
	흔들놀이	㊻	부지내	-	-					2	㊻	부지내	-	-					2	
녹지 및 기타	소 계			25,868.44	-								24,839.39	-						(감 1,029.05㎡)
	녹지 및 기타			25,868.44	-								24,839.39	-						(감 1,029.05㎡)

다, 도로조서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 능	기 점	종점	비 고
기정	합 계				2,698.75	7,385.81				
변경					2,498.15	6,980.58				
기정	소로	소계			51.3	412.57				연장 증)32.7m 면적 증)158.94㎡
변경					84.0	571.51				
기정		3류	1	8	51.3	412.57	보행	3-5구역	3-4구역	
신설		3류	2	6.5	17.4	113.10	보행	2구역	3구역	연장 증)17.4m 면적 증)113.1㎡
신설		3류	3	3.0	15.3	45.84	보행	2구역	경의선	연장 증)15.3m 면적 증)45.84㎡
기정	산책로	소계			2,647.45	6,973.24				연장 감)233.3m 면적 감)564.17㎡
변경					2,414.15	6,409.07				
기정		-	1	3	285.66	829.68	보행	추계예술대	산책로-19	
기정		-	2	3	240.9	722.72	보행	산책로-1	산책로-20	
기정		-	3	3	67.15	201.46	보행	산책로-1	광장-카	
기정		-	5	2	21.1	42.31	보행	추계예술대	산책로-6	
기정		-	6	1.5	81.3	122.09	보행	산책로-2	산책로-2	
기정		-	7	2	14.7	29.49	보행	광장-가	산책로-1	
기정		-	8	1.5	57.7	86.61	보행	광장-가	산책로-1	
기정		-	9	2	19.4	38.90	보행	산책로-13	산책로-1	
기정		-	10	3	6.59	19.77	보행	산책로-11	산책로-1	
기정		-	11	3.5	47.0	192.55	보행	20m도로	20m도로	
기정		-	12	4	36.7	146.93	보행	추계예술대	산책로-2	
기정		-	13	3	21.9	65.89	보행	광장-가	광장-나	
기정		-	14	1.5	4.2	6.34	보행	광장-나	산책로-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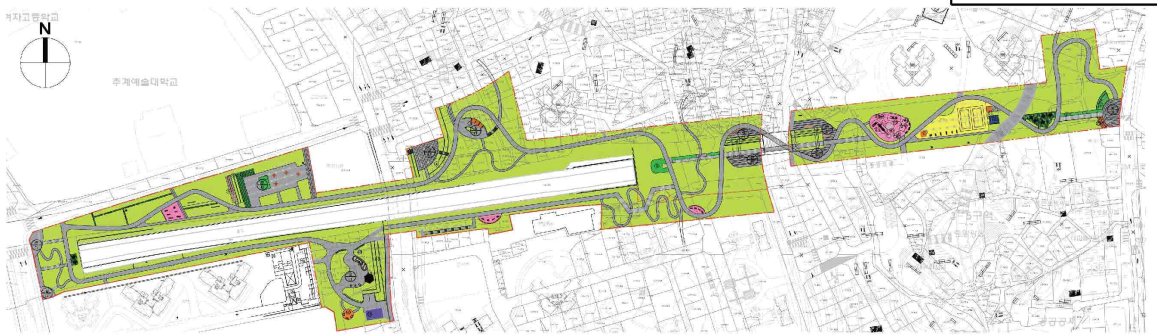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종점	비 고
기정		-	15	3	13.9	41.88	보행	산책로-20	북쪽	
기정		-	16	2	29.4	58.84	보행	산책로-20	북쪽	
기정		-	17	1.2	92.7	111.26	보행	산책로-20	산책로-20	
기정		-	18	2	48.6	97.36	보행	산책로-19	도서관	연장 감)9.3m 면적 감)18.76㎡
변경		-	18	2	39.3	78.60	보행	외부도로	종교용지	
기정		-	19	3	223.7	671.12	보행	산책로-1	산책로-20	연장 감)157.8m 면적 감)473.42㎡
변경			19	3	65.9	197.70	보행	2구역	산책로-20	
기정	산책로	-	20	3	430.4	1,291.43	보행	산책로-2	산책로-27	
기정		-	21	1.5	40.3	60.59	보행	산책로-19	산책로-19	연장 감)37.9m 면적 감)55.79㎡
변경		-	21	2	2.4	4.80	보행	산책로-18	주민생활체육	
기정		-	22	1.5	33.6	50.51	보행	산책로-19	산책로-19	연장 감)31.2m 면적 감)45.71㎡
변경		-	22	2	2.4	4.80	보행	산책로-18	주민생활체육	
기정		-	23	1.5	68.6	103.04	보행	산책로-19	산책로-20	
기정		-	24	1.5	40.3	60.56	보행	산책로-20	산책로-25	
기정		-	25	2	45.0	90.09	보행	산책로-20	산책로-20	
기정		-	26	1.5	26.7	40.05	보행	산책로-25	3-2구역	
기정		-	27	3	46.7	140.13	보행	산책로-20	산책로-33	
기정		-	28	1.5	9.7	14.56	보행	산책로-20	2구역	연장 증)2.9m 면적 증)29.51㎡
변경		-	28	3	12.6	44.07	보행	2구역	산책로-19	
기정		-	29	2	8.0	16.16	보행	산책로-20	광장-마	
기정		-	30	2	8.7	17.48	보행	산책로-20	광장-마	
기정		-	31	1.5	7.3	11.06	보행	광장-바	산책로-17	
기정		-	32	3	157.9	473.79	보행	산책로-27	산책로-27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종점	비 고
기정		-	33	3	191.7	575.21	보행	산책로-27	소로-1	
기정		-	34	3	31.7	95.39	보행	산책로-36	광장-차	
기정		-	35	3	13.0	39.00	보행	소로-1	광장-차	
기정		-	36	1.5	69.6	104.49	보행	산책로-33	소로-1	
기정		-	37	4	8.0	32.33	보행	3-5구역	어린이놀이터	
기정		-	38	3	48.43	145.29	보행	광장-다	산책로-11	
기정		-	39	3	24.36	73.08	보행	3-4구역	3-5구역	
신설		-	40	1.5	5.83	8.75	보행	산책로-3	휴게공간	
신설		-	41	1.5	8.04	12.07	보행	휴게공간	산책로-3	
신설		-	42	3	10.99	32.98	보행	산책로-3	아파트 부출입구	

기정

조성계획도(전체)

복주산근린공원



■ 총괄시설조서 범례

구 분	시 설 명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작물(기)	비 고
총 계		39,039.00	13,170.56	489	
기반시설	소 계	10,281.34	10,281.34		
	도 로	7,385.81	7,385.81		
	광 장	2,895.53	2,895.53		
조경시설	벽천, 폭포, 스탠드 등	882.63	882.63	188	
휴양시설	가새보, 그늘시렁 등	274.01	274.01	45	
관리시설	보안등, 안내판 등	49.92	49.92	221	
편익시설	휴게실 등	41.12	41.12	1	
운동시설	일반코트, 생활체육장 등	914.66	914.66	7	
유희시설	체력시설물, 조합놀이대 등	726.88	726.88	27	
녹지 및 기타	-	25,868.44	-		

0 4 20 40 80 120m

■ 시설조서 범례

구 분	번 호	시 설 명	부지면적(㎡)	시설면적-1층(㎡)	공작물(기)	비 고
총 계			39,039.00	13,170.56	489	
기반시설	㉮	광 장-가	137.22	137.22		
	㉯	광 장-나	71.31	71.31		
	㉰	광 장-다	322.74	322.74		
	㉱	광 장 라	712.84	712.84		
	㉲	광 장 마	266.01	266.01		
	㉳	광 장 바	214.10	214.10		
	㉴	광 장 사	88.10	88.10		
	㉵	광 장 아	186.99	186.99		
	㉶	광 장 자	431.48	431.48		
	㉷	광 장 차	226.39	226.39		
	㉸	광 장 카	238.35	238.35		
	소 계		2,895.53	2,895.53		
조경시설	①	배수분수	57.60	57.60	1	
	②	벽천	72.25	72.25	1	
	④	화계B	13.62	13.62	1	
	⑤	화계C	7.56	7.56	1	
	⑰	화계D	41.40	41.40	1	
	⑥	목재데크A	141.34	141.34	1	
	⑦	목재데크B	35.35	35.35	1	
	⑧	전망데크A	152.17	152.17	1	
	⑨	전망데크B	60.66	60.66	1	
	⑩	테라스데크	167.49	167.49	1	
	⑫	스탠드	33.55	33.55	1	
	⑬	현시가벽	3.46	3.46	2	
	⑭	디딤석	39.20	39.20	173	
	㊽	전통담장	26.98	26.98	2	
	소 계		882.63	882.63	1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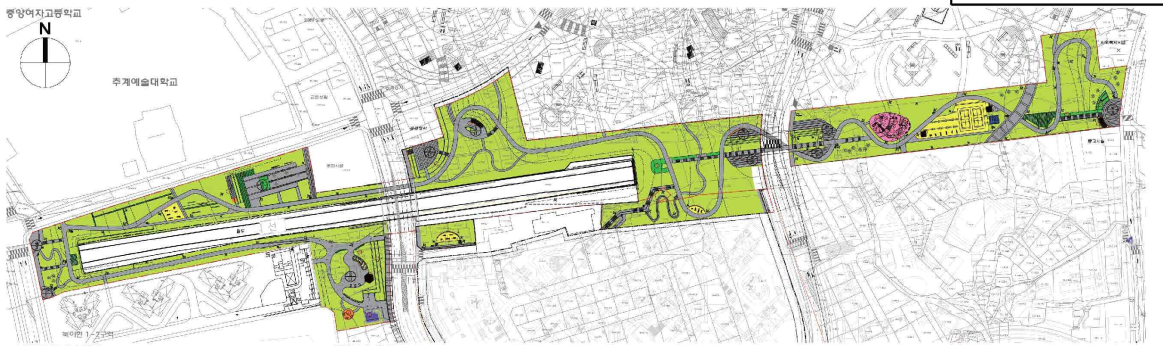
구 분	번 호	시 설 명	부지면적(㎡)	시설면적-1층(㎡)	공작물(기)	비 고
휴양시설	⑱	그늘시렁A	65.34	65.34	1	
	⑲	그늘시렁B	26.39	26.39	1	
	⑳	그늘시렁C	33.18	33.18	1	
	㉑	그늘시렁D	31.71	31.71	2	
	㉒	평의자	-	-	13	
	㉓	등의자	-	-	3	
	㉔	장의벤치	9.60	9.60	4	
	㉕	야외탁자	-	-	9	
	㉖	앉음벽	25.26	25.26	4	
	㊾	목각정자	32.42	32.42	1	
	㊿	휴게공간	50.11	50.11	-	
	㊶	야외테이블	-	-	6	
	소 계		274.01	274.01	45	
관리시설	보안등		-	-	77	
	⑳	녹지등	-	-	42	
	㊵	투시등	-	-	30	
	㊶	CCTV	-	-	23	
	㊷	남명안내판	-	-	13	
	㊸	계도안내판	-	-	3	
	㊹	중앙안내판	-	-	6	
	㊺	방향이정지	-	-	25	
	㊻	놀이시설안내판	-	-	1	
	㊼	펜스	-	-	(601.6m)	
	㊽	관리소	49.92	49.92	1	
	소 계		49.92	49.92	221	

구 분	번 호	시 설 명	부지면적(㎡)	시설면적-1층(㎡)	공작물(기)	비 고
편익시설	㊴	화장실B	41.12	41.12	1	
	소 계		41.12	41.12	1	
운동시설		배드민턴장	853.36	853.36	2	
	㊸	주민생활공작	51.3	51.3	5	
	소 계		914.66	914.66	7	
유희시설		철책미끄럼시설	726.88	726.88	20	
	㊶	경사놀이대	-	-	1	
	㊷	경사형미끄럼	-	-	1	
	㊸	놀이기단	-	-	1	
	㊹	그네	-	-	1	
	㊺	시소	-	-	1	
	㊻	흔들놀이	-	-	2	
	소 계		726.88	726.88	27	
녹지 및 기타		녹지 및 기타	25,868.44	-		
	소 계		25,868.44	-	-	

변경

조성계획도(전체)

복주산근린공원



■ 총괄시설조서 범례

구 분	시 설 명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작물(개)	비 고
총 계		37,623.00	12,783.61	489	
기반시설	소 계	9,876.11	9,876.11		
	도 로	6,980.58	6,980.58		
	광 장	2,895.53	2,895.53		
조경시설	벽천, 화계, 스탠드 등	882.63	882.63	188	
휴양시설	가제보, 그늘시렁 등	274.01	274.01	45	
관리시설	보안등, 안내판 등	49.92	49.92	220	
편익시설	화장실 등	41.12	41.12	1	
몬능시설	멀티코트, 배드민턴장 등	1,201.09	1,201.09	28	
유희시설	조합놀이장 등	458.73	458.73	7	
녹지 및 기타	-	24,839.39			

0 4 20 40 80 120m

■ 시설조서 범례

구 분	번 호	시 설 명	부지면적(㎡)	시설면적-1(㎡)	공작물(기)	비 고
총 계			37,623.00	12,783.61	489	
기반시설	㉮	광 장-가	137.22	137.22		
	㉯	광 장-나	71.31	71.31		
	㉰	광 장-다	322.74	322.74		
	㉱	광 장-라	712.84	712.84		
	㉲	광 장-마	266.01	266.01		
	㉳	광 장-바	214.10	214.10		
	㉴	광 장-사	88.10	88.10		
	㉵	광 장-아	186.99	186.99		
	㉶	광 장-자	431.48	431.48		
	㉷	광 장-차	226.39	226.39		
	㉸	광 장-카	238.35	238.35		
	소 계		2,895.53	2,895.53		
조경시설	①	배닥분수	57.60	57.60	1	
	②	벽천	72.25	72.25	1	
	④	화계B	13.62	13.62	1	
	⑤	화계C	7.56	7.56	1	
	⑫	화계D	41.40	41.40	1	
	⑥	목재데크A	141.34	141.34	1	
	⑦	목재데크B	35.35	35.35	1	
	⑧	전망데크A	152.17	152.17	1	
	⑨	전망데크B	60.66	60.66	1	
	⑩	테라스데크	167.49	167.49	1	
	⑫	스탠드	33.55	33.55	1	
	⑬	전시가벽	3.46	3.46	2	
	⑭	디딤석	39.20	39.20	173	
	㊽	전통담장	26.98	26.98	2	
	소 계		882.63	882.63	188	

구 분	번 호	시 설 명	부지면적(㎡)	시설면적-1(㎡)	공작물(기)	비 고
휴양시설	⑱	그늘시렁A	65.34	65.34	1	
	⑲	그늘시렁B	26.39	26.39	1	
	⑳	그늘시렁C	33.18	33.18	1	
	㉑	그늘시렁D	31.71	31.71	2	
	㉒	평의자	-	-	13	
	㉓	등의자	-	-	3	
	㉔	장의벤치	9.60	9.60	4	
	㉕	아외학자	-	-	9	
	㉖	앙암벽	25.26	25.26	4	
	㊾	목각정자	32.42	32.42	1	
	㊿	휴게공간	50.11	50.11	-	
	51	아외테이블	-	-	6	
	소 계		274.01	274.01	45	
관리시설	보안등		-	-	78	
	㉙	녹지등	-	-	42	
	㉚	투시등	-	-	30	
	㉛	CCTV	-	-	23	
	㉜	금연안내판	-	-	13	
	㉝	계도안내판	-	-	3	
	㉞	공원안내판	-	-	6	
	㉟	방향이정표	-	-	25	
	㊱	놀이시설안내문	-	-	1	
	㊲	펜스	-	-	(901.0m)	
	㊳	관리소	49.92	49.92	1	
	소 계		49.92	49.92	220	

구 분	번 호	시 설 명	부지면적(㎡)	시설면적-1(㎡)	공작물(기)	비 고
편익시설	㊵	화장실B	41.12	41.12	1	
	소 계		41.12	41.12	1	
몬능시설		배드민턴장	863.36	863.36	2	
	㊸	주민생활체육	337.73	337.73	26	
	소 계		1,201.09	1,201.09	28	
유희시설		놀이터	458.73	458.73		
	㊶	경사놀이대	-	-	1	
	㊷	경사형오름판	-	-	1	
	㊸	놀이계단	-	-	1	
	㊹	그네	-	-	1	
	㊺	시소	-	-	1	
	㊻	흔들놀이	-	-	2	
	소 계		458.73	458.73	7	
녹지 및 기타		녹지 및 기타	24,839.39	-	-	
	소 계		24,839.39	-	-	

조성계획도(부분)

기정

복주산근린공원



■ 시설주서 명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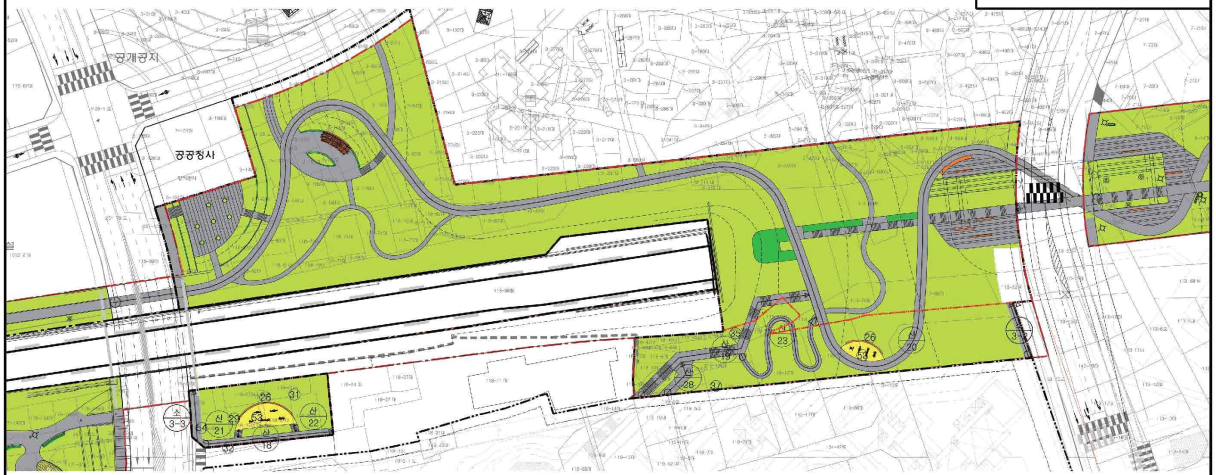
구 분	범 례	시 설 명	녹지면적(㎡)	포장면적(㎡)	건축면적(㎡)	조경면적(㎡)	비 고
총 계		근린공원 전체	59,289.90	15,170.59	488		
		지형분구역 부분	(2,769.60)	(1,194.32)	(24)		
가반시설	㉮	산책로-18	97.56	97.56			
			(97.56)	(97.56)			
	㉯	산책로-19	671.12	671.12			
			(609.33)	(609.23)			
	㉰	산책로-20	1,291.43	1,291.43			
			(135.52)	(135.52)			
	㉱	산책로-21	85.59	85.59			
			(60.59)	(60.59)			
	㉲	산책로-22	50.51	50.51			
			(39.96)	(39.96)			
	㉳	산책로-23	193.04	193.04			
			(94.55)	(94.55)			
	㉴	산책로-26	14.66	14.66			
			(14.66)	(14.66)			
		근린공원 전체	2,298.61	2,298.61			
		녹지면적구역 부분	(1,051.87)	(1,051.87)			

구 분	범 례	시 설 명	부지면적(㎡)	건축면적(㎡)	조경면적(㎡)	비 고
휴양시설	㉮	정자벤	12.37	12.37	2	
		소 계	(12.37)	(12.37)	2	
관리시설	㉯	보안등			8	
	㉰	녹지등	-	-	3	
	㉱	CCTV			1	
	㉲	비상안내판	-	-	1	
	㉳	탐방이정표	-	-	1	
	㉴	휴소	-	-	-	1개
		소 계	-	-	14	
유희시설	㉵	피톤치드의숲	129.98	129.98	8	
		소 계	(129.98)	(129.98)	8	
녹지 및 기타		소 계	(1,599.26)			

조성계획도(부분)

변경

복주산근린공원



■ 시설조서 변경

구 분	번호	시 설 명	부지면적(㎡)	시설면적·건축면적(㎡)	연장(m)	비 고
총 계		근린공원 생성	37,629.00	12,769.61	488	식물원 330
		녹지축(구역 부분	(2,760.30)	(616.42)	(24)	
가는시설	㉮	소공3-2	113.10	113.10		
			(113.10)	(113.10)		
	㉯	소공3-3	45.84	45.84		
			(45.84)	(45.84)		
	㉰	산책로-18	78.85	78.85		
			(78.85)	(78.85)		
	㉱	산책로-19	197.70	197.70		
			(196.51)	(196.51)		
	㉲	산책로-20	1,291.43	1,291.43		
			(136.52)	(136.52)		
	㉳	산책로-21	4.80	4.80		
			(4.80)	(4.80)		
	㉴	산책로-22	4.80	4.80		
			(4.80)	(4.80)		
	㉵	산책보-03	103.04	103.04		
			(94.55)	(94.55)		
	㉶	산책로 28	44.07	44.07		
			(44.07)	(44.07)		
		근생시설 생성	1,883.38	1,883.38		
		녹지축(구역 부분	(668.79)	(668.79)		

구 분	번호	시 설 명	부지면적(㎡)	시설면적·건축면적(㎡)	연장(m)	비 고
휴양시설	㉸	음용벽	12.37	12.37	2	
		소 계	(12.37)	(12.37)	2	
관리시설	㉹	보안등	-	-	7	
	㉺	녹지등			3	
	㉻	CCTV	-	-	1	
	㉼	급경사대책			1	
	㉽	통행이정표	-	-	1	
	㉾	휴소	-	-	-	33m
		소 계			13	
운동시설	㉿	주민운동체육	148.26	148.26	9	
		소 계	(148.26)	(148.26)	9	
녹지 및 기타		소 계	(1,373.80)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183호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 고시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22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

1. 인정 해제 고시 내용

지정명칭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구분	사망연월일
제39호 아쟁산조	박종선	남	1945.4.17.	예능	2024 .3. 20.

2. 해 제 일 : 2024. 3. 20.

3. 해제사유 : 보유자 본인의 사망으로 인한 해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185호

도시관리계획(몽촌토성역세권(방이동 56번지 일원)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56번지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몽촌토성역세권(방이동 56번지 일원)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 취지

몽촌토성역세권(방이동 56번지 일원)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몽촌토성역세권(방이동 56번지 일원)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신설)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몽촌토성역세권(방이동 56번지 일원)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송파구 방이동 56번지 일원	-	증)6,504.3	6,504.3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위 치	면 적(㎡)	결정사유
신설	송파구 방이동 56번지 일원	6,504.3	• 방이동 일원의 부족한 기반시설(공영주차장) 확충 및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신설하여 계획적 개발을 도모하고자 함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결정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6,504.3	-	6,504.3	100.00	-
주거지역	소계	6,504.3	-	6,504.3	100.00	-
	제2종일반주거지역	6,504.3	감) 5,924.0	580.3	8.92	도로
	준주거지역	-	증) 5,924.0	5,924.0	91.08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	송파구 방이동 56번지 일원	제2종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5,924.0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에 따른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하여 당초 용도지역인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 도로 총괄표

유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2	219	580.3	-	-	-	-	-	-	2	219	580.3
소로	2	219	580.3	-	-	-	-	-	-	2	219	580.3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로 기준임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97	6 (0)	국지 도로	177 (100)	방이동58-26 (방이동57-16)	방이동 58 (방이동 58)	일반 도로	-	서고15-296 (15.09.24.)	-
변경	소로	3	97	6~8 (2)	국지 도로	177 (100)	방이동58-26 (방이동57-16)	방이동 58 (방이동 58)	일반 도로	-	-	-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	6	국지 도로	98	방이동96-3	방이동96-4	일반 도로	-	-	-
변경	소로	3	가	6	국지 도로	119	방이동96-3	방이동96-4	일반 도로	-	-	-

※ 폭원, 연장, 기점 및 종점의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항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사유
소로 3-97	소로 3-97	• 폭원 : 6 → 6~8m	•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도로확폭
소로 3	소로 3-가	• 연장 : 98m → 119m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에 따라 단지 통합 배치를 위한 선형 변경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신설)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1) 획지 결정 조서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	1	송파구 방이동 56번지 일원	5,924.0	획지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 획지 결정(신설) 사유서

위치	결정내용	결정사유
송파구 방이동 56번지 일원	• 획지 : 5,924.0㎡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에 따라 획지 계획 수립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배치 · 형태 · 건축선 등에 관한 결정조서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계획내용	비고
지정용도 (l)	- 제2호의 공동주택(공공임대주택 포함) 및 부대시설 • 지하1층 ~ 지상2층 -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제외) -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상점 - 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가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불허용도 (a)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2) 건축물의 건폐율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계획내용	비고
건폐율	• 준주거지역 : 60% 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3) 건축물의 용적률에 관한 결정 조서

■ 용적률에 관한 결정 조서

용적률	준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비고
기준용적률	200%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상한용적률	675% 이하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공공시설 등 설치·제공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에 따른 용적률 체계 적용

■ 상한용적률 산정

– 기준 산정

구분	내용	산출내역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대지면적	5,924.0㎡	• 구역면적 : 6,504.3㎡ • 대지면적 : 5,924.0㎡, 도로면적 : 580.3㎡
기준용적률	200.0%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상한용적률	675.0%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에 따른 용적률 체계 적용
완화된용적률1/2	237.5% 이상	• (상한용적률 - 기준용적률) / 2 = (675.0% - 200%) / 2 = 237.5%
공공기여 연면적	14,069.50㎡ 이상	• 완화된용적률1/2 X 대지면적 = 237.5% X 5.924.0㎡ = 14,069.50㎡
환산부지면적	2,084.46㎡ 이상	• 대지면적 X 공공기여 연면적 / 지상부 전체 연면적 = 5,924.0㎡ X 14,069.50 / 39,985.19㎡ = 2,084.46㎡

※ 공공기여 면적은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측량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공기여시설 및 공공주택 계획

구분	산출결과		산출내역	비고
공영 주차장	511.03㎡	394.02㎡	• 공영주차장 전용면적 / (전체 전용면적 X 대지면적) = 1,934.83㎡ / (29,089.57㎡ X 5,924.0㎡) = 394.02㎡	부속토지면적

구분	산출결과		산출내역	비고
		117.01㎡	• 공공시설 설치비용(원) / 부지가액(원/㎡) = 2,179.76㎡ X 2,544,545(원/㎡) / 47,400,000(원/㎡) = 117.01㎡	환산부지면적
장기 전세 주택	1,581.71㎡		• (42형 대지지분 X 세대 수) + (46형 대지지분 X 세대 수) + (49A형 대지지분 X 세대 수) + (49B형 대지지분 X 세대 수) + (62형 대지지분 X 세대 수) = (9.3099㎡ X 39) + (10.1484㎡ X 7) + (10.8754㎡ X 67) + (10.8547㎡ X 26) + (13.6712㎡ X 10) = 1,581.71㎡	149 세대
합 계			2,092.74㎡	2,084.46㎡ 이상

※ 장기전세주택에 관한 세부계획(세대수 및 전용면적 등)은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서울형 주거환경 정책

구 분		운영기준	계획내용	비고
필수 항목	지속 가능형 공동주택	• 「건축법」 제8조에 의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인 공동주택 또는 「주택법」 제38조에 의한 “장수명 주택” 으로 계획	• 장수명주택에 필요한 내구성, 가변성, 수리용이성에 적합 하도록 계획	건축 위원회 결정사항
	친환경 건축물	•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서울특별시 고시)」에 의한 해당 적용대상의 구분을 적용하여 ㉠ 환경성능부문 ㉡ 에너지성능부문 ㉢ 에너지관리부문 ㉣ 신 · 재생에너지부문 중 2가지 이상을 적용대상의 구분에서 상향단계를 적용	• ㉠환경성능부문 – 녹색건축인증 그린2(우수)등급 적용 • ㉡에너지성능부문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 적용 • ㉢에너지관리부문 – 에너지 모니터링 적용(세대별 및 공용부분) • ㉣신 · 재생에너지부문 – 신재생에너지공급률 10.5%이상 적용	사용승인 시 인증
	역사문화 보전	• 사업대상지에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지정 및 등록문화재 또는 역사 · 생활 문화유산이 포함된 경우 보전계획을 준수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건축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관련 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이행한 것으로 봄	• 해당없음	–
권장 항목	커뮤니티 지원시설 설치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이외 전체 공동주택 세대수에 따라 아래 기준 면적 이상으로 설치를 권장 – 300세대이상 : 공공임대주택 포함 지상층 공동주택 연면적의 2% (최소 450㎡) 이상	• 해당없음	공급면적 기준

※ 상기 계획은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③ 공공주택 건립 관련 수립기준에 관한 사항

구 분	적용기준	계획내용	비고
공공주택 계획	• 건설하는 공공주택은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으로 계획하는 것을 원칙	• 장기전세주택 : 총 149세대 계획 - 42Type(전용 42.79㎡) : 39세대(26.17%) 계획 - 46Type(전용 46.65㎡) : 7세대(4.70%) 계획 - 49AType(전용 49.99㎡) : 67세대(44.97%) 계획 - 49BType(전용 49.89㎡) : 26세대(17.45%) 계획 - 62Type(전용 62.84㎡) : 10세대(6.71%) 계획	-
	• 차별 또는 이용상 불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혼합(social mixing)을 반드시 계획하여야 함	• 사회혼합(social mixing)적용	-

※ 장기전세주택에 관한 세부계획(세대수 및 전용면적 등)은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4) 건축물 높이에 관한 결정 조서

구 분	계획내용	비고
높이	• 최고 높이 89m 이하	• 「서울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기준」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 서울특별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2023.06.30.)에 따라 1차 역세권 내 준주거지역은 채광방향 이격거리 및 인동간격을 용적률과 연계하여 차등완화

5) 비주거시설의 건축 비율에 관한 계획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에 따른 비주거시설의 건축

구 분	적용기준	내 용
비주거 시설의 건축	운영기준 별표 2	3-1. 준주거지역으로 계획 시에는 역세권 가로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상층 연면적의 5% 이상을 비주거 시설(오피스텔 등 준주택 및 생활숙박시설 제외)로 지상층에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 여건, 지하철 연결통로 및 지하상가 활성화 등이 가능할 경우 관련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비주거시설 설치기준

구 분	설치기준	계획내용	
비주거 시설의 건축	• 의무면적 : 지상층연면적 X 5% = 39,985.32㎡ X 5% = 1,999.27㎡	지상1층	근린생활시설 : 1,573.25㎡
		지상2층	근린생활시설 : 1,708.84㎡
		합 계	3,282.09㎡

6) 건축물의 배치 · 건축선에 관한 결정

■ 건축선에 관한 결정(안) 조서

구분	계획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 올림픽로 34길변 (3~4m)	결정도면 참고
	• 오금로 11길변 (3m)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신설)

가. 대지내공지 및 통로 등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계획내용	비고
전면공지	차도형 전면공지	올림픽로34길(동측)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4m	결정도면 참고
	보도형 전면공지	올림픽로34길(동측)	• 차도형전면공지 경계선으로부터 2~3m	
		올림픽로34길(서측)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올림픽로34길(북측)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공개공지			• 도로의 결절점으로 주민휴게공간 조성을 위한 공개공지위치 지정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제외) - 신설 1개소(방이동 56) : 45.20㎡	
통로	공공보행통로		• 24시간 일반인이 통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 - 신설 1개소(방이동96-4) : B=8m, L=33m, H=8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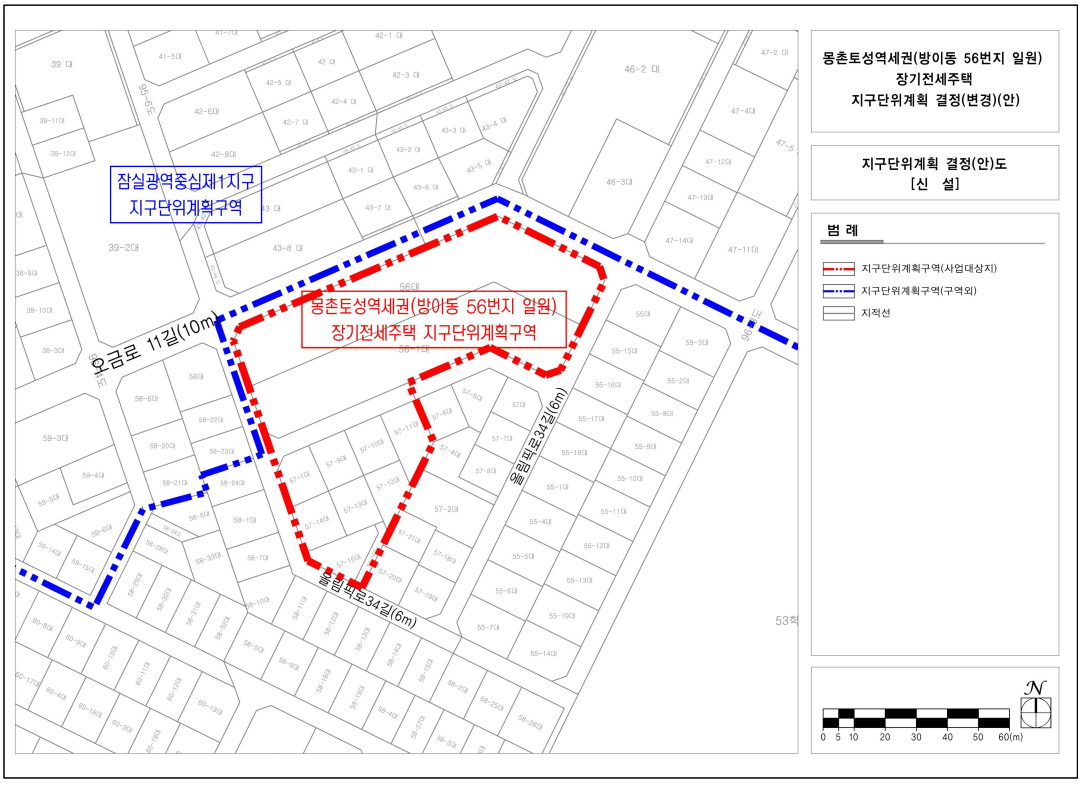
Ⅲ. 관계도면 : 붙임 참고(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ㅇ 관계서류는 서울시청 공공주택과 역세권주택팀(☎02-2133-7075), 송파구청 도시계획과(☎02-2147-300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함

ㅇ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s://urban.seoul.go.kr) 및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임

■ 붙임 : 결정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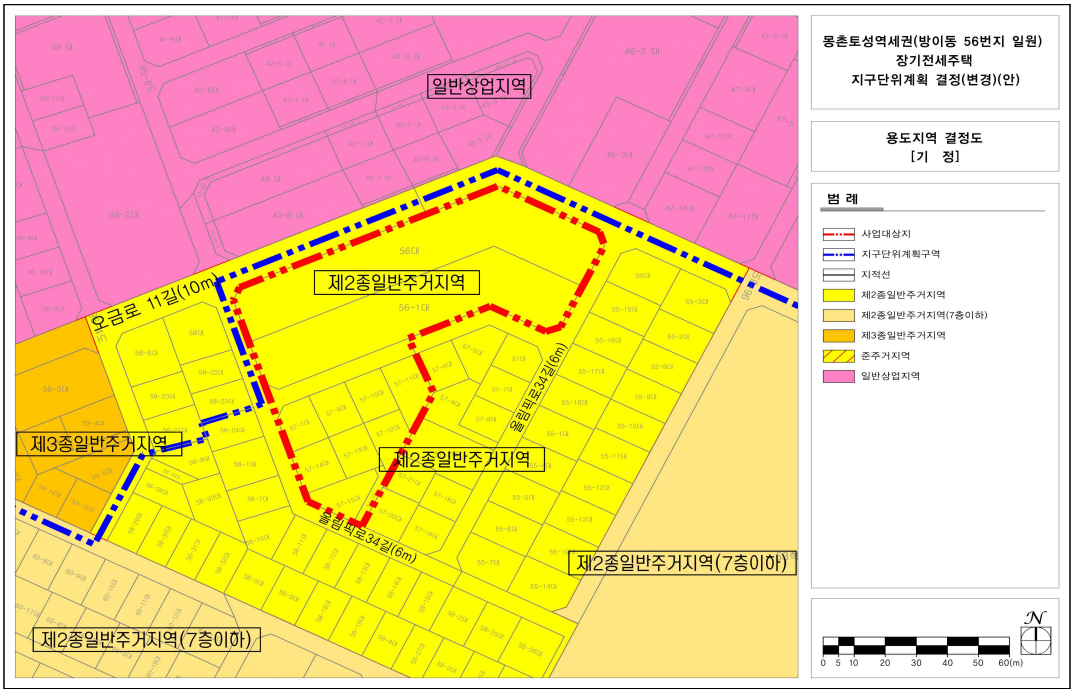
① 지구단위계획구역게 관한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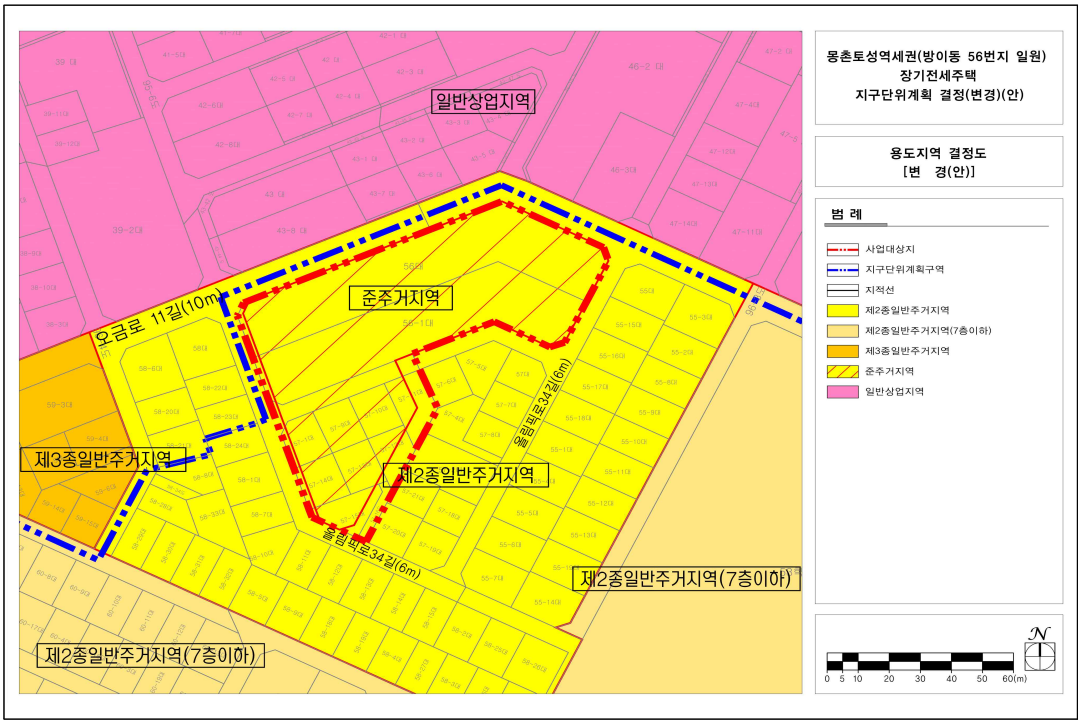
– 이 하 여 백 –

②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도

<용도지역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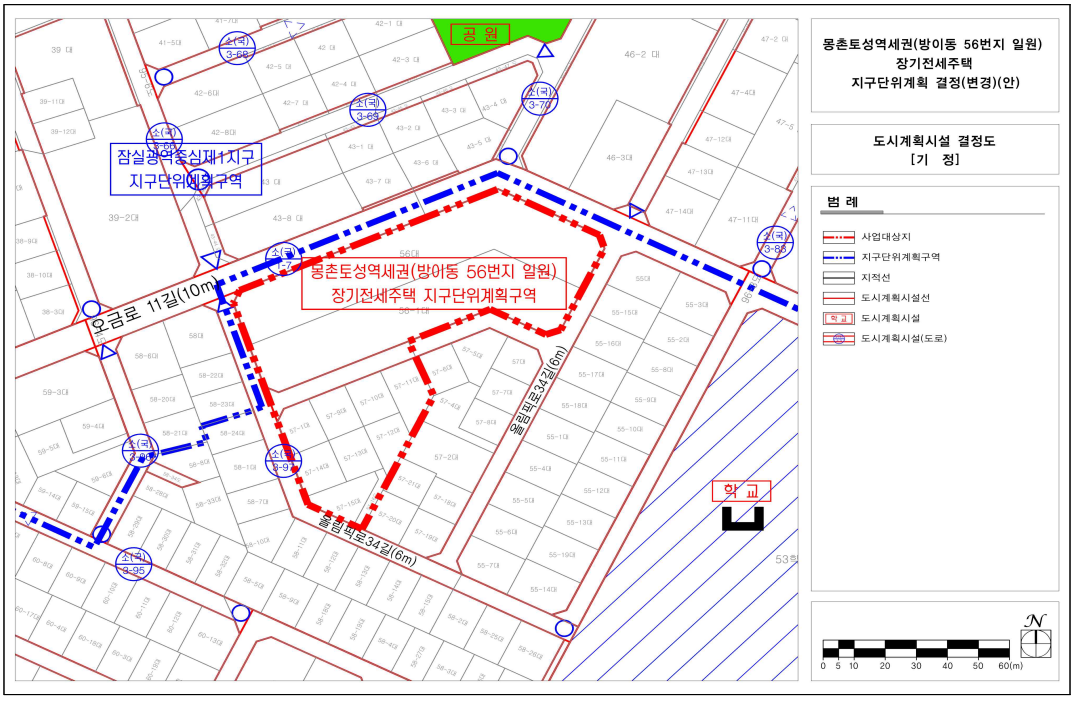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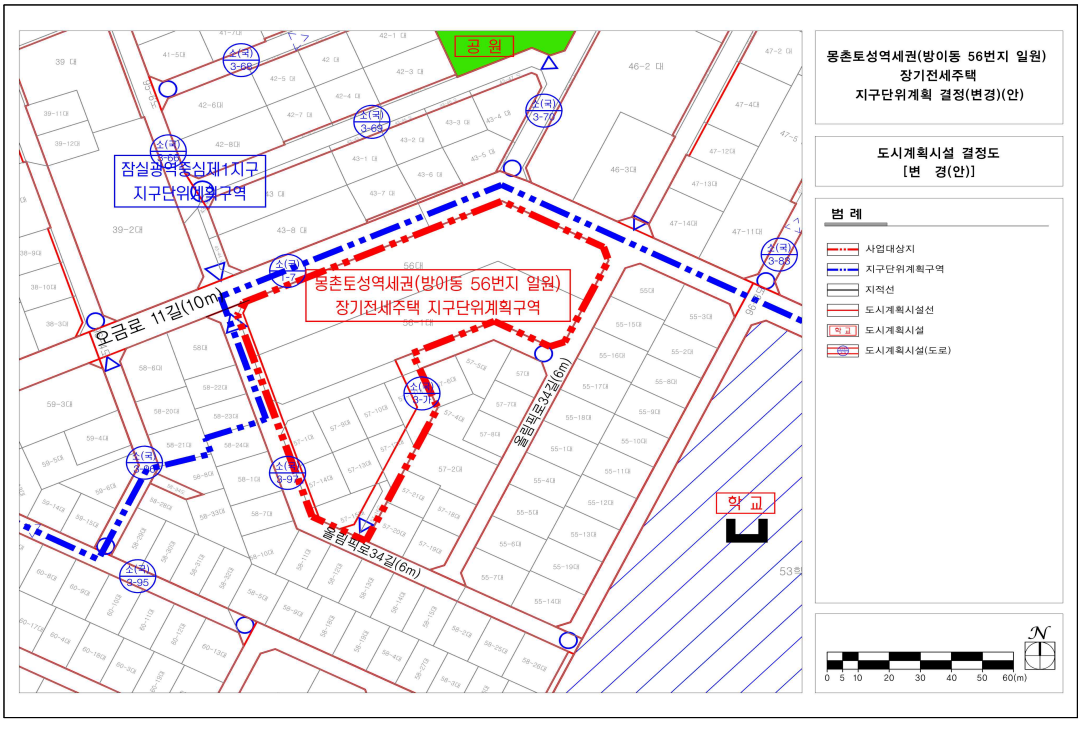


③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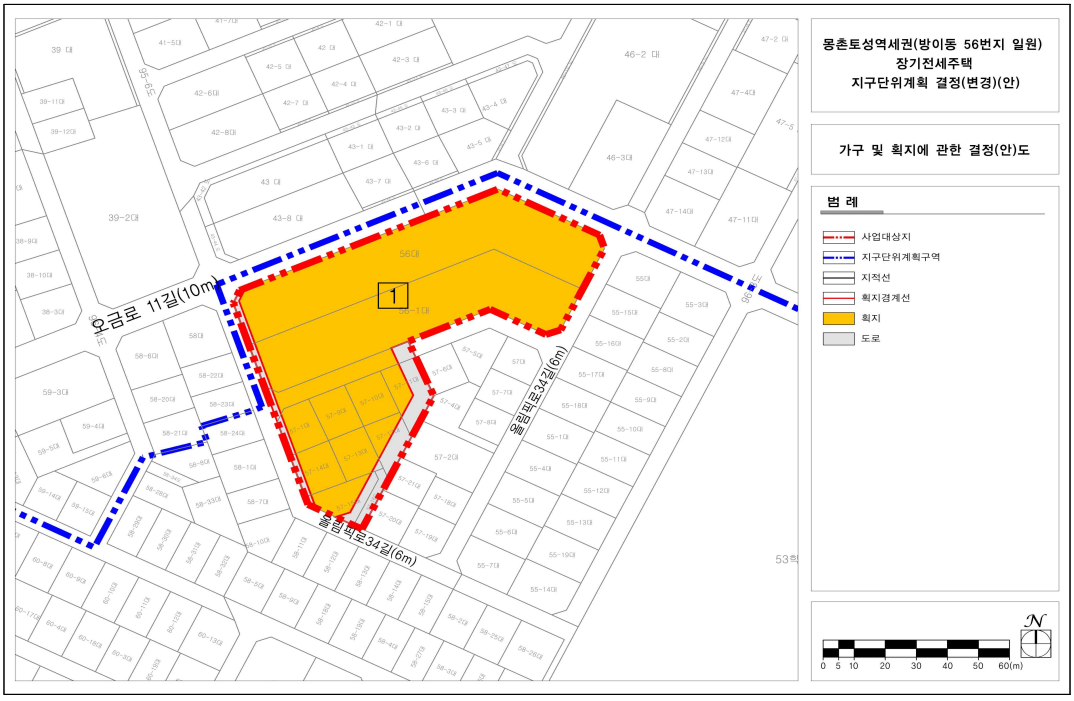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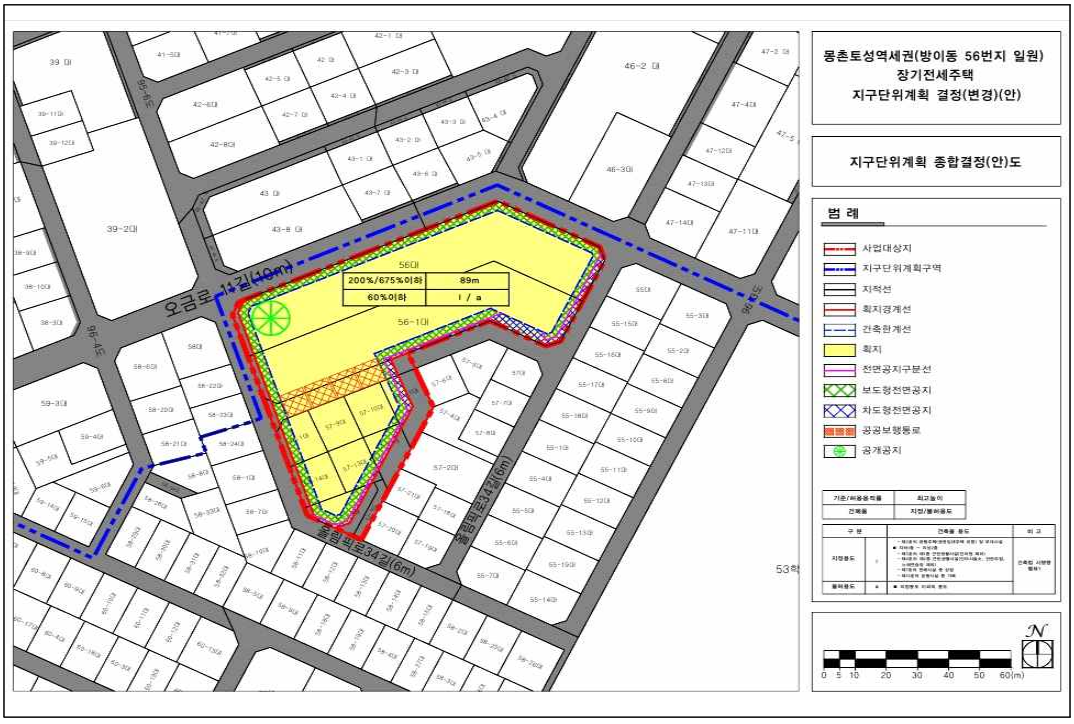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④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도



⑤ 지구단위계획 종합결정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186호

특별건축구역 지정 해제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50호(2017.12. 7.)로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된 용산구 한남동 686번지 일대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일부 지역에 대하여 「건축법」 제71제10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정 해제 목적

「건축법」 제71제10항제3호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지정일(2017.12. 7.)로부터 5년 이내에 특별건축구역 지정목적에 부합하는 건축물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지정을 해제하고자 함

2. 특별건축구역 지정 해제 위치, 범위 및 면적

구 분	구역명	위 치	범 위	면 적	특례적용사항
특별건축구역 지정 해제	한남3 재정비 촉진구역	용산구 한남동 765-8번지 일대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일부 (2-1BL, 2-2BL)	108,683㎡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적용배제

3.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사항(2017.12. 7.)

구역명	용 도	면 적	최고층수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2-1BL, 2-2BL)	주택용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08,683㎡	1종일반주거지역 : 5층 2종일반주거지역 : 12층 ※ 해발 90m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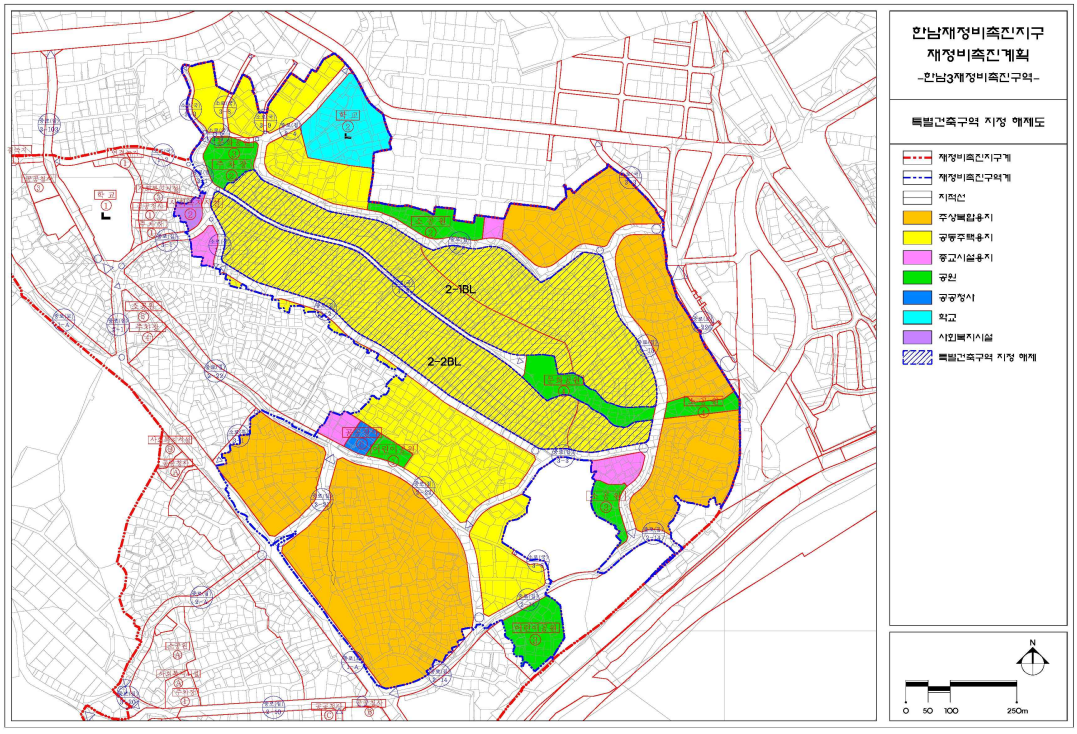
4.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 발주방법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도시·군계획시설의 신설·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관한 사항
: 변경사항 없음

6. 기타 사항

○ 특별건축구역 지정 해제와 관련한 서류는 서울특별시 재정비촉진사업과(☎02-2133-7218), 용산구 재정비사업과(☎02-2199-7442)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특별건축구역 지정 해제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187호

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결정 포함)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254호(2005.8.25.)로 종로2·3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0호(2023.2.16.)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으로 정비예정구역 지정된 관수동 107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2023년 제7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현장수권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나.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종로구 관수동 107번지 일대	-	증) 40,811.8	40,811.8	-	-

■ 결정 사유서

구분	구역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신설	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 위치 : 종로구 관수동 107번지 일대 • 면적 : 40,811.8㎡	•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 상 정비예정구역으로,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관수동 일대의 효율적 토지이용과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함

다.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 예상 세대수	비고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개별 지구별 개발에 따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에 해당하는 자	-	-

2.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	증) 40,811.8	40,811.8	1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	증) 8,511.0	8,511.0	20.9	
	도 로	-	증) 6,110.0	6,110.0	15.0	
	공 원	-	증) 2,108.1	2,108.1	5.2	1개소
	공공공지	-	증) 292.9	292.9	0.7	2개소
획 지	소 계	-	증) 32,300.8	32,300.8	79.1	
	일반정비지구	-	증) 21,728.2	21,728.2	53.2	9개소
	소단위정비지구	-	증) 3,045.2	3,045.2	7.5	3개소
	소단위관리지구	-	증) 6,713.2	6,713.2	16.4	24개소
	존치지구	-	증) 814.2	814.2	2.0	1개소

※ 상기 면적은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용도지역 · 용도지구에 관한 계획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40,811.8	-	40,811.8	100.0	
일반상업지역	40,811.8	-	40,811.8	100.0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지구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방화지구	종로구 종로2가 및 3가, 관철동, 관수동 일대	320,000 (40,751.3)	건고 317 (' 73.08.04.)	집단

※ ( )는 관수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내 면적임

4.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 해당사항 없음

▶ 본 정비계획은 구역 내 토지이용, 기반시설의 설치, 개발밀도 설정 등에 관한 법정계획이자 지구별 시행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 성격으로, 추후 지구별로 사업 시행을 위한 건축계획 등 구체화되는 지구별 정비계획 수립 시 산정되어 제공 예정

5.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가.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광로	3	7	40~47	주간선	4,000 (220)	서대문광장	동대문광장	일반도로	서고 172 ('77.06.01.)	
기정	중로	2	7	15	보조 간선	850 (229)	을지로2가	낙원운동장	일반도로	건고 77 ('66.12.08.)	
기정	소로	3		6	국지	231	장사동 14-1	관수동 137-1	일반도로	건고 432 ('63.07.01.)	
변경	중로	3		12	집산	231	장사동 14-1	관수동 137-1	보행자우선도로	-	
기정	소로	3		6	국지	27	관수동 137-1	관수동 98-4	일반도로	건고 432 ('63.07.01.)	
변경	소로	2		8	국지	82	관수동 73	관수동 98-1	보행자우선도로		
기정	소로	3		4	국지	136	관수동 134-1	관수동 119-1	일반도로	서고 254 ('05.08.25.)	
변경	소로	3		6	국지	136	관수동 134-1	관수동 119-1	보행자우선도로	-	
신설	소로	3	A	4	국지	16	종로3가 113	종로3가 114-1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소로	3	B	4	국지	14	종로3가 123-2	종로3가 137-11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소로	3	C	4	국지	221	관수동 20	관수동 59	보행자우선도로		
신설	소로	3	D	6	국지	61	관수동 47-6	관수동 43-2	보행자우선도로		
신설	소로	3	E	6	국지	44	관수동 128	관수동 127-1	보행자우선도로		
신설	소로	3	F	6	국지	72	장사동 238-1	관수동 77-3	보행자우선도로		

※ ( )는 관수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내 사항임
※ 도로의 폭원 및 연장은 추후 측량 성과에 따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3-	중로3-	• 폭원, 기능 변경 - 폭원 : 6m → 12m - 기능 : 국지도로 → 집산도로	• 원활한 교통흐름과 보행자의 편의를 위하여 폭원 변경 •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보행자우선도로 신설
소로3-	소로2-	• 폭원, 연장 변경 - 폭원 : 6m → 8m - 연장 : 27m → 82m	• 원활한 교통흐름과 보행자의 편의를 위하여 폭원 및 연장 변경 •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보행자우선도로 신설
소로3-	소로3-	• 폭원 변경 - 폭원 : 4m → 6m	• 원활한 교통흐름과 보행자의 편의를 위하여 폭원 변경 •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보행자우선도로 신설
-	소로3-A	•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 폭원 4m, 연장 16m	•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	소로3-B	•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 폭원 4m, 연장 14m	•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3-C	• 보행자우선도로 신설 - 폭원 4m, 연장 221m	•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보행자우선도로 신설
-	소로3-D	• 보행자우선도로 신설 - 폭원 6m, 연장 61m	•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보행자우선도로 신설
-	소로3-E	• 보행자우선도로 신설 - 폭원 6m, 연장 44m	•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보행자우선도로 신설
-	소로3-F	• 보행자우선도로 신설 - 폭원 6m, 연장 72m	•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보행자우선도로 신설

나.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공원	문화공원	종로구 관수동 21-9번지 일대	-	증) 2,108.1	2,108.1	-	공동분담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공원	• 문화공원 신설 - 면적 : 2,108.1㎡	•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공원 신설

다.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공공공지	종로구 관수동 52-1번지 일대	-	증) 202.1	202.1	-	공동분담
신설	②	공공공지	종로구 관수동 100-1번지 일대	-	증) 90.8	90.8	-	공동분담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공공공지	• 공공공지 신설 - 면적 : 202.1㎡	• 지역 주민의 휴게·휴식공간 확보 등을 위해 공공공지 신설
②	공공공지	• 공공공지 신설 - 면적 : 90.8㎡	• 지역 주민의 휴게·휴식공간 확보 등을 위해 공공공지 신설

6.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부담) 계획

구 분		시행면적 (㎡)	획지면적 (㎡)	정비기반시설 제공면적(㎡)				계획기반 시설 내 기존 공공용지 (㎡)	대지 내 용도폐지 되는 국공유지 (㎡)	순부담 면적 (㎡)	순 부담률 (%)	비고
				계	도로	공원, 공공 공지	공동 분담 시설					
합 계		40,811.8	32,300.8	8,511.0	5,822.1	211.1	2,477.8	3,104.1	303.5	5.103.4	13.6	
일반 정비 지구	1	3,581.4	2,971.0	610.4	18.2	82.6	509.6	-	5.2	605.2	16.9	국일관
	2	2,899.7	2,194.1	705.6	492.3	0.3	213.0	56.0	202.7	446.9		
	3	4,730.4	3,905.6	824.8	442.1	-	382.7	29.2	-	795.6		서울 극장
	4	4,224.9	3,465.4	759.5	459.6	-	299.9	-	53.6	705.9		
	5	1,614.9	1,341.6	273.3	266.9	-	6.4	-	-	273.3		
	6	1,654.3	1,374.4	279.9	196.5	-	83.4	-	-	279.9		
	7	2,002.0	1,642.4	359.6	277.9	-	81.7	-	25.0	334.6		
	8	3,401.3	2,825.7	575.6	189.6	-	386.0	-	-	575.6		
	9	2,417.0	2,008.0	409.0	269.1	-	139.9	-	-	409.0		
소단위 정비 지구	1	1,484.3	1,233.1	251.2	67.8	-	183.4	-	-	251.2		
	2	799.3	663.6	135.7	36.3	-	99.4	-	0.5	135.2		
	3	1,398.9	1,148.5	250.4	158.0	-	92.4	-	16.5	233.9		
소단위 관리 지구	1	453.9	453.9	-	-	-	-	-	-	-	0.0	
	2	198.4	196.9	1.5	1.5	-	-	-	-	1.5	0.8	
	3	286.3	286.3	-	-	-	-	-	-	-	0.0	
	4	382.7	372.2	10.5	10.5	-	-	-	-	10.5	2.7	
	5	352.1	352.1	-	-	-	-	-	-	-	0.0	
	6	165.3	154.5	10.8	10.8	-	-	-	-	10.8	6.5	
	7	138.8	138.8	-	-	-	-	-	-	-	0.0	
	8	287.6	278.0	9.6	9.6	-	-	-	-	9.6	3.3	
	9	109.1	109.1	-	-	-	-	-	-	-	0.0	
	10	257.9	257.9	-	-	-	-	-	-	-	0.0	
	11	241.3	238.1	3.2	3.2	-	-	-	-	3.2	1.3	
	12	202.1	202.1	-	-	-	-	-	-	-	0.0	
	13	416.1	416.1	-	-	-	-	-	-	-	0.0	
	14	499.5	499.5	-	-	-	-	-	-	-	0.0	
	15	359.4	358.5	0.9	0.9	-	-	-	-	0.9	0.3	
	16	115.7	115.7	-	-	-	-	-	-	-	0.0	
	17	327.2	327.2	-	-	-	-	-	-	-	0.0	
	18	688.6	681.8	6.8	6.8	-	-	-	-	6.8	1.0	
	19	336.8	336.8	-	-	-	-	-	-	-	0.0	
	20	191.7	183.6	8.1	8.1	-	-	-	-	8.1	4.2	
	21	228.1	227.3	0.8	0.8	-	-	-	-	0.8	0.4	
	22	109.1	104.2	4.9	4.9	-	-	-	-	4.9	4.5	
	23	105.8	105.8	-	-	-	-	-	-	-	0.0	
	24	316.8	316.8	-	-	-	-	-	-	-	0.0	

구 분	시행면적 (㎡)	획지면적 (㎡)	정비기반시설 제공면적(㎡)				계획기반 시설 내 기존 공공용지 (㎡)	대지 내 용도폐지 되는 국공유지 (㎡)	순부담 면적 (㎡)	순 부담률 (%)	비고
			계	도로	공원, 공공 공지	공동 분담 시설					
존치지구	814.2	814.2	-	-	-	-	-	-	-	-	
기타 기반시설	3,018.9	-	3,018.9	2,890.7	128.2	-	3,018.9	-	-	100.0	

※ 순부담률 = 순부담면적 / (시행면적 - 계획기반시설 내 기존 공공용지 - 대지 내 용도폐지되는 국·공유지)
- 계획기반시설 내 기존 공공용지, 대지 내 용도폐지되는 국·공유지 면적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공동분담 문화공원부지, 공공공지부지는 순부담률 미달 일반정비지구 및 소단위 정비지구에서 확보(공공선투자 가능)

7.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해당사항 없음

8.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축	철거 이주	
신설	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40,811.8	일반정비지구 1~9, 소단위 정비지구 1~3, 소단위 관리지구 1~23, 존치지구	32,300.8	종로구 관수동 107번지 일대	178	1	-	177	-	

9. 건축물에 관한 계획

구 분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기준/허용/상한)	높 이(m)	비고
신설	일반 정비지구	1~9	도심서비스지역 주용도 중에서 선택	50 이하	600/800/ 법정 2배 이하	70 +α 이하	
	소단위 정비지구	1~3		60 이하 단, 저층부(5층, 20m 이하)는 심의 통해 완화 가능(최대 80%)	600/800/ 법정 2배 이하	70 이하	
	소단위 관리지구	1~24	불허용도 이외 용도	60 이하	600/-/ 법정 2배 이하	간선도로(종로, 돈화문로, 청계천로, 수표로)변 50, 그 외 30 +α 이하	
	존치지구						

※ 건축물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는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 준용하되, 다음 조건 충족 필요
- 주거용도의 경우 가능지역 요건 충족 시 심의 통해 허용
- 소단위 관리지구 및 존치지구는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시 높이 완화(70m 범위 이내)
  : 완화 높이 = 기준높이 × (1 + 공공시설등 제공면적 ÷ 원래의 대지면적)
※ 건축계획 수립에 따른 정비계획 변경 시 정비기반시설 확보 및 개방형녹지 설치계획 등에 따라 용적률 및 높이 결정

구 분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기준/허용/상한)	높이(m)	비고
건축물 용도	주거용도 가능지역 요건	• 자주식 주차장 램프 설치 가능 • 진입도로 8m 이상 (교통영향 검토 등 통해 필요성 인정 시 예외 적용 가능)				
	불허용도 (소단위관리지구, 존치지구)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 운동시설 중 실내낚시터,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 단란주점, 도박게임장(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 자동차관련시설(이면부에 한해 주차장 제외) •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중 백화점, 대형마트				
	가로활성화용도 설치구간	•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 정비유도지침에 따라 가로활성화용도 도입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 문화공원 양측변 : 5m – 돈화문로변, 청계천로변 : 3m – 수표로변, 종로3– 호선변 : 2m – 수표로20길변, 이면도로변 : 1m – 남동측 소단위관리지구 및 존치지구 이면도로변 :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3m	• 고층부 6층 이상 벽면한계선 – 수표로20길변(일반정비지구 1·2·3) : 4m • 저층부 건축지정선 – 종로변 : 1m(건축물(3층 이하) 외벽선이 건축지정선에 2/3 이상 접할 것) ※ 종로변 건축선 지정(폭원 3m) 폭원 완화 변경고시 시 적용 가능			
기타 사항	대지내 공지	• 공공보행통로(일반정비지구4·8) : 폭원 4m 확보 •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 및 건축지정선 후퇴구간 정비유도지침에 따라 전면공지 조성 • 공개공지 : 관련법령 및 정비유도지침에 따라 개방형녹지 연계하여 적정 위치에 조성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 저층부 외관 : 구역 전체 – 1층 벽면적의 70% 이상 투시형 구조(공원 조망 등 고려한 저층부 입면계획) • 공개형 발코니 : 청계천변 일반정비지구 – 설치위치 : 청계천로에서 직접 진출입이 가능한 위치(지상 2~3층부) – 설치기준 : 최소 3m 이상의 너비 확보 – 설치시설 : 청계천로변 조망 가능한 개방 공간임을 알리는 표지 의무 설치,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의자 및 테이블 설치 – 개방시간 : 건축물 관리 목적으로 개방시간을 제한할 수 있으나, 최소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일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개방형녹지	• 특화설계구간 : 일반정비지구 1·2 – 문화공원변 10m 조성 : 5m 건축한계선 구간은 개방형으로 의무 조성, 5~10m 구간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 시 필로티 형태(높이 12m 이상 권장)로 조성 가능 – 특화설계구간 내 식재공간과 어우러지는 보행로(최소폭원 2m) 조성하여 주변과 연계 동선 확보하고, '녹지생태도심 개방형녹지 조성 및 운영관리기준'에 따라 세부 계획 수립 • 권장구간 : 일반정비지구 1·2·3·4·5·7·8 / 소단위 정비지구 1·2 – 도로경계선에서부터 최소 5~13m 확보 권장 • 공통사항 : '녹지생태도심 개방형녹지 조성 및 운영관리기준' 준수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

구분	목표	인센티브 대상	요 건		산정 방식	완화량/ 보상계수	적용량
계획 유도	녹지 생태 공간	개방형녹지 의무확보기준 초과설치	• 지구별 개방형녹지 의무기준 30% 초과 설치 시 - 의무기준 초과면적을 도입시설면적으로 산정		정률	2.0	최대 100%
		공동개발 시 녹지확보	• 지구간 건축협정(협의 등)에 따른 공동개발을 통해 도로 일부를 녹지공간으로 조성 시		정량	50%	최대 50%
		지구 간 공동개발	• 정비지구와 관리지구 통합 개발 시 또는 관리지구 통합으로 정비지구 지정기준 충족 시(부지 정형화 등 인정 전제)	부지 정형화 등 인정 시	정량	50%	최대 100%
				부지 정형화 등 인정 및 합리적인 기반시설계획 수반 시	정량	100%	
	친환경 개발	녹색건축물 인증 에너지 효율등급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	• 3개 항목 모두 법령에 따른 기준 초과 시		정량	30%	최대 30%
		전기차충전소 설치	• 서울시 친환경자동차 조례에 따른 충전기 법적 의무사항 ½ 이상 초과설치 시		정량	20%	최대 20%
		재활용 건축자재	•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시		정량	20%	최대 20%
		장수명 주택인증	• 장수명 주택인증항목 적용 시		정량	20%	
	도시 경제 활성화	지역별 도시경제활성화 유도 용도	• MICE 산업관련시설로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률	0.3	최대 100%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도입 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상 지식기반산업시설 도입 시				
			• 사회혁신창조클러스터를 활용한 신성장산업육성을 위한 시설 도입 시				
			• 건축 연면적의 30% 이상 주거 도입 시		주거복합비율에 비례 최대 100%		
	생활 SOC	도서관, 보육시설 등	• 도서관, 노인여가, 복지시설, 공공체육시설, 청소년아동시설, 보육시설, 일자리창출공간		정률	0.3	최대 50%
	문화 인프라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영화상영관 등	• 공연법 등록대상,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등록대상, 영화진흥법 등록대상		정률	0.3	최대 50%
	주거 안정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임대주택법에 의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도입 (전용 60㎡ 이하,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 도입 시)		정량	50%	최대 50%
	공익 시설	건축물 내 공익시설	• 소규모기업의 다양한 활동 공간(개방형라운지 등)을 제공하는 시설 등 도입 시		정률	0.2	최대 50%
		특정층(최상층) 개방	• 정비유도지침에 따라 건축물 최상층에 공공에게 개방된 공공공간(전망대 로비) 조성 시				
		실내 공개공지	• 정비유도지침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내 공개공지 도입 시				
		저층부 개방공간	• 지상부 개방형녹지공간과 직접 연결되는 저층부(최소 1층) 특정 시간대 완전 개방 시			0.3	

구분	목표	인센티브 대상	요 건	산정 방식	완화량/ 보상계수	적용량
			• 청계천변 공개형 발코니를 계획기준에 따라 확보 시			
	보행 가로 활성화	무장애도시조성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 상 우수 등급 인증 시	정량	30%	최대 30%
		공공보행통로등 (지하보행통로 포함)	• 정비유도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조성 시	정률	2.0	최대 30%
		가로지장물이전 /지중화	• 가로지장물 이전 / 지중화 또는 지하철 출입구 이전 시(가로의 연속성을 감안하여 구역 내에서 연결되는 구역 외 도로도 포함)	정률	2.0	최대 50%
	안전 · 방재	방재 관련시설	• 정비유도지침에 따라 방재와 관련된 시설 설치 시	정량	20%	최대 20%
	역사 보전	건축자산 등	• 법적 의무대상은 아니나 사회적 · 경제적 · 경관적 가치를 지니는 것에 대하여 보전계획 수립 시	정량	50%	최대 50%
의무	역사 보전	지정 · 등록문화재 등	• 문화재 등 법적 의무대상에 대하여 보전계획 수립 시	정량	50%	최대 50%

※ 지역특성을 고려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추가 가능
※ 정률방식 인센티브량 = 기준용적률 X (도입시설면적 ÷ 대지면적) X 보상계수
※ 공익시설의 의무개방 유지 관리방안
- 고시문, 건축물대장 상 해당 시설 명기 의무화(별도 부기)
- 준공 후 해당 시설의 공적 이용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항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등 부과

10. 교통 및 동선처리계획

가. 교통처리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차량출입불허구간	• 간선도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주차출입구	• 주차출입구가 지정된 대지로의 차량출입은 주차출입구가 표시된 부분에 한함 • 대상지역 : 일반정비지구 1 · 3 · 4 · 8	권장

나.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계획

구 분	위 치	완화내용	비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 차량출입불허구간 등으로 인해 차량 진 · 출입이 제한되는 대지	• 당해 건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100% 완화 (설치기준 50%에 해당하는 설치비용 납부)	-

11.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환경 보전	• 건설폐기물이 발생할 시 환경부예규 제734호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에 의거 최대한 재활용하며,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및 종로구 폐기물처리계획에 의거 처리토록 할 계획임	-
재난 방지	• 건축물 안전기준 강화 • 기본계획 및 설계 확정 후 정확한 데이터를 반영하여 재검진 후 정밀 안전진단 보고서 제출 및 기존구조물 보강 후 사업 시행 예정	-

12.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13. 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14.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가. 정비구역의 주택멸실 현황

1) 건축물 동수

구역 내 건축물 동수			구역 내 주거용 허가유무별 동수		
계	주거용	비주거용	계	유허가	무허가
178	32	146	32	32	-

나. 정비사업으로 인해 새로 건축되는 주택 현황

▶ 관수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의 주용도 중 주거 용도가 가능하도록 계획

15. 세입자 주거대책

▶향후 개별지구 정비사업 시행 시 해당여부에 따라 세부계획 수립

16.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정비구역 현황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비고
	조합 설립 ~ 착공 전	착공 ~ 공사 완료	범죄예방설계 적용	
상업 시설	• 펜스 설치 및 유지·관리 • 1일 오전·오후 1회 우범 지역 순찰 • 방범용 CCTV 설치 운영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건축법, 산업안전 보건법 등 관계 규정 준수 안전 시공 •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 보건 관리비 공사비 계상	• 단지 내 지점에 안내판 설치를 통해 보행자 인지성 제고 • 자체적 유지관리를 실시하여 노후화를 방지하고 범죄심리를 유발하는 요인 제거 • 단지 내 주요 교차로 및 범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감시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CCTV 설치	

17.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구역명	면 적(㎡)	획 지				비 고
			획지명		위 치	면 적(㎡)	
신설	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40,811.8	일반 정비지구	1	관수동 20 일대	2,971.0	
				2	관수동 39-4 일대	2,194.1	
				3	관수동 59 일대	3,905.6	
				4	관수동 130-1 일대	3,465.4	
				5	관수동 110-1 일대	1,341.6	
				6	관수동 102-1 일대	1,374.4	
				7	관수동 73 일대	1,642.4	
				8	관수동 129-1 일대	2,825.7	
				9	관수동 119-1일	2,008.0	
			소단위 정비지구	1	종로3가 103-2 일대	1,233.1	지구분할가능선
				2	종로3가 113 일대	663.6	
				3	종로3가 123 일대	1,148.5	지구분할가능선
			소단위 관리지구	1	종로3가 117-2 일대	453.9	
				2	종로3가 120 일대	196.9	
				3	관수동 19 일대	286.3	
				4	관수동 15 일대	372.2	
				5	관수동 18-1 일대	352.1	
				6	관수동 57 일대	154.5	
				7	관수동 56 일대	138.8	
				8	관수동 58 일대	278.0	
				9	관수동 55 일대	109.1	
				10	관수동 54-2 일대	257.9	
				11	관수동 53 일대	238.1	
				12	관수동 113-2 일대	202.1	
				13	관수동 113-1 일대	416.1	
				14	관수동 107 일대	499.5	
				15	관수동 104-2 일대	358.5	
				16	관수동 99 일대	115.7	

구 분	구역명	면 적(㎡)	획 지				비 고
			획지명		위 치	면 적(㎡)	
신설	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40,811.8	소단위 관리지구	17	관수동 96-1 일대	327.2	
				18	관수동 98-1 일대	681.8	
				19	관수동 97-1 일대	336.8	
				20	관수동 94-1 일대	183.6	
				21	관수동 87 일대	227.3	
				22	관수동 86 일대	104.2	
				23	관수동 94-3 일대	105.8	
				24	관수동 88 일대	316.8	
			존치지구		관수동 91-1 일대	814.2	

※ 계획목표 실현 및 지구 정형화 등 필요성 인정 시 정비유형 변경 제안 가능하며, 일반정비지구 4~9지구의 경우 입체적 도로 결정 등을 통해 지구 간 통합 정비 제안 가능
※ 소단위정비지구 분할가능선은 교통처리 등 계획안에 대한 적정성 인정 시 적용 가능
※ 관리지구 간 공동개발은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해 허용

18.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19. 환경성 검토결과

검토항목		목표기준	검토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자연환경	생태면적률	20% 이상	○	•기시가화 지역으로서 대부분 포장상태 지역	•대상지 내 충분한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 녹지 조성하여 생태면적률 20% 이상 확보
	녹지 네트워크	녹지평가지표	○	•기존 시가지로 주변 녹지여건을 고려하여 조경녹지 계획	•구역 내 구역면적의 5% 이상의 공원 확보 및 정비지구별 도로변 개방형녹지 조성 기준을 통해 녹지율 향상 및 녹지공간 확보
	지형변동	절성토비율 20% 미만, 지형변동비율 30% 미만	○	•기개발지 평탄지형으로 절성토 및 지형변동 경미할 것으로 예상	•계획구역 내 개별적 개발사업으로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
	비오톱	3등급	○	•비오톱유형평가 5등급지	•공개공지, 옥상녹화, 조경공간의 확보 및 비오톱 기능 향상
생활환경	일조	연속 2시간 확보	○	•대상지 및 주변지역은 상업지역으로서 일조피해 대상시설물 없음	•건축법 등 관련규정에 의거 건축계획
	바람·기후	바람길 확보	○	•주풍향 고려 및 통경축 확보	•풍향, 경관을 고려한 배치기법
	에너지	에너지절약 계획 수립	○	•향후 건축물 신축시 에너지 사용량 추정 등을 통해 에너지 절약계획 수립	•에너지절약형 설비 기기 도입 및 청정연료 사용
	경관	스카이라인 보전	○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	•주변 지역과 연계한 스카이라인 계획 수립
		가로녹시율	○	•상업 및 업무시설지로 조성	•건축물 외곽 조경식재 및 개방형녹지 조성으로 가로녹지율 증가

검토항목		목표기준	검토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생활환경	휴식·여가·보행친화공간	휴식여가공간 최대확보	○	•주변에 휴식/여가 공간 부족으로 대상지에 조성 필요	•건축물 신축 시 공개공지, 전면공지 등과 연계하여 휴식 여가 공간 조성
	보행 친화공간	보행자전용 도로계획 수립	○	•보행자전용도로 검토	•옛길(골목길)로서 형태 및 기능상 보행자 전용도로가 필요한 곳 계획
		자전거 전용도로 계획 수립	x	•대상지는 관광특구 및 상업시설이 집중된 시가지로 자전거전용도로 보다는 보행의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필요	•자전거도로 계획은 없으나 자전거 이용자들을 위한 보관소 설치
추가	대기질, 수질, 폐기물, 소음진동	-	○	•추후 개별적 건축시 미세먼지, 소음, 건축폐기물 등의 발생이 예상됨	•계획 시행시 현장 여건에 맞는 적절한 저감대책 마련 - 상수 및 오수 처리계획 / 건설폐기물 방생 시 위탁처리 / 가설방음판넬 설치, 장비 분산투입, 도로소음 저감시설 설치

20.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 해당사항 없음

21. 인구 및 주택의 수용계획 : 해당사항 없음

22. 구역 내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및 활용계획

▶ 정비사업 시행 중 유물·유적이 발견된 경우 대지 내 또는 인근 지역에 상시 개방되는 건축물 내에 역사·유물 전시 권장

▶ 관련사항은 서울시 문화재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Ⅱ.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종로23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종로구 관철동, 관수동 및 돈의동 일대	230,652	감) 40,811.8	189,840.2	서울시고시 제2004-240호 (2004.7.26.)	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척
신설	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종로구 관수동 107번지 일대	-	증) 40,811.8	40,811.8	-	-

■ 결정(변경) 사유서

구 역 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종로2·3가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일부 제척 : 230,652㎡ → 189,840.2㎡ (감 40,811.8㎡)	•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재개발구역을 기 결정된 종로2·3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척하고자 함
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 면적 : 40,811.8㎡ - 위치 : 관수동 107번지 일대	• 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함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 정비계획 결정사항과 동일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 대상지에 기 결정된 종로2·3가 지구단위계획은 구역 제척으로 폐지됨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 정비계획 결정사항과 동일

나.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1) 건축물 용도

(1) 불허용도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신설	소단위 관리지구, 존치지구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 운동시설 중 실내낚시터,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 단란주점, 도박게임장(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 자동차관련시설(이면부에 한해 주차장 제외) •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중 백화점, 대형마트	-

2) 건폐율

구 분		건폐율	비 고
신설	일반정비지구	50% 이하	-
	소단위 정비지구	60% 이하	-
	소단위 관리지구, 존치지구	60% 이하	-

※ 소단위 정비지구는 심의를 통해 저층부(5층, 20m 이하) 건폐율 80%까지 완화 가능(연도형 상업가로 조성)

3) 용적률

구 분		용적률			비 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신설	일반정비지구, 소단위 정비지구	600%	800%	법정 2배 이하	※ 상한용적률 - 일반정비지구, 소단위 정비지구 :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 준용 - 소단위 관리지구, 존치지구 : 필요 시 공공시설 부지 제공을 통해 완화 가능
	소단위 관리지구, 존치지구	600%	-	법정 2배 이하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 정비계획 결정사항과 동일

4) 높이

구 분		높 이	비 고
신설	일반정비지구	70m + α 이하1)	-
	소단위 정비지구	70m 이하	-
	소단위 관리지구, 존치지구	간선도로(종로, 돈화문로, 청계천로, 수표로)변 50m, 그 외 30m + α 이하2)	-

주1) 일반정비지구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의 높이계획 준용
주2) 소단위 관리지구 및 존치지구는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시 높이 완화(70m 범위 이내)
: 완화 높이 = 기준높이 X (1 + 공공시설등 제공면적 ÷ 원래의 대지면적)

다. 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신설	건축한계선	• 문화공원 양측변 : 5m • 돈화문로변, 청계천로변 : 3m • 수표로변, 중로3- 호선변 : 2m • 수표로20길변, 이면도로변 : 1m • 남동측 소단위 관리지구 및 존치지구 이면도로변 :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3m	결정도 참조
	저층부 건축지정선 (3층 이하)	• 종로변 : 1m (건축물 외벽선이 건축지정선에 2/3 이상 접할 것) ※ 종로변 건축선 지정(폭원 : 3m) 폭원 완화 변경고시 시 적용 가능	
	고층부 벽면한계선 (6층 이상)	• 수표로20길변(일반정비지구 1·2·3) : 4m	

라.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1) 대지내 공지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신설	공공보행통로	• 일반정비지구 4·8 : 폭원 4m 확보	결정도 참조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 및 건축지정선 후퇴구간 정비유도지침에 따라 전면공지 조성	-
	공개공지	• 관련법령 및 정비유도지침에 따라 개방형녹지 연계하여 적정 위치에 조성	-

2)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구 분		적용위치	계 획 내 용	비고
신설	저층부 외관	구역 전체	• 1층 벽면적의 70% 이상 투시형 구조(공원 조망 등 고려한 저층부 입면계획)	
	공개형 발코니	청계천변 일반정비지구	• 설치위치 : 청계천로에서 직접 진출입이 가능한 위치(지상 2~3층부) • 설치기준 : 최소 3m 이상의 너비 확보 • 설치시설 : 청계천로변 조망 가능한 개방 공간임을 알리는 표지 의무 설치,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의자 및 테이블 설치 • 개방시간 : 건축물 관리 목적으로 개방시간을 제한할 수 있으나, 최소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일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3) 개방형녹지

구 분		적용위치	계 획 내 용	비고
신설	특화설계구간	일반정비지구 1·2	• 문화공원과 연계하여 5m 건축한계선 구간은 개방형으로 의무 조성하고, 5~10m 구간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 시 필로티 형태(높이 12m 이상 권장)로 조성 가능 • 특화설계구간 내 식재공간과 어우러지는 보행로(최소폭원 2m) 조성하여 주변과 연계 동선 확보하고, '녹지생태도심 개방형녹지 조성 및 운영관리기준' 에 따라 세부 계획 수립	결정도 참조
	권장구간	일반정비지구 1·2·3·4·5·7·8, 소단위 정비지구 1·2	• 도로경계선에서부터 최소 5~13m 확보 권장	
	공통사항		• '녹지생태도심 개방형녹지 조성 및 운영관리기준' 준수	

4) 교통처리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신설	차량출입불허구간	• 간선도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결정도 참조
	주차출입구 (권장)	• 주차출입구가 지정된 대지로의 차량출입은 주차출입구가 표시된 부분에 한함 • 대상지역 : 일반정비지구 1·3·4·8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 차량출입불허구간 등으로 인해 차량 진·출입이 제한되는 대지 - 당해 건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100% 완화(설치기준 50%에 해당하는 설치비용 납부)	-

Ⅲ.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Ⅳ. 열람장소

○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재창조과(☎02-2133-4636) 및 종로구청 도시개발과(☎02-2148-2675)에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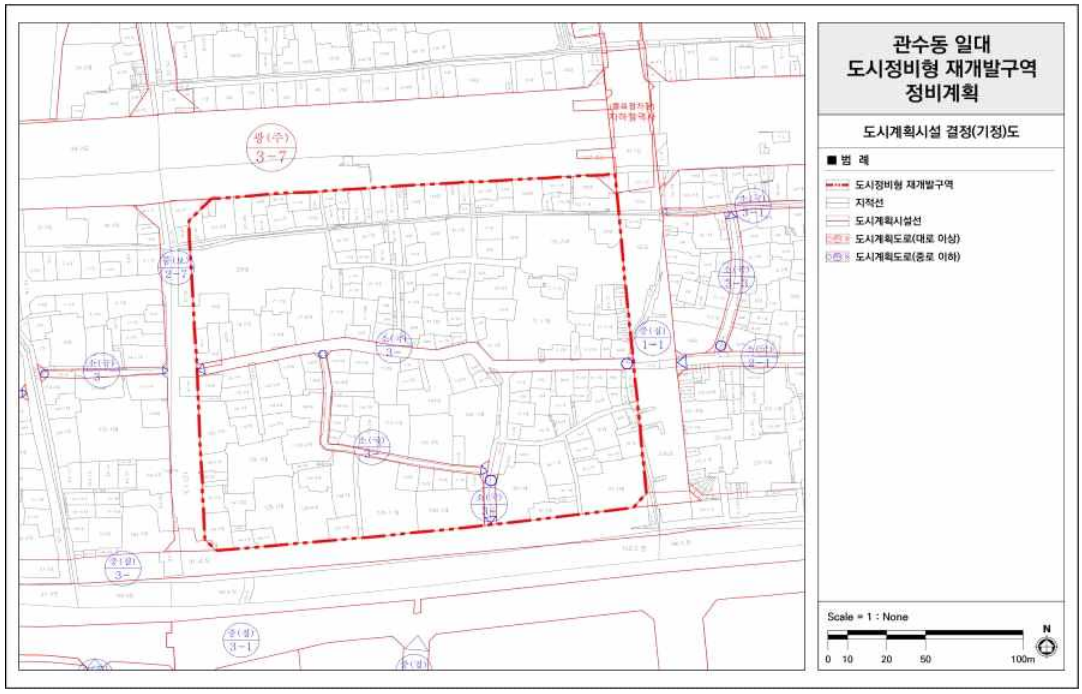
■ 정비구역 결정도



■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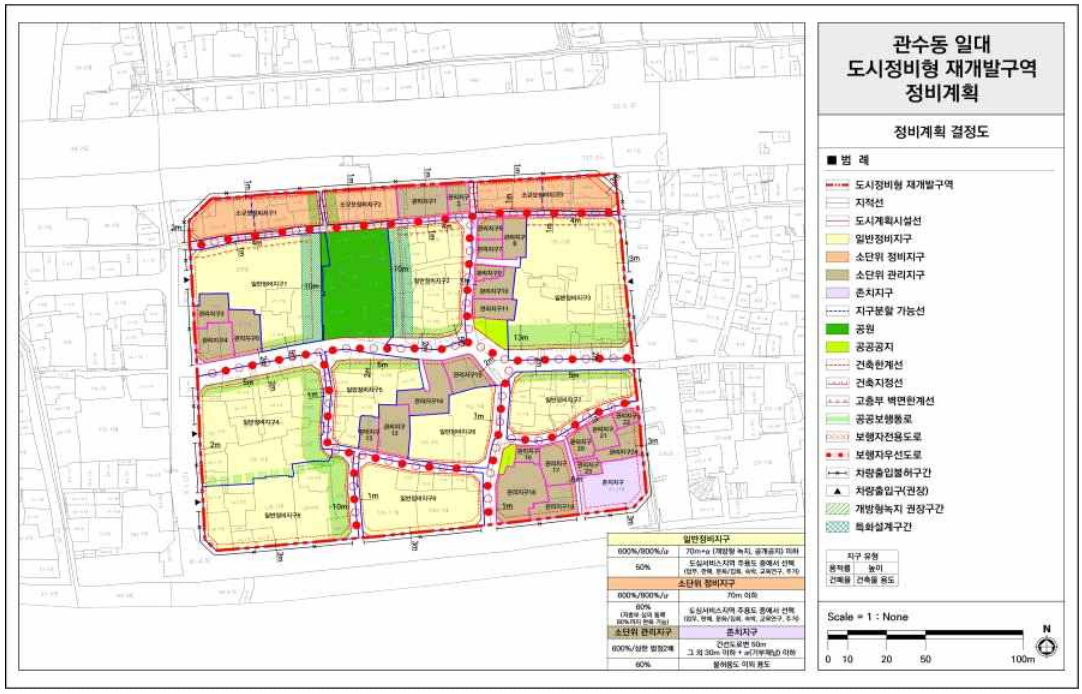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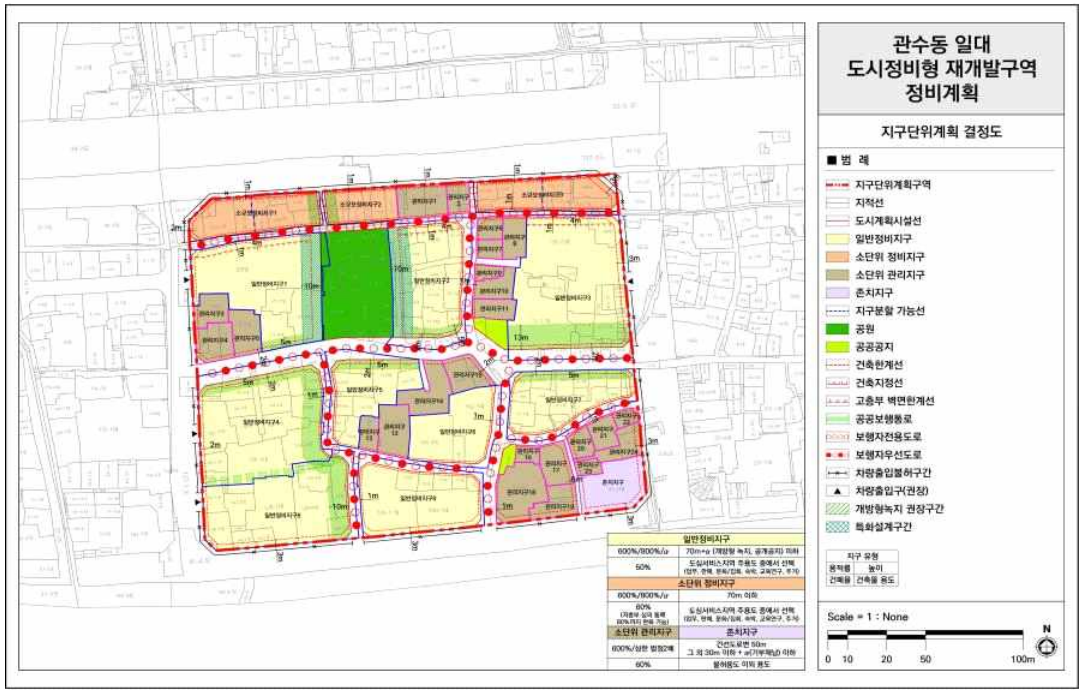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정비계획 결정도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188호

「홍제재정비촉진지구」 홍제2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180호(2005.12.30.)로 홍제2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52호(2010.12.16.)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02호(2013.03.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80호(2013.09.0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27호(2013.10.0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430(2014.12.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13호(2016.07.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12호(2017.03.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77호(2017.12.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34호(2023.12.07.)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또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된 홍제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2. 홍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 유형 · 위치 · 면적(변경없음)

명칭	유형	위 치	면적(㎡)	비고
홍제재정비촉진지구	중심지형	서대문구 홍제동 330번지 일대	200,394	최초지정일 ('10.12.16)

나.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 변경 없음

다.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목적 및 정비의 기본방향 · 목표 : 변경 없음

라. 재정비촉진계획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면적(㎡)			추진현황
	기정	변경	변경 후	
합 계	200,394	-	200,394	

구 분		면적(㎡)			추진현황
		기정	변경	변경 후	
일반시설 용지	소 계	117,233.7	증) 179.5	117,413.2	
	공동주택	10,637.9	-	10,637.9	홍은1구역
	판매 · 업무 · 주거복합	106,526.9	증) 176.8	106,703.7	홍제2구역, 홍제지구단위계획구역
	유보지	68.9	증) 2.7	71.6	
기반시설 용지	소 계	83,160.3	감) 179.5	82,980.8	
	도 로	59,752.0	감) 144.3	59,607.7	
	공공공지	176.8	감) 35.2	141.6	
	공공청사	2,349.0	-	2,349.0	
	시 장	9,976.8	-	9,976.8	
	주차장	3,016	-	3,016.0	
	하천	7,889.7	-	7,889.7	

※ 도로 및 하천시설 면적은 CAD상 구적면적이며, 측량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인구 · 주택 수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	인구수(인)	가구수	분양	임대
총 계	기 정	200,394	1,053	437	219	110
	변 경	200,394	1,035	453	325	128
홍제2구역	기 정	3,069	-	108	-	-
	변 경	3,069	285	124	106	18
홍은1구역		11,571	750	329	219	110
지구단위계획구역		135,900	-	-	-	-
홍제3(존치정비구역)		7,769	-	-	-	-
홍제1구역(해제)		42,085	-	-	-	-

※ 인구수는 홍제2동 세대당 인구수 평균 2.30인/세대(서울열린데이터광장, 2023년 4분기)를 가구수에 곱하여 개략추정

3)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

<table>
<tr><th colspan="2" rowspan="2">구 분</th><th colspan="3">면적(㎡)</th><th rowspan="2">비 고</th></tr>
<tr><th>기정</th><th>변경</th><th>변경 후</th></tr>
<tr><td rowspan="4">교통시설</td><td>도로</td><td>59,752.0</td><td>감) 144.3</td><td>59,607.7</td><td>-</td></tr>
<tr><td>주차장</td><td>3,016.0
(700.0)</td><td>-</td><td>3,016.0
(700.0)</td><td>• ( )안의 면적은 홍은1구역 내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table>
<tr><th>구분</th><th>기정</th><th>변경</th><th>변경후</th></tr>
<tr><td>층수</td><td>-</td><td>지하1층일부</td><td>지하1층일부</td></tr>
<tr><td>수평투영 면적(㎡)</td><td>-</td><td>증) 700</td><td>700</td></tr>
<tr><td>연면적(㎡)</td><td>-</td><td>증) 700</td><td>700</td></tr>
</table></td></tr>
<tr><td>고속철도 정차장</td><td>4,500.0</td><td>-</td><td>4,500.0</td><td>-</td></tr>
<tr><td>소계</td><td>67,268.0
(700.0)</td><td>감) 144.3</td><td>67,123.7
(700.0)</td><td>-</td></tr>
<tr><td rowspan="6">도시공간시설 등</td><td>공공공지</td><td>176.8</td><td>감) 35.2</td><td>141.6</td><td>-</td></tr>
<tr><td>시장</td><td>9,976.8</td><td>-</td><td>9,976.8</td><td>-</td></tr>
<tr><td>공공청사</td><td>2,349.0</td><td>-</td><td>2,349.0</td><td>-</td></tr>
<tr><td>〈문화시설〉</td><td>〈370.1〉</td><td>〈감) 370.1〉</td><td>-</td><td>• 홍제2구역 내 도시공간시설 설치계획 변경
(문화시설 → 사회복지시설)</td></tr>
<tr><td>사회복지시설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시설 미결정〉</td><td>-
(1,083.0)
〈 - 〉</td><td>-
(-)
〈증) 1,387.4〉</td><td>-
(1,083.0)
〈1,387.4〉</td><td>• 〈 〉 안의 면적 홍제2구역 내 사회복지시설 계획
<table>
<tr><th>구분</th><th>기정</th><th>변경</th><th>변경 후</th></tr>
<tr><td>층수</td><td>-</td><td>지상2층일부
~
지상3층</td><td>지상2층일부
~
지상3층</td></tr>
<tr><td>전용면적 (㎡)</td><td>-</td><td>증) 1,387.4</td><td>1,387.4</td></tr>
<tr><td>연면적(㎡)</td><td>-</td><td>증) 3,309.5</td><td>3,309.5</td></tr>
</table>
• ( )안의 면적 홍은1구역 내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사회복지시설) 결정
<table>
<tr><th>구분</th><th>기정</th><th>변경</th><th>변경후</th></tr>
<tr><td>층수</td><td>-</td><td>지하1층일부
~
지상1층일부</td><td>지하1층일부
~
지상1층일부</td></tr>
<tr><td>수평투영 면적(㎡)</td><td>-</td><td>증) 1,083.0</td><td>1,083.0</td></tr>
<tr><td>연면적(㎡)</td><td>-</td><td>증) 1,643.5</td><td>1,643.5</td></tr>
</table></td></tr>
</table>

구 분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하천	7,889.7	-	7,889.7	-
	하수도	940.0	-	940.0	-
	소계	21,332.3 (1,083.0) 〈 - 〉	감) 35.2 (-) 〈증) 987.2〉	21,297.1 (1,083.0) 〈987.2〉	-

※ 홍제2구역 내 사회복지시설 설치계획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님

4)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5) 교통계획(변경) : 「홍제재정비촉진지구」 홍제2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 변경도서 (VI-교통성검토서)에 명시

6) 경관계획(변경없음)

7)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구분	사업방식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총 계				200,394	
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홍제2구역	홍제동 326-5 일대	3,069	
		홍은1구역	홍은동 48-163 일대	11,571	재정비촉진구역 결정 (2023.12.07.)
존치정비	도시정비형 재개발	홍제3구역	홍제동 306-2 일대	7,769	-
존치관리	지구단위계획구역		홍제동 251 일대	135,900	지구단위계획재정비 (2017.12.28.)
촉진구역 해제		홍제1구역	홍제동 298-9 일대	42,085	재정비촉진구역 해제 (2017.03.30.)

8)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변경없음)

(가) 홍제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없음)

구 분	면적(㎡)	구성비(%)
계	135,900	100.0

구 분		면적(㎡)	구성비(%)
주거지역	소계	104,743	77.1
	제2종일반주거지역	27,868	20.5
	제3종일반주거지역	47,919	35.3
	준주거지역	28,956	21.3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31,157	22.9

(나) 홍제 2구역 : 변경없음

구 분		면적(㎡)	비율(%)	비 고
합 계		3,069.0	100.0	서울시고시 제2002-221호 (2002.06.25.)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2,692.0	87.7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377.0	12.3	

(다) 홍은 1구역 : 변경없음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 · 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변경)

구분	구역명		주용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계획
촉진 구역	홍제 2구역	기정	주거/판매/공공시설 등	700% 이하	60% 이하	지상 26층(80m 이하)
		변경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공공시설	700% 이하	60% 이하	지상 49층(170m 이하)
	홍은1구역		주거/판매/공공시설 등	450% 이하	60% 이하	지상 49층(170m 이하)

10) 기반시설의 비용부담계획(변경)

구분		계획기반시설 ①		계획기반시설내 국공유지②		기존기반시설내 국공유지③		공공시설 설치 대지환산④		대지지분⑤		순부담면적(㎡) (①+④+⑤)-(②+③)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총면적		200,394㎡											
기반시설	기정	3,933.20	1.96	1,568.90	0.78	2,003.40	1.00	957.84	0.48	398.19	0.20	1,716.93	0.86
	변경	3,753.70	1.87	1,566.20	0.78	2,006.10	1.00	1,910.44	0.95	611.69	0.31	2,703.53	1.35
홍제2	기정	894.70	0.45	307.10	0.15	328.70	0.16	234.80	0.12	63.50	0.03	557.20	0.28
	변경	715.20	0.36	304.40	0.15	331.40	0.17	1,187.40	0.59	277.00	0.14	1,543.80	0.77
홍은 1		3,038.50	1.51	1,261.8	0.63	1,674.7	0.83	723.04	0.36	334.69	0.17	1,159.73	0.58

※ 촉진구역별 기정 기반시설 면적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430호(2014.12.18.)에 따른 홍제2구역 기반시설(도로, 공공공지등)면적 적용

11)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변경)

구분		임대주택							비고
		소계	의무공공임대		국민주택규모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		
			60㎡이하	60~85㎡이하	60㎡이하	60~85㎡이하	60㎡이하	60~85㎡이하	
홍제2구역	기정	-	-	-	-	-	-	-	
	변경	18	15	3	-	-	-	-	
홍은1구역		110	53	-	16	9	21	11	
합계	기정	110	53	-	16	9	21	11	
	변경	128	68	3	16	9	21	11	

12) 재정비촉진사업 시행기간동안의 범죄예방대책(변경없음)

13)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4) 상가의 분포 및 수용계획(변경없음)

15)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변경)

(가) 홍은1 재정비촉진구역 : 변경없음

(나) 홍제2 재정비촉진구역 : 변경

(1) 정비구역의 명칭 : 홍제2재정비촉진구역(변경없음)

(2)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구 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비 고
기 정	홍제2재정비촉진구역	서대문구 홍제동 326-5번지 일대	3,069	서울시고시 제2014-430호 (2014.12.18)

* 면적은 추후 측량성과에 따름

(3)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table>
<tr><td>추정
비례율</td><td>•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 (총 수입 - 총 지출) / 종전자산 총액 X 100%
• 추정비례율 : 103.5% ⇒ (1,043억 -839억) / 196억 X 100 = 103.5%
- 총수입 추정 : 1,043억
- 총지출 추정 : 839억
- 종전자산총액 추정 : 196억</td></tr>
<tr><td>개별
종전자산
추정액</td><td>• 개별 공시가격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개별 공시가격 확인
• 단독주택, 상가 소유자 = 토지가액 + 건물가액
- 토지 = 개별공시지가 X 토지면적 X 보정률(1.75)
- 건물 = 개략단가(100만원/3.3㎡, 단 공시지가가 더 클 경우 공시지가 반영) X 연면적</td></tr>
<tr><td>공동주택 개별분담금
추산(예시)</td><td>• 추정분담금 산정방식 =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X 추정비례율)
<table>
<tr><th colspan="2">권리자 분양가 추정액(a)</th><th>추정 권리가액(b)</th><th>추정분담금(a-b)</th></tr>
<tr><td>공급면적 84.28㎡
(공급 25.5평형)</td><td>6.28억</td><td rowspan="2">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X
추정비례율(103.5%)</td><td rowspan="2">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추정 권리가액
(+ : 부담 / - : 환급)</td></tr>
<tr><td>공급면적 118.15㎡
(공급 35.7평형)</td><td>8.81억</td></tr>
</table></td></tr>
<tr><td>근린생활시설
개별분담금
추산(예시)</td><td>• 추정분담금 산정방식 =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X 추정비례율)
<table>
<tr><th colspan="2">권리자 분양가 추정액(a)</th><th>추정 권리가액(b)</th><th>추정분담금(a-b)</th></tr>
<tr><td>전용면적 33.54㎡
(전용 10.14평형)</td><td>3.35억</td><td>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X
추정비례율(103.5%)</td><td>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추정 권리가액
(+ : 부담 / - : 환급)</td></tr>
</table>
※ 권리자분양 · 일반분양 구분 및 위치별 Layout과 공용면적 배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인근 시세를 고려하여 일반/권리자 분양가를 동일한 수준으로 추정</td></tr>
</table>

(4)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3,069.0	-	3,069.0	100.0	
정비기반시설 등	소 계	894.7	감) 179.5	715.2	23.3	
	도 로	717.9	감) 144.3	573.6	18.7	
	공공공지	176.8	감) 35.2	141.6	4.6	
택지 (획지)	소 계	2,174.3	증) 179.5	2,353.8	76.7	
	획 지1	2,105.4	증) 176.8	2,282.2	74.4	
	획 지2 (유보지)	68.9	증) 2.7	71.6	2.3	

* 획지2(유보지) 내 무허가건축물을 조합에 포함해 정비하며, 무허가건축물 정비 후 효율적 관리를 위해 토지는 구역 외로 간주하고, 지구단위계획 시 간선별 필지와 공동개발(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5) 용도지역 · 용도지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적(㎡)	비율(%)	비 고
합 계		3,069.0	100.0	서울시고시 제2002-221호 (2002.06.25.)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2,692.0	87.7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377.0	12.3	

(6) 도시 · 군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변경)

㉠ 도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3)	9-12	집산 도로	89 (22)	소로 2-(1)	중로 2-95	일반 도로	-	서고 제222호 ('02.06.19)	
폐지	소로	2	(1)	8	국지 도로	59 (29)	대로 1-7	중로 3-(3)	일반 도로	-	서고 제222호 ('02.06.19)	도시계획시설 실효 (서고 제2022-103호)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2	-	8	국지 도로	16	소로 3-(1)	중로 3-(3)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1)	6	국지 도로	15	소로 2-(1)	홍제동 326-14	일반 도로	-	서고 제430호 ('14.12.18)	
기정	소로	3	(2)	4~6	국지 도로	41	중로 2-95	대로 1-7	일반 도로	-	서고 제430호 ('14.12.18)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2-(1)	-	• 도시계획도로 폐지	• 홍제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서대문구고시 제2022-103호)
-	소로 2-	• 도로 신설 - B = 8m - L = 16m	• 홍제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소로 2-(1) 실효에 따른 구역 내 도로 신설

㉡ 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경	변경후	
변경	공공공지	-	홍제동 161-8번지 일대	176.8	감) 35.2	141.6	서고 제2005-447호 (2005.12.30)

■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시설명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공공공지	홍제동 161-8번지 일대	• 위치 및 면적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위치 및 면적 변경

(7)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해당없음

(8) 기존 건축물의 정비 · 개량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홍제2재정비 촉진구역	3,069.0	획지1	2,105.4	홍제동 326-5번지 일대	24	-	-	24	-	
			획지2 (유보지)	68.9	홍제동 161-8번지						
변경	홍제2재정비 촉진구역	3,069.0	획지1	2,282.2	홍제동 326-5번지 일대	24	-	-	24	-	
			획지2 (유보지)	71.6	홍제동 161-8번지						

(9) 건축물에 관한 계획(변경)

㉠ 가구 · 획지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한 계획

결정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m) 층수(층)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준	허용	상한	
기정	홍제2 재정비 촉진구역	3,069.0	획지1	2,105.4	서대문구 홍제동 326-5번지 일대	주거	60 이하	300.0	500.0	700.0 이하	80 이하 (지상26층)
			획지2	68.9	서대문구 홍제동 161-8번지	-	-	-	-	-	-
변경		3,069.0	획지1	2,282.2	서대문구 홍제동 326-5번지 일대	주거	60 이하	300.0	395.0	700.0 이하	170 이하 (49층 이하)
			획지2	71.6	서대문구 홍제동 161-8번지	-	-	-	-	-	-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율 (%)			높이(m) 층수(층)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준	허용	상한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기정	• 주거비율 : 50% 미만 - 건립세대 : 108세대(85㎡ 이하:72세대, 도시형생활주택:36세대) ※ 비주거시설 내 오피스텔10% 미만 도입(9.9%, 56실)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추진구역 지원방안 적용 - ' 13.4.24)								
		변경	• 주거비율 : 80% 미만 - 건립세대 : 124세대(85㎡ 이하) ※ 비주거시설 20% 이상(근린생활시설 9.1%, 사회복지시설 12.1%)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기정	• 홍제내길변 : 3m / 중로3-(3)호선변 : 2m								

규모	60㎡이하	60㎡초과 ~ 85㎡이하	합계
세대수	62(15)	62(3)	124(18)
비율	50%	50%	100%

※ ( ) 공공임대주택 세대수

※ 획지2(유보지)는 무허가건축물 정비완료 후 홍제지구단위계획에 따른 획지계획(공동개발)으로 관리

㉡ 용적률 계획

■ 기정

구분	산정내용					
토지이용계획	계 (구역면적)	획지① (공동주택부지)	획지② (유보지)	신설 정비기반시설	공공시설	
					토지지분	환산부지면적
	3,069.0㎡	2,105.4㎡	68.9㎡	894.7㎡	63.5㎡	234.8㎡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 순부담 면적 = 계획 기반시설 면적 - 기존 기반시설내 국·공유지 + 공공시설기부채납(토지지분+건축물환산부지) = 894.7㎡ - (1,216.1㎡-580.3㎡) + 298.3㎡ = 557.2㎡ ※ 국공유지 내 무허가건축물 점유면적(580.26㎡)은 국공유지면적에서 제외함.					

구 분	산 정 내 용
환산부지면적	• 건축물환산면적 + 대지지분 = 234.8㎡ + 63.5㎡ = 298.3㎡
	• 건축물환산부지면적 =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원) / 용적률을 완화받고자하는 부지가액(원/㎡) = 1,143,790,800(원/㎡) / 4,871,056(원/㎡) = 234.8㎡ -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 2,571,210,900(원/㎡) = 1,693,000원/㎡(2014 국토해양부 표준건축비) × 675.6㎡(건축물 연면적) - 용적률을 완화 받고자하는 부지가액 = 4,871,056원/㎡ = 2,435,528원/㎡(공시지가) × 2
	• 문화시설 대지지분 = 문화시설연면적 × (전체연면적/ 대지면적) = 675.6㎡ × (22,385.7㎡ / 2,105.4㎡) = 63.5㎡
기준용적률	• 300%
허용용적률	• 500% 이하
상 한 용 적 률	•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 ((1 + (1.3 × α) × 가중치) = 500% × ((1 + (1.3 × 0.3083) × 1 = 700.39% 이하 → 관련법에 근거해 상한용적률은 700% 이하로 함 ※ α = 공공시설부지(토지) 제공 면적 / 공공시설부지(토지) 제공 후 대지면적 = (258.9㎡ + 298.3㎡) / (2,105.4㎡ - 298.3㎡) = 557.2㎡ / 1,807.1㎡ = 0.3083 ※ 가중치는 '1' 적용
	• 건축계획(안) = 698.79%

■ 변경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6">산 정 내 용</th></tr>
<tr><td rowspan="2">토지이용계획</td><td rowspan="2">계
(구역면적)</td><td rowspan="2">획지①
(공동주택부지)</td><td rowspan="2">획지②
(유보지)</td><td rowspan="2">신설
정비기반시설</td><td colspan="2">공공시설</td></tr>
<tr><td>토지지분</td><td>환산부지면적</td></tr>
<tr><td>3,069.0㎡</td><td>2,282.2㎡</td><td>71.6㎡</td><td>715.2㎡</td><td>277.0㎡</td><td>1,187.4㎡</td></tr>
<tr><td>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td><td colspan="6">• 순부담 면적 = 계획 기반시설 면적 - 기존 기반시설내 국·공유지 + 공공시설기부채납(토지지분+건축물환산부지)
= 715.2㎡ - (1,216.1㎡-580.3㎡) + 1,464.4㎡ = 1,543.8㎡
※ 국공유지 내 무허가건축물 점유면적(580.26㎡)은 국공유지면적에서 제외함.</td></tr>
<tr><td rowspan="3">환산부지면적</td><td colspan="6">• 건축물환산면적 + 대지지분 = 1,187.4㎡ + 277.0㎡ = 1,464.4㎡</td></tr>
<tr><td colspan="6">• 건축물환산부지면적 =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원) / 용적률을 완화받고자하는 부지가액(원/㎡)
= 12,413,821,970(원/㎡) / 10,454,476(원/㎡) = 1,187.4㎡
-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 12,413,821,970(원/㎡)
= 3,751,000원/㎡(*2022공공건축물 건립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 3,309.47㎡(건축물 연면적)
- 용적률을 완화 받고자하는 부지가액 = 10,454,476원/㎡
= 5,227,238원/㎡(공시지가) × 2

※ 공시지가 : 2023년 1월 부지평균 공시지가 적용
※ 공공건축물 공사비 : 「2022공공건축물 건립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종합사회복지관 공사비 적용</td></tr>
<tr><td colspan="6">• 사회복지시설 대지지분 = (사회복지시설연면적 / 전체연면적) × 대지면적
= (3,309.47㎡ / 27,267.75㎡) × 2,282.2㎡ = 277.0㎡</td></tr>
<tr><td>기준용적률</td><td colspan="6">• 300%</td></tr>
<tr><td>허용용적률</td><td colspan="6">• 395% 이하</td></tr>
<tr><td>상 한
용 적 률</td><td colspan="6">•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 ((1 + (1.3 × α토지) × 가중치) + (1.0 × α건축물)+(1.0 × α현금))
= 395% × ((1 + (1.3 × 0.17160) × 1) + (1.0× 0.57175) = 708.96%
→ 홍제2재정비촉진계획(서울특별시고시 제2014-430호(2014.12.18.))용적률계획 반영
상한용적률 700%이하 적용

※ α토지 = 공공시설부지(토지) 제공 면적 / 공공시설부지(토지) 제공 후 대지면적
= (992.2㎡ - 635.8㎡) / (3,069.0㎡ - 715.2㎡ - 277.0㎡)
= 356.4㎡ / 2,076.8㎡ = 0.17160
※ α건축물 = 공공시설(건축물) 제공 면적 / 공공시설부지(토지) 제공 후 대지면적
= 1,187.4㎡ / (3,069.0㎡ - 715.20㎡ - 277.0㎡)
= 0.57175

※ 가중치는 '1' 적용</td></tr>
</table>

㉡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계획 및 채납행정청(관리청) 지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기부채납(㎡)		세부용도	채납행정청(관리청)	비고
			대지면적(㎡)(대지지분)	건축물/현금 건축연면적(㎡)			
1	사회복지시설	홍제동 326-5 일대	91.9	1,098.12 (환산 394.0)	-	서대문구	2층 일부
2			185.1	2,211.35 (환산 793.4)	-	서울특별시	3층

※ 향후 토지평가 및 건축계획 등에 따라 건축연면적, 위치 등이 조정될 수 있으며, 세부용도는 서울시 기부채납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해 추후 확정함.

(10)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 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기정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방법	정비구역(변경) 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홍제2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증) 25세대 - 현황 : 83세대 - 계획 : 108세대	
변경				증) 41세대 - 현황 : 83세대 - 계획 : 124세대	

(11)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 공공임대주택(의무) 건설계획

관련 근거	• 재정비촉진지구 건축물 용도에 관한 운영기준(2022.01.)

구분	확보기준	계획내용	비고
1	• 전체 연면적의 10%이상 공공주택 확보	27,267.75㎡ × 10% = 2,726.78㎡(기준) ≤ 2,744.31㎡(확보)	59형(전용 59.98㎡) 15세대, 84형(전용 84.96㎡) 3세대

(12) 관계도면 : 붙임참조

■ 지형도면 및 정비계획결정도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서 참조

16)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 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신 규	홍제2재정비촉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서대문구 홍제동 326-5번지 일대	-	증) 3,069.0	3,069.0	

* 면적은 추후 측량성과에 따름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 용도지역 · 용도지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적(㎡)	비율(%)	비 고
합 계		3,069.0	100.0	서울시고시 제2002-221호 (2002.06.25.)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2,692.0	87.7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377.0	12.3	

(다) 기반시설 결정(변경)조서

㉠ 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3)	9-12	집산 도로	89 (22)	소로 2-(1)	중로 2-95	일반 도로	-	서고 제222호 ('02.06.19)	
폐지	소로	2	(1)	8	국지 도로	59 (29)	대로 1-7	중로 3-(3)	일반 도로	-	서고 제222호 ('02.06.19)	도시계획시설 실효 (서서고 제2022-103호)
신설	소로	2	-	8	국지 도로	16	소로 3-(1)	중로 3-(3)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1)	6	국지 도로	15	소로 2-(1)	홍제동 326-14	일반 도로	-	서고 제430호 ('14.12.18)	
기정	소로	3	(2)	4~6	국지 도로	41	중로 2-95	대로 1-7	일반 도로	-	서고 제430호 ('14.12.18)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2-(1)	-	• 도시계획도로 폐지	• 홍제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서대문구고시 제2022-103호)
-	소로 2-	• 도로 신설 - B = 8m - L = 16m	• 홍제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소로 2-(1)실효에 따른 구역 내 도로 신설

㉡ 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경	변경후	
변경	공공공지	-	홍제동 161-8번지 일대	176.8	감) 35.2	141.6	서고 제2005-447호 (2005.12.30)

■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시설명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공공공지	홍제동 161-8번지 일대	• 위치 및 면적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위치 및 면적 변경

(라)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가구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기정	홍제동 326-5번지 일대	3,069	획지1	홍제동 326-5번지 일대	2,105.4	
			획지2	홍제동 161-8번지	68.9	유보지
변경	홍제동 326-5번지 일대	3,069	획지1	홍제동 326-5번지 일대	2,282.2	
			획지2	홍제동 161-8번지	71.6	유보지

(2)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 조서

구 분		가 구	용도	비 고
기정	허용 용도	획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허용용도 외의 용도는 불허

■ 건축물의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 건폐율 계획(변경)

구 분	지 역	건폐율	비 고
기 정	획 지	60% 이하	

□ 용적률 계획(변경)

구 분	지 역	용적률(%)				비 고	
		기준	허용	상한용적률			
				상한	법적상한		
기 정	획 지	300.00	500.00	700.00	700.00	정비계획	기준용적률 300.00%
							상한용적률 500.00%
							법적상한 건축계획용적률 698.79%
변경	획 지	300.00	395.00	700.00	700.00	정비계획	기준용적률 300.00%
							상한용적률 395.00%
							법적상한 건축계획용적률 699.50%

□ 상한용적률 완화사항

구분	용적률 완화		비 고
	공공시설 기부채납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신설	45.82%	-	

□ 높이 계획(변경)

구 분	지 역	높이기준	비 고
기 정	획 지	80m 이하(26층 이하)	
변 경	획 지	170m 이하(49층 이하)	

(3)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 분	적용위치	비 고
건축한계선	홍제내길변 : 3m / 중로3-(3)호선변 : 2m	

(4) 경관계획(배치 · 형태포함)

㉠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계획

구 분	적용위치	계 획 내 용
건축물의 방향성	주거복합 사업부지	▪ 획일적 주동 디자인을 지양, 창의적 건축디자인을 통해 기존시가지와 조화될 수 있는 건축물 배치 및 높이계획 수립
건물 진출입구	주거복합 사업부지	▪ 통일로 이면 중로3-(3)에서 보행 및 차량 진출입구 확보

㉡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계획

구 분	적용지역	비 고
건축물 외부형태	저층부 (연도형상가)	▪ 1층 개구부 높이 통일 ▪ 쇼윈도 설치 및 야간조명 설치
	고층부 (공동주택)	▪ 경관적 영향 저감을 위하여 주동간 층수차이를 고려한 합리적 입면 디자인을 적용하고 특히 가로변 배치 주동측벽은 시각적 단조로움이 없도록 고려 ▪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 ▪ 주변 건물과 조화를 유지 ▪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
재료 및 색채	주거복합 사업부지	▪ 반사성 재료 사용 금지 ▪ 외벽면 전체 페인트 마감 금지 ▪ 원색계열 재료, 도료 사용 금지
진입구 처리	주거복합 사업부지	▪ 건축물의 주출입구는 보도와 단차를 가급적 지양 ▪ 접근로는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 및 형태로 함 ▪ 접근로에는 가로등, 간판, 이동식화분 등 보행장애물을 설치하지 않도록 함

㉢ 경관에 관한 계획

구 분	적용지역	비 고
개방감	주거복합	▪ 단일 동 계획으로 통일로변 및 연희로변에서 개방감 확보
조명 계획	주거복합	▪ 주변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객관적 수치를 검토하여 야간조명 설치 계획
스카이 라인	주거복합	▪ 지역 내 산지(인왕산 및 안산 등)와 공동주택단지에 유도하여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계획

(5)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

㉠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적용위치	비 고
전면 공지	통일로 39가길변	•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대지내 공지는 차도 및 보도 부속형 전면공지로 계획 - 폭원 : 2m

㉡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적용위치	비 고
차량출입 금지구간	통일로변 필지	• 간선변(통일로)의 차량소통원활을 위한 차량출입금지구간 설치

※ 구체적인 위치는 관련도면 참조

㉢ 환경관리계획

검토 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예측 반영사항	비고
비오톱	4등급 / 20%	O	• 개별비오톱유형 평가는 평가제외등급 • 비오톱유형평가 3,4등급 지역	• 자연지반녹지, 수공간, 인공지반녹지 등 적용 • 시설별특성과 경관을 고려한 조경수목 식재	
생태 네트워크	녹지면적을 최대한확보	O	• 인접공원과의 연계성 검토	• 공공보행축 확보	
동·식물상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저감	X	• 대상지는 도심 시가지로 현존량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해당사항없음	
자연환경자산	보호지정 지역생물 등 자연환경자산의 영향 최소화	X	• 대상지에는 생태, 습지보호지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	해당사항없음	
토지이용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O	• 대상지는 사업의 시행이 획지내에서 이루어짐으로 인근지역의 직접적인 영향범주에 있지않으나 일부 유출 오염이 발생될 수 있음	• 공사시 방진망, 교통통제 등 토지이용 생활환경의 영향 최소화	
토양	토양오염 최소화	O	• 공사시 유출유류 및 토사발생	• 진출입부 세륜, 세차시설 설치	
지형·지질	지형변동 최소화	O	• 불투수토양포장도 대부분 30%이상~90%미만 지역임 • 인공구조물 설치로 인한 부지정지로 절·성토량 발생예상	• 무리한 정지계획 지양 • 현지형을 최대한 이용 • 적정녹지 계획으로 자연토양기능 상실 최소화	
물순환, 수리·수문	생태면적률 확보	O	• 건축유형별 생태면적률 적용기준 준수	• 건축유형별 생태면적률 적용기준 준수	
수질	오수발생 저감	O	• 공사시 우수유출량 변동 및 토사유출 발생 • 공사인력에 의한 오수발생	• 토공작업은 가급적 우기를 피하여 설치 • 가배수로 설치	

검토 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예측 반영사항	비고
			• 공사장비에 대한 유류발생		
바람 및 미기후	기후변화 최소화	O	• 기후현황 조사	• 녹지공간 연계로 기후변화 최소화	
악취	악취물질 발생량 억제	X	• 사업대상지의 영향권에는 악취배출시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해당사항없음	
대기질 · 미세먼지	대기오염물질 발생억제	O	• 공사시 토량이동 및 공사차량 운행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 물질 발생예상	• 이동식방진망 설치, 공사장내 차량속도 제한, 주기적인 살수 시행 등	
온실가스	온실가스 배출감소 및 자체정화 최대화	O	• 난방 및 취사, 사업시행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발생	• 도시가스 사용계획 및 정화효율이 높은 조경식재	
친환경적 자원순환	폐기물처리	O	• 공사시 현장사무소 운영에 따라 생활폐기물 및 분뇨발생 • 공사장비 가동에 따른 폐유발생	• 분리수거용기와 간이화장실 설치 • 폐유정장소 설치	
에너지	에너지 효율 극대화	O	• 주거면적 증가로 인한 에너지 사용량 증가	• 에너지 절감설비 활용	
소음 · 진동	생활소음 · 진동 및 소음환경기준	O	• 공사시 투입되는 건설장비 가동에 의한 소음발생	• 공사장비 분산투입 • 가성방음판넬 설치 (높이 50m)	
경관	경관과의 조화	O	• 기존 건축물과 조화과 요구됨	• 역세권 상업지역으로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계획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 및 여가공간 최대확보	O	• 서대문구에는 국립공원1개소, 자연공원 3개소, 근린공원 6개소 등 총 50여개의 공원과 문화시설이 위치함	• 대상지 내 조경녹지 및 공터를 설치하여 이용자의 휴식공간 및 쉼터를 제공	
일조	수인한도 만족	△	• 일조 시뮬레이션 결과, 일조수인한도를 모두 만족함	• 인접대로 및 상업지역을 고려 적정 높이계획 수립	
보행 친화공간	보행공간확보	O	• 보행공간 확보요함	• 공공보행통로 확보	
인구	인구현황	O	• 인구현황 통계	• 인구현황통계	
주거	주거 고려한 계획수립	X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산업	산업 고려한 계획수립	X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구분		획지면적(㎡)	동수	세대수	세대규모(전용)	비고(연면적)
기정		2,105.4	해당사항없음			-
변경	공공임대주택(의무)	2,282.2	SocialMix	15	59.98	2,744.31
				3	84.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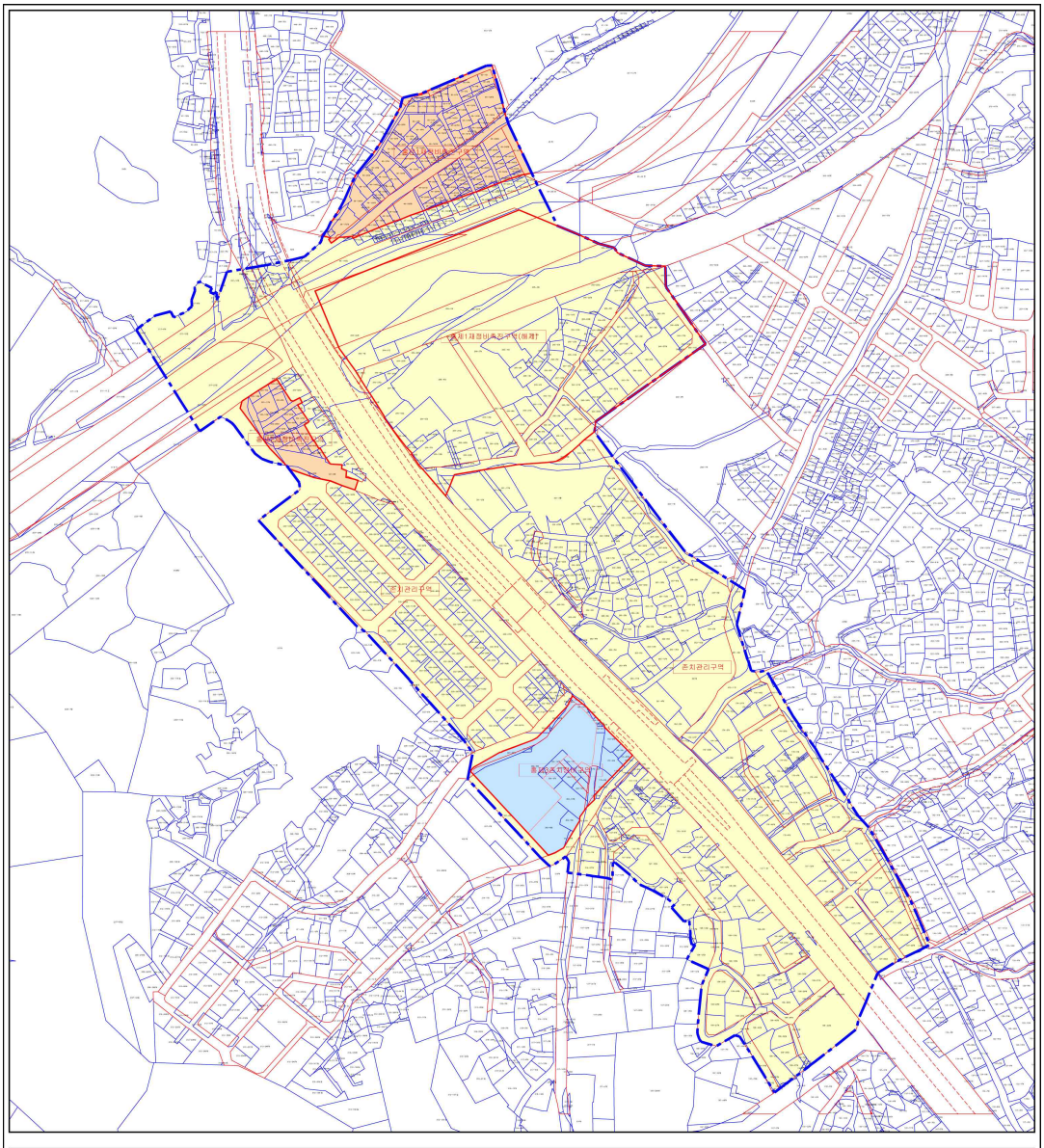
17) 광고물 관리계획 : 변경없음
18)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19) 친환경건축물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20)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21)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 해당없음

마. 2023년 제12차('23.12.21)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결과 : 수정가결

구분	심의의견	반영계획	비고
1	• 유연한 건축계획 수립을 위해 최고 높이는 49층 이하로 결정하고 건축 위원회에서 적정 건축계획 수립 논의	• 건축물 최고높이 및 배치계획 조정하였으며 추후 건축위원회 심의에 따라 적정 건축계획 수립토록 하겠음	

바. 관련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홍제재정비촉진지구 홍제2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서' 참조

사.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정비촉진사업과(☎02-2133-7224) 및 서대문구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02-3140-8323)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흥제재정비촉진지구 흥제2재정비촉진구역 변경결정
흥제재정비촉진지구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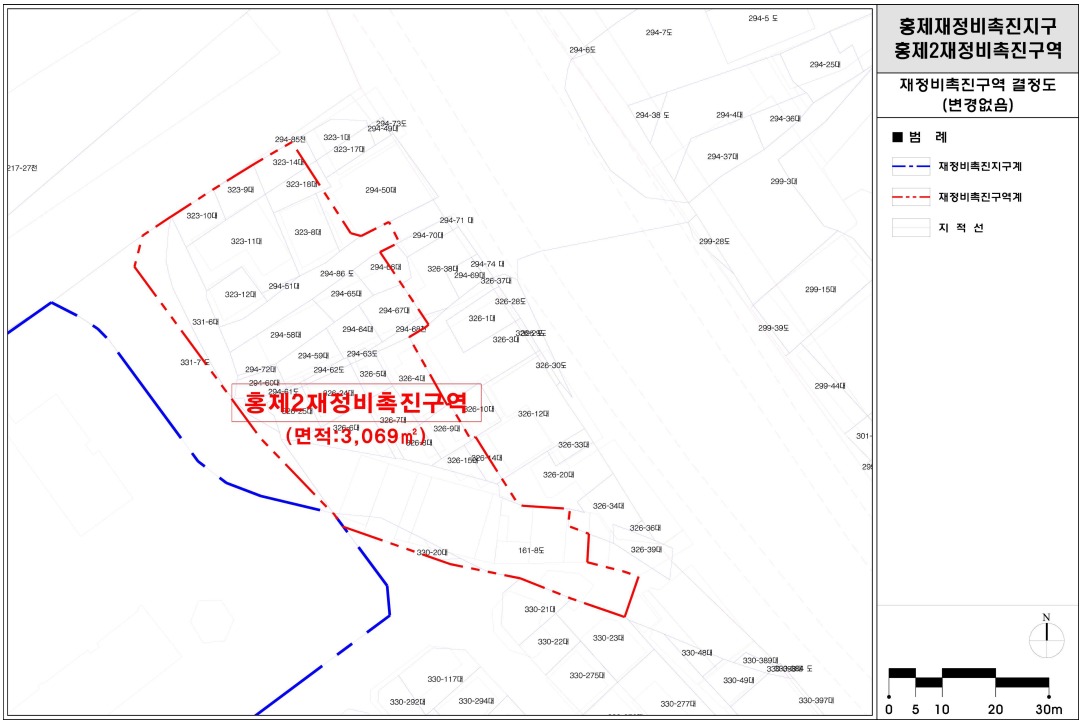
■ 범 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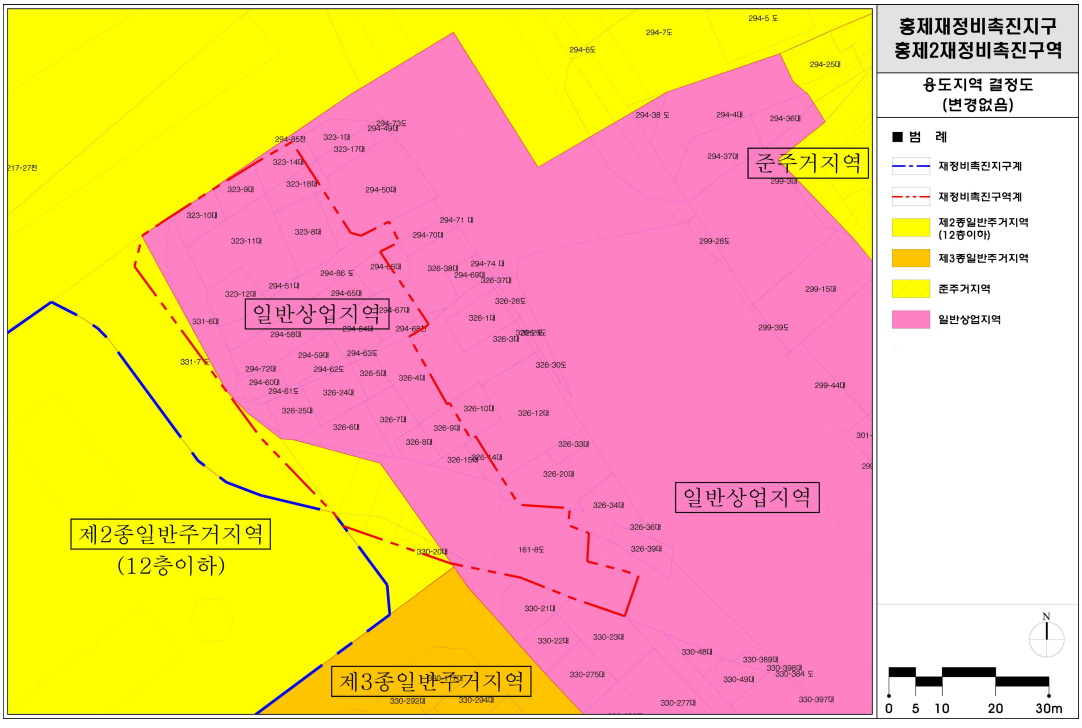
- 재정비촉진지구계
- 재정비촉진구역계
- 도 시 계 획 도 로
- 고 속 철 도
- 촉진구역
- 존치정비구역
- 존치관리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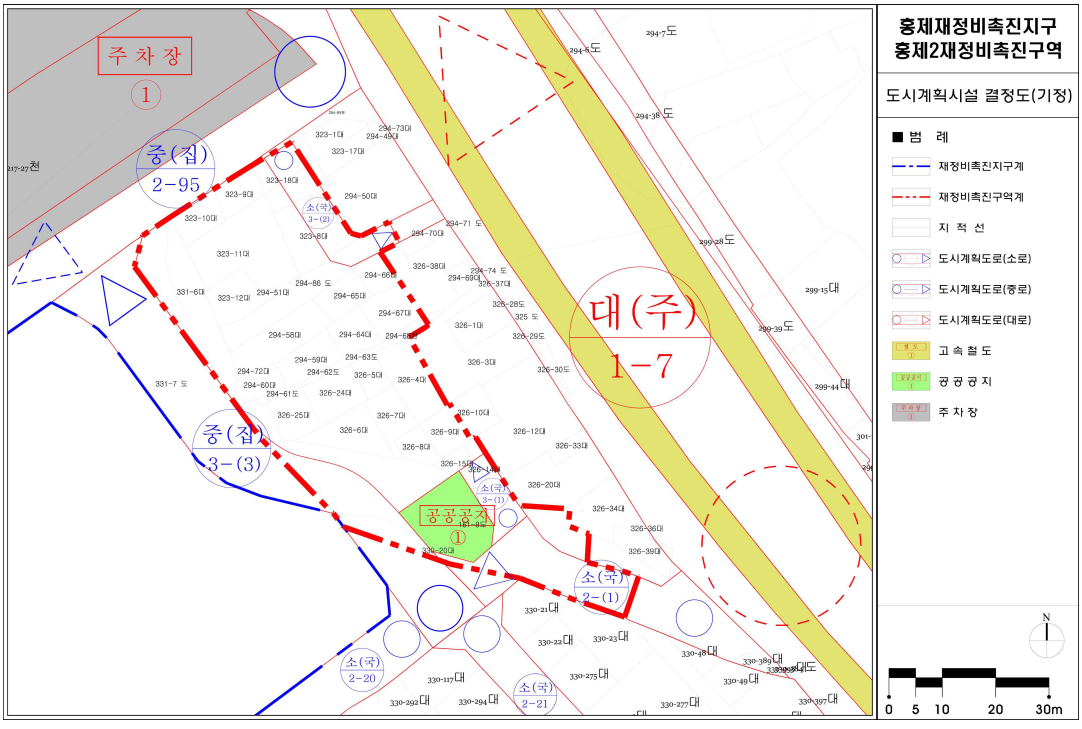
※ 흥제재정비촉진지구 내 흥제3구역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결정되어 존치정비구역 면적이 변경될 것을 전제로 작성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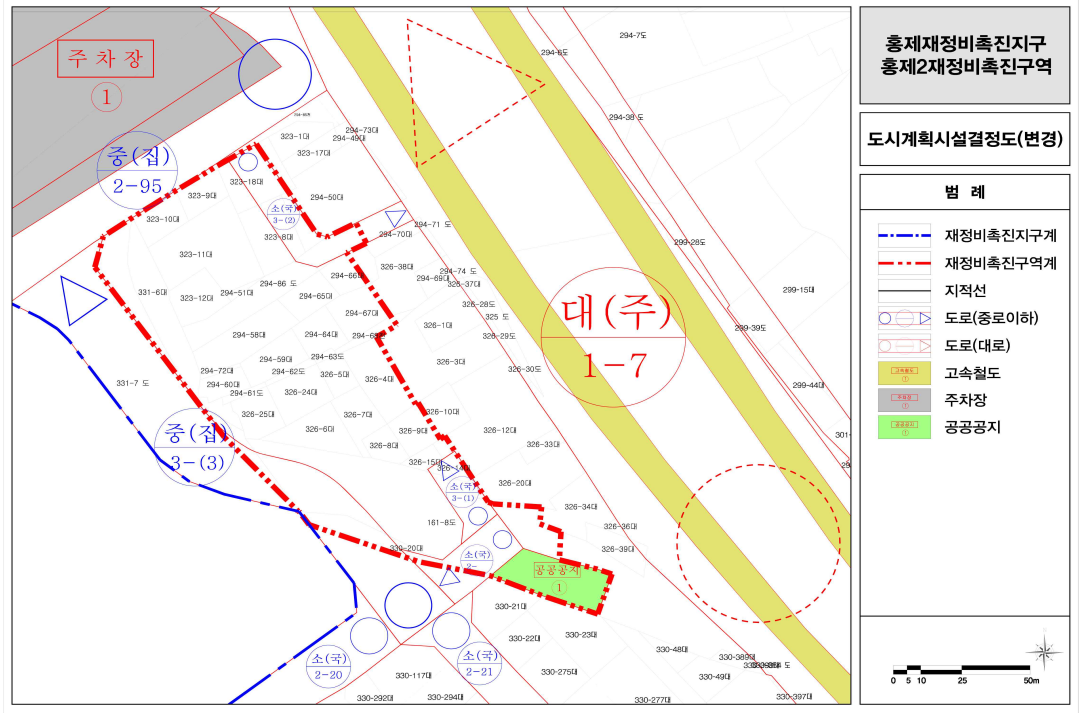
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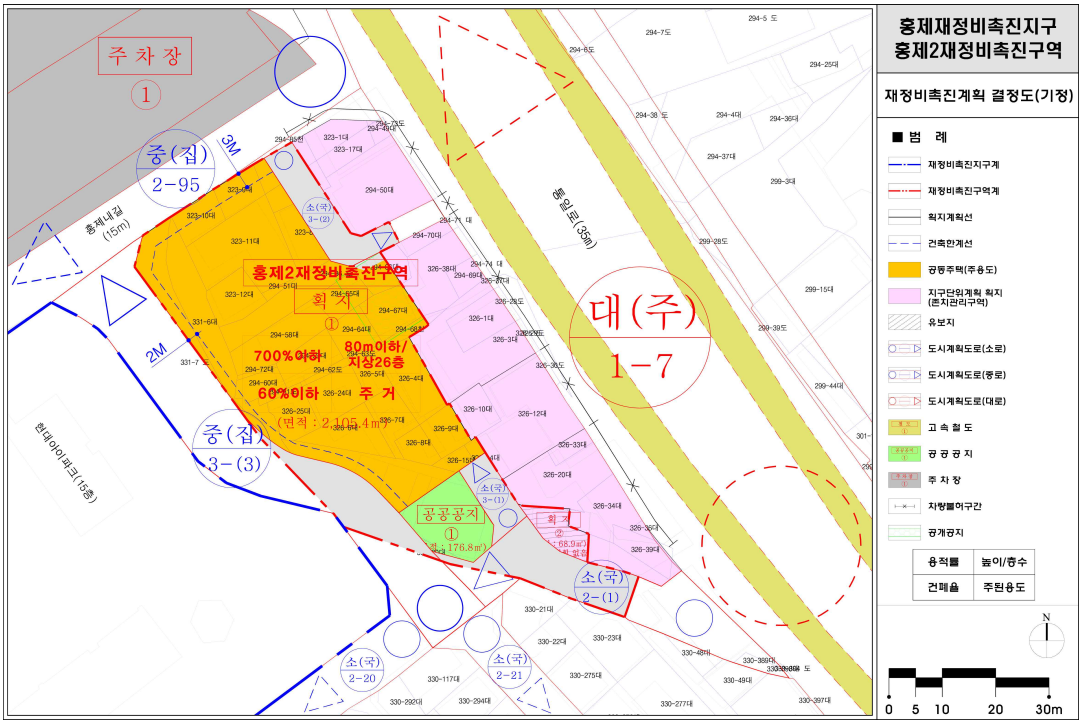
0 10 50 100 20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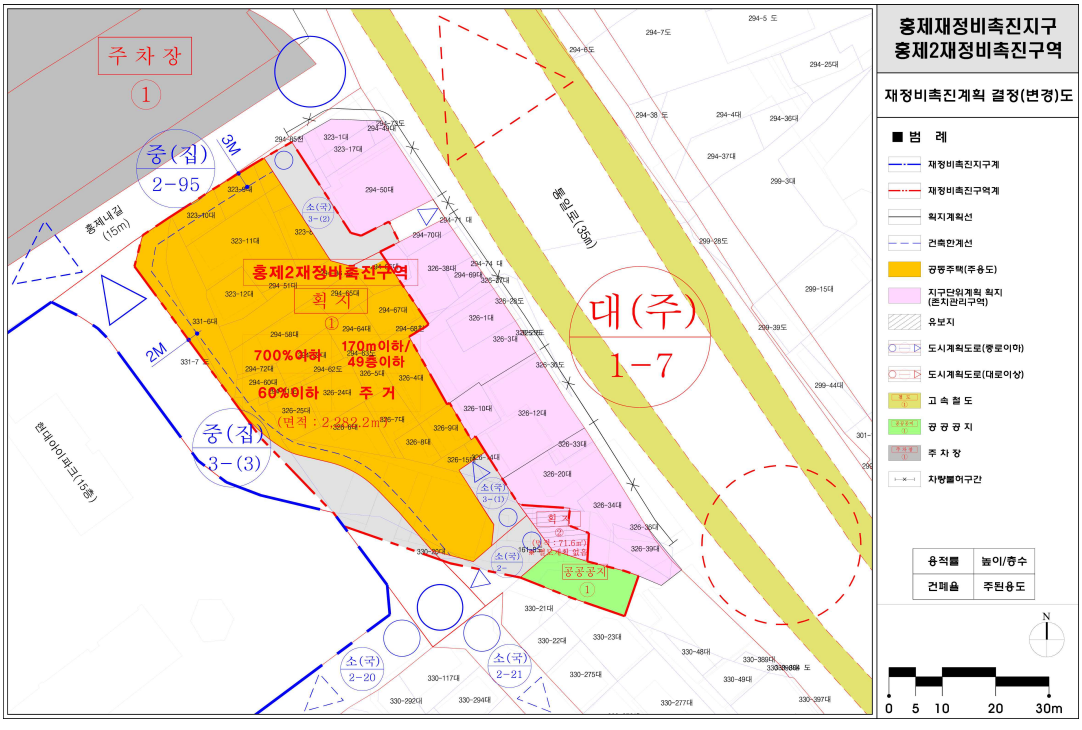

홍제재정비촉진지구
홍제2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
(변경없음)
■ 범 례
재정비촉진지구계
재정비촉진구역계
지 적 선
홍제2재정비촉진구역
(면적:3,069㎡)
N
0 5 10 20 3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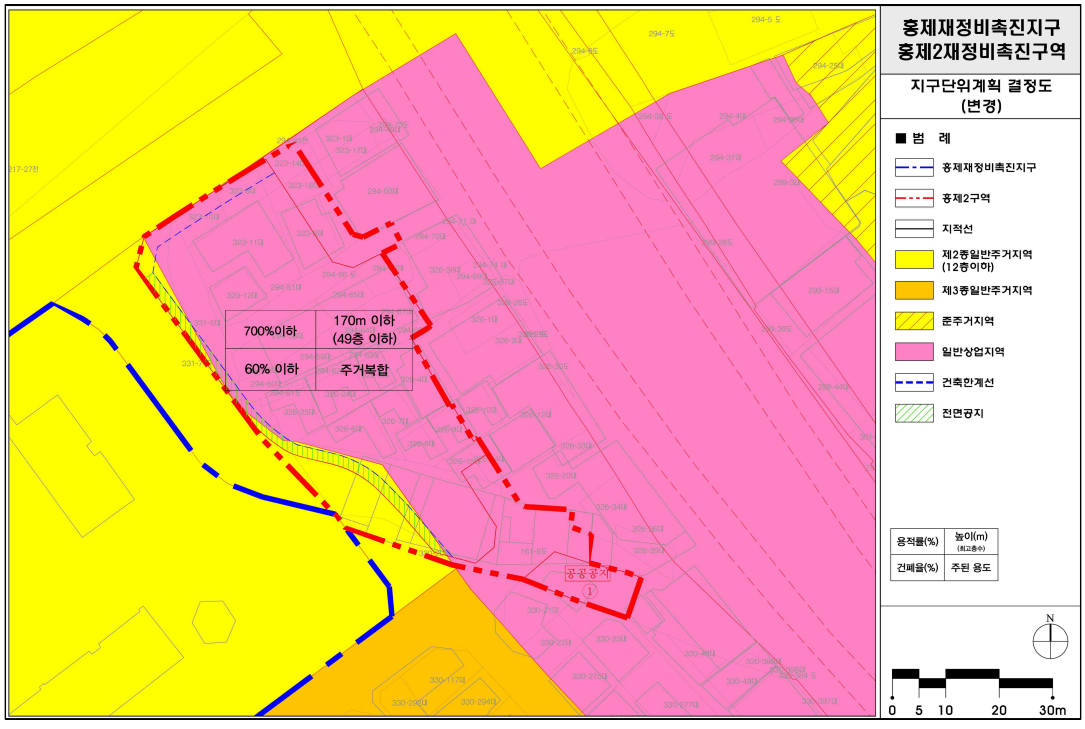

홍제재정비촉진지구
홍제2재정비촉진구역
용도지역 결정도
(변경없음)
■ 범 례
재정비촉진지구계
재정비촉진구역계
제2종일반주거지역
(12층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2층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N
0 5 10 20 30m


주 차 장
1
중(집)
2-95
중(집)
3-(3)
대(주)
1-7
공공공지
①
소(국)
2-(1)
소(국)
2-20
소(국)
2-21
홍제재정비촉진지구
홍제2재정비촉진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 범 례
재정비촉진지구계
재정비촉진구역계
지 적 선
도시계획도로(소로)
도시계획도로(중로)
도시계획도로(대로)
고 속 철 도
공 공 공 지
주 차 장
N
0 5 10 20 30m


주 차 장
1
중(집)
2-95
중(집)
3-(3)
대(주)
1-7
공공공지
①
소(국)
2-(1)
소(국)
2-20
소(국)
2-21
홍제재정비촉진지구
홍제2재정비촉진구역
도시계획시설결정도(변경)
범 례
재정비촉진지구계
재정비촉진구역계
지적선
도로(중로이하)
도로(대로)
고속철도
주차장
공공공지
0 5 10 25 50m


주 차 장
1
중(집)
2-95
3M
홍제내길
(15m)
2M
현대아이파크(15층)
홍제2재정비촉진구역
획 지
①
700%이하
60%이하
주 거
(면적 : 2,105.4㎡)
80m이하/
지상26층
중(집)
3-(3)
공공공지
①
176.8㎡
소(국)
3-(1)
소(국)
3-(2)
소(국)
2-(1)
소(국)
2-20
소(국)
2-21
통일로(35m)
대(주)
1-7
홍제재정비촉진지구
홍제2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기정)
■ 범 례
재정비촉진지구계
재정비촉진구역계
획지계획선
건축한계선
공동주택(주용도)
지구단위계획 획지
(존치관리구역)
유보지
도시계획도로(소로)
도시계획도로(중로)
도시계획도로(대로)
고 속 철 도
공 공 공 지
주 차 장
차량통어구간
공개공지
용적률
높이/층수
건폐율
주용도
N
0 5 10 20 30m


주 차 장
1
중(집)
2-95
3M
홍제내길
(15m)
2M
현대아이파크(15층)
홍제2재정비촉진구역
획 지
①
700%이하
60%이하
주 거
(면적 : 2,282.2㎡)
170m이하/
49층이하
중(집)
3-(3)
공공공지
①
소(국)
3-(1)
소(국)
2-(1)
소(국)
2-20
소(국)
2-21
통일로(35m)
대(주)
1-7
홍제재정비촉진지구
홍제2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도
■ 범 례
재정비촉진지구계
재정비촉진구역계
획지계획선
건축한계선
공동주택(주용도)
지구단위계획 획지
(존치관리구역)
유보지
도시계획도로(중로이하)
도시계획도로(대로이상)
고 속 철 도
공 공 공 지
주 차 장
차량통어구간
용적률
높이/층수
건폐율
주용도
N
0 5 10 20 30m


홍제재정비촉진지구
홍제2재정비촉진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변경)
■ 범 례
홍제재정비촉진지구
홍제2구역
지적선
제2종일반주거지역
(12층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건축한계선
전면공지
용적률(%)
높이(m)
(최고층수)
건폐율(%)
주된 용도
700%이하
170m 이하
(49층 이하)
60% 이하
주거복합
공공공지
N
0 5 10 20 30m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189호

서초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서초아파트지구 3주구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8.21.)로 아파트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4-418호(2004.12.27.)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5-127호(2015.10.22.),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6-21호(2016.3.10.)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2-170호(2022.9.22.)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경미한 변경)된 서초아파트지구 내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33번지 일대 서초신동아아파트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15조 및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제6조, 「주택법」 [법률 제6916호] 부칙 제9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6852호] 부칙 제5조제3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초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서초아파트지구 3주구 정비계획을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의 명칭 · 위치 및 면적
 가. 명칭 : 서초아파트지구
 나.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일대
 다. 면적(변경없음)

구분	지구명	위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서초아파트지구	서초구 서초동 일대	157,163.4	-	157,163.4	용도지구(서초아파트지구) 및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349호)

2. 서초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아파트지구 면적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구분	면적(㎡)				비 고
	계	1주구	2주구	3주구	
기정	157,163.4	-	38,603.0	118,560.4	용도지구(서초아파트지구) 및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349호)

나.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1) 토지이용계획 총괄표(변경없음)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면적(㎡)	비율(%)	면적(㎡)	비율(%)	
계		157,163.40	100.00	157,163.40	100.00	변경없음
주택용지	소 계	129,563.74	82.44	129,563.74	82.44	변경없음
	주택용지	129,563.74	82.44	129,563.74	82.44	변경없음
중심시설 용 지	소 계	5,336.74	3.40	5,336.74	3.40	변경없음
	지구중심	-	-	-	-	변경없음
	주구중심	-	-	-	-	변경없음
	분구중심	5,336.74	3.40	5,336.74	3.40	변경없음
도시계획 시설용지	소 계	22,262.92	14.16	22,262.92	14.16	변경없음
	도로용지	2,002.45	1.27	2,002.45	1.27	변경없음
	공원용지	8,372.94	5.33	8,372.94	5.33	변경없음
	완충녹지	11,887.53	7.56	11,887.53	7.56	변경없음
	학교용지	-	-	-	-	변경없음
	공공청사	-	-	-	-	변경없음

2) 주구별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가) 1주구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나) 2주구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다) 3주구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면적(㎡)	비율(%)	면적(㎡)	비율(%)	
계		118,560.40	100.00	118,560.40	100.00	변경없음
주택용지	소 계	99,976.03	84.32	99,976.03	84.32	변경없음
	주택용지	99,976.03	84.32	99,976.03	84.32	변경없음
중심시설 용 지	소 계	2,970.70	2.51	2,970.70	2.51	변경없음
	지구중심	-	-	-	-	변경없음
	주구중심	-	-	-	-	변경없음
	분구중심	2,970.70	2.51	2,970.70	2.51	변경없음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도시계획 시설용지	소 계	15,613.67	13.17	15,613.67	13.17	변경없음
	도로용지	413.20	0.35	413.20	0.35	변경없음
	공원용지	6,070.67	5.12	6,070.67	5.12	변경없음
	완충녹지	9,129.80	7.70	9,129.80	7.70	변경없음
	학교용지	-	-	-	-	변경없음
	공공청사	-	-	-	-	변경없음

3) 가로망 계획(변경없음)
4) 건축 규제계획(변경없음)
5) 중심시설 건축계획(변경없음)
6) 기존건축물 처리계획(변경없음)
7) 개발사업의 시행계획(변경없음)

3. 주요 변경내용(서초아파트지구 3주구 내 서초신동아아파트)
가. 획지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면적(㎡)	위치	주용도	건폐율	상한용적률	높이
기정	56,917.3	서초동 1333번지 일대	공동주택	20%이하	291.45%	지하4층, 지상 12~35층
변경	56,917.3	서초동 1333번지 일대	공동주택	20%이하	291.45%	125m이하 (39층이하)

변경내용	변경사유
○ 최고높이 변경 - 지상 12~35층 → 125m이하(39층이하)	○ 건물 층수 조정 등을 통하여 주동 배치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통경축을 확보하라는 「2022년 제23차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반영을 위함

4. 개발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변경 도서 : 생략

5.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동주택지원과(☎ 02-2133-7145) 및 서초구 재건축사업과(☎ 02-2155-7359)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비계획 결정도


서초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서초신동아 아파트
정비계획 결정도
범 례
대상구역계
주택용지
공 원
녹 지
도 로
291.45%
125m 이하 (최고 39층)
20% 이하
공동주택
소공원
완충녹지
scale 1:1,500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190호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345호(2009.9.10)로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36호(2010.9.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40호(2012.02.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76호(2013.06.0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66호(2016.06.1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56호(2017.02.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56호(2017.07.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08호(2018.09.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10호 (2019.3.2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27호(2020.10.22.),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63호(2020.11.19.),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264호(2021.06.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419호(2021.07.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589호(2021.10.2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0호(2022.01.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273호(2022.06.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21호(2022.07.28.),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45호(2022.08.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14호(2023.1.12.),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4호(2023.2.9.), 서울특별고시 제2023-77호(2023.3.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600호()2023.12.28.)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청량리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5조제5항,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 변경

구분	구역명	유형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청량리 재정비 촉진지구	중심지형	동대문구 용두·전농동 일대	370,742.7	감) 12,626.3	358,116.4	최초결정일: 2009.09.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45호)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연도 : 변경
 가. 기준년도 : 2010년
 나. 목표연도 : 2030년

3. 재정비촉진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 변경없음
 가.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부도심 기능 회복도모

나. 청량리재정비촉진구역 계획 변경을 통하여 낙후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 및 확충을 통하여 균형발전 도모 (청량리 광역중심의 기능을 회복하고 서울 동북권의 관문역할 수행)하며,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보다 나은 도시생활을 영위하기 위함

4.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지역(존치관리구역)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변경

가.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지역 결정 : 변경

구분	사업방식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계				370,742.7	감) 12,626.3	358,116.4	-
촉진지구	소계			148,485.9	-	148,485.9	-
	도시환경정비사업	청량리1재정비촉진구역	용두동 10-12일대	1,819.2	-	1,819.2	-
		청량리2재정비촉진구역	용두동 786일대	1,938.3	-	1,938.3	-
		청량리3재정비촉진구역	용두동 11-1일대	7,020.6	-	7,020.6	-
		청량리4재정비촉진구역	전농동 620-47일대	41,602.5	-	41,602.5	-
		용두1재정비촉진구역	용두동 26일대	51,665.9	-	51,665.9	-
		전농재정비촉진구역	용두동 494일대	28,202.4	-	28,202.4	-
	주택재개발	전농12재정비촉진구역	전농동 643일대	16,237.0	-	16,237.0	-
	개별건축	소계		222,256.8	감) 12,626.3	209,630.5	-
		존치지역 (존치관리구역)		222,256.8	감) 12,626.3	209,630.5	-

5. 촉진구역별 정비계획 결정 : 변경없음 (기재생략)

6. 존치지역(존치관리구역)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변경

가. 존치지역(존치관리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존치관리구역	-	222,256.8	감) 12,626.3	209,630.5	-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 구역 면적 변경 (222,256.8→209,630.5㎡)	• 2023년 6월 29일자(서고시 제2023-272호)로 변경 결정된 재정비촉진계획의 미반영 사항을 반영 • 동부청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 승인(동대문구 고시 제2023-150호) 결과 반영 및 재정비촉진지구(존치관리구역) 제척에 대한 구역·면적 변경

나.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도로결정(변경)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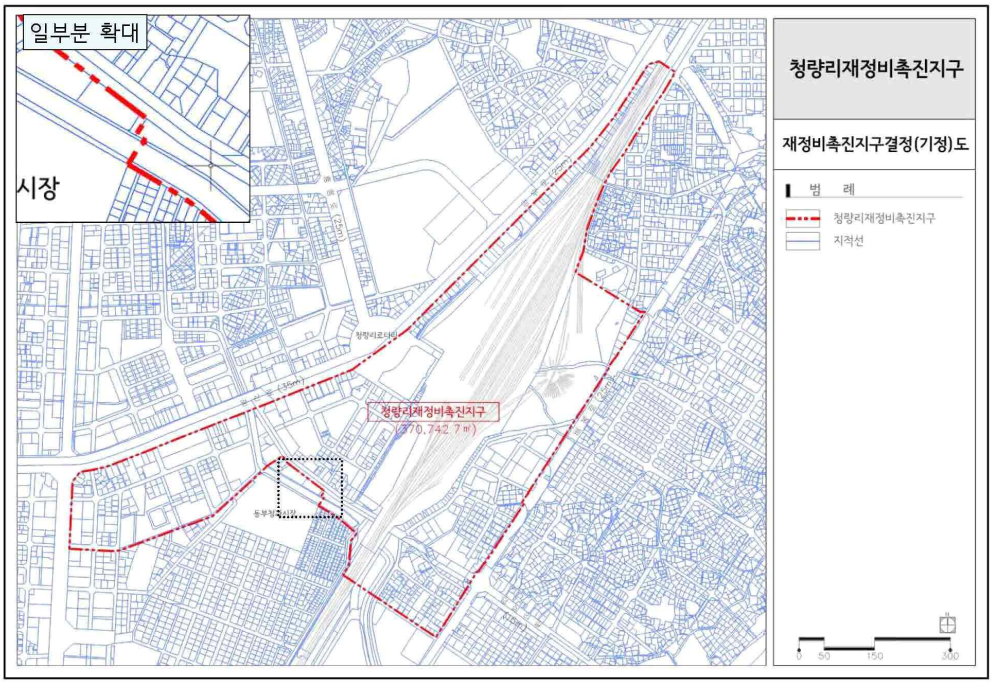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3	130	25~47	보조간선도로	2,100	오스카 극장 동측	전농동 광장	일반도로	-	서고 1998-187호 ('98.05.01)	답십리로
변경	대로	3	130	25~47	보조간선도로	2,100	오스카 극장 동측	전농동 광장	일반도로	-	서고 1998-187호 ('98.05.01)	구역내 선형 일부 변경

7.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관련사항은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회 결정도서」에 명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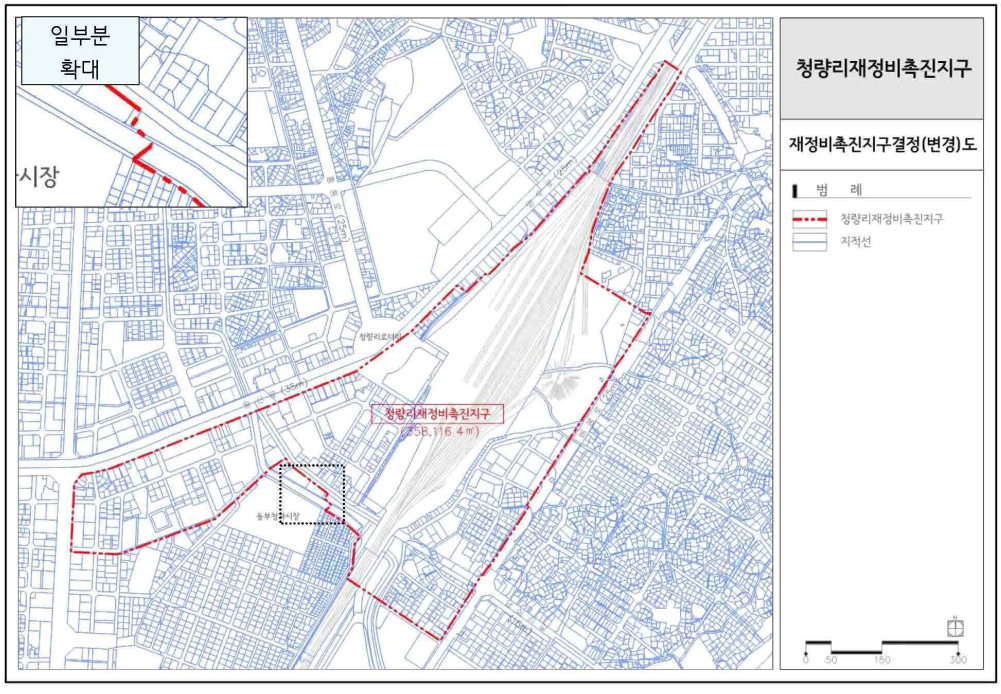
8.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 참조 (기재생략) (비치된 도서와 같음)

9.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02-2133-7217) 및 동대문구청 주거정비과(☎02-2127-4292)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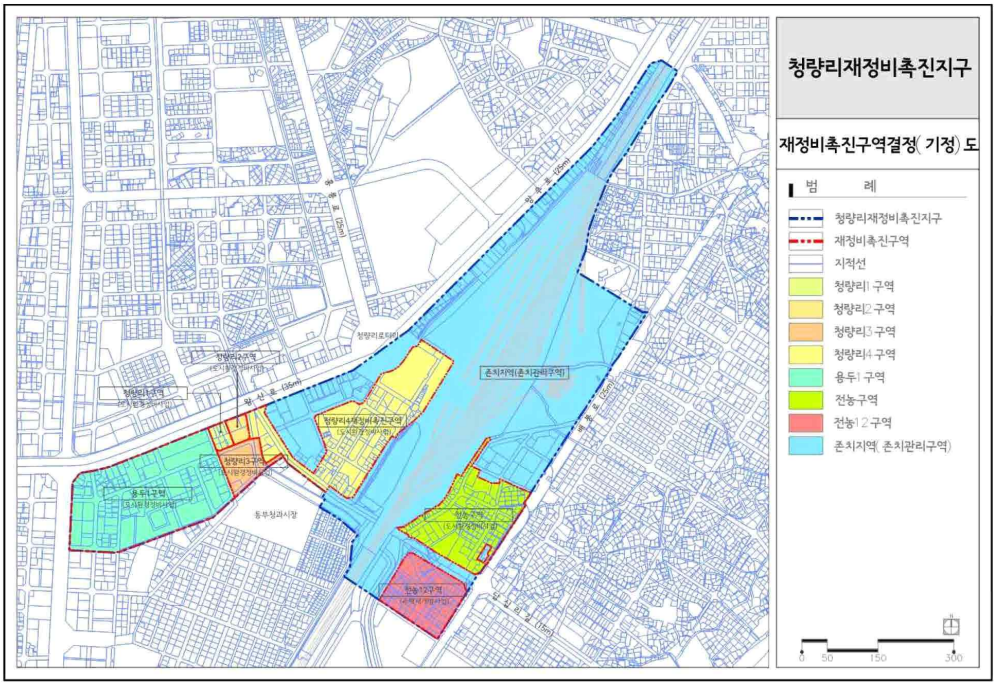
<재정비촉진지구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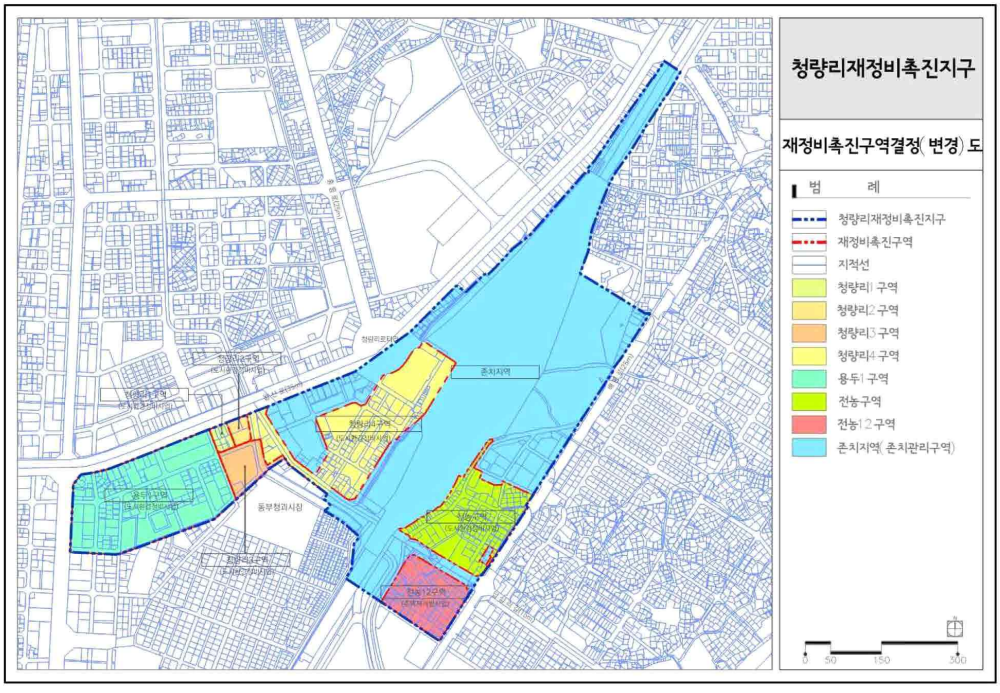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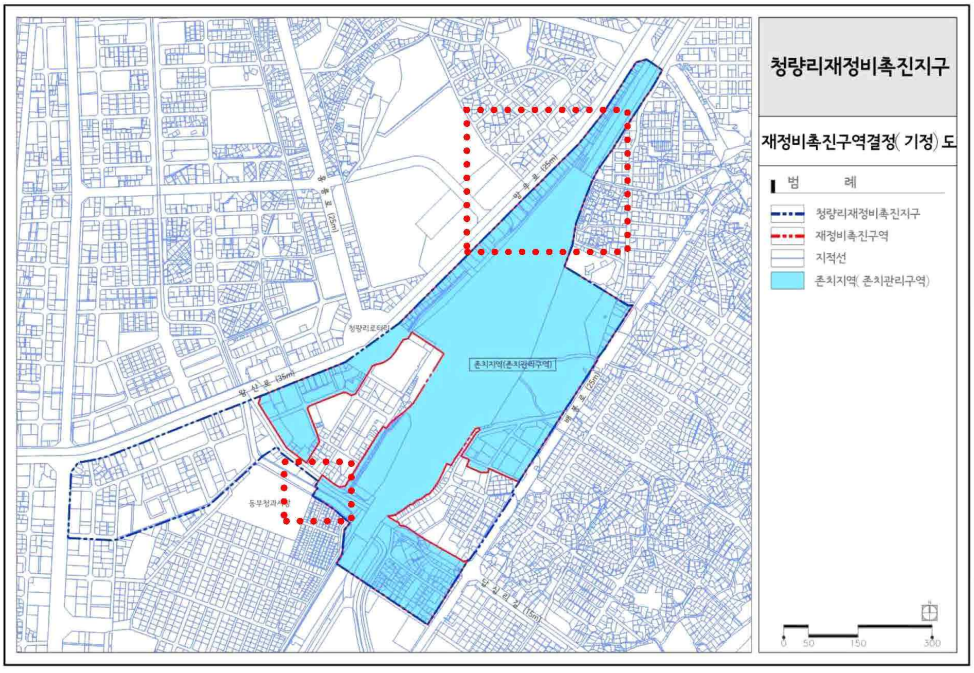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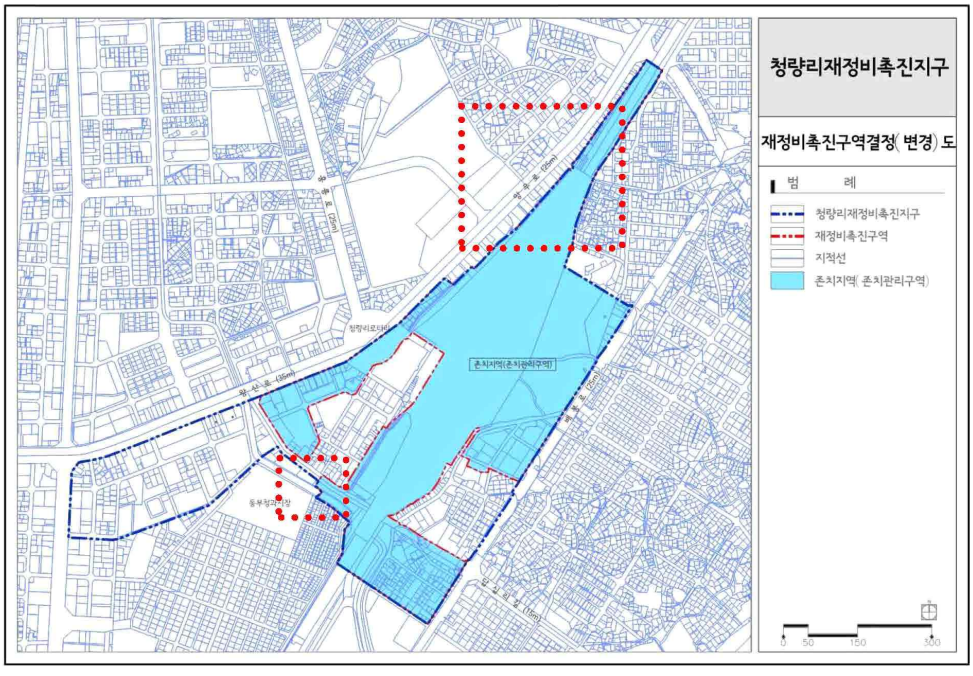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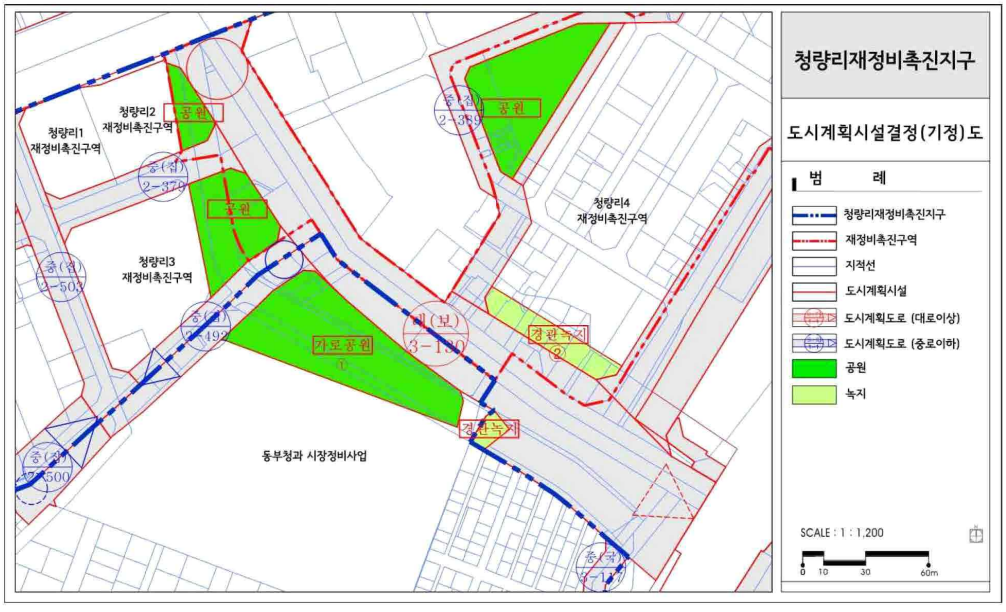
<존치지역(존치관리구역)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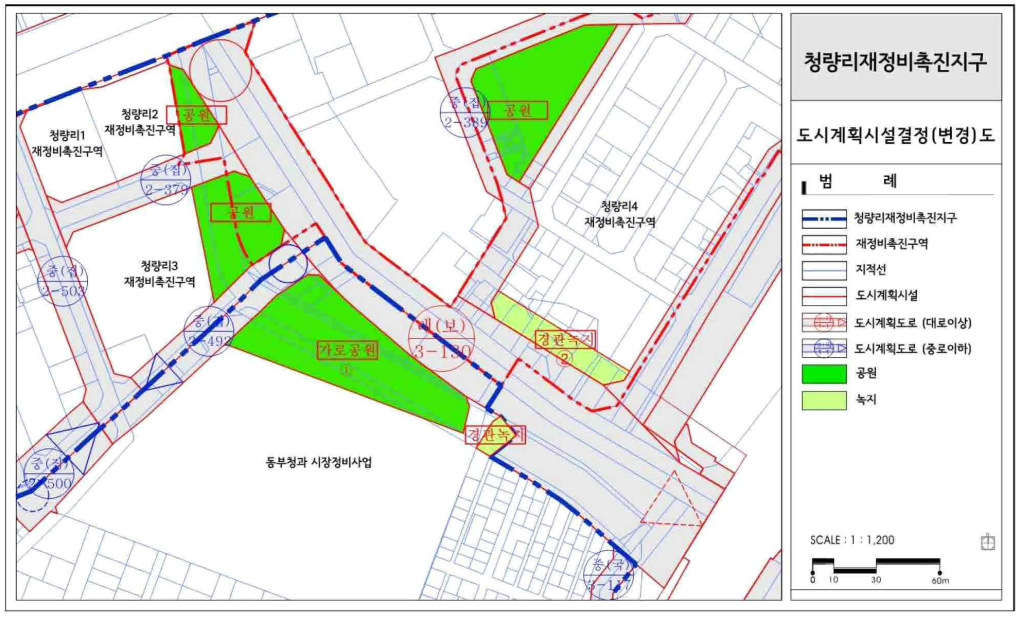
<존치지역(존치관리구역) 결정(변경)도>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기정)도>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191호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신림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21호(2008.04.10)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호(2009.01.0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96호(2010.08.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17호(2011.07.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74호(2012.10.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327호(2012.11.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90호(2013.03.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13호(2013.09.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73호(2016.06.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59호(2016.11.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80호(2017.05.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60호(2017.10.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38호(2018.08.0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96호(2019.03.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51호(2019.10.3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59호(2020.04.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631호(2021.11.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174호(2022.4.2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52호(2022.8.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61호(2022.8.25.)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신림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 제13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합니다.
2.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 유형 · 위치 · 면적 및 지정목적 : 변경없음

명칭	유형	위치	면적(㎡)			지정목적
			기 정	변경	변경후	
신림 재정비 촉진지구	주거 지형	관악구 신림동 일원	491,163.6	-	491,163.6	•노후 · 불량주택이 밀집되고, 도로 · 공원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신림동 일대의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한 종합적 · 체계적 도시정비를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나.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 변경

기준년도	목표연도		비 고
	기 정	변 경	
2006년	2028년	2029년	•신림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재정비촉진사업 단계별 추진계획 고려

다.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 변경

○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서」에 명시

라. 재정비촉진계획 : 변경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 변경

토지이용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491,163.6		491,163.6	100.0	· 도로 · 하천 중복면적 338.1㎡
주택용지		308,710.0	감) 68.1	308,641.9	62.9	-
상업업무용지		6,189.9	-	6,189.9	1.3	-
주거복합용지		6,436.0	-	6,436.0	1.3	-
종교용지		1,599.0	-	1,599.0	0.3	· 존치교회 2개소
기반시설용지	소계	168,566.8	증) 68.1	168,634.9	34.2	· 공원면적 549㎡제외
	도로	77,004.4	증) 351.5	77,355.9	15.6	· 공원면적 549㎡포함
	보행자전용도로	535.0	-	535.0	0.1	-
	공원	45,735.6	감) 703.0	45,032.6	9.1	-
	녹지	1,138.6	증) 2.1	1,140.7	0.2	-
	하천	23,759.9	증) 20.0	23,779.9	4.8	· 도림천 제2지류, 도로338.1㎡포함
	공공청사	2,435.0	-	2,435.0	0.5	· 119안전센터 1개소 · 삼성동사무소
	공공공지	-	증) 397.5	397.5	0.1	
	학교	14,212.0	-	14,212.0	2.9	· 신우초교 1개소(학교점유지부지) · 유치원 1개소
	복지시설	2,986.3	-	2,986.3	0.6	· 사회복지시설 2개소 · 성민종합복지관 존치 1개소
	주차장	1,309.0	-	1,309.0	0.3	-

2) 인구 · 주택수용계획 : 변경

○ 기정 : 21,970인/7,565호 → 변경 : 21,829인/7,513호

구 분		주 택 수(호)			인 구 수(인)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7,565	감) 52	7,513	21,970	감) 141	21,829	-
촉진구역	소 계	6,162	감) 52	6,110	16,638	감) 141	16,497	※세대(호)당 인구수 :2.7인/세대 (202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세대당 인구 적용)
	40㎡ 이하	565	감) 132	433	1,526	감) 357	1,169	
	40㎡~50㎡	146	-	146	394	-	394	
	50㎡~60㎡	2,017	증) 56	2,073	5,446	증) 151	5,597	
	60㎡~85㎡	2,591	증) 14	2,605	6,996	증) 38	7,034	
	85㎡ 초과	843	증) 10	853	2,279	증) 24	2,303	
존치관리구역		1,403	-	1,403	5,332	-	5,332	

3)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 변경

구분	개소			면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증감	변경	
합계	6	증) 1	7	19,230.3	증) 397.5	19,627.8	
초등학교	1	-	1	13,543	-	13,543	·기설치 1개소(신우초교)
유치원	1	-	1	669	-	669	
공공청사	2	-	2	2,435	-	2,435	·119안전센터 1개소 ·삼성동사무소
복지시설	2	-	2	2,583.3	-	2,583.3	·사회복지시설 3개소 (기존 설치 1개소 존치)
공공공지	-	증)1	1	-	증) 397.5	397.5	·공공공지 신설

4)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 변경

구분		개소			면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증감	변경	
합계		14	감) 2	12	46,897.2	감) 700.9	46,196.3	
공원	소계	11	감) 1	10	45,758.6	감) 703.0	45,055.6	
	근린공원	1	-	1	4,319.8	-	4,319.8	
	수변공원	4	감) 1	3	32,405.5	감) 703.0	31,702.5	
	소공원	5	-	5	6,841.6	-	6,841.6	
	어린이공원	1	-	1	2,191.7	-	2,191.7	
녹지	소계	3	감) 1	2	1,138.6	증) 2.1	1,140.7	
	경관녹지	3	감) 1	2	1,138.6	증) 2.1	1,140.7	

5) 교통계획 : 변경없음

6) 경관계획 : 변경없음

7)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변경없음

8) 촉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 변경

구분		위치	면적(㎡)			사업의 종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재정비촉진지구		-	491,163.6	-	491,163.6	-	
촉진구역(4개구역)			396,847.6	증) 2.3	396,849.9	-	
	신림1재정비촉진구역	신림동 808 일대	223,201.0	-	223,201.0	주택정비형 재개발	
	신림2재정비촉진구역	신림동 324-25일대	95,795.2	증) 2.3	95,797.5	주택정비형 재개발	
	신림3재정비촉진구역	신림동 316-55일대	35,136.4	-	35,136.4	주택정비형 재개발	
	신림4재정비촉진구역	신림동 306 일대	42,715.0	-	42,715.0	관리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존치지역		-	94,316.0	감) 2.3	94,313.7	-	
	신림2존치관리구역	신림동 393-19일대	3,884.8	-	3,884.8	-	
	신림3존치관리구역	신림동 395-43일대	5,230.7	-	5,230.7	-	
	존치건축물	신림동 1726	4,879.1	-	4,879.1	-	
		신림동 1721	5,351.0	-	5,351.0	-	
		신림동 1698	2,986.0	-	2,986.0	-	
		신림동 1699, 1733	9,871.0	감) 2.3	9,868.7	-	
		신림동 1724, 1729	6,180.0	-	6,180.0	-	
		신림동 300-1	400.0	-	400.0	-	
	존치시설	신림동 403-11 외	1,547.0	-	1,547.0	-	
		신림동 300-6	950.0	-	950.0	-	
		신림동 289-3 외	39493.4	-	39493.4	-	
		신림동 315 외	13,543.0	-	13,543.0	-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 계획 : 변경

(1) 신림1재정비촉진구역(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변경없음

(2) 신림2재정비촉진구역(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변경

용도지역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증감	변경		
합계		95,795.2	증) 2.3	95,797.5	100.0	
주거지역	소계	66,300.9	감) 17.7	66,283.2	69.2	
	1종	60.0	-	60.0	0.1	
	2종	66,240.9	감) 17.7	66,223.2	69.1	
자연녹지		29,494.3	증) 20.0	29,514.3	30.8	

(3) 신림3재정비촉진구역(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변경없음

(4) 신림4재정비촉진구역(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 변경없음

10)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 변경없음

11)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 변경

구분	구역명	구역면적(㎡)	기반시설면적(㎡)					
			계획기반시설①	계획기반시설내 국공유지 ②	기존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③	유상 매입시설 ④	순부담 ①-②-③-④ 면적(㎡)	순부담 ①-②-③-④ 비율(%)
기정	신림1재정비 촉진구역	223,201.0	50,134.9	14,796.3	21,218.4	669	25,528.9	11.4%
기정	신림2재정비 촉진구역	95,795.2	40,445.3	5,410.8	8,191.7	2,619	24,223.8	25.29%
변경	신림2재정비 촉진구역	95,797.5	40,513.4	5,478.9	8,191.7	2,619	24,223.8	25.29%
기정	신림3재정비 촉진구역	35,136.4	12,673.1	2,921.0	3,886.0	-	5,866.1	16.7%

12) 공공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 변경

구 분		전체세대수	임 대 주 택				
			합계	40㎡이하	40~50㎡	50~60㎡	60~85㎡
합계	기정	6,162	939	565	146	218	10
	변경	6,610	897	512	42	333	10
신림1재정비 촉진구역	기정	4,104	616	413	-	193	10
신림2재정비 촉진구역	기정	1,487	225	110	104	11	-
	변경	1,435	183	57	-	126	-
신림3재정비 촉진구역	기정	571	98	42	42	14	-

※ 조합원 주택을 포함한 전체 주택을 대상으로 추첨방식 적용

13)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14) 기타계획(방재계획, 정보화계획, 에너지순환계획, 자족성계획, 특성화계획, 여성친화적계획) : 변경없음

15) 광고물 관리계획 : 변경없음

16)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17)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 : 변경

(1) 신림1재정비촉진구역(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변경없음

(2) 신림2재정비촉진구역(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변경

(가)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재정비촉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변 경	주택재개발사업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324-25번지 일대	95,795.20	증) 2.3	95,797.5	신림동 1733-1 편입

※ 존치구역내의 필지인 1733-1도 신림2구역 내 편입으로 인한 면적 변경이며 지구면적 변경은 없음

(나) 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 : 변경

[기정]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95,795.2	100.0	338.1㎡ 미포함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37,826.3	39.5	
	도 로	5,083.3	5.3	하천 338.1㎡포함
	공 원	23,680.5	24.7	
	공공공지	-	-	
	녹 지	1,103.6	1.2	
	하 천	7,958.9	8.3	도로 338.1㎡포함
택 지 (획 지)	소 계	58,307.0	60.9	
	2-1	35,201.9	36.7	공동주택
	2-2	12,652.0	13.2	공동주택
	2-3	4,876.0	5.1	공동주택
	2-4	1,156.0	1.2	부대복리시설(종교시설)
	2-5	1,335.0	1.4	공공청사
	2-6	1,284.0	1.3	사회복지시설
	2-7	1,802.1	1.9	부대복리시설(종교시설)

[변경]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95,797.5	100.0	338.1㎡ 미포함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37,894.4	39.4	
	도 로	5,434.8	5.7	하천 338.1㎡포함
	공 원	22,977.5	23.9	
	공공공지	397.5	0.4	
	녹 지	1,105.7	1.1	
	하 천	7,978.9	8.3	도로 338.1㎡포함
택 지 (획 지)	소 계	58,241.2	60.6	
	2-1	34,912.8	36.3	공동주택
	2-2	12,607.9	13.1	공동주택
	2-3	4,885.5	5.1	공동주택
	2-4	1,156.0	1.2	부대복리시설(종교시설)
	2-5	1,335.0	1.4	공공청사
	2-6	1,284.0	1.3	사회복지시설
	2-7	2,060.0	2.1	부대복리시설(종교시설)

※ 도로 및 공원의 하천 중복결정 면적은 시설 면적에서 제외

2.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 변경

▢ 도 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중로	1	104	20~24	보조간선도로	5,500 (337)	신림동	시흥동계	건고 198호 ('71.4.17)	( )는 구역내 연장
기정	중로	3	453	12	집산도로	388 (73)	신림동 365-20	신림동 1704-10	서고시 121호 ('08.4.10)	( )는 구역내 연장
기정	중로	3	455	12	집산도로	183 (60)	신림동 299-25	신림동 841-3	서고시 121호 ('08.4.10)	( )는 구역내 연장
기정	중로	3	456	12	집산도로	112	신림동 1704-15	신림동 1704-14	서고시 121호 ('08.4.10)	하천일부중복결정
기정	소로	2	29	8~12	국지도로	104	신림동 320-29	신림동 320-48	서고시 207호 ('73.12.24)	하천일부중복결정
기정	소로	3	27	8~12	집산도로	359 (0)	신림동 841-3	신림동 326-1	서고시 207호 ('73.12.24)	( )는 구역내 연장
기정	소로	3	28	6	국지도로	46	신림동 300-9	신림동 300-9	서고시 207호 ('73.12.24)	( )는 구역내 연장
변경	소로	3	28	6	국지도로	108 (62)	신림동 300-9	신림동 299-25		
기정	소로	3	3	6	국지도로	25	신림동 844-1	신림동 844-1	서고시121호 ('08.4.10)	

▢ 공 원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②	청향원	수변공원	신림동 343-6일대	697.0 (697.0)	감) 697.0	-	서고시 121호 ('08.4.10)	( )는 구역내 면적
변경	③	은하수공원	수변공원	신림동 304-1일대	1,522.1	감) 6.0	1,516.1	서고시 121호 ('08.4.10)	
기정	④	삼성산생태공원	수변공원	신림동 319일대	19,386.4	-	19,386.4	서고시 121호 ('08.4.10)	
기정	①	새싹공원	소공원	신림동 808-633일대	195.0	-	195.0	서고시 121호 ('08.4.10)	

▢ 녹 지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④	녹지	경관녹지	신림동 1699일대	317.0	증) 788.7	1,105.7	서고시 121호 ('08.4.10)	경관녹지⑤와 통합
폐지	⑤	녹지	경관녹지	신림동 309-4일대	786.6	감) 786.6	-	서고시 121호 ('08.4.10)	

□ 공공공지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공공공지	신림동 302-8 일대	-	증) 397.5	397.5	-	

□ 공공청사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건축물의 범위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기정	②	공공청사	-	신림동 301-8일대	1,335.0	-	1,335.0	60% 이하	200% 이하	-	서고시 121호 ('08.4.10)	신림6,10동 사무소(통합) 어린이집 복합화
변경												삼성 동사무소(통합)

□ 사회복지시설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건축물의 범위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기정	①	사회 복지시설	신림동 301-3일대	1,284.0	-	1,284.0	60% 이하	200% 이하	-	서고시 121호 ('08.4.10)	

□ 하 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연장 (㎞)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변경	①	하천 (도림천)	지방 2급 하천	신림동 303, 187-1,703	영등포구 문래동 안양천 합류점	-	14.55 (0.534)	65	서고시 952호 ('66.4.13)	재정비촉진지구내 도림천 지류구간 추가결정 - B : 15~18m - L : 350m ( )는 구역내 연장 ※ 중로3-456,소로2-29 중복결정 ※ 둑마루 3m 확보를 위한 하천선형 변경

□ 유수지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①	유수지	저류시설	신림동 320일대	2,644.0	서고시 121호 ('08.4.10)	수변공원 중복결정
기정	②	유수지	저류시설	신림동 산79-4일대	2,544.5	서고시 121호 ('08.4.10)	수변공원 중복결정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변경

시설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공 동 이용시설	관리사무소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324-25번지 일대	361.94	증) 1,403.85	1,765.79	
	주민복지시설		2,572.59	증) 1,383.81	3,956.40	
	문고		365.42	증) 98.6	464.02	
	보육시설		647.71	증) 404.37	1,052.08	
	경로당		474.02	증) 185.98	660.00	
	경비실		120.75	증) 28.16	148.91	
	어린이놀이터		2,749.92	-	2,749.92	
	주민운동시설		1,057.12	-	1,057.12	

4.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변경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 고
	명 칭	면 적 (㎡)	명 칭	면 적 (㎡)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 거 이 주	
기정	신림2재정비 촉진구역	95,795.20	-	-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324-25번지 일대	444	-	-	444	-	-
변경		95,797.50				466	-	-	466	-	-

※ 누락된 건축물 22개동 추가

▢ 건축시설계획

[기정]

결 정 구 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주 된 용 도	건폐율 (%)	용적률 (%)	평균층수/ 최고층수
	명 칭	면 적 (㎡)	명 칭	면 적 (㎡)						
기정	신림2 재정비 촉진 구역	95,795.2	2-1	35,201.9	관악구 신림동 325-28번지 일대	90,459.53	공동주택	22 이하	260.0	23/28
			2-2	12,652.0	관악구 신림동 304-7번지 일대	31,018.70	공동주택	25 이하	246.0	17/18
			2-3	4,876.0	관악구 신림동 309-6번지 일대	12,160.01	공동주택	26 이하	250.0	14/15
			2-4	1,156.0	관악구 신림동 320-33번지 일대	2,312.00	부대복리시설 (종교시설)	60 이하	200이하	-
			2-5	1,335.0	관악구 신림동 301-8번지 일대	1,920.00	공공청사	60 이하	200이하	-
			2-6	1,284.0	관악구 신림동 301-1번지 일대	2,568.00	사회복지시설	60 이하	200이하	-
			2-7	1,802.1	관악구 신림동 341-8번지 일대	4,144.83	부대복리시설 (종교시설)	60 이하	230이하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립규모 : 세대당 전용면적 115㎡이하 (단, 종전 주택규모가 115㎡ 초과시 165㎡ 범위내 종전 주택규모 이하) • 건설비율 -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 94.9% 이상 (343세대 23.0%) - 세대당 전용면적 60㎡이하 : 31% 이상 (1,070세대 71.9%) • 건립예정세대수 : 1,487세대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법, 주택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함 • 신림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건축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변경]

결정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평균층수/ 최고층수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변경	신림2 재정비 촉진 구역	95,797.5	2-1	34,912.80	관악구 신림동 325-28번지 일대	90,769.52	공동주택	22 이하	260.0	23/28
			2-2	12,607.90	관악구 신림동 304-7번지 일대	31,008.45	공동주택	25 이하	246.0	17/18
			2-3	4,885.50	관악구 신림동 309-6번지 일대	12,203.26	공동주택	26 이하	250.0	14/15
			2-4	1,156.00	관악구 신림동 320-33번지 일대	1,043.19	부대복리시설 (종교시설)	60 이하	200이하	-
			2-5	1,335.00	관악구 신림동 301-8번지 일대	1,920.00	공공청사	60 이하	200이하	-
			2-6	1,284.00	관악구 신림동 301-1번지 일대	2,568.00	사회복지 시설	60 이하	200이하	-
			2-7	2,060.00	관악구 신림동 341-8번지 일대	3,314.13	부대복리시설 (종교시설)	60 이하	230이하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립규모 : 세대당 전용면적 115㎡이하 (단, 종전 주택규모가 115㎡ 초과시 165㎡ 범위내 종전 주택규모 이하) • 건설비율 -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 94.1% 이상 (1,351세대) - 세대당 전용면적 60㎡이하 : 69.3% 이상 (994세대) • 건립예정세대수 : 1,435세대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법, 주택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함 • 신림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건축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5. 정비사업 시행계획 : 변경없음

6.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 변경

구분	가구	면 적(㎡)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구 분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	58,307.0	감) 65.8	58,241.2	2-1	관악구 신림동 325-28번지 일대	35,201.90	감) 289.1	34,912.80	공동주택
					2-2	관악구 신림동 304-7번지 일대	12,652.00	감) 44.1	12,607.90	공동주택
					2-3	관악구 신림동 309-6번지 일대	4,876.00	증) 9.5	4,885.50	공동주택
					2-4	관악구 신림동 320-21번지 일대	1,156.00	-	1,156.00	부대복리시설 (종교시설)
					2-5	관악구 신림동 301-8번지 일대	1,335.00	-	1,335.00	공공청사
					2-6	관악구 신림동 301-1번지 일대	1,284.00	-	1,284.00	사회복지시설
					2-7	관악구 신림동 341-8번지 일대	1,802.10	증) 257.9	2,060.00	부대복리시설 (종교시설)

7.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변경

[기정]

건립 위치	부지면적 (㎡)	동수	연면적(㎡)		세대수	세대규모 (전용)	비고
신림2 재정비 촉진 구역 내	55,688.00	임대:3동 (분양+임대 :1동포함)	20,449.69	공 급 : 13,196.02	110(7.4%)	40㎡이하	
				공 유 : 485.85	104(7.0%)	40~50㎡이하	
				주차장 : 6,767.82	11(0.7%)	50~60㎡이하	
				계 : 20,449.69	225(15.1%)	계	

※ 주) 세대수 항목의 ( )는 전체 건립세대수에 대한 비율임

[변경]

건립 위치	부지면적 (㎡)	동수	연면적(㎡)		세대수	세대규모 (전용)	비고
신림2 재정비 촉진 구역 내	55,622.20	-	25,660.23 (9,650.19)	공 급 : 13,866.95	57(31.1%)	40 ㎡이하	
				공 유 : 1,157.55	126(66.9%)	50 ~60㎡이하	
				주차장 : 10,635.73	-	60㎡초과	
				계 : 25,660.23	183(12.8%)	계	

※ 주) 세대수 항목의 ( )는 전체 건립세대수에 대한 비율임

※ 변경사유 : 1. 임대주택 소셜믹스 반영에 따른 임대세대수 변경

※ 서울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22.12.) 기준에 따라 당초 전체 세대수의 15%로 적용하였으나 연면적의 10%로 변경하였으며 연면적 항목의 ( )는 전용면적을 기입한 사항임

(다)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재정비촉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신림2주택정비형재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324-25번지 일대	95,795.2	증) 2.3	95,797.5	-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 변경

▌ 용도지역 · 지구 결정(변경) 조서

용도지역			면적(㎡)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95,795.2	증) 2.3	95,797.5	100.0
주거 지역	소 계		66,300.9	감) 17.7	66,283.2	69.2
	일반 주거 지역	제1종	60.0	-	60.0	0.1
		제2종	66,240.9	감) 17.7	66,223.2	69.1
자연녹지			29,494.3	증) 20.0	29,514.3	30.8

▌ 기반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변경)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중로	1	104	20~24	보조 간선도로	5,500 (337)	신림동	시흥동계	건고 198호 ('71.4.17)	( )는 구역내 연장
기정	중로	3	453	12	집산도로	388 (73)	신림동 365-20	신림동 1704-10	서고시 121호 ('08.4.10)	( )는 구역내 연장
기정	중로	3	455	12	집산도로	183 (60)	신림동 299-25	신림동 841-3	서고시 121호 ('08.4.10)	( )는 구역내 연장
기정	중로	3	456	12	집산도로	112	신림동 1704-15	신림동 1704-14	서고시 121호 ('08.4.10)	하천일부중복결정
기정	소로	2	29	8~12	국지도로	104	신림동 320-29	신림동 320-48	서고시 207호 ('73.12.24)	하천일부중복결정
기정	소로	3	27	8~12	집산도로	359 (0)	신림동 841-3	신림동 326-1	서고시 207호 ('73.12.24)	( )는 구역내 연장
기정	소로	3	28	6	국지도로	46	신림동 300-9	신림동 300-9	서고시 207호 ('73.12.24)	
변경	소로	3	28	6	국지도로	108 (62)	신림동 300-9	신림동 299-25	-	
기정	소로	3	3	6	국지도로	25	신림동 844-1	신림동 844-1	서고시121호 ('08.4.10)	

나) 공 원(변경)

●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②	청향원	수변공원	신림동 343-6일대	697 (697)	감) 697	-	서고시 121호 ('08.4.10)	( )는 구역내 면적
변경	③	은하수공원	수변공원	신림동 304-1일대	1,522.1	감) 6.0	1,516.1	서고시 121호 ('08.4.10)	
기정	④	삼성산생태공원	수변공원	신림동 319일대	19,386.4	-	19,386.4	서고시 121호 ('08.4.10)	
기정	①	새싹공원	소공원	신림동 808-633일대	195.0	-	195.0	서고시 121호 ('08.4.10)	

※ ( )는 구역내 면적

다) 녹 지(변경)

●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④	녹지	경관녹지	신림동 1699일대	317.0	증) 788.7	1,105.7	서고시 121호 ('08.4.10)	경관녹지⑤와 통합
폐지	⑤	녹지	경관녹지	신림동 309-4일대	786.6	감) 786.6	-	서고시 121호 ('08.4.10)	

라) 공공공지(신설)

● 공공공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공공공지	신림동 302-8 일대	-	증) 397.5	397.5	-	

마) 공공청사(변경)

● 공공청사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건축물의 범위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기정	②	공공청사	–	신림동 301-8일대	1,335.0	–	1,335.0	60% 이하	200% 이하	–	서고시 121호 ('08.4.10)	신림6,10동 사무소(통합) 어린이집 복합화
변경												삼성 동사무소(통합)

바) 사회복지시설(변경없음)

● 사회복지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건축물의 범위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기정	①	사회 복지시설	신림동 301-3일대	1,284.0	–	1,284.0	60% 이하	200% 이하	–	서고시 121호 ('08.4.10)	

사) 하 천(변경)

● 하천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연장 (㎞)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변경	①	하천 (도림천)	지방 2급 하천	신림동 303, 187-1,703	영등포구 문래동 안양천 합류점	–	14.55 (0.534)	65	서고시 952호 ('66.4.13)	재정비촉진지구내 도림천 지류구간 추가결정 B: 15~18m L: 350m ・( )는 구역내 연장 ※ 중로3-456,소로2-29 중복결정 ※ 둑마루 3m 확보를 위한 하천선형 변경

아) 유수지(변경없음)

● 유수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유수지	저류 시설	신림동 320일대	2,644.0	서고시 121호 ('08.4.10)	수변공원 중복결정
기정	②	유수지	저류 시설	신림동 산79-4일대	2,544.5	서고시 121호 ('08.4.10)	수변공원 중복결정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변경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구	면 적(㎡)			획 지					비 고
				구 분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2	58,307.0	감) 65.8	58,241.2	2-1	관악구 신림동 325-28번지 일대	35,201.9	감) 289.1	34,912.8	공동주택
				2-2	관악구 신림동 304-7번지 일대	12,652.0	감) 44.1	12,607.9	공동주택
				2-3	관악구 신림동 309-6번지 일대	4,876.0	증) 9.5	4,885.5	공동주택
				2-4	관악구 신림동 320-21번지 일대	1,156.0	-	1,156.0	부대복리시설 (종교시설)
				2-5	관악구 신림동 301-8번지 일대	1,335.0	-	1,335.0	공공청사
				2-6	관악구 신림동 301-1번지 일대	1,284.0	-	1,284.0	사회복지시설
				2-7	관악구 신림동 341-8번지 일대	1,802.1	증) 257.9	2,060.0	부대복리시설 (종교시설)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가) 건축물의 주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획지	주용도	비고
기정	2-1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공동주택
기정	2-2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공동주택
기정	2-3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공동주택
기정	2-4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에 따른 부대복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공동주택에 따른 종교집회장	부대복리시설 (종교시설)
기정	2-5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공공청사
기정	2-6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기정	2-7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에 따른 부대복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공동주택에 따른 종교집회장	부대복리시설 (종교시설)

나) 건축물의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 분	지역	건폐율	비고
기정	제2종일반주거지역	60%	

다) 용적률계획

구 분	획지	용도			비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기정	2-1	190	-	260	
기정	2-2	190	-	246	
기정	2-3	190	-	250	
기정	2-4	190	-	200	
기정	2-5	190	-	200	
기정	2-6	190	-	200	
기정	2-7	190	-	230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사항
  - 해당없음

• 상한용적률 완화 사항

구분	획지	용적률 완화		비고
		공공시설 기부채납	소형주택 건설	
기정	2-1, 2-2, 2-3	62%	-	총 62%

라) 높이계획

구 분	획지	높이기준	비고
기정	2-1	28층이하	공동주택
기정	2-2	18층이하	공동주택
기정	2-3	15층이하	공동주택
기정	2-4	관계법령에 따름	부대복리시설 (종교시설)
기정	2-5	관계법령에 따름	공공청사
기정	2-6	관계법령에 따름	사회복지시설
기정	2-7	관계법령에 따름	부대복리시설 (종교시설)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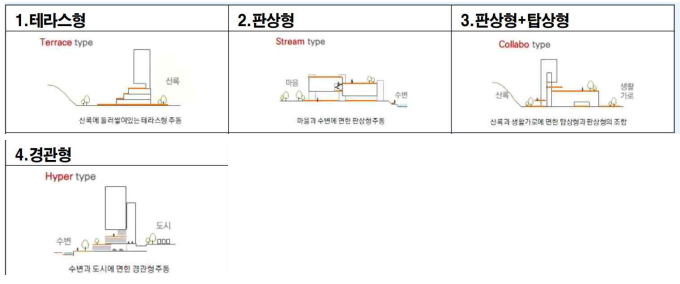
구분	적용	계획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1m	획지 2-3	소로 2-29변, 소로3-3변	
건축한계선 2m	획지 2-1, 2-2, 2-3	중로 3-453변, 도림천변	
건축한계선 3m	획지2-1, 2-2, 2-3	도림천변, 수변공원변, 호암로변, 2-7획지변	

▌경관계획

가)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계획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커뮤니티 및 근린생활시설 배치구간	도림천 인접지역 (획지2-1)	• 수변공간과 주변 오픈 스페이스와 연계한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 배치(권장)	
	수변공원과 도로변 인접지역 (획지2-2, 2-3)	• 입주민과 지역 주민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 및 개방형 커뮤니티시설 배치(권장)	

나)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계획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주동의 유형 및 형태	전구역	• 자연과 도시의 연계 및 경관을 고려하여 다양한 주거유형으로 계획 • 주동의 다양한 층수변화, 배치, 교차 등 건축적 요소의 다양화를 통해 시각적으로 특색있고 입체적인 주동형태 계획 	

다) 경관에 관한 계획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개방감	획지2-1	• 관악산도시자연공원구역 녹지의 흐름을 고려하여 열린 도시경관 조성 • 저층부 일부 필로티 계획을 통한 단지 내 외부의 공간 연계	
특화거리	획지2-1, 2-2, 2-3	• 수변공원 및 도림천 보행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역 주민의 활동 공간 조성 • 연도형 주거 및 저층부 근린생활시설을 통한 활력있는 가로경관 조성	

▌환경관리계획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고
자연생태환경	생태 네트워크	녹지·수생태 연결성 확보	○	·녹지면적 Ⅲ, 녹지모양Ⅲ, 내부연결성Ⅰ, 외부연결성Ⅲ	·조경 및 녹지계획에 반영하여 주변 녹지와 연계강화 실시	
	비오톱	비오톱 보전 등급 향상	○	·비오톱유형평가 대부분 5등급(일부 2, 3, 4등급), 개별비오톱은 대부분 평가제외지역 및 일부 2등급	·경관녹지, 공원 및 조경공간의 확보를 통한 열섬화 방지 등 실시	
토지환경	지형변동	절성토비율 20%미만	-	·지형변화 최소화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	
		지형변동 비율30%미만	-	·지형변화 최소화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	
물환경	물순환 (수리수질)	생태면적률 30%	○	·적용 생태면적률 30.06%	·자연지반녹지, 투수포장 등 다양한 녹지를 반영하여 생태면적률을 높이도록 설계	
	수질	수질 등급 유지 및 오염 최소화	○	·토사유출량 변화 예상 ·생활오수 발생	·공사시 수질저감계획 수립 ·우·오수 처리계획 수립	
대기환경	바람 및 미기후	바람길 확보	○	·주변 지역에 대한 바람 흐름의 차단예상(풍하방향 풍속증가, 와류생성 등)	·바람의 진행방향을 고려한 건물 배치 및 건물높이 계획 ·대상지 내 녹지를 확보함으로써 풍속의 변화를 최소화할 계획임.	
	대기질 (온실가스)	대기오염 최소화	○	·공사시 비산먼지 발생에 의한 영향 ·운영시 난방 및 전력사용에 의한 배출가스 발생 ·운영시 온실가스 발생	·공사시 방진망 설치, 공사장 내 살수계획 ·운영시 청정연료 사용	
생활환경	친환경적 자원순환	폐기물 발생량 최소화	○	·운영시 생활폐기물 및 분뇨 발생	·운영시 분리수거 및 재활용을 통한 쓰레기 감량화 실시	
	소음·진동	소음 및 진동 최소화	○	·공사시 투입장비에 의한 소음발생 ·운영시 교통소음발생	·공사시 가설방음판넬설치 운영 ·운영시 녹지공간조성으로 소음감소	
	경관	가로녹시율 35%	○	·조경녹지 및 가로녹지 조성	·조경공간의 확보를 통한 녹시율 상승계획	
		조망권 확보	○	·경관변화 발생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계획 수립	
		Skyline 보전	○	·주변 시설물과의 조화	·외부 건축물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 형성되도록 계획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여가공간 최대확보	○	·사업지구 내 휴식·여가공간 부족하여 당해 조성 필요	·경관녹지, 공원, 획지 등을 조성하고 인근 녹지를 활용하여 휴식공간 조성계획	
	보행 친화공간	보행자전용도로 계획수립	-	·기존 보행동선 유지 및 보행자를 위한 가로공간조성	·휴식과 여가공간과의 연계성 확보	
		자전거전용도로 계획수립	-	·대지면적이 작아 자전거 도로 확보에 한계가 있음	-	
		자전거보관소 15대/100unit	-	·자전거 보관소 설치 미고려	-	

▌공공주택(의무) 건설에 관한 결정조서

○ 모든 공공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공동주택(의무) 등은 세입자 주거대책 및 도시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주택으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 주택의 규모별 비율(정비계획)

구분	전체 세대수	전체비율 (%)	공공임대주택 세대수			공공임대주택 비율(%)		
			계	공공주택 (의무)	공공주택 (법적상한 용적률 완화)	전체세대수 대비	전체비율	공공임대중 소형주택
합계	1,435	100.0	183	183	-	12.8	100.0	-
40㎡이하	82	5.7	57	57	-	4.0	31.2	-
40~50㎡	-	-	-	-	-	-	-	-
50~60㎡	912	63.6	126	126	-	8.8	68.8	-
60~85㎡	357	24.9	-	-	-	-	-	-
85㎡초과	84	5.9	-	-	-	-	-	-

※ 공공주택은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토지등소유자의 동 · 호수 선정시 함께 추첨하도록 한다.

(3) 신림3재정비촉진구역(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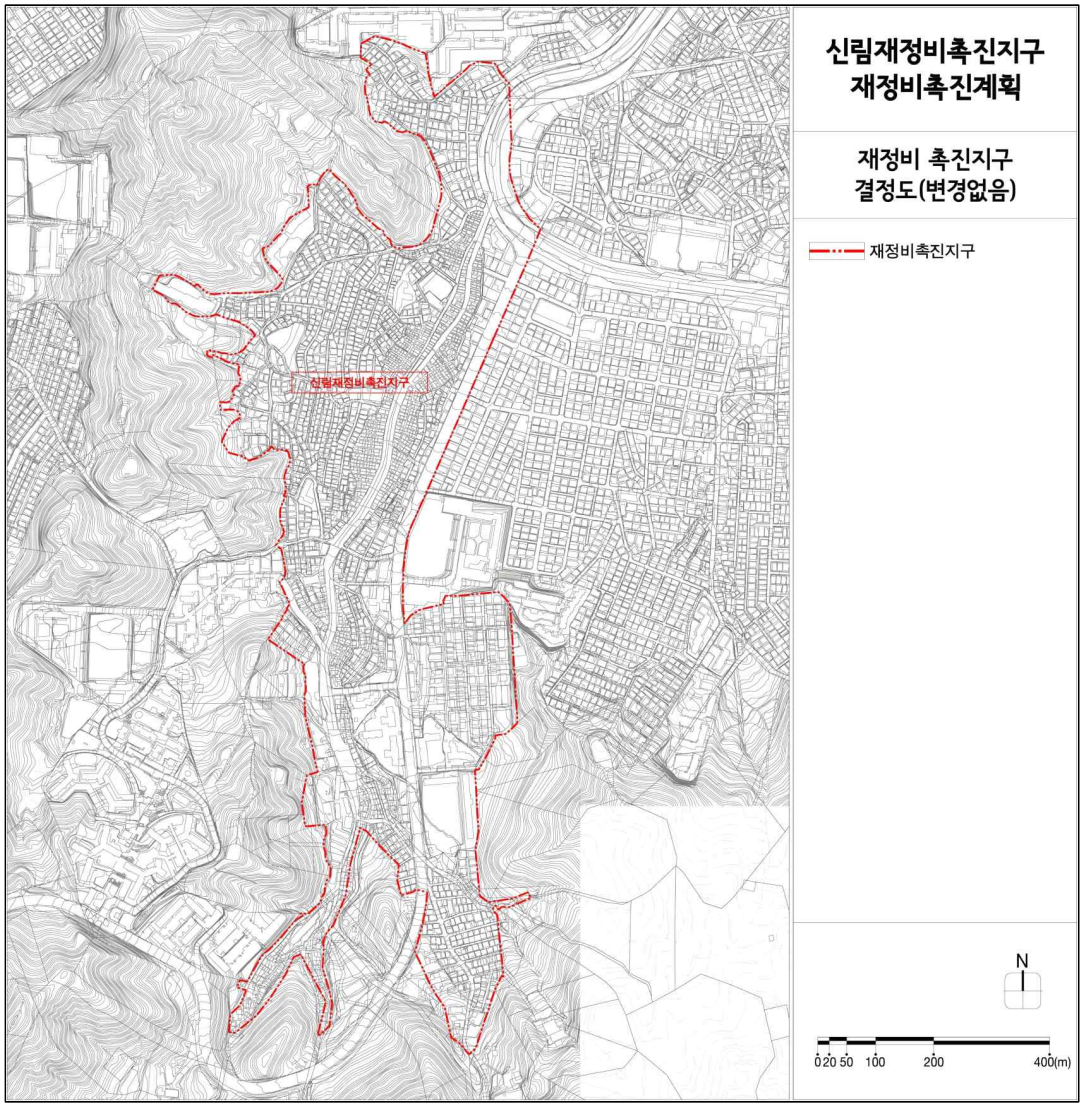
(4) 신림4재정비촉진구역(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 변경없음

마. 관계도서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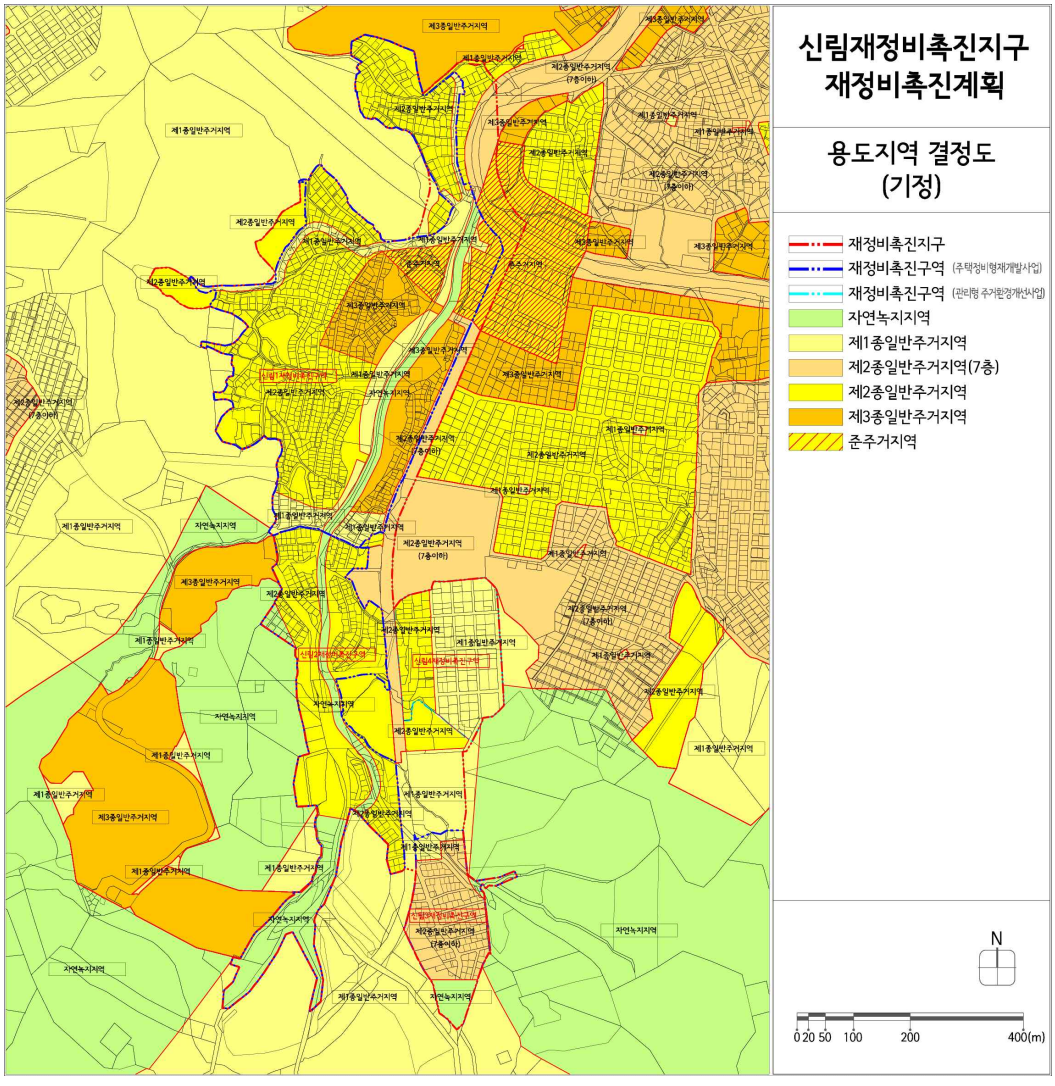
바.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2133-7227) 및 관악구 도시계획과(☎02-879-6382)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붙임] 신림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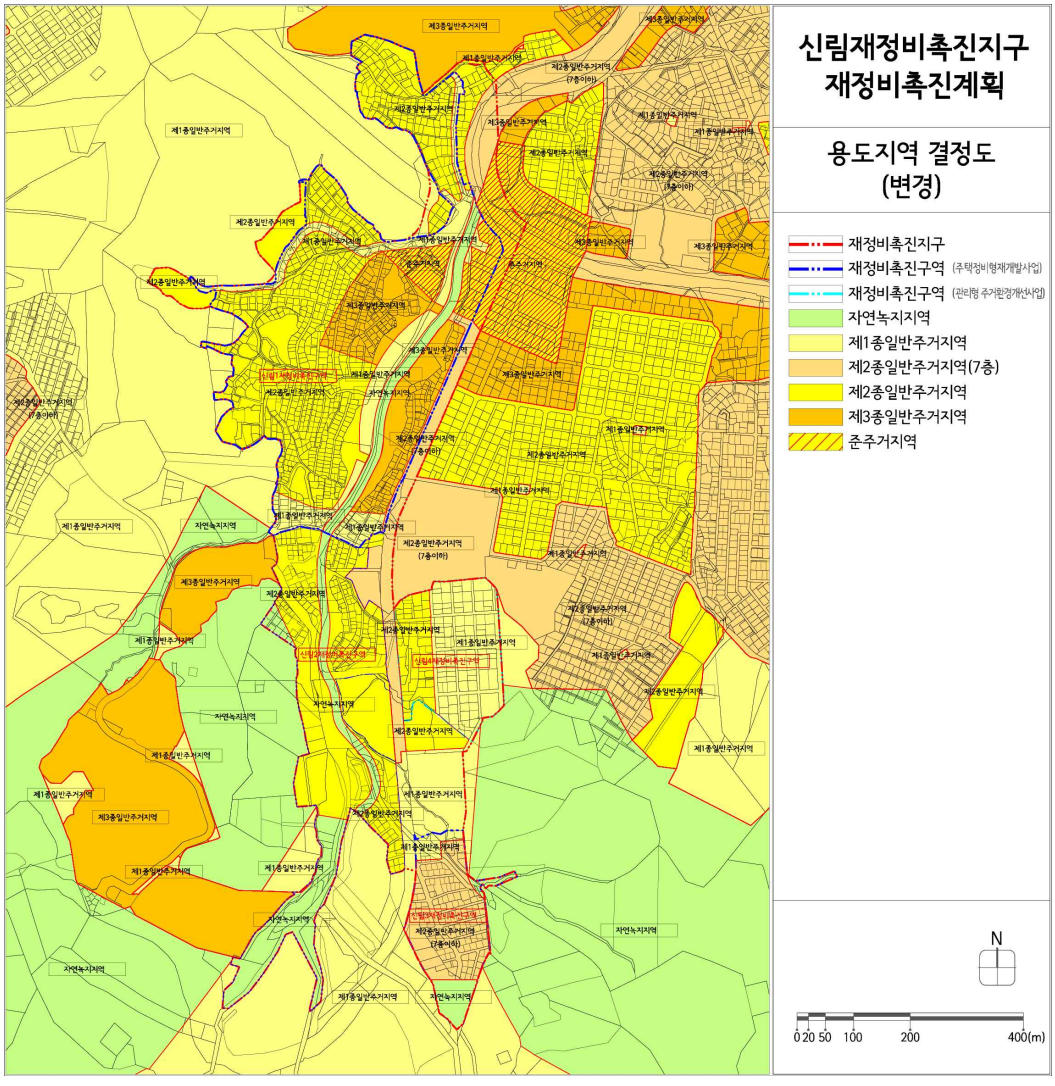
[신림재정비촉진지구 결정도]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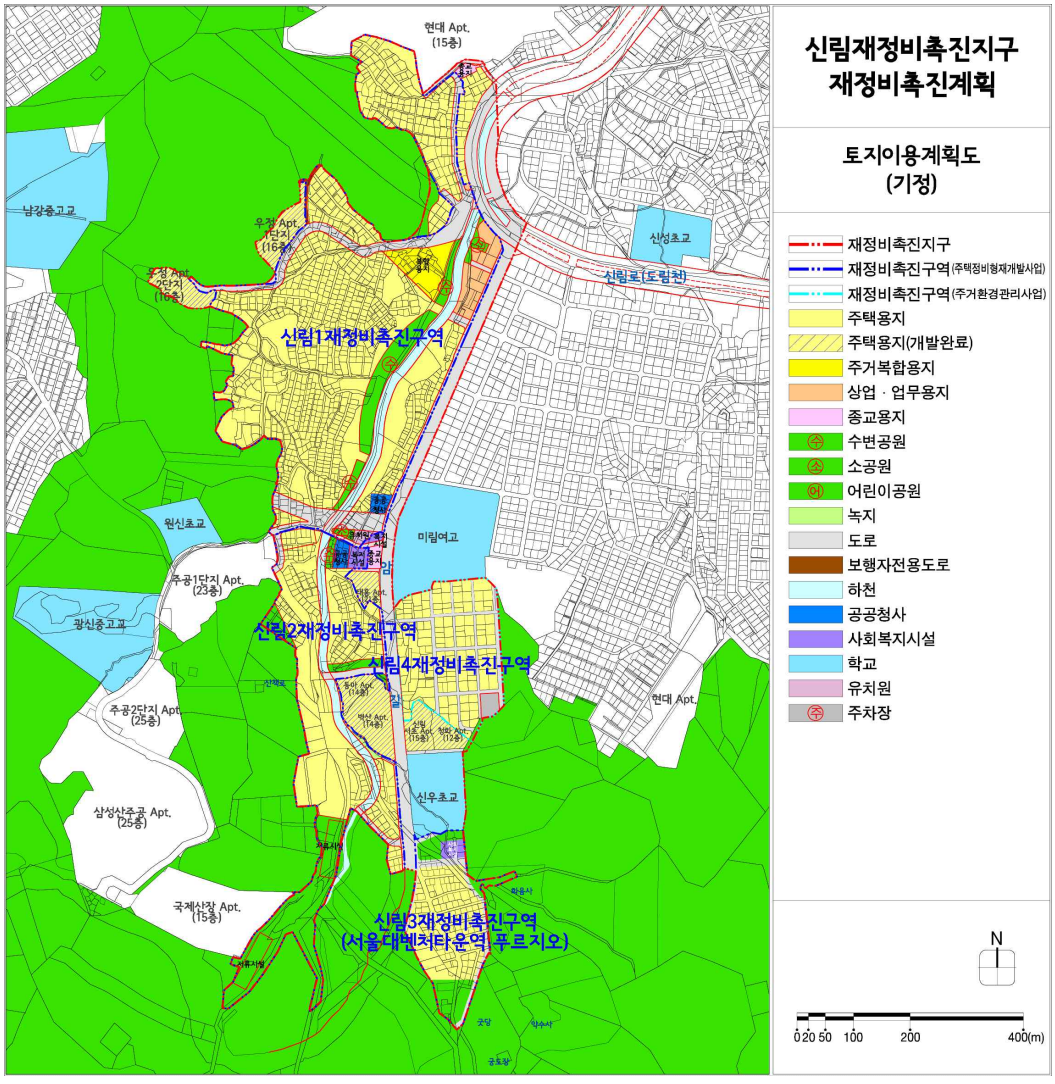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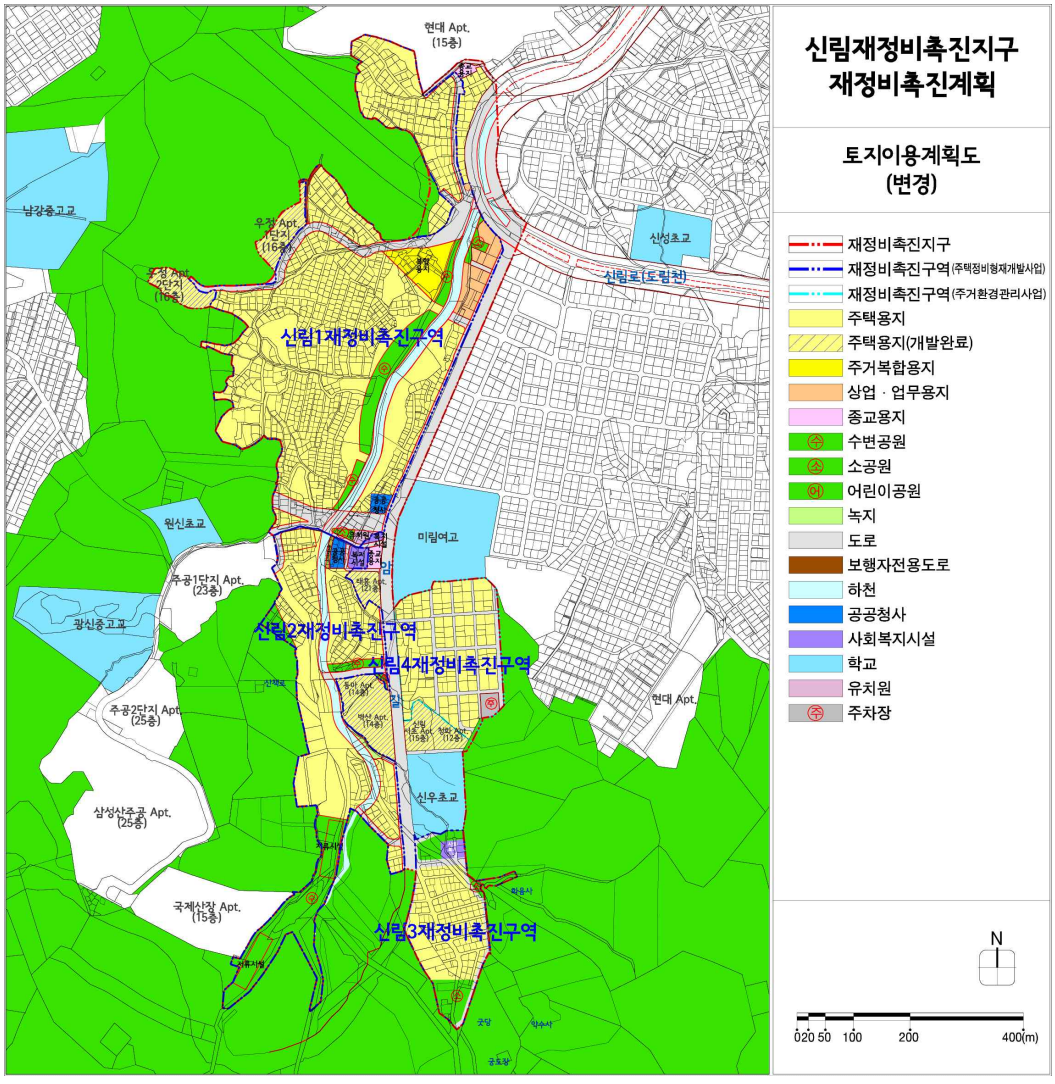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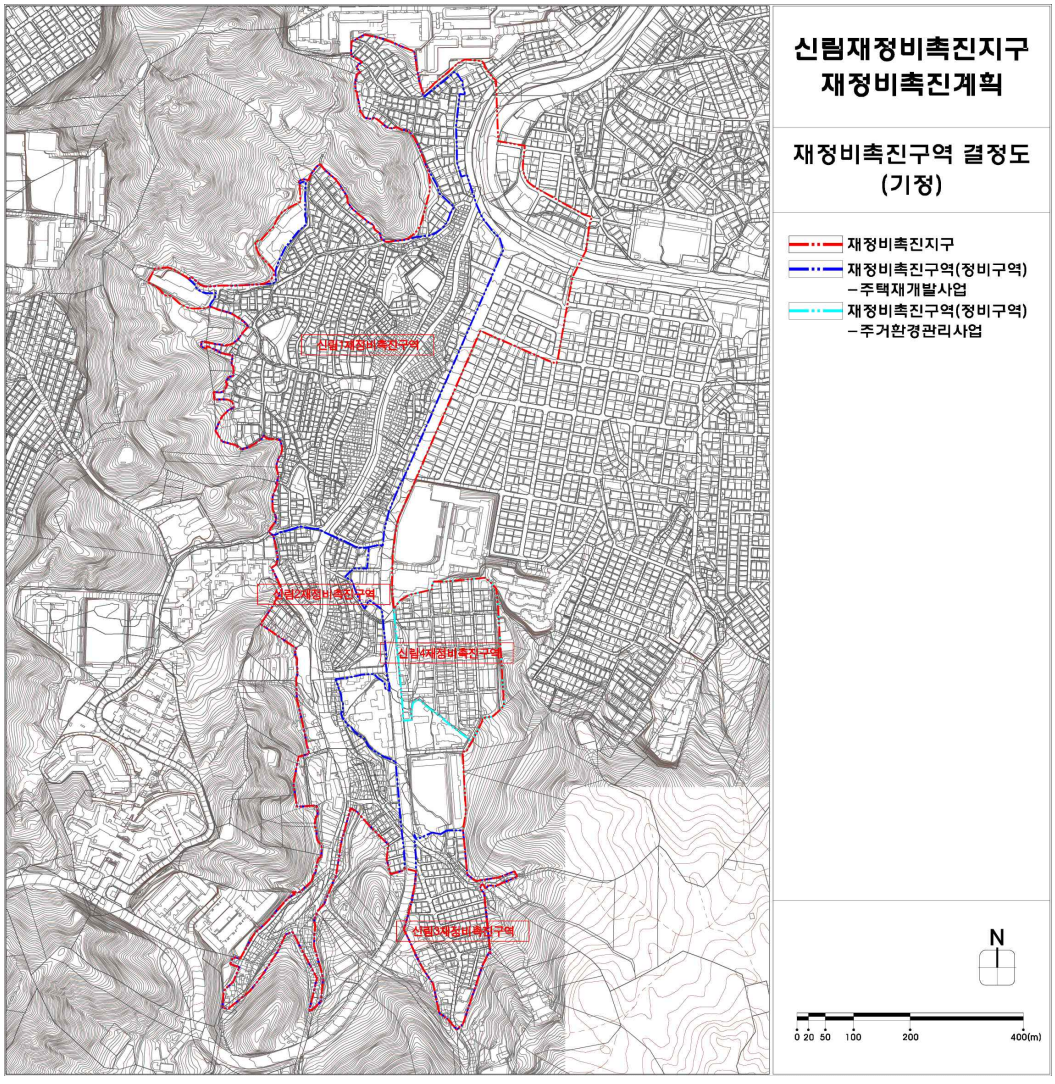
[토지이용계획도] (기정)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토지이용계획도
(기정)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구역(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재정비촉진구역(주거환경관리사업)
주택용지
주택용지(개발완료)
주거복합용지
상업 · 업무용지
종교용지
수변공원
소공원
어린이공원
녹지
도로
보행자전용도로
하천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주차장
신림1재정비촉진구역
신림2재정비촉진구역
신림3재정비촉진구역
(서울대벤처타운역 푸르지오)
신림4재정비촉진구역
신림로(도림천)
현대 Apt.
(15층)
남강중고교
신성초교
원신초교
미림여고
주공1단지 Apt.
(23층)
광신중고교
주공2단지 Apt.
(25층)
삼성삼주공 Apt.
(25층)
국제산장 Apt.
(15층)
신우초교
N
0 20 50 100 200 40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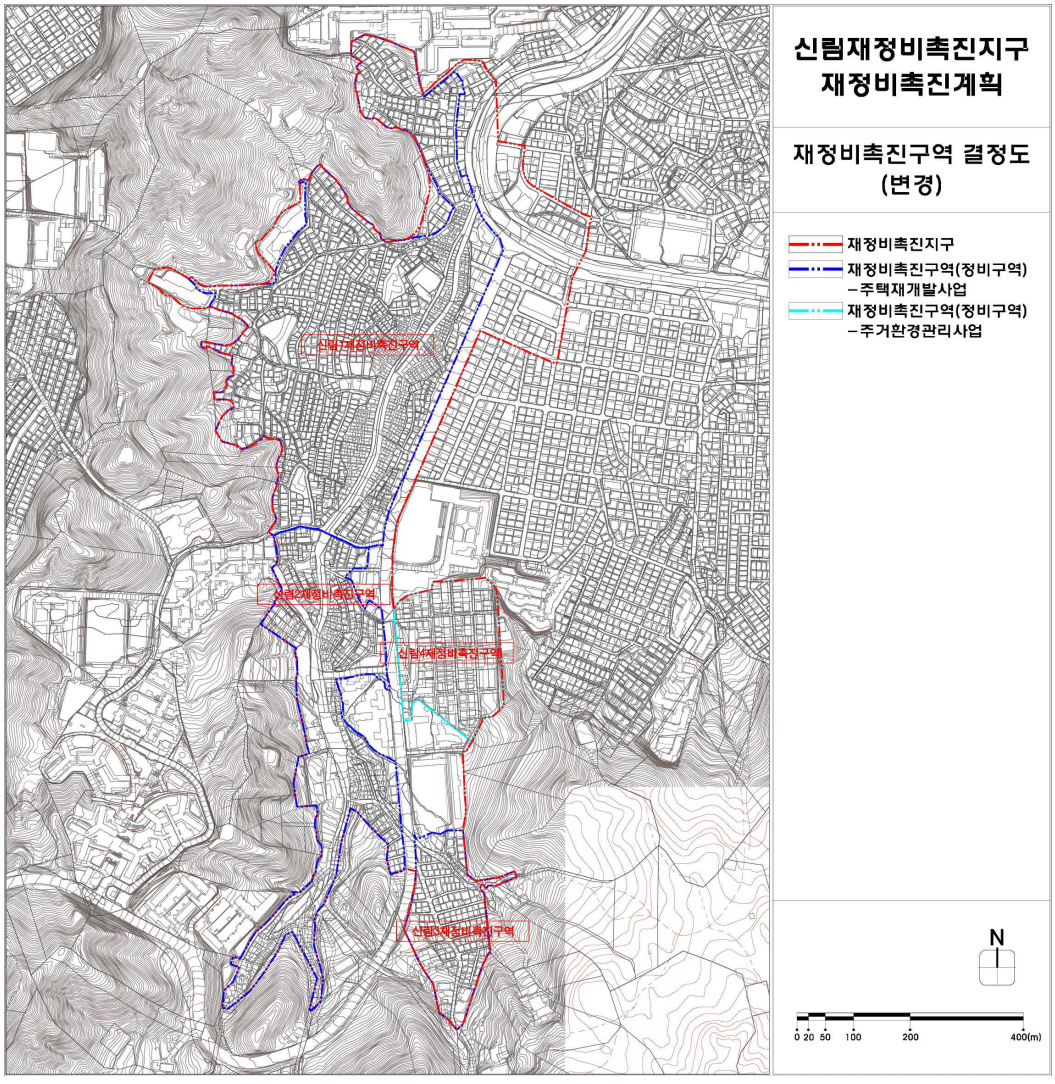
[토지이용계획도] (변경)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토지이용계획도
(변경)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구역(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재정비촉진구역(주거환경관리사업)
주택용지
주택용지(개발완료)
주거복합용지
상업 · 업무용지
종교용지
수변공원
소공원
어린이공원
녹지
도로
보행자전용도로
하천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주차장
N
0 20 50 100 200 400(m)
신림1재정비촉진구역
신림2재정비촉진구역
신림3재정비촉진구역
신림4재정비촉진구역
신림로(도림천)
현대 Apt.
(15층)
남강중고교
신성초교
원신초교
미림여고
광신중고교
주공1단지 Apt.
(23층)
주공2단지 Apt.
(25층)
삼성삼주공 Apt.
(25층)
국제상장 Apt.
(15층)
신우초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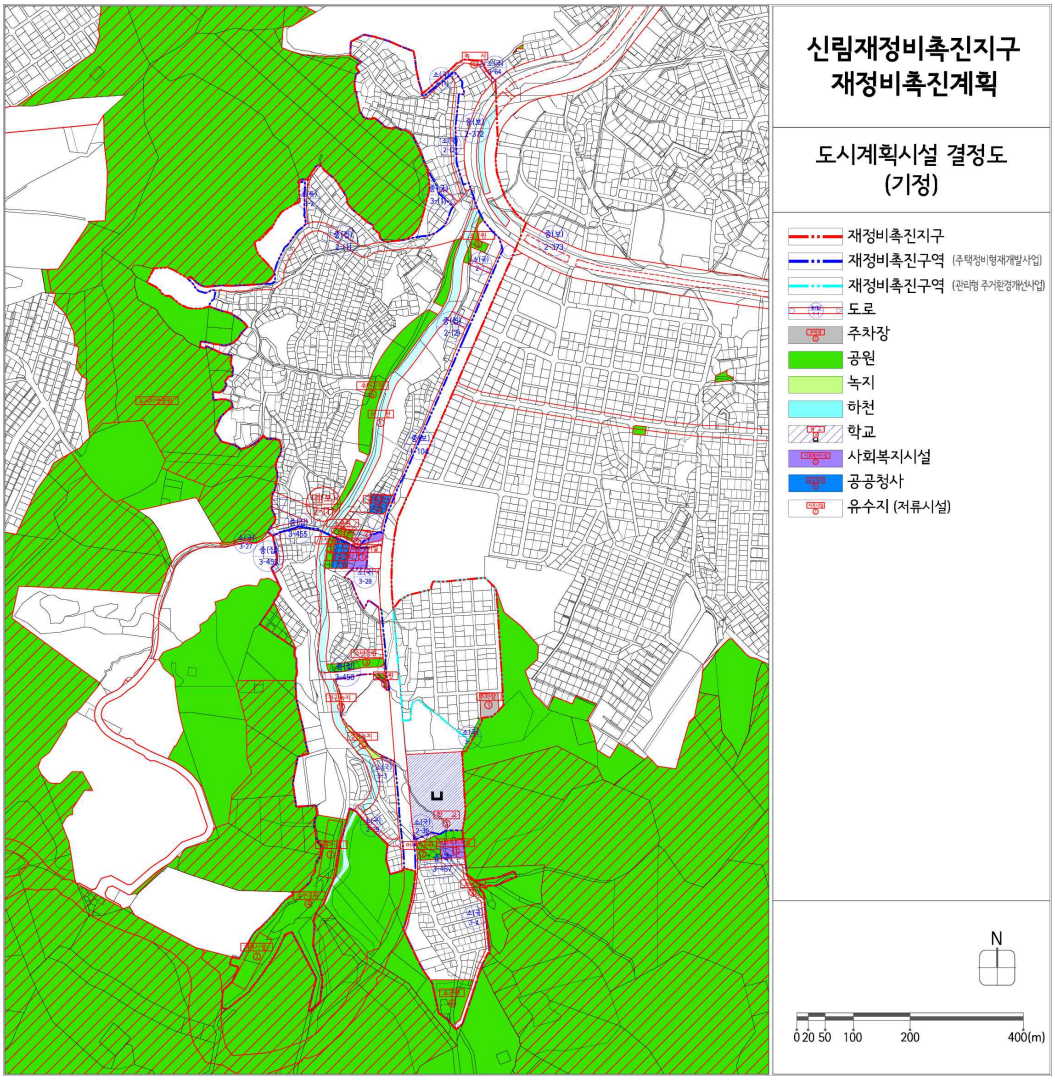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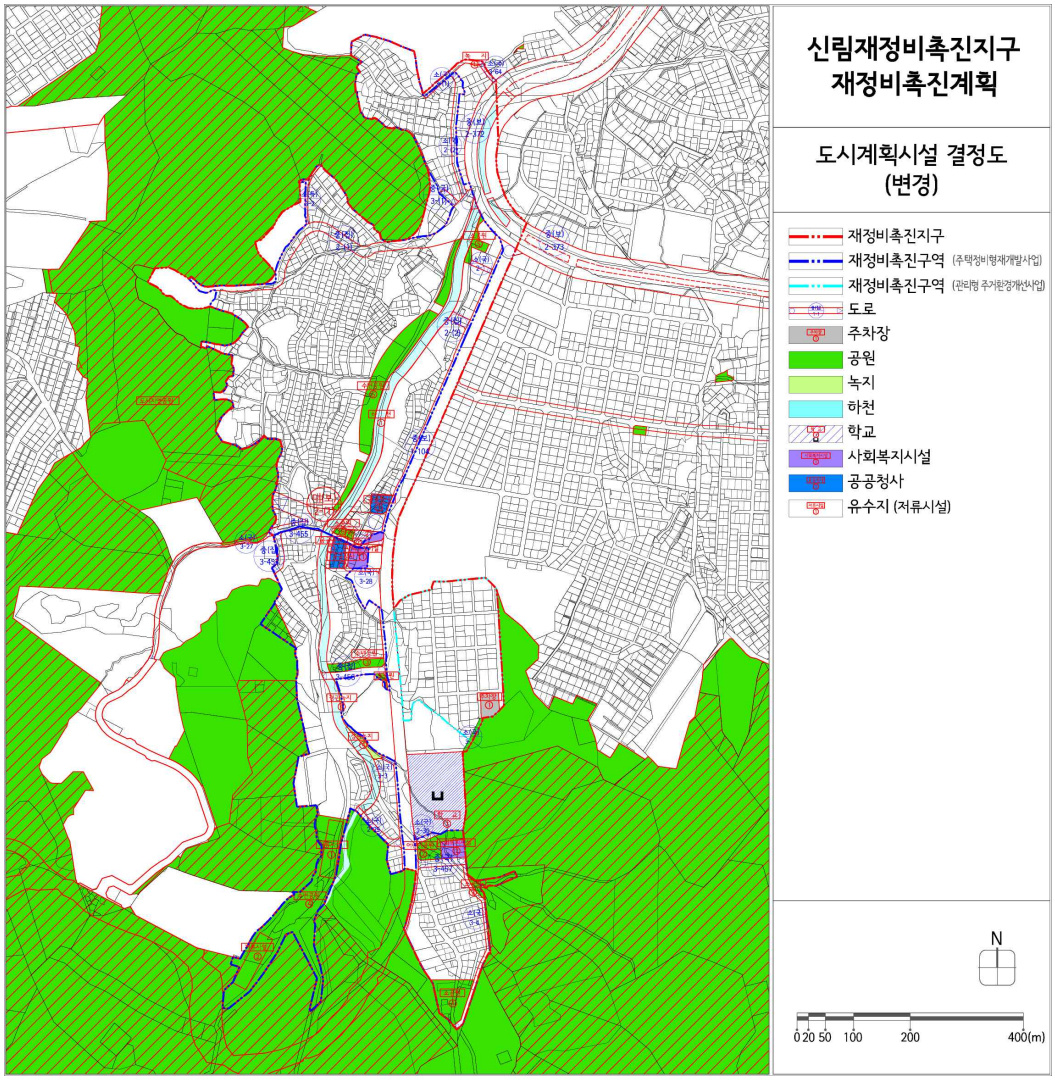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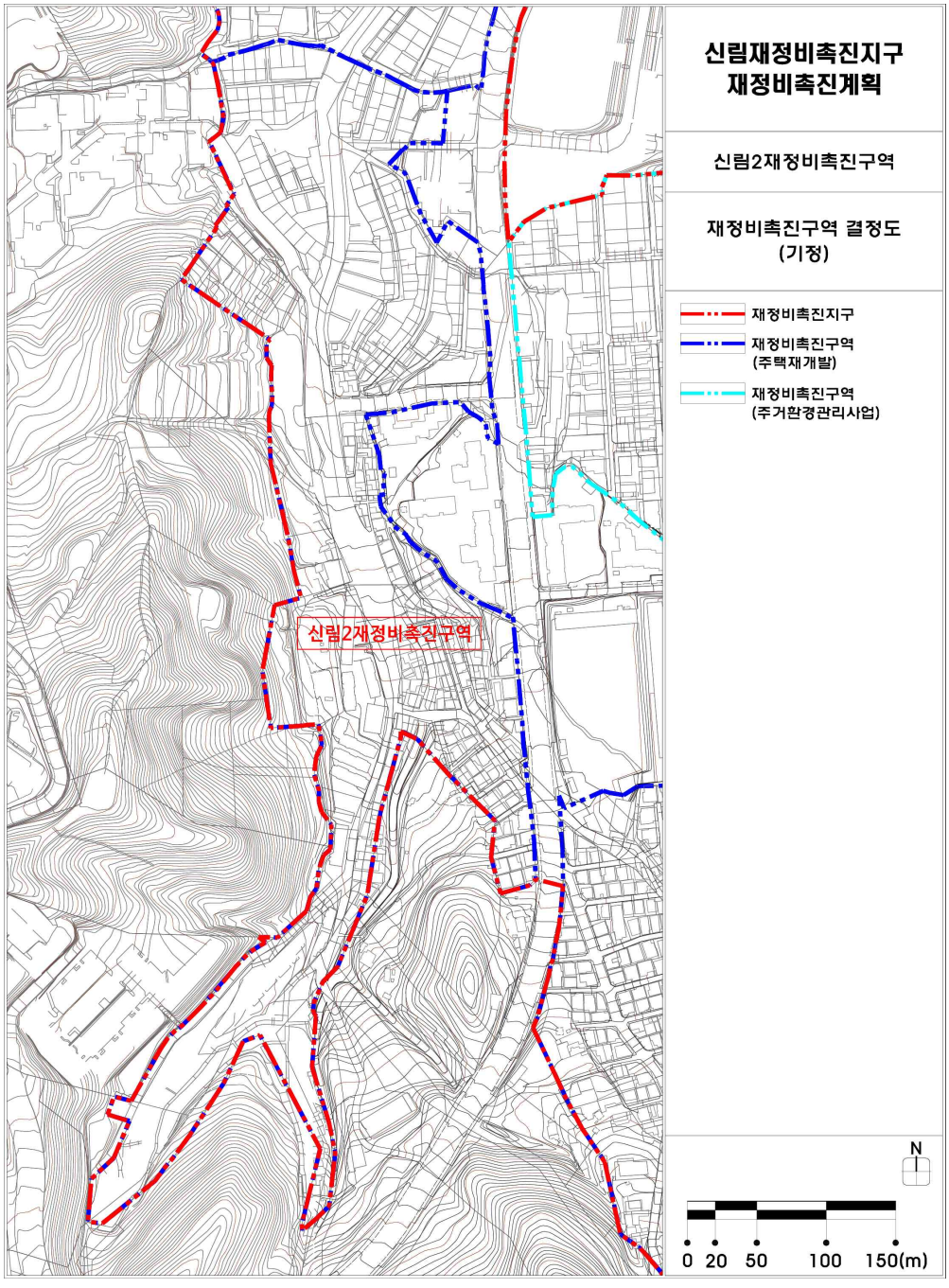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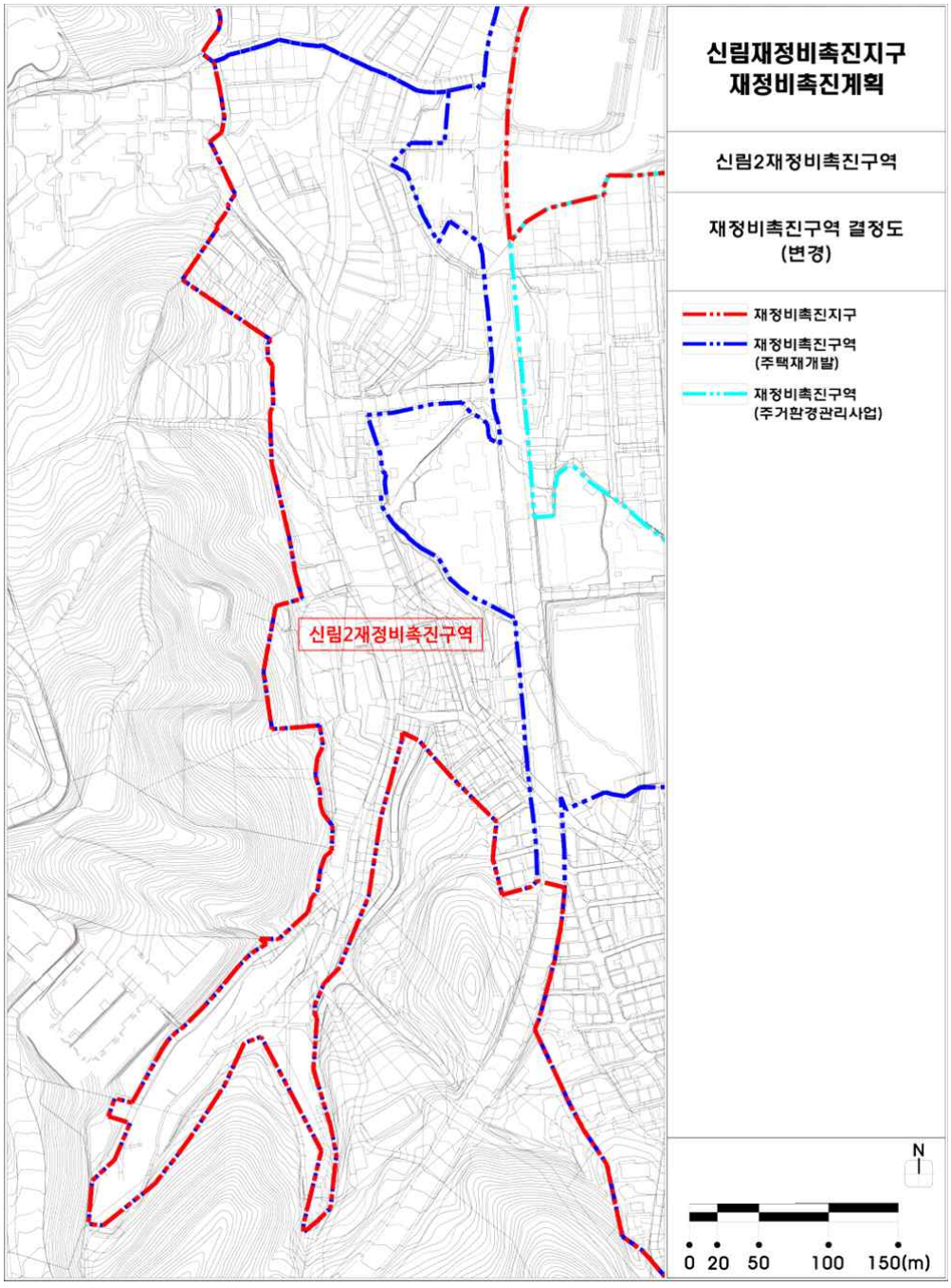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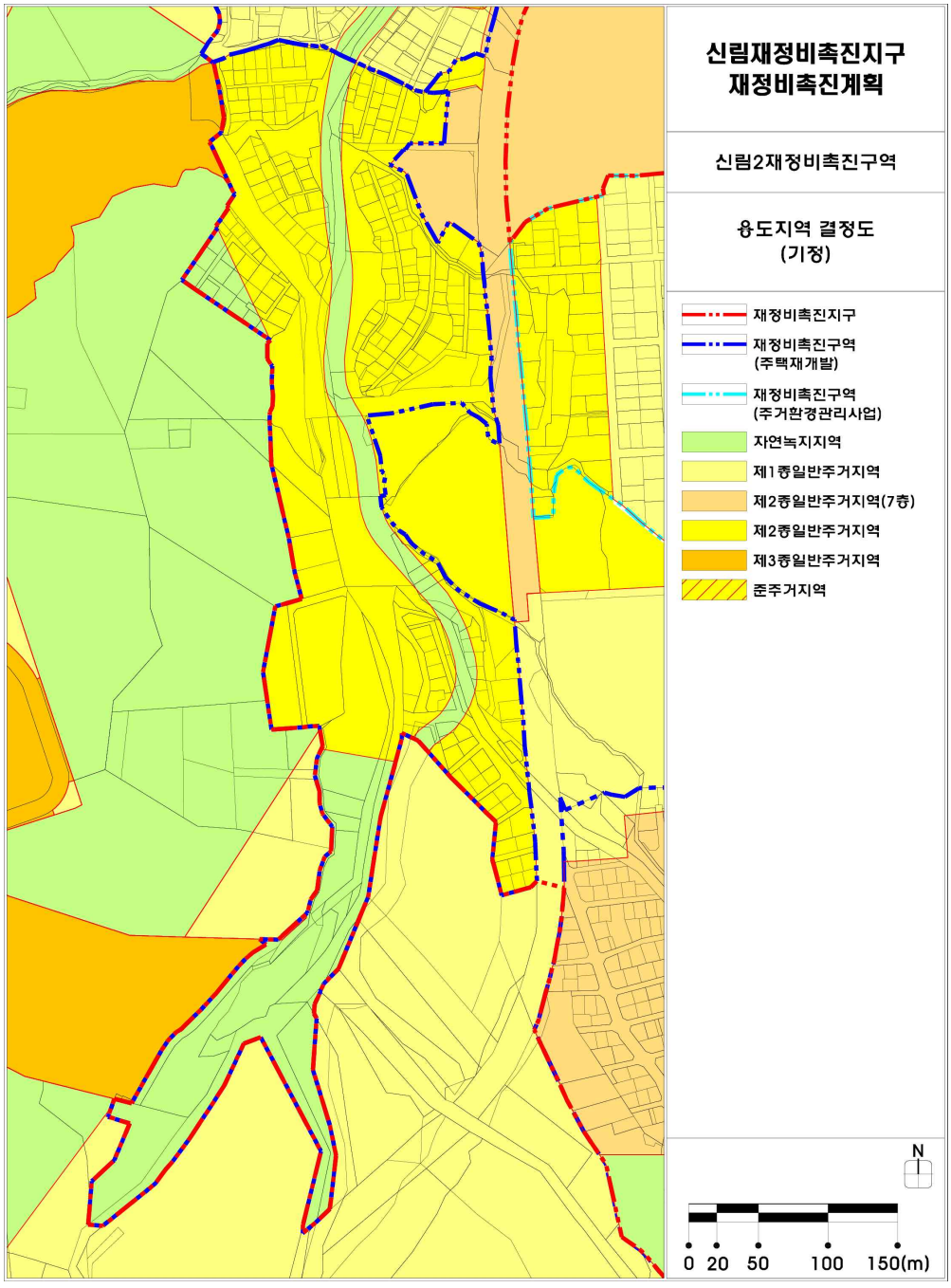
[신림2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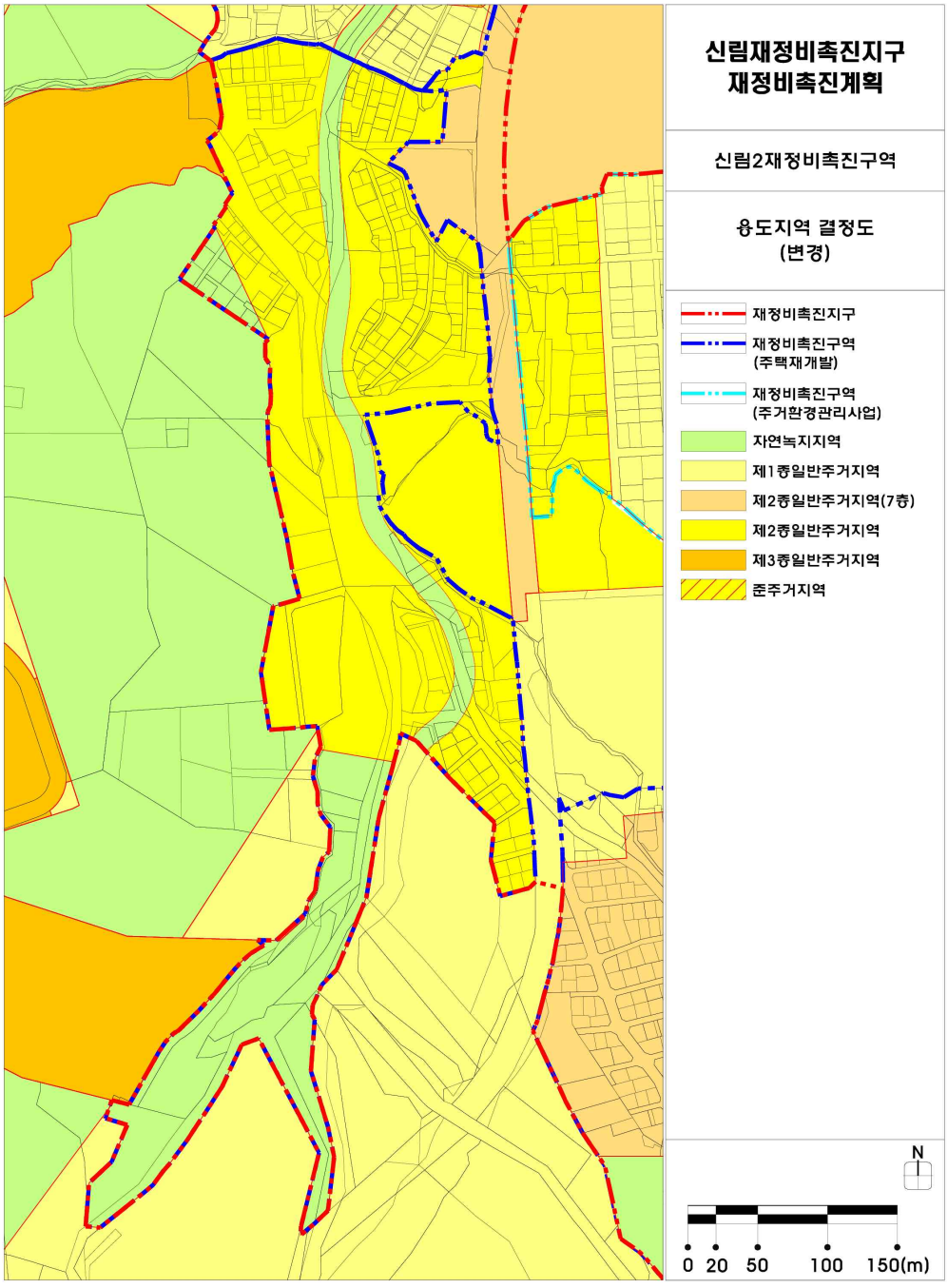
[신림2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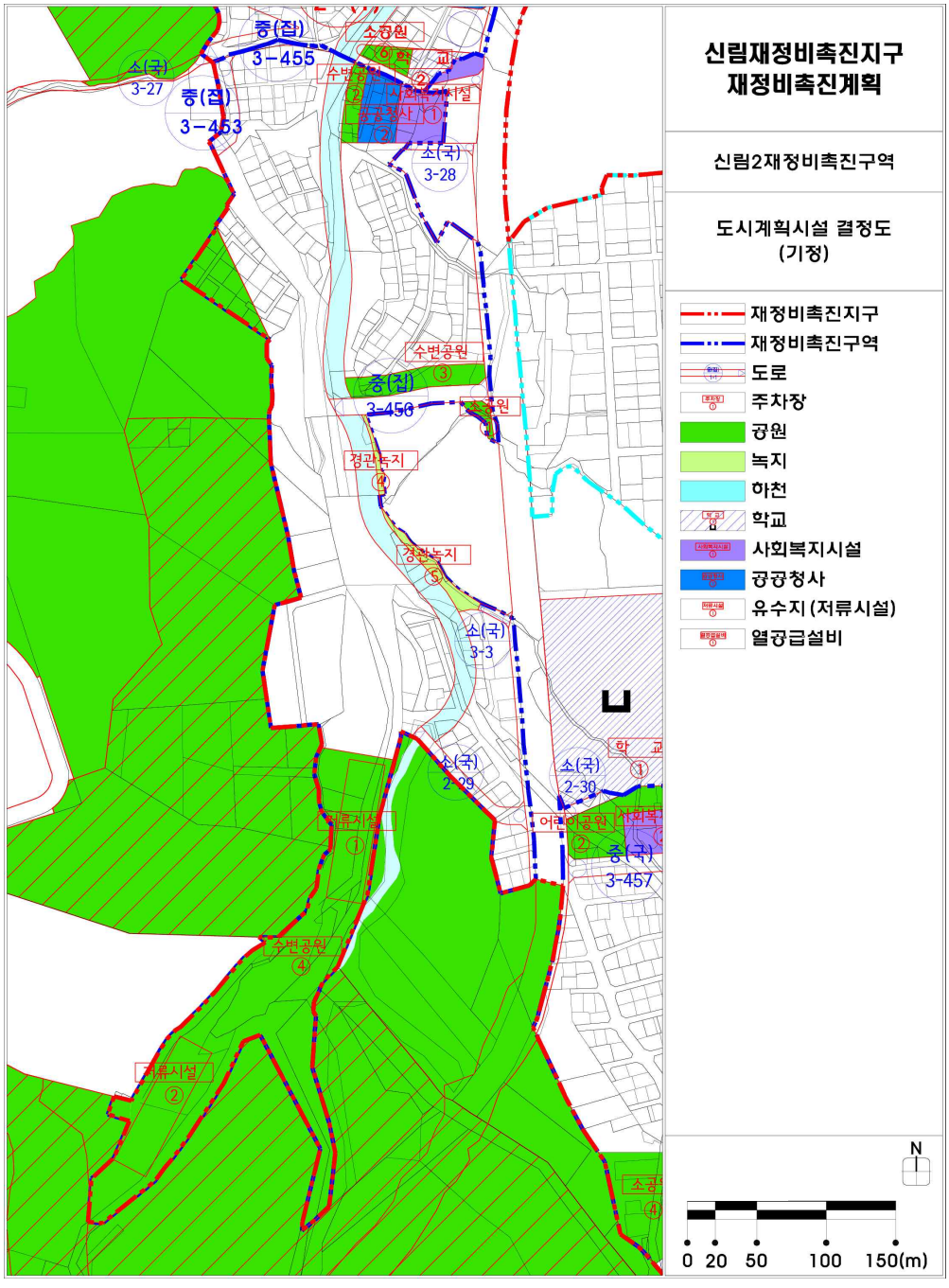
[신림2구역 용도지역 결정도]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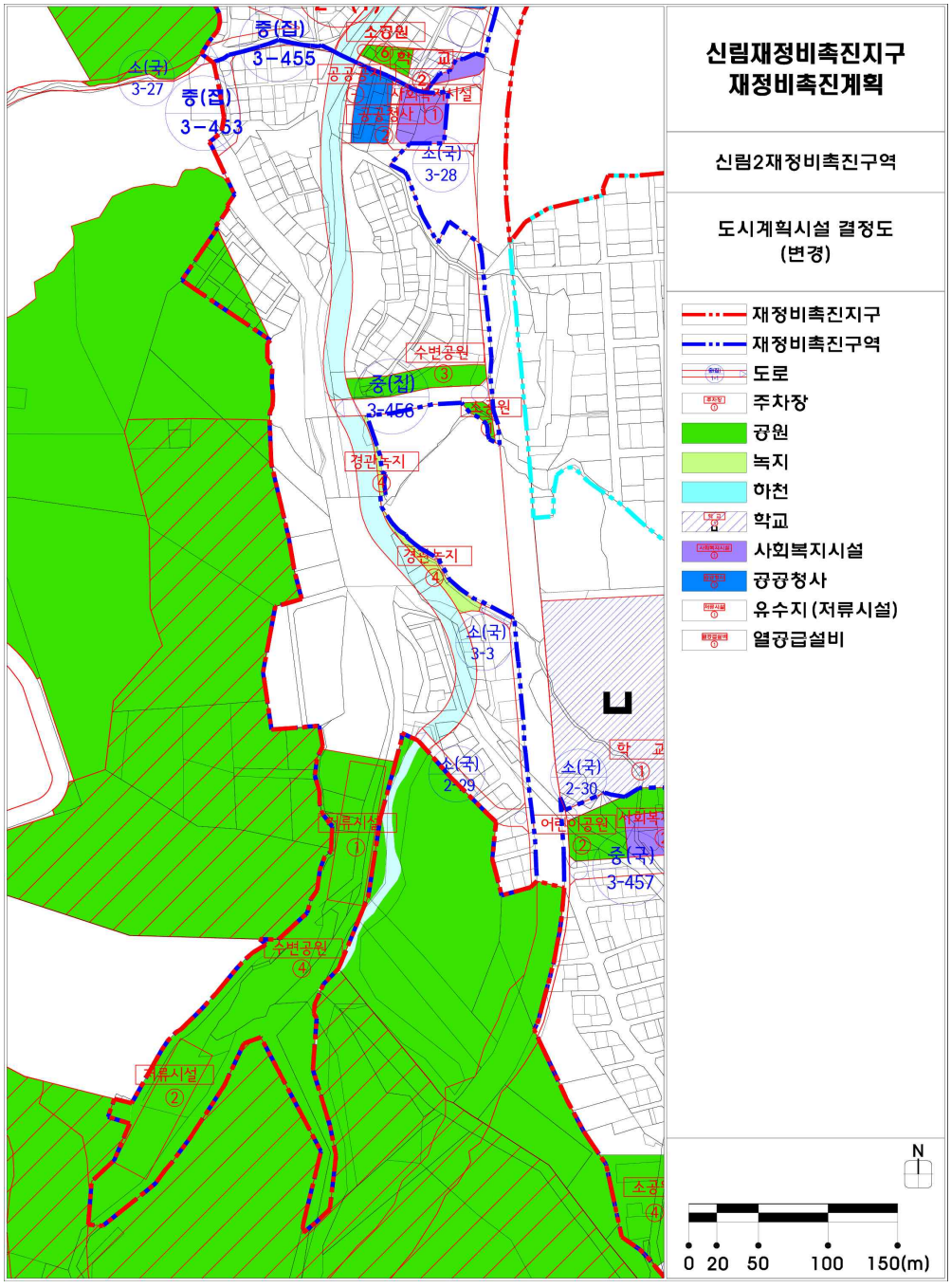
[신림2구역 용도지역 결정도] (변경)



[신림2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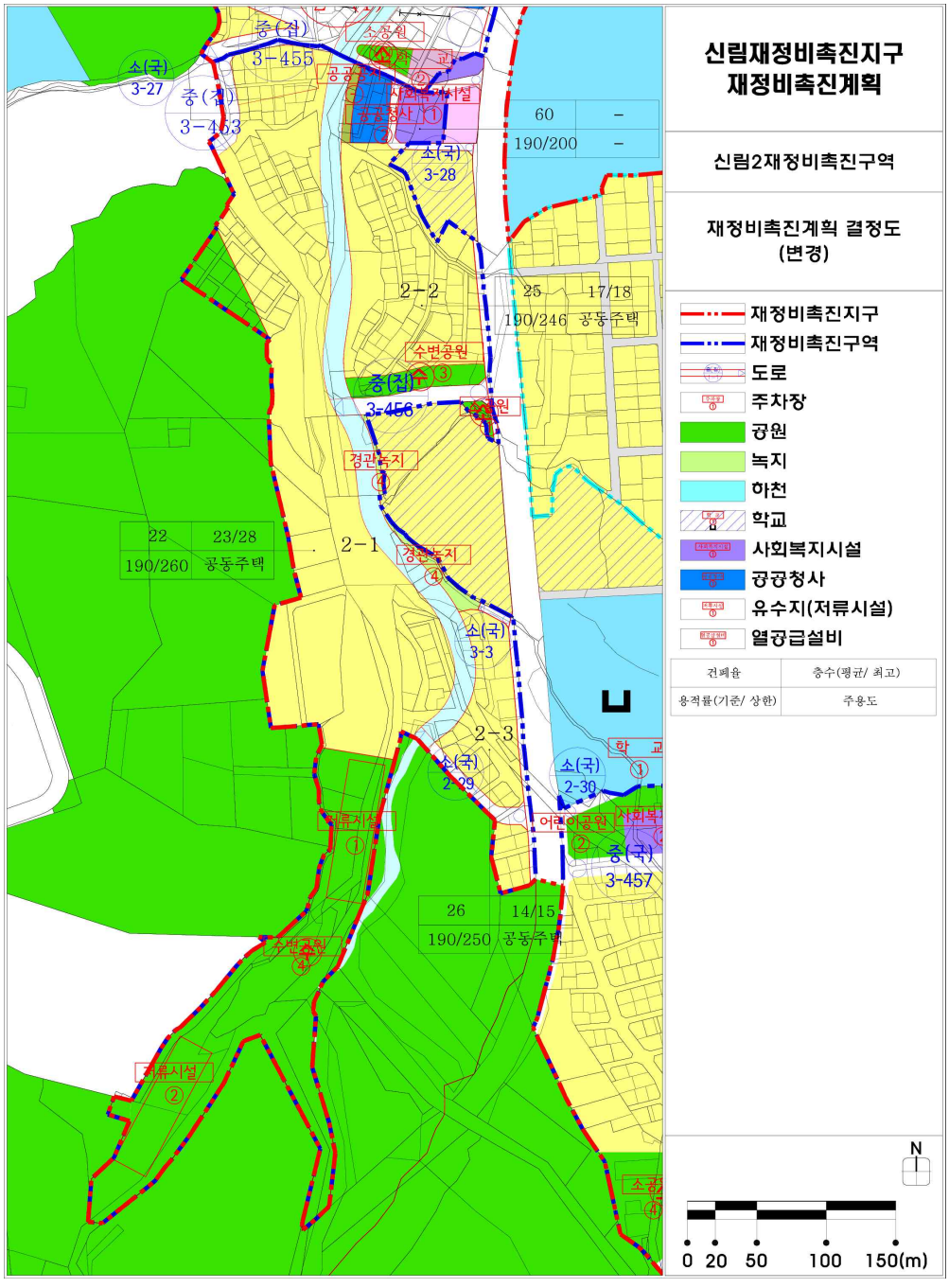
[신림2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변경)



[신림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 (기정)



[신림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 (변경)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194호

동진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 227-15번지 외 2필지 동진시장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023년 제4차 서울특별시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2023.12.18.) 심의를 거쳐 추진계획을 승인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가. 시장정비사업구역의 명칭 : 동진시장정비구역

나. 시장정비사업구역의 범위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신설	동진시장정비구역	마포구 연남동 227-15번지 일대	1,398	-	인접지역 포함

※ 인접지역(연남동 227-37번지, 면적 : 289.9㎡) 포함

다. 시장정비사업 시행자
1) 성 명 : 연남동진시장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한기용
2)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14층(삼성동, 강남파이낸스플라자)

라. 사업추진계획 승인일 : 승인 고시일

※ 사업추진계획 승인 효력 상실 : 사업추진계획 승인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마. 사업추진계획 승인 사유
○ 마포구 동진시장은 1970년 사용승인 후 50여년 경과하여 상업기반시설이 매우 낙후된 시장으로서, 주변 지역과 연계한 상업기반시설의 현대화 및 확충을 통해 시장으로서의 경쟁력과 기능 회복을 목적으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바. 사업추진계획 승인 개요

1)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

가) 토지이용계획 결정 조서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1,398.00	100.0%	-
기반시설 등	도로	8.28	0.6	-
획 지	획지①	1,389.72	99.4	판매시설 및 업무시설 등

나)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결정 조서

○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398	-	1,398	100.0	-

○ 용도지구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다)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유통 및 공급시설(시장)

○ 시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	시장	-	연남동 227-15번지 일대	1,108.1	감) 1,108.1	-	서고 제2010-70호 ('10.3.4.)	동진시장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시장	• 시장 폐지 : 감) 1,108.1㎡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시장) 폐지

라) 건축물의 주용도 · 용적률 · 건폐율 · 높이 · 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주용도	용적률	건폐율	층수(높이)	연면적(㎡)
신설	판매, 업무	358.6% 이하	67.9% 이하	8층 이하 (35m 이하)	7,722.70㎡ 이하 (매장면적 3,388.05㎡ 이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적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건폐율에 관한 특례) 적용

마)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

○ 공공기여 설치계획

구분	시설명	계획(안)	공공기여율 (%)1)	비 고 (운영주체)
신설	도로	• 이면도로(동교로46길) 폭원 4m 확보를 위한 일부구간 도로 확폭 - 면적 : 8.28㎡	0.7	-
	건축물	• 공공임대업무시설 설치 · 제공 - 면적 : 79.4㎡ (대지지분 40.7㎡ + 환산부지면적 38.7㎡) - 위치 : 지하1층 - 규모 : 연면적 226.44㎡ (전용면적 117.18㎡)	7.2	마포구

주1)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폐지 · 복합화에 따른 공공기여 기준안 개선' (시설계획과-24877, 2022.08.)에 따라 부지면적 3천㎡ 미만의 도시계획시설(시장) 폐지 시, 시설폐지 면적의 5% 이상 계획
※ 향후 관계부서 협의, 건축심의 등 인허가 과정에서 세부 위치 및 면적 등은 조정될 수 있음

2) 입점상인보호대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에 의한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 관계 서류 참조

Ⅱ.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동진시장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마포구 연남동 227-15번지 일대	-	증) 1,398	1,398	-

○ 변경사유서

구 역 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동진시장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 면적 : 1,398㎡ - 위치 : 연남동 227-15번지 일대	• 동진시장사업을 통해 도시미관을 정비하고 효율적 토지이용 및 체계적 도시관리 등을 도모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토지이용계획 결정 조서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1,398.00	100.0%	-
기반시설 등	도로	8.28	0.6	-
획 지	획지①	1,389.72	99.4	판매시설 및 업무시설 등

2)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결정 조서

○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398	-	1,398	100.0	-

○ 용도지구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3)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유통 및 공급시설(시장)

○ 시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	시장	-	연남동 227-15번지 일대	1,108.1	감) 1,108.1	-	서고 제2010-70호 ('10.3.4.)	동진 시장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시장	• 시장 폐지 : 면적 1,108.1㎡ → 폐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시장) 폐지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신설	획지①	연남동 227-15번지 일대	1,389.72	판매시설 및 업무시설 등

2)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관한 결정 조서

구 분			계획내용
신설	획지①	위 치	• 마포구 연남동 227-15번지 일대
		면 적	• 1,389.72㎡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불허용도 A	• 당해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총포판매소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중 세차장
		건폐율	• 67.9% 이하
		용적률	• 358.6% 이하
		높 이	• 8층 이하(35m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연희로변으로부터 3m

라.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

1)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 조서

구 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비 고
신설	전면공지	획지①	• 보도형 전면공지 : 폭 3m - 보행공간 조성을 통한 보행여건 개선	결정도 참조

2) 건축물 배치 · 형태 · 색채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계획내용
신설	배 치	• 건축물 주 방향은 채광, 통풍 등을 고려하여 배치
	입 면	• 기존 도시조직을 고려한 입면 계획 제시 • 다양한 저층부와 고층부 매스 계획을 통해 입면의 다양성을 높이도록 계획
	형태 · 재질	• 건축물 외벽면의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주변 건물과의 조화를 고려하도록 권장 - 특히, 저층부는 기존 동진시장 및 연남동 골목상권 내 건물 특성을 고려한 재료 사용(노출콘크리트, 벽돌, 타일, 목재 등)으로 조화로운 가로경관 계획 • 1층 개구부의 높이는 인접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색 채	• 건축물의 색채는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마.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제4항제9호 규정에 의해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연 번	계 획 내 용
1	• 전면공지의 조성방법의 변경

Ⅲ. 2023년 제4차(2023.12.18.)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수정가결

구분	심 의 의 견	반 영 계 획	비고
1	• MD계획은 재입점을 요구하는 업종의 수용(지원)가능 여부, 기존 상권 및 공공임대업무시설 등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실현 가능하도록 계획에 반영 검토	• 재입점 희망 업종 수용(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MD계획을 일부 조정하였으며, 향후 후속절차 이행 시에도 이러한 MD계획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음	
2	• 공공기여시설(공공임대업무시설(효도밥상))은 노인지원시설임을 감안하여 편의성 및 적정성 검토 - 효도밥상은 본 사업대상지의 개발컨셉과 이질성이 강하므로 이를 상쇄할 수 있는 건축계획적 요소 도입(동선분리 포함) - 운영시간 이외 장시간 미운영시에는 상권 침체 우려가 있으므로 지속적인 공간 활용방안 등 운영계획 수립 제출	• 공공임대업무시설은 편의성과 적정성 등 고려하여 가로와 접하는 지하1층으로 위치 조정하고 운영계획 마련하였음 • 향후 사업시행인가 시 현재 반영된 동선계획을 유지하고, 준공 전보다 구체적인 운영계획 수립하겠음	

구분	심 의 의 견	반 영 계 획	비고
3	• 입점상인 보호대책(임대료, 영업손실보상, 재입점 지원)은 주변이젠트리피케이션이 강한 연남동 상권임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방안 검토 필요	• 명도 전 임대료 면제 기간과 재입점 임차상인 임대료 지원 기간을 확대하는 등 입점상인 보호대책 적극적으로 보완하였으며, 착공 전까지 지속적으로 입점상인 재입점 등을 협의하겠음	
4	• 다음 사항은 건축위원회 심의 시, 심도 있게 검토·논의토록 조건부여 - 지하1층 주차면(4면)은 실 활용 가능(진출입 및 주차, 보행동선 등)하도록 조치 필요 - 주 진출입로인 성미산로(1차로)는 진출입 시 차량 대기공간 협소로 차량 혼잡이 예상되므로 조치 필요	• 지하1층 주차면 활용 가능성과 차량 진출입으로 인한 혼잡 완화를 고려하여 건축계획 예시안 일부 조정 제시하였으며, • 구체적인 사항은 건축위원회 심의 시 심도 있게 검토·논의하여 조치하겠음	

Ⅳ. 관련도면 : 붙임 참조

가. 시장정비구역 결정도

나.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다.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도(기정, 변경)

라. 사업추진계획 결정도

마.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Ⅴ.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도서 :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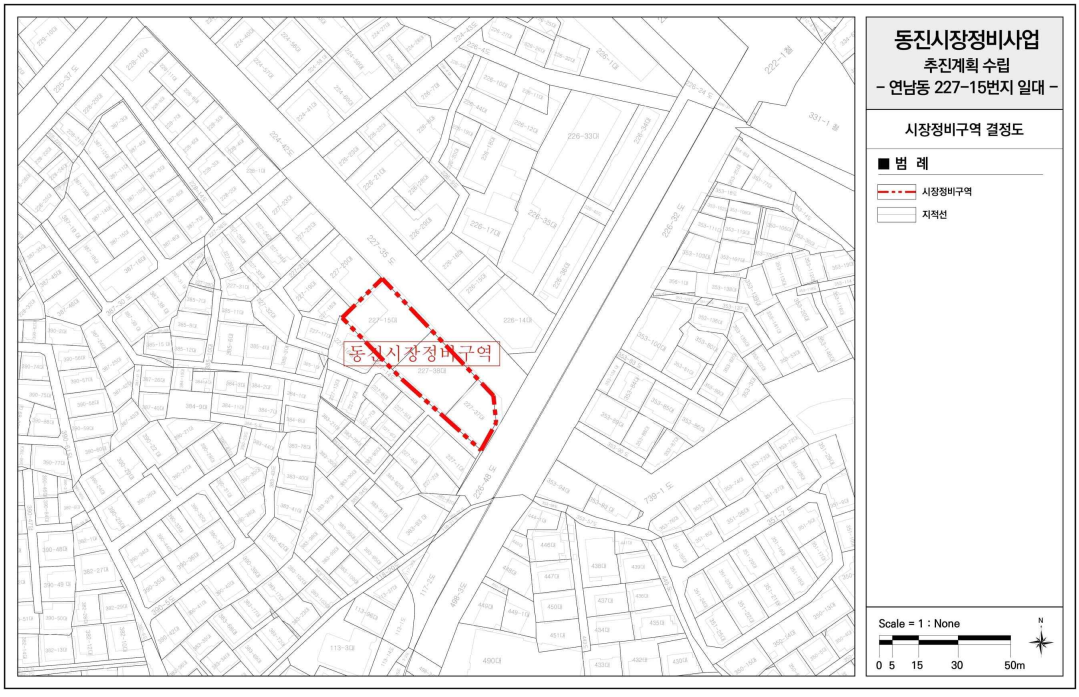
Ⅵ. 열람장소

○ 고시 관련 세부내용은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과(☎02-2133-8498) 및 마포구청 도시계획과(☎02-3153-9364)에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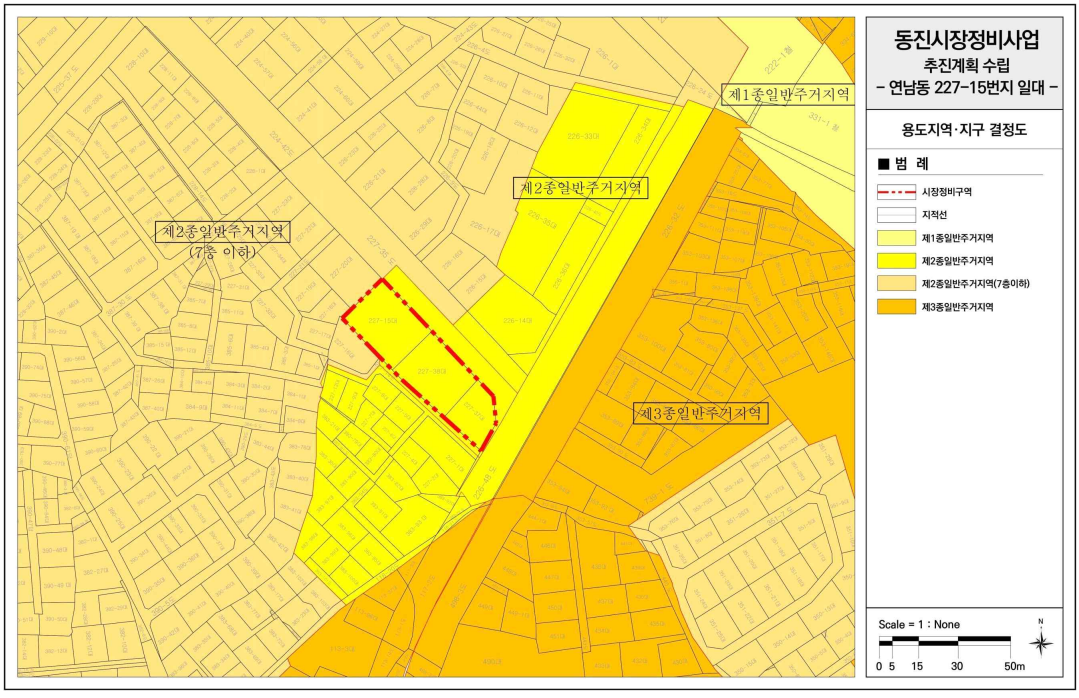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Ⅶ. 붙임(관련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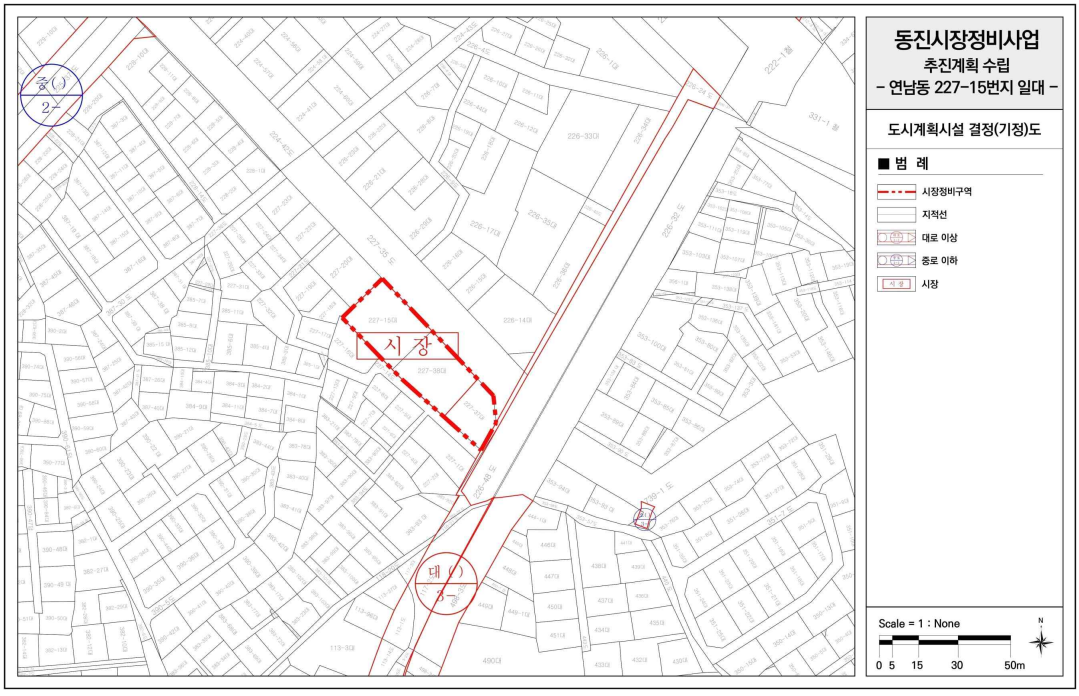
■ 시장정비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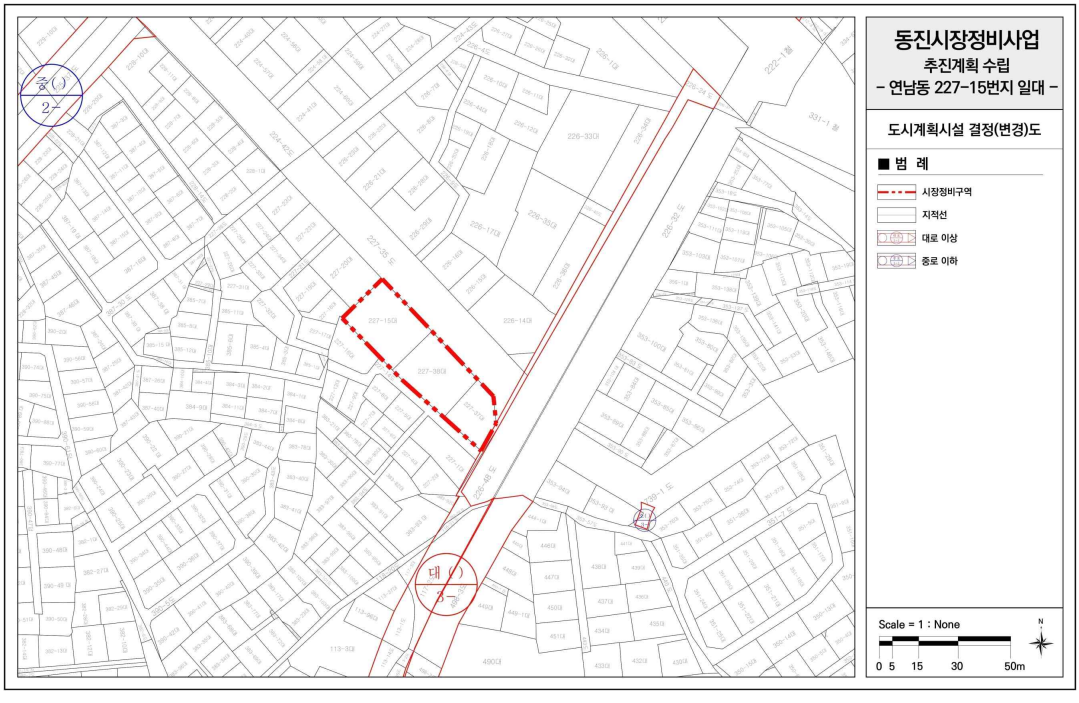
■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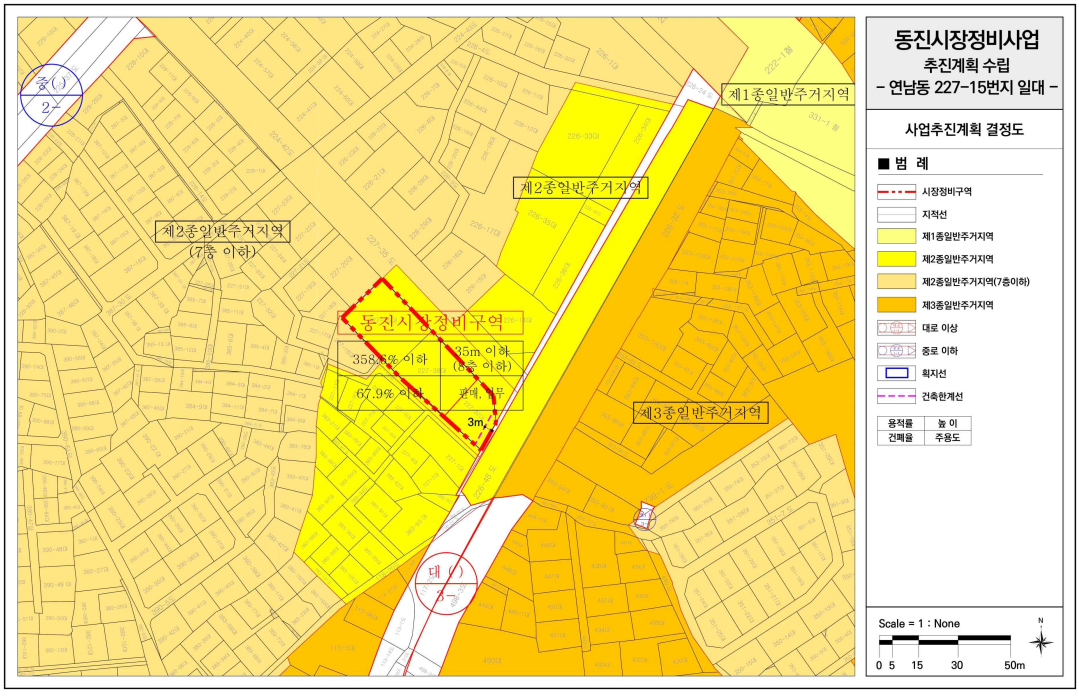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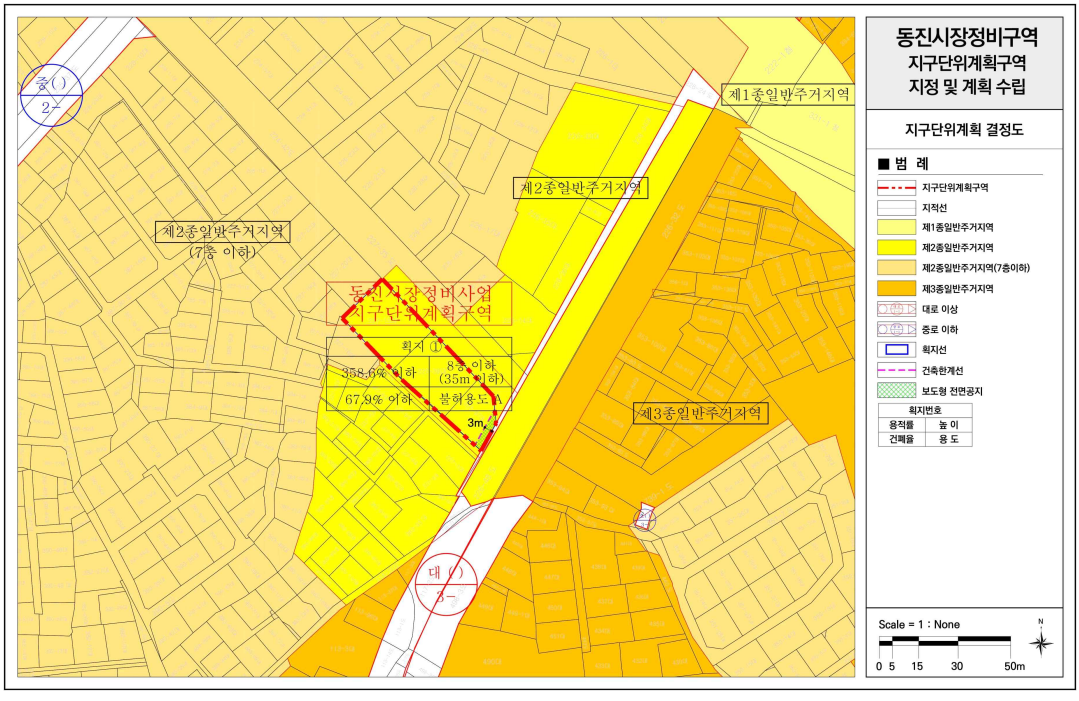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사업추진계획 결정도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196호

도시관리계획(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역 일대에 대하여 2023년 제20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3.12.27.)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내 신림지구중심의 지구중심기능을 강화하고, 경전철(신림선) 개통 등의 지역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선제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또한 신원시장의 노후화가 심각하여 시설 현대화유도 및 시장시설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관악구 신림동 1428번지 일대	500,006.9	증)34,788.0	534,794.9	서고시 제231호 (1996.08.14)	-

■ 변경 사유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결정사유
변경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관악구 신림동 1428번지 일대	• 지구단위계획 구역면적 변경 (증)34,788.0㎡)	• 당곡역세권 신설 등 지역여건 변화로 역세권에 대한 선제적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한 면적 증가

2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1.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500,006.9	증) 34,788.0	534,794.9	100.0%	-
주거지역	소계	353,253.6	증) 34,788.0	388,041.6	72.6%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35,776.6	증) 7,698.0	43,474.6	8.1%	-
	제3종일반주거지역	76,956.6	증) 27,090.0	104,046.6	19.5%	-
	준주거지역	240,520.4	-	240,520.4	45.0%	-
상업지역	소계	146,753.3	-	146,753.3	27.4%	-
	일반상업지역	146,753.3	-	146,753.3	27.4%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위치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변경	-	관악구 신림동 1428번지 일대	• 면적증가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증) 7,698.0㎡ - 제3종일반주거지역: 증) 27,090.0㎡	•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증가에 따른 용도지역 면적 변경

나. 용도지역 조정가능지에 관한 결정조서(신설)

구분	구역명	위치	결정(변경)내용		비고
			용도지역 상향 전	용도지역 상향 후	
신설	용도지역 조정가능지①	관악구 신림동 1428번지 일대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 용도지역 결정 사유서

구분	구역명	위치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신설	용도지역 조정가능지①	관악구 봉천동 702-40일대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변경가능)	• 당곡역 신설에 따른 역세권으로서의 도시기능·역할 재편

■ 용도지역 조정가능지①에 대한 계획기준 (신설)

구분			계획내용		비고
위치			관악구 봉천동 702-40일대		-
용도지역	기정		제3종일반주거지역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공공기여 및 비주거시설 설치 조건 이행시에만 용도지역 조정
	변경		준주거지역		
공공시설계획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대지면적의 15%이상 • 도로, 공지, 주차장 등 공공시설로 제공주1)		-
건축물의 용도·밀도에 관한 계획	용도	불허	불허용도 U3, U4		-
		권장	권장용도3		-
	건폐율		60% 이하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준용
	용적률	기준	간선부	250% (기정 200% 이하)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준용
		허용		350% (기정 250% 이하)	
		상한		400%	
	최고높이		간선부	60m 이하 (기정 25m 이하)	-
배치	건축한계선		간선변 3m, 이면부 3m		-
교통처리계획			간선변에서 직접적인 차량출입 불허		-
개발규모			• 1,000㎡ ≤ 개발규모 ≤ 가구 - 당곡역세권 동측의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간선변 대지를 포함하여 전후면 통합하여 개발규모 1,000㎡ 이상인 대지에 한하여 용도지역 조정이 가능함 -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친후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함 - 용적률의 15%를 비주거시설로 설치하고, 1~2층 저층부에 배치함 ※ 업무시설 설치 시 오피스텔 등 준주택은 제외함		-

주1) 용도지역을 조정하여 계획 및 개발시, 도로, 공지,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제공을 원칙으로 하며, 기부채납시설은 아래의 기준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함
- 도로 : 개발대지가 정형화될 수 있도록 도로를 구획하고, 협소한 도로의 폭원은 확폭하며, 주변필지 현황을 고려하여 차량접근불가필지, 맹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함
- 공지 : 간선변 전면부 또는 가각부에 설치하며, 연접대지의 공지 위치를 고려하여 연속된 가로경관이 조성될 수 있는 곳에 배치함
- 주차장 : 차량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되,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1층~1층에 배치하는 것을 권장함

※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 포함)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주택 건립 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지침”을 따르며, 향후 기준 변경 시 변경된 기준에 따르도록 하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수 및 노후도 산정기준을 만족해야 함
※ 기타 세부사항은 본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 및 지침도 참조
※ 용도지역 조정시,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변경)

(1) 도로(변경)

■ 도로총괄표(변경)

구분	계			1류			2류			3류		
	노선수(개)	연장(m)	면적(㎡)	노선수(개)	연장(m)	면적(㎡)	노선수(개)	연장(m)	면적(㎡)	노선수(개)	연장(m)	면적(㎡)
계	152	15,217.1	135,346.1	-	-	-	7	2,064.0	22,903.0	145	13,153.1	112,443.1
광로	2	809.0	33,820.0	-	-	-	-	-	-	2	809.0	33,820.0
대로	1	771.0	19,275.0	-	-	-	-	-	-	1	771.0	19,275.0
중로	3	1,103.0	15,975.0	-	-	-	2	913.0	13,695.0	1	190.0	2,280.0
소로	146	12,534.1	66,276.1	-	-	-	5	1,151.0	9,208.0	141	11,383.1	57,068.1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광로	3	49	40~80	주간선	5,230 (146)	구로동 대1-43	봉천동 (광19)	일반도로	-	78.12.07	-

구분	규모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광로	3	185	40~50	주간선	12,550 (663)	방이동 89-1	공항동 74-2	일반 도로	-	-	-
기정	대로	3	158	25	보조 간선	5,800 (771)	대방동 405	신림동 15-1	일반 도로	-	-	-
변경	대로	3	158	25	보조 간선	5,800 (1,000)	대방동 405	신림동 15-1	일반 도로	-	-	-
기정	중로	2	1	15	집분산	453	신림동 1430-10	신림동 1457-32	일반 도로	-	-	-
기정	중로	2	21	15	집분산	460	신림동 1430-117	신림동 1457-32	일반 도로	-	-	-
기정	중로	3	1	12	집분산	190	신림동 1438-16	신림동 1602-2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2	16	8	국지 도로	50	신림동 1420-21	신림동 1439-18	일반 도로	-	70.09.03	-
기정	소로	2	17	8	국지 도로	493	신림동 1438-13	신림동 1432-82	일반 도로	-	70.09.03	-
기정	소로	2	20	8	국지 도로	228	신림동 1578-52	신림동 1578-11	일반 도로	-	70.09.03	-
기정	소로	2	21	8	국지 도로	328	신림동 1468-9	신림동 1412-1	일반 도로	-	70.09.03	-
기정	소로	2	22	8	국지 도로	52	신림동 1409-12	신림동 1409-8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191	6	국지 도로	86	신림동 1457-32	신림동 1467-1	일반 도로	-	70.09.03	-
기정	소로	3	192	6	국지 도로	326 (50)	신림동 1445-1	신림동 1457-10	일반 도로	-	70.09.03	-
기정	소로	3	199	6	국지 도로	120	신림동 1458-31	신림동 1468-1	일반 도로	-	70.09.03	-
기정	소로	3	200	4	국지 도로	66	신림동 1458-31	신림동 1458-23	일반 도로	-	70.09.03	-
기정	소로	3	205	4	국지 도로	75	신림동 1421-1	신림동 1421-3	일반 도로	-	70.09.03	-
기정	소로	3	207	6	국지 도로	112	신림동 1440-21	신림동 1440-4	일반 도로	-	70.09.03	-
기정	소로	3	208	6	국지 도로	50	신림동 1430-37	신림동 1439-3	일반 도로	-	70.09.03	-
기정	소로	3	209	4	국지 도로	102	신림동 1429-4	신림동 1429-1	일반 도로	-	70.09.03	-
기정	소로	3	210	6	국지 도로	102	신림동 1429-55	신림동 1429-17	일반 도로	-	70.09.03	-
기정	소로	3	211	4	국지 도로	55	신림동 1430-37	신림동 1430-28	일반 도로	-	70.09.03	-

구분	규모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212	6	국지도로	102	신림동 1430-1	신림동 1430-48	일반도로	-	70.09.03	-
기정	소로	3	213	6	국지도로	118	신림동 1459-29	신림동 1469-5	일반도로	-	70.09.03	-
기정	소로	3	214	4	국지도로	48	신림동 1459-27	신림동 1459-24	일반도로	-	70.09.03	-
기정	소로	3	215	4	국지도로	45	신림동 1459-20	신림동 1459-23	일반도로	-	70.09.03	-
기정	소로	3	216	4	국지도로	44	신림동 1459-10	신림동 1459-5	일반도로	-	70.09.03	-
기정	소로	3	217	6	국지도로	124	신림동 1459-35	신림동 1459-4	일반도로	-	70.09.03	-
기정	소로	3	218	4	국지도로	45	신림동 1460-20	신림동 1460-24	일반도로	-	70.09.03	-
기정	소로	3	219	4	국지도로	45	신림동 1460-7	신림동 1460-12	일반도로	-	70.09.03	-
기정	소로	3	220	6	국지도로	123	신림동 1460-35	신림동 1461-1	일반도로	-	70.09.03	-
기정	소로	3	221	6	국지도로	145	신림동 1469-1	신림동 1461-5	일반도로	-	70.09.03	-
기정	소로	3	222	4	국지도로	48	신림동 1461-20	신림동 1461-14	일반도로	-	70.09.03	-
기정	소로	3	223	4	국지도로	48	신림동 1361-1	신림동 1461-5	일반도로	-	70.09.03	-
기정	소로	3	224	4	국지도로	86	신림동 1469-69	신림동 1463-23	일반도로	-	70.09.03	-
기정	소로	3	225	4	국지도로	46	신림동 1463-61	신림동 1463-65	일반도로	-	70.09.03	-
기정	소로	3	227	4	국지도로	47	신림동 1463-34	신림동 1463-37	일반도로	-	70.09.03	-
기정	소로	3	228	4	국지도로	52	신림동 1463-44	신림동 1463-50	일반도로	-	70.09.03	-
기정	소로	3	229	6	국지도로	108	신림동 1433-164	신림동 1463-51	일반도로	-	70.09.03	-
기정	소로	3	230	4	국지도로	76	신림동 1433-130	신림동 1433-164	일반도로	-	70.09.03	-
기정	소로	3	231	4	국지도로	97	신림동 1433-170	신림동 1433-158	일반도로	-	70.09.03	-
기정	소로	3	232	6	국지도로	92	신림동 1438-12	신림동 1438-6	일반도로	-	70.09.03	-
기정	소로	3	233	6	국지도로	88	신림동 1437-20	신림동 1437-7	일반도로	-	70.09.03	-

구분	규모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235	6	국지도로	85	신림동 1436-23	신림동 1436-4	일반도로	-	70.09.03	-
기정	소로	3	236	6	국지도로	81	신림동 1434-17	신림동 1434-1	일반도로	-	70.09.03	-
기정	소로	3	237	4	국지도로	95	신림동 1432-103	신림동 1432-111	일반도로	-	70.09.03	-
기정	소로	3	238	4	국지도로	101	신림동 1432-102	신림동 1432-95	일반도로	-	70.09.03	-
기정	소로	3	239	4	국지도로	105	신림동 1432-64	신림동 1432-86	일반도로	-	70.09.03	-
기정	소로	3	240	4	국지도로	40	신림동 1431-70	신림동 1431-72	일반도로	-	70.09.03	-
기정	소로	3	241	4	국지도로	79	신림동 1433-95	신림동 1433-101	일반도로	-	70.09.03	-
기정	소로	3	242	4	국지도로	83	신림동 1433-73	신림동 1433-82	일반도로	-	70.09.03	-
기정	소로	3	243	4	국지도로	137	신림동 1433-29	신림동 1433-5	일반도로	-	70.09.03	-
기정	소로	3	244	6	국지도로	99	신림동 1427-1	신림동 1428-19	일반도로	-	70.09.03	-
기정	소로	3	245	6	국지도로	150	신림동 1428-21	신림동 1427-4	일반도로	-	70.09.03	-
기정	소로	3	246	6	국지도로	134	신림동 1425-1	신림동 1425-9	일반도로	-	70.09.03	-
기정	소로	3	247	6	국지도로	115	신림동 1426-1	신림동 1427-35	일반도로	-	70.09.03	-
기정	소로	3	248	6	국지도로	153	신림동 1416-23	신림동 1416-9	일반도로	-	70.09.03	-
기정	소로	3	249	4	국지도로	102	신림동 1416-20	신림동 1416-4	일반도로	-	70.09.03	-
기정	소로	3	250	6	국지도로	98	신림동 1417-5	신림동 1416-1	일반도로	-	70.09.03	-
기정	소로	3	251	6	국지도로	136	신림동 1419-28	신림동 1415-2	일반도로	-	70.09.03	-
기정	소로	3	252	4	국지도로	54	신림동 1419-2	신림동 1419-8	일반도로	-	70.09.03	-
기정	소로	3	254	6	국지도로	252	신림동 1426-12	신림동 1419-32	일반도로	-	70.09.03	-
기정	소로	3	255	6	국지도로	124	신림동 1424-4	신림동 1424-23	일반도로	-	70.09.03	-
기정	소로	3	256	4	국지도로	47	신림동 1424-19	신림동 1424-21	일반도로	-	70.09.03	-

구분	규모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257	6	국지도로	127	신림동 1423-1	신림동 1420-31	일반도로	-	70.09.03	-
기정	소로	3	258	6	국지도로	117	신림동 1420-36	신림동 1420-1	일반도로	-	70.09.03	-
기정	소로	3	260	6	국지도로	112	신림동 1414-37	신림동 1414-1	일반도로	-	70.09.03	-
기정	소로	3	261	4	국지도로	43	신림동 1423-22	신림동 1423-20	일반도로	-	70.09.03	-
기정	소로	3	262	6	국지도로	230	신림동 1421-29	신림동 1420-4	일반도로	-	70.09.03	-
기정	소로	3	263	4	국지도로	42	신림동 1421-39	신림동 1421-36	일반도로	-	70.09.03	-
기정	소로	3	264	6	국지도로	103	신림동 1414-37	신림동 1421-4	일반도로	-	70.09.03	-
기정	소로	3	265	4	국지도로	50	신림동 1422-27	신림동 1422-22	일반도로	-	70.09.03	-
기정	소로	3	266	6	국지도로	50	신림동 1412-14	신림동 1422-4	일반도로	-	70.09.03	-
기정	소로	3	267	6	국지도로	100	신림동 1423-23	신림동 1423-1	일반도로	-	70.09.03	-
기정	소로	3	269	6	국지도로	86	봉천동 733-7	봉천동 702-107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3	284	4	국지도로	40	봉천동 972-23	봉천동 972-40	일반도로	-	70.09.03	-
기정	소로	3	286	6	국지도로	71	신림동 709-108	신림동 734-1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3	287	4	국지도로	75	봉천동 736-5	봉천동 701-7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3	288	5	국지도로	28	봉천동 702-97	봉천동 702-104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3	289	5	국지도로	20	신림동 702-105	신림동 702-107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3	290	4	국지도로	93	신림동 1429-29	신림동 1429-40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3	291	3	국지도로	65	신림동 1639-2	신림동 1639-5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3	292	3	국지도로	68	신림동 1415-15	신림동 1415-15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3	293	3	국지도로	46	신림동 1414-12	신림동 1414-8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3	294	3	국지도로	46	신림동 1414-12	신림동 1414-8	일반도로	-	-	-

구분	규모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295	3	국지도로	13	신림동 1414-4	신림동 1414-4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3	296	3	국지도로	46	신림동 1424-11	신림동 1424-15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3	297	3	국지도로	45	신림동 1420-26	신림동 1420-30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3	298	4	국지도로	35	신림동 1433-122	신림동 1433-117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3	299	3	국지도로	73	신림동 1433-109	신림동 1433-216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3	300	3	국지도로	49	신림동 1433-17	신림동 1433-12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3	301	3	국지도로	47	신림동 1433-44	신림동 1433-43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3	302	4	국지도로	19	신림동 1641-20	신림동 1640-19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3	303	4	국지도로	141	신림동 1637-2	신림동 1637-11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3	304	3	국지도로	47	신림동 1638-15	신림동 1638-17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3	305	3	국지도로	94	신림동 1638-26	신림동 1638-20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3	306	4	국지도로	115	신림동 1640-5	신림동 1640-14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3	307	6	국지도로	154	신림동 1640-19	신림동 1639-62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3	308	6	국지도로	103	신림동 1639-24	신림동 1639-33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3	309	3	국지도로	62	신림동 1639-27	신림동 1639-33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3	310	3	국지도로	106	신림동 1639-50	신림동 1639-34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3	311	4	국지도로	105	신림동 1578-9	신림동 1578-20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3	312	4	국지도로	10	신림동 1578-15	신림동 1578-15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3	313	3	국지도로	52	신림동 1578-51	신림동 1578-42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3	314	3	국지도로	24	신림동 1578-36	신림동 1578-39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3	315	4	국지도로	22	신림동 1578-52	신림동 1578-52	일반도로	-	-	-

구분	규모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316	6	국지도로	51	신림동 1578-1	신림동 158-11	일반도로	-	-	-
변경	소로	3	316	6	국지도로	51	신림동 1578-1	신림동 1578-11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3	317	6	국지도로	329	신림동 1585-1	신림동 1603-2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3	318	7	국지도로	91	신림동 1586-2	신림동 1585-7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3	319	5	국지도로	39	신림동 1584-4	신림동 1612-3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3	320	5	국지도로	34	신림동 1591-1	신림동 1591-5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3	321	5	국지도로	33	신림동 1592-1	신림동 1592-8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3	322	5	국지도로	34	신림동 1595-1	신림동 1595-5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3	323	5	국지도로	34	신림동 1596-1	신림동 1596-5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3	324	5	국지도로	33	신림동 1599-1	신림동 1599-5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3	325	5	국지도로	33	신림동 1600-1	신림동 1600-5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3	326	5	국지도로	33	신림동 1600-2	신림동 1600-6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3	327	6	국지도로	330	신림동 1587-2	신림동 1587-37	일반도로	-	-	-
변경	소로	3	327	6	국지도로	330	신림동 1587-2	신림동 1587-37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3	328	3	국지도로	14	신림동 1587-8	신림동 1587-8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3	329	3	국지도로	13	신림동 1587-15	신림동 1587-15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3	330	3	국지도로	12	신림동 1587-22	신림동 1587-22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3	331	3	국지도로	11	신림동 1587-29	신림동 1587-29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3	332	4	국지도로	315	신림동 1587-2	신림동 15847-37	일반도로	-	-	-
변경	소로	3	332	4	국지도로	315	신림동 1587-2	신림동 1587-37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3	333	6	국지도로	276	신림동 1639-1	신림동 1638-1	일반도로	-	-	-

구분	규모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334	3	국지도로	157	신림동 1432-162	신림동 1432-138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3	335	3	국지도로	54	신림동 1432-40	신림동 1432-44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3	336	4	국지도로	20	신림동 1432-52	신림동 1632-46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3	337	6	국지도로	200	신림동 1432-176	신림동 1431-16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3	338	7	국지도로	195	신림동 1412-2	신림동 1415-1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3	339	3	국지도로	61	신림동 1432-131	신림동 1432-128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3	340	4	국지도로	66	신림동 1637-26	신림동 1637-18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3	341	4	국지도로	51	신림동 1410-7	신림동 1410-1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3	342	4	국지도로	206	신림동 11-17	신림동 10-717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3	343	6	국지도로	45	신림동 858-11	신림동 10-501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3	344	6	국지도로	253	신림동 1432-162	신림동 1432-128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3	345	3	국지도로	45	신림동 1432-66	신림동 1432-72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3	347	3	국지도로	53	신림동 1438-2	신림동 1438-10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3	348	3	국지도로	46	신림동 1437-17	신림동 1437-9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3	349	3	국지도로	50	신림동 1432-39	신림동 1432-41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3	350	3	국지도로	48	신림동 1431-13	신림동 1431-21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3	351	3	국지도로	58	신림동 1416-13	신림동 1416-40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3	352	3	국지도로	18	신림동 1416-13	신림동 1416-12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3	353	3	국지도로	21	신림동 1416-10	신림동 1416-11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3	354	4	국지도로	28	신림동 1457-20	신림동 1457-28	일반도로	-	-	-

구분	규모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355	3	국지도로	56	신림동 1457-5	신림동 1457-8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3	356	3	국지도로	10	신림동 1462-5	신림동 1462-6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3	357	4	국지도로	43	신림동 1462-5	신림동 1462-9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3	358	3	국지도로	26	신림동 1439-8	신림동 1439-28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3	359	3	국지도로	12	신림동 1430-44	신림동 1430-46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3	360	3	국지도로	20	신림동 1430-18	신림동 1430-20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3	361	4	국지도로	31	신림동 1641-107	신림동 1641-6	일반도로	-	-	-
변경	소로	3	-	7.5~8.5m	국지도로	108	봉천동 702-44	봉천동 698-47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3	-	6.6~8.2m	특수도로(지하도로)	52.5	신림동 1467-10	신림동 1433-5	지하층연결로	-	서고제129호(09.04.02)	-

※ ( )는 지구내 연장 및 면적임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기정	도로(지하도로)	신림동 1467-10외 5필지	폭원	6.6 ~ 8.2m	당곡역 동측 구역계 확장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계획 수립
			연장	52.5m	
			높이	해수면기준 109.5m~120.0m	

<이하 여백>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변경	대로 3-158	대로 3-158	• 연장 확대 - 771m → 1,000m	• 당곡역 동측 구역계 확장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 계획 수립
변경	소로 3-316	소로 3-316	• 종점 오기정정 - 신림동 158-11 → 신림동1578-11	• 오기정정
변경	소로 3-327	소로 3-327	• 사용형태 변경 - 일반도로 → 보행자전용도로	• 신원시장일대 보행여건 개선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도로) 계획 수립
변경	소로 3-332	소로 3-332	• 기점 오기정정 - 신림동 15847-37 → 신림동 1587-37	• 오기정정
변경	-	소로 3-	• 구역내 도시계획시설 편입 - 소로 3-을 포함하여 계획	• 당곡역 동측 구역계 확장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 계획 수립

■ 철도(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연장 (m)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기정	⑥	철도	고속철도	신림동	신림동	신림역 사거리	205	6,201	79.09.24	B=19m 신림역 정차장
기정	⑥	철도	고속철도	-	-	-	-	2,711.2	16.04.07 (서고시 제2016-98호)	신림역(신림선)
기정	⑦	철도	고속철도	-	-	-	-	2,540.8	16.04.07 (서고시 제2016-98호)	당곡역(신림선)

■ 주차장(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㉙	주차장	노외주차장	신림동 1585-7외 2필지	462	-	462	01.01.13	-

<이하 여백>

나. 공간시설(변경없음)

■ 공원(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공 원	어린이공원	신림동 1418-1	952	-	952	70.09.03	색동어린이공원

다. 공공 · 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 공공청사(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③	공공청사	동사무소	신림동 1439-3	499	-	499	92.05.25	신림동주민센터

라. 방재시설(변경없음)

■ 하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연장 (k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②	하천	-	봉천동 1446-1 (계속구간)	-	-	5.15 (0.16)	139,050 (4,417)	88.05.13	봉천천 B=27m

※ ( )는 지구내 연장 및 면적임

마.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 하수도(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연장 (k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①	하수도	도림교	서울대 입구	도림천	8.36 (0.3)	19,000 (956)	85.12.17	도림천분류 하수관로	봉천천 B=27m

※ ( )는 지구내 연장 및 면적임

<이하 여백>

3. 방재안전계획에 관한 결정

가. 방재안전계획 결정조서(신설)

구분		계획내용	비고
신설	자연재해 대책법	• 건축허가 등 행위 시 침수방지 저감대책을 마련하여 주무부서와 협의할 것 - 빗물관리시설 설치, 역류방지시설 설치, 투수성포장 설치 등	-
	침수위이하 건축물 주거용도제한	• 지하층 및 예상침수위 이하 부분은 주거용도 사용 제한	-
	차수판 등 설치	• 건축대지가 도로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 대지와 도로 경계부에 횡단 배수시설, 차수판 등 설치 • 지하층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 상업용으로 활용되는 경우 차수판 등 설치 (※구역 전체에 적용)	-

■ 방재안전계획 결정사유서

구분	위치	결정사유
신설	도면에 표기	• 도림천변 주변에 폭우 등으로 인명·재산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계획 수립

4. 공공기여계획에 관한 결정

가. 공공기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공개공지의 조성(변경없음)

구분	기존 준주거지역	제2종/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2007년 재정비 시 용도지역 변경된 지역 포함)
대상지	• 건축 연면적의 합계가 5,000㎡이상인 다음 건축물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제①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 건축 연면적의 합계가 2,000㎡이상인 다음 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공개공지 규모	• 건축연면적 합계 - 5,000㎡ ~ 10,000㎡ : 대지면적의 5% - 10,000㎡ ~ 30,000㎡ : 대지면적의 7% - 30,000㎡ 이상 : 대지면적의 10%	• 건축연면적 합계 - 2,000㎡ 이상 : 대지면적의 3% - 4,000㎡ 이상 : 대지면적의 5% - 5,000㎡ 이상은 법상 기준 적용 ※ 단, 조성의무면적이 45㎡에 미달될 경우 45㎡를 조성의무면적으로 함
시설기준	가. 일반인이 도로에서 접근·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형태로 설치 나.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면적이 최소 45제곱미터 이상 다. 최소폭은 5미터 이상 라.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6미터 이상 마. 조경·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소규모 공중화장실(33제곱미터미만으로서 허가권자와 건축주가 협의된 경우에 한함)·소규모 주민편의시설(간이도서관, 인포메이션 센터 등)과 같은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	

※ 공개공지와 관련한 기타 사항은 '건축법' 제43조, 동법시행령 제113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6조를 준용한다.

(2) 공공시설의 조성(신설)

■ 공공시설의 조성에 대한 계획기준

구분	계획내용
대상지	• 신원시장 일대[주1)] - 2개 이상의 필지를 공동개발하여 조정된 기준/허용용적률 체계(200%/350%이하)를 적용하는 경우 - 허용용적률에서 상한용적률(400%)까지 확보하는 경우
규모	• 공공시설을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에 따른 산정식 적용
시설 기준주2)	가. 공공·문화체육시설 중 문화시설 ▌청년문화시설, 청년지원시설, 청년공간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조 기반시설) 나. 공공임대산업시설, 공공임대상가, 공공임대업무시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19조제2항제3호·제4호) 다. 공공임대주택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19조제2항제1호) 라. 주차장

주1) 공공시설은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조성하며, 가, 라 항목은 시장 일대 전체, 나 항목은 시장 내부, 다 항목은 시장 이면부에서 공공기여하는 것을 권장한다.

주2) 시설기준의 세부활용용도에 대한 정의는 다음에 따른다.

- 청년문화시설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문학관,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공연·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지역문화활동시설, 문화 보급·전수시설 등
- 청년지원시설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20조에 따른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
- 청년공간 :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성한 시설
- 공공임대산업시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시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업 관련시설 또는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권장업종과 관련)로서, 산업 지원 또는 창업 지원, 영세상인 지원을 위해 임대로 공급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시설물
- 공공임대상가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19조제2항제4호 및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상가로서, 영세상인 지원을 위해 차임의 과도한 인상 없이 5년 이상 장기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
- 공공임대업무시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1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로서, 지역혁신 역량강화 및 전략산업을 육성·관리·지원하기 위하여 임대로 공급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시설
- 공공임대주택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공동주택 특별법」 제2조1호가목에 따라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영구공공주택, 국민공공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이 해당
- 주차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 중 주차장

■ 공공기여계획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결정내용	결정사유
신설	• 신원시장일대에 청년지원시설 등 공공시설 제공을 위한 공공기여계획 수립	• 시장기능강화 등 지역특성에 적합한 공공기여계획 수립

3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대지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최대개발규모		비고
		기정	변경	
일반상업지역	간선도로 가각부	3,000㎡	3,000㎡	-
	간선가로변	2,000㎡	2,000㎡	-
	이면부 및 내부블럭	1,000㎡	1,500㎡	-
준주거지역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신림동 1745	3,000㎡	3,000㎡	청년안심주택
	간선가로변	1,500㎡	1,500㎡	-
	이면부 및 내부블럭	700㎡	1,000㎡	추가편입구역 포함

※ 단일필지로서 최대개발규모 이상인 필지, 하나의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기공동개발), 공동개발 계획필지(권장포함)에 한해서는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는 계획적 개발 허용

※ 비정형 필지를 공동개발을 통해 정형화하여 개발하는 경우,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는 개발가능
(단,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함)

■ 대지규모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변경	-	• 일반상업지역 이면부 및 내부블록 면적변경 - 1,000㎡ → 1,500㎡	• 가구단위 개발을 대비한 적정 개발규모 확보
		• 준주거지역, 제3종·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이면부 및 내부블록 면적변경 - 700㎡ → 1,000㎡	• 당곡역 동측 구역계 확장에 따라 신규 편입구역에 대한 최대 개발규모 결정

<이하 여백>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변경)

(1) 획지 및 공동개발 기준(변경)

구분	계획기준	
	기정	변경
획지계획	• 신림역 주변 적정개발규모 유도를 위한 획지계획 수립 - 간선가로변(남부순환로, 신림로) 필지 및 일반상업지역에 한해 계획 - 기존 단일필지 획지계획은 획지계획 폐지 (자율적 공동개발 가능) - 획지내 소유자수, 건축물 간의 사용승인일자 및 신축건축물 등을 고려 - 획지계획의 최소화를 위해 이면부 및 준주거지역은 공동개발 지정으로 계획	-
공동개발 (지정)	• 기획지계획 된 필지 - 건축물간의 사용승인일자 및 신축건축물 등을 고려 • 과소필지 - 기공동개발하였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필지와 계획 - 인접필지에 동일한 소유자가 있는 경우 해당필지와 계획 ※ 단, 인접한 필지가 국공유지일 경우 또는 신축, 소유주 간 의견 불일치 등으로 공동개발이 어려울 경우 단독개발로 계획 • 맹지 및 이면도로를 통한 차량진입 유도 - 맹지는 소유자 및 건축물 사용승인일자를 고려하여 계획 - 차량진입 유도는 간선가로변 필지에 한해 계획	• 동일소유자 및 기개발지(관련지번)을 대상으로 공동개발 지정으로 계획 - 상업지역 및 간선부 필지 - 준주거지역 내 개발잠재력에 상응하는 규모확보가 가능한 경우
공동개발 (특별지정)	-	• 신림역에 지하철출입구 연접 필지에 한하여 계획 ※ 건축물 간의 건축연도, 소유자수, 지형, 주변필지 등을 고려 • 역 연접지역으로서 통행로 확폭을 통한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경우 • 지하철시설물(출입구, 환기구등)을 대지 내 조성하는 경우
공동개발 (권장)	• 블록내부 필지중 차량진입 곤란하거나, 이면도로로 진입유도 경우 • 부정형 필지와 인접한 경우 및 토지이용의 비효율이 예상되는 경우 • 주변지역과 비교하여 개발잠재력에 상응하는 규모확보가 필요한 경우	• 과소필지 - 기공동개발 하였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필지와 계획 - 인접필지에 동일한 소유자가 있는 경우 해당 필지와 계획 ※ 단, 인접 필지가 국·공유지 또는 신축이거나 소유주간 의견 불일치 등으로 공동개발이 어려울 경우 단독 개발로 계획 • 맹지 및 이면도로를 통한 차량진입 유도 - 맹지는 소유자 및 건축물 사용승인일자를 고려하여 계획 - 차량진입 유도는 간선가로변 필지에 한해 계획 • 부정형 필지와 인접한 경우 및 토지이용의 비효율이 예상되는 경우
자율적 공동개발	• 자율적 공동개발(권장사항) - 다음의 경우, 자율적 공동개발 지양 ⓐ 부정형(요철형, 세장비 1:3 이상인 경우) 대지발생시 ⓑ 차량출입 불가능 대지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자율적 공동개발(권장사항) - 다음의 경우, 자율적 공동개발 지양 ⓐ 부정형(요철형, 세장비 1:3 이상인 경우) 대지발생시 ⓑ 차량출입 불가능 대지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동개발(특별지정) 계획(신설)

■ 공동개발(특별지정)결정(변경)조서

가구번호	도면 표시	면적(㎡)	지번	계획내용		비고
				기존	변경	
41 신림동 (도곽D)	①	978.6	1433-36대, 1433-37대, 1433-41도(분), 1433-44대, 1433-38대, 1433-43대, 1433-220대	획지	공동개발 (특별지정)	• 신림역세권에 적정 개발규모 유도 • 공동개발 이행 및 지하철 출입구를 대지 또는 건축물내로 이전하거나, 보행로 추가 확폭을 통한 쾌적한 보행 환경조성을 위하여 계획 ※ 사업자부담으로 계획 및 제공
43 신림동 (도곽E)	②	790.0	1640-5대, 1640-6대, 1640-24대, 1640-25대, 1640-26대	획지	공동개발 (특별지정)	
	③	616.0	1640-7대, 1640-8대, 1640-22대, 1640-23대			
	④	1,915.9	1640-9대, 1640-10대, 1640-12대, 1640-13대, 1640-20대, 1640-21대, 1640-14대, 1640-11대, 1640-16대			

• 공동개발(특별지정)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계획

위치	인센티브 조건 필지수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의무조성 공공시설	적용대상	비고
③	3필지	20% 이하	• 간선~이면부 연결보행로 폭원 3m 조성	③ 3필지(616.0㎡)	-
②	4필지	30% 이하	• 간선~이면부 연결보행로 폭원 3m 조성	② 4필지(790.0㎡)	-
①	6필지 이상	50% 이하	• 남측변 보행로에 폭원 1m 확보	① 6필지(978.6㎡)	-
④			• 대지내 지하철출입구 조성	④ 6필지(1,915.9㎡)	-

※ 공동개발(특별지정)이 표시된 공공시설 부지를 공공에 제공(기부채납)하여야 함

※ 공동개발에 따른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시 공공시설 부지 제공에 따른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등은 별도로 적용함

※ 동일소유필지는 하나의 필지로 봄 (단, 지구단위계획 열람공고 후 동일소유가 된 필지는 제외함)

※ 부득이한 사유로 공동개발(특별지정)의 준수가 불가한 경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동개발(특별지정)변경 또는 해제가 가능하나, 공동개발(특별지정) 해제시 공동개발(특별지정) 상한용적률 인센티브는 적용하지 아니함

※ 기부채납시, 시·구 관련부서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구 위원회를 통해 기부채납 계획을 결정토록 함

<이하 여백>

■ 획지 및 공동개발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변경	• 공동개발의 계획 기준 변경 - 획지 : 31개소 → 0개소 (감)31개소) - 공동개발(지정) : 205개소 → 188개소 (감)17개소) - 공동개발(권장) : 97개소 → 65개소 (감)32개소) - 공동개발(특별지정) : 0개소 → 4개소 (증)4개소)	• 개발유도 및 계획이행을 위해 공동개발 계획 최소화, 실현가능한 공동개발계획 수립

(3) 신원시장일대 공동개발계획 계획(신설)

■ 신원시장일대 공동개발계획 계획기준

구분			계획내용	비고
위치			관악구 신림동 1586-1번지 일대	신원시장일대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
개발규모			• 2필지 이상의 공동개발계획 - 공동개발계획을 이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밀도완화 - 공공시설계획 등에 대한 지침 전부의 이행 필수	동일소유 필지는 1개로 산정
공공시설계획			• 15% 이상 공공기여 • 청년지원시설, 공공임대상가, 주차장 등 우선 제공 가. 공공·문화체육시설 중 문화시설▌청년문화시설, 청년지원시설, 청년공간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조 기반시설) 나. 공공임대산업시설, 공공임대상가, 공공임대업무시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19조제2항제3호·제4호) 다. 공공임대주택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19조제2항제1호) 라. 주차장	- 2015년 재정비시, 제3종→준주거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비율 적용 - 가, 라 항목은 시장 일대 전체, 나 항목은 시장 내부, 다 항목은 시장 이면부에서 공공기여하는 것을 권장
건축물의 용도·밀도에 관한 계획	용도	불허	불허용도 U3, U4	-
		권장	권장용도7	-
	건폐율		60% 이하 (건폐율 완화시, 70% 이하)	권장용도 등 준수시
	용적률	기준	200% 이하 (공동개발계획 미이행시 200% 이하)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준용
		허용	350% 이하 (공동개발계획 미이행시 250% 이하)	
		상한	400% 이하	
	최고높이		신원시장 도림천변 선형필지 35m 이하 시장이면부 35m 이하(공동개발계획 미이행시 30~35m 이하)	-
배치	건축지정선, 건축한계선		신원로3길(신원시장 이면부) 1.5m, 시장내부 1m	-

구분	계획내용	비고
교통처리계획	보행자전용도로 : 신원시장 내부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 : 신원시장	

※ 공공시설은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조성하며, 가, 라항목은 시장일대 전체, 나항목은 시장내부, 다항목은 시장이면부에서 공공기여하는 것을 권장한다.

※ 시설기준의 세부활용용도에 대한 정의는 다음에 따른다.

- 청년문화시설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문학관,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공연·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지역문화활동시설, 문화 보급·전수시설 등
- 청년지원시설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20조에 따른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
- 청년공간 :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성한 시설
- 공공임대산업시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시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업 관련시설 또는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권장업종과 관련)로서, 산업 지원 또는 창업 지원, 영세상인지원을 위해 임대로 공급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시설물
- 공공임대상가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19조제2항제4호 및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상가로서, 영세상인 지원을 위해 차임의 과도한 인상 없이 5년 이상 장기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
- 공공임대업무시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1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로서, 지역혁신 역량강화 및 전략산업을 육성·관리·지원하기 위하여 임대로 공급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시설
- 공공주택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공동주택 특별법」 제2조1호가목에 따라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영구공공주택, 국민공공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 공공주택이 해당
- 주차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 중 주차장

※ 위 지침상에 없는 항목은 본 지구단위계획의 지침을 따름

※ 계획 항목별 구체적인 위치 등은 도면 표기를 참조

■ 신원시장일대 공동개발계획 결정 사유서

구분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신설	• 신원시장일대 2필지이상 공동개발(권장)을 이행시에 적용가능한 구체적인 공동개발계획 지침	• 신원시장 일대의 노후건축물의 개발 독려 및 공공기여를 통한 지역필요시설 제공

(4)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구번호	면적(㎡)	지번	면적(㎡)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1 (봉천동) (도곽A)	3,256.0	731-9답	1,714.0	지정	지정	• 기개발지, 동일소유자 • 과소필지(731-9)
		731-16답				
		732-3대				
		732-16대				
		732-8대(분)	108.14	지정	지정	• 동일소유자 • 과소필지(732-15)
		732-15대				
		732-8대(분)	216.4	-	권장	• 과소필지(732-9)
		732-9대		지정		
		732-11대	195.0		-	-
		732-5대	318.0	지정	권장	• 대지내 차량출입 곤란
		732-14대				
		732-13대	446.0	지정	지정	• 기개발지
		732-17대				
3 (봉천동) (도곽A)	16,035.5	701-3대	212.0	지정	지정	• 동일소유자 • 과소필지(701-3)
		702-90대				
		701-1대	624.0	-	권장	• 차량출입 곤란
		701-20대		권장		
		701-8대	145.0		-	-
		702-91대	149.0		-	-
		702-5대	364.0	-	권장	• 대지내 차량출입 곤란
		702-11대		지정		
		702-92대	403.0		지정	• 기개발지, 동일소유자
		702-10대				
		702-102대	674.0	지정	지정	• 기개발지
		735-1대				
		735-4대	824.0	권장	지정	• 동일소유자
		735-11대				
		736-1대	268.0	지정	권장	• 과소필지(736-24) • 정형화된 개발 권장
		736-26대				
		736-24답				
		972-2대	518.5	지정	지정	• 동일소유자(972-2,3,4)

가구번호	면적(㎡)	지번	면적(㎡)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972-3대				
		972-4대				
		972-15대	281.0	지정	지정	• 기개발지
		972-16대				
3 (봉천동) (도곽A)	16,035.5	972-26대	342.5	지정	권장	• 간선변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해 지정 (972-26)
		972-32대				
		972-27대	326.8	지정	권장	• 간선변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해 지정 (972-27)
		972-28대				
4 (신림동) (도곽B)	8,333.3	1429-3대	209.9	지정	-	-
		1429-17대	182.5		-	-
		1429-7대	215.6	-	지정	• 기개발지, 동일소유자 • 과소필지(1429-7)
		1429-8대		-		
		1429-9대	226.4	-	권장	• 과소필지(1429-10)
		1429-10대		지정		
		1429-11대	103.8		지정	• 동일소유자 • 과소필지(1429-12)
		1429-12대				
		1429-13대	94.6		-	-
		1429-16대	349.1	지정	-	-
		1429-21대	358.4	권장	지정	• 기개발지, 동일소유자
		1429-19대		-		
		1429-22대	382.6	지정	지정	• 기개발지
		1429-65대				
		1429-26대	228.5	지정	지정	• 기개발지
		1429-27대				
		1429-33대	288.6	권장	지정	• 기개발지
		1429-34대				
		1429-51대	319.0	-	지정	• 기개발지
		1429-53대		-		
		1429-58대	97.5	권장	권장	• 과소필지(1429-58)
		1429-59대	204.0			
		1429-49대	134.2	-	-	-
		1429-60대	115.4	지정	지정	• 동일소유자 • 과소필지(1429-52)
		1429-52대		권장		

가구번호	면적(㎡)	지번	면적(㎡)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5 (신림동) (도곽B)	3,197.8	1457-10대	280.6	지정	지정	• 동일소유자 • 과소필지(1457-21)
		1457-21대				
		1457-23대	140.8	지정	지정	• 동일소유자 • 과소필지(1457-24)
		1457-24대				
		1457-25대	195.6		-	-
		1457-3대	169.9	-	권장	• 과소필지(1457-3,4)
		1457-4대		권장		
		1457-5대	174.6		지정	• 기개발지, 동일소유자 • 과소필지(1457-5)
		1457-6대		-		
		1457-7대	186.7	지정	지정	• 기개발지
		1457-8대				
6 (신림동) (도곽B)	5,005.2	1458-11대	127.6	지정 권장	지정	• 동일소유자, 과소필지 (1458-12)
		1458-12대				
		1458-13대	170.9	-	지정	• 동일소유자
		1458-32대		권장		
		1458-14대	185.8		-	-
		1458-33대	169.9		-	-
		1458-23대	150.7	지정	-	-
		1458-24대	105.1		-	-
		1458-36대	181.1	-	권장	• 과소필지(1458-16)
		1458-16대		지정		
		1458-18대	105.1		-	-
7 (신림동) (도곽B)	4,795.1	1439-4대	556.4	권장	-	-
		1439-35대			-	-
		1439-20대			-	-
		1439-5대	196.7	지정	권장	• 과소필지(1439-5)
		1439-8대				
		1439-17대	116.0	지정	-	-
		1439-18대	102.5		-	-
		1439-25대	147.8	권장	-	-
		1439-12대	132.6		-	-
		1439-27대	242.0	권장	지정	• 기개발지, 동일소유자

가구번호	면적(㎡)	지번	면적(㎡)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1439-26대				
		1439-28대	203.7	지정	지정	• 기개발지, 동일소유자 • 과소필지(1439-28)
		1439-19대				
8 (신림동) (도곽B)	5,414.0	1430-47대	504.8	권장	권장	• 대지내 차량출입 곤란
		1430-48대				
		1430-49대	234.7	지정	지정	• 기개발지, 동일소유자
		1430-50대				
		1430-51대	101.5	지정	-	-
		1430-52대	101.2		-	-
		1430-36대	132.2	권장	-	-
		1430-37대	108.8		-	-
		1430-42대	151.4	권장	-	-
		1430-41대	288.6		지정	• 기개발지
		1430-46대		-		
9 (신림동) (도곽B)	5,392.2	1430-56대	369.6	지정	지정	• 간선변 대지내 차량출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 지정 • 기개발지, 동일소유자 (1430-56,3), (1430-5,6)
		1430-3대				
		1430-4대	223.8		- 권장	
		1430-5대	324.7	지정 권장	지정	
		1430-6대				
		1430-61대	419.4	-	-	-
		1430-7대	854.7	지정	지정	• 기개발지, 동일소유자
		1430-8대				
		1430-13대				
		1430-9대	1,133.2	지정 권장	권장	• 간선변 대지내 차량출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 지정
		1430-10대				
		1430-11대				
		1430-12대	440.7	-	-	-
		1430-14대	336.2	-	지정	• 기개발지
		1430-15대		-		
		1430-17대	293.9	-	지정	• 기개발지, 동일소유자

가구번호	면적(㎡)	지번	면적(㎡)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1430-18대		-		
10 (신림동) (도곽B)	6,422.7	1428-1대	1,046.9	지정	지정	• 기개발지
		1428-2대				
		1428-3대				
		1428-4대	322.0	지정	-	-
		1428-8대	634.6		-	-
		1428-5대	528.2	지정	지정	• 동일소유자
		1428-6대				
		1428-10대	1,150.4	지정	-	-
		1428-9대			지정	• 토지소유자 의사(건축허가 사항 반영)에 따른 공동개발
		1428-24대	-	-		
		1428-12대	1,038.4	지정	지정	• 기개발지, 동일소유자
		1428-13대				
		1428-22대				
		1428-23대				
		1428-17대	343.8	-	지정	• 동일소유자
		1428-18대		-		
11 (신림동) (도곽B)	4,470.1	1427-12대	225.8	권장	-	-
		1427-13대	177.9		-	-
		1427-15대	323.9	-	지정	• 기개발지
		1427-16대		-		
12 (신림동) (도곽C)	6,597.7	1425-1대	339.8	지정	지정	• 기개발지
		1425-2대				
		1425-4대	416.2	지정	지정	• 기개발지
		1425-5대				
		1425-9대	147.1	지정	-	-
		1425-10대	166.3		-	-
		1425-11대	115.4	지정	-	-
		1425-12대	134.5		-	-
		1425-13대	803.3	지정	지정	• 동일소유자 • 과소필지(1425-14)
		1425-14대				

가구번호	면적(㎡)	지번	면적(㎡)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1425-15대	479.7	지정	지정	• 기개발지, 동일소유자
		1425-16대				
		1425-30대	452.3	권장	지정	• 주민합의에 의한 공동개발 • 동일소유자
		1425-31대				
13 (신림동) (도곽C)	5,714.3	1426-10대	298.0	-	-	-
		1426-2대	321.4	지정 권장	지정	• 동일소유자
		1426-3대				
		1426-4대	128.6	-	-	-
		1426-6대	3,379.3	획지	지정	• 동일소유자, 기개발지
		1426-7대				
14 (신림동) (도곽C)	7,088.6	1417-44대	167.6	지정	지정	• 동일소유자 • 과소필지(1417-44)
		1417-45대				
15 (신림동) (도곽C)	6,258.2	1416-1대	455.6	-	지정 권장	• 동일소유자 • 과소필지(1416-3)
		1416-6대		지정		
		1416-3대	84.3		-	
		1416-4대	205.3		권장	• 과소필지(1416-4)
		1416-5대				
		1416-24대	201.7	지정	-	-
		1416-25대	109.8		-	-
		1416-26대	372.9	지정	지정	• 기개발지, 동일소유자
		1416-27대				
		1416-32대	234.1	지정	-	-
		1416-34대	191.4		-	-
		1416-8대	120.7	지정	권장	• 과소필지 (1416-8, 40, 41)
		1416-40대				
		1416-41대				
15 (신림동) (도곽C)	6,258.2	1416-12대	202.7	권장	권장	• 과소필지 (1416-13)
		1416-13대				
		1416-17대	322.6	-	지정	• 동일소유자
		1416-43대		-		

가구번호	면적(㎡)	지번	면적(㎡)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16 (신림동) (도곽C)	5,421.3	1415-20대	331.2	권장	-	-
		1415-10대	132.6		-	-
		1415-37대	172.7	지정	지정	• 동일소유자 • 과소필지(1415-37)
		1415-1대				
		1415-28대	169.4		지정	• 동일소유자 • 과소필지(1415-38)
		1415-38대	2.3			
		1415-12대	163.0	지정	-	-
		1415-13도(분)	97.3		-	-
		1415-14대	165.0		-	-
		1415-15대	111.7		-	-
		1415-19대	153.7	-	-	-
		1415-13도(분)	79.6	지정	-	-
		1415-16대	106.4		-	-
		1415-17대	91.2		-	-
		1415-18대	130.6		-	-
		1415-27대	92.6		-	-
17 (신림동) (도곽C)	5,103.5	1418-26대	209.0	권장	권장	• 대지내 차량출입 곤란
		1418-27대				
		1418-28대	285.4	-	지정	• 기개발지
		1418-30대		-		
19 (신림동) (도곽C)	5,137.5	1423-2대	171.6	권장	-	-
		1423-3대	673.1		지정	• 동일소유자
		1423-6대		-		
		1423-10대	272.4	지정	지정	• 기개발지
		1423-12대				
		1423-13대	566.4	지정	지정	• 기개발지 • 동일소유자 • 과소필지(1423-14, 15)
		1423-14대				
		1423-15대				
		1423-17대		-		
		1423-18대				
		1423-24대	385.4	-	지정	• 기개발지, 동일소유자
		1423-25대		-		
		1423-27대	177.9	권장	-	-
		1423-28대	121.7		-	-
		1423-33대	199.4	지정	지정	• 기개발지, 동일소유자

가구번호	면적(㎡)	지번	면적(㎡)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1423-34대				
20 (신림동) (도곡C)	5,508.2	1424-1대	157.7	획지	-	-
		1424-2대	94.9		-	-
		1424-7대	116.7		-	-
		1424-8대	113.1		-	-
		1424-9대	96.9		-	-
		1424-3대	246.0	지정	권장	• 과소필지(1424-3)
		1424-4대				
		1424-5대	132.6	지정	-	-
		1424-6대	117.4		-	-
		1424-11대	754.4	획지	지정	• 동일소유자
		1424-14대				
		1424-15대	219.8	-	-	-
		1424-22대	1,393.9	획지	지정	• 기개발지
		1424-26대				
21 (신림동) (도곡C)	5,188.7	1420-31대	261.8	권장	권장	• 과소필지(1420-33)
		1420-33대				
		1420-34대	185.1	지정	지정	• 기개발지 • 과소필지(1420-34)
		1420-35대				
		1420-19대	269.8	권장	권장	• 대지내 차량출입 곤란
		1420-20대				
22 (신림동) (도곡C)	4,385.3	1414-23대	212.9	권장	지정	• 기개발지, 동일소유자
		1414-24대				
		1414-17대	119.7	권장	-	-
		1414-18대	141.8		-	-
		1414-25대	107.8	권장	-	-
		1414-26대	178.2		-	-
		1414-1대	118.0	권장	-	-
		1414-2도	30.7		-	-

가구번호	면적(㎡)	지번	면적(㎡)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1414-3대	98.2		-	-
		1414-4대	115.4		-	-
		1414-6대	193.1	지정	권장	• 과소필지(1414-7)
		1414-7대				
		1414-29대	102.5	권장	-	-
		1414-30대	252.3		-	-
23 (신림동) (도곽C)	9,347.3	1421-18대	574.5	권장	지정	• 기개발지, 동일소유자
		1421-28대				
		1421-22대	296.8	지정	지정	• 기개발지, 동일소유자
		1421-26대				
		1421-23대	440.8	지정	지정	• 동일소유자 • 과소필지(1421-25)
		1421-32대				
		1421-25대		-		
		1421-35대	325.6	지정	지정	• 기개발지, 동일소유자
		1421-38대				
23 (신림동) (도곽C)	9,347.3	1421-47대	410.7	지정	권장	• 과소필지(1421-50)
		1421-50도	10.0	-		
		1421-49대	226.1	지정	지정	• 기개발지
		1421-48대				
		1421-41대				
		1421-60대	123.0	지정	-	-
24 (신림동) (도곽C)	4,877.2	1421-61대	199.7	권장	-	-
		1413-3대	354.4		지정	• 기개발지, 동일소유자
		1413-4대				
		1413-5대	170.2	권장	-	-
		1413-6대	135.9		-	-
		1413-7대	272.4	지정	지정	• 기개발지, 동일소유자
		1413-8대				
		1413-12대	165.0	-	-	-
		1413-31대	284.6	권장	지정	• 기개발지, 동일소유자
		1413-34대				
		1413-35대	171.6	지정	권장	• 과소필지(1413-35)

가구번호	면적(㎡)	지번	면적(㎡)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1413-36대				
25 (신림동) (도곽C)	5,799.3	1409-2대	1,265.5	-	지정	• 동일소유자
		1409-25대		-		
		1409-13대	224.0	권장	지정	• 기개발지, 동일소유자
		1409-14대				
		1409-15대	264.8	지정	지정	• 기개발지, 동일소유자
		1409-17대				
		1409-18대	272.4	-	권장	• 대지내 차량출입 곤란
		1409-19대		-		
		1409-20대	268.1	-	권장	• 대지내 차량출입 곤란
		1409-22대		-		
		1409-23대	296.8	-	권장	• 대지내 차량출입 곤란
		1409-24대		-		
26 (신림동) (도곽C)	2,387.7	1410-3대	215.9	지정 권장	지정	• 기개발지, 동일소유자
		1410-4대				
		1410-9대	136.5	-	-	-
		1410-5대	188.7	지정	권장	• 과소필지(1410-5)
		1410-6대				
		1410-7대	183.5	지정	지정	• 기개발지, 동일소유자
		1410-8대				• 과소필지(1410-7)
		1410-10대	232.5	권장	-	-
		1410-14대	311.7		-	-
26 (신림동) (도곽C)	2,387.7	1410-17대	211.2	지정	-	-
		1410-12대	226.7		지정 권장	• 동일소유자(1410-12, 18)
		1410-18대				• 대지내 차량출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 지정
		1410-15대	287.9	지정	-	
27 (신림동) (도곽C)	4,268.0	1412-12대	196.1	- 권장	-	-
		1412-13대	205.7	지정	권장	• 과소필지(1412-14)
		1412-14대				
		1412-16대	314.4	지정	지정	• 동일소유자 (1412-16,17,18 : 국공유지)
		1412-17도				
		1412-18대				
28 (신림동) (도곽C)	11,106.6	1422-3대	202.3	획지	-	-
		1422-4대	354.7		-	-
		1422-6대	365.0	획지	-	-
		1422-11대	325.6		-	-
		1422-10대	771.6	획지	지정	• 기개발지
		1422-12대				
		1422-14대	203.6	지정	-	-

가구번호	면적(㎡)	지번	면적(㎡)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1422-49대	135.7		-	-
		1422-15대	780.2	획지	지정	• 기개발지, 동일소유자
		1422-16대				
		1422-19대	206.3	지정	-	-
		1422-20대	238.0		-	-
		1422-21대	187.4	획지	-	-
		1422-22대	198.7		-	-
		1422-24대	198.0	획지	-	-
		1422-29대	502.1		-	-
		1422-26대	259.9	지정	지정	• 동일소유자
		1422-27대				
		1422-28대	585.1	지정	지정	• 기개발지
		1422-31대				
		1422-35대	555.6	획지	지정	• 기개발지 • 동일소유자 (1422-36,37)
		1422-36대				
		1422-37대				
		1422-38대	294.9	획지	권장	• 간선변에 대지내 차량출입을 원활히 하기 위한 지정
		1422-42대	175.6			
29 (신림동) (도곽D)	6,491.7	1431-1대	394.0	지정	지정	• 동일소유자
		1431-2대				
		1431-3대	219.5		-	-
29 (신림동) (도곽D)	6,491.7	1431-4대	170.8	지정	-	-
		1431-5대	169.6		-	-
		1431-7대	384.5	지정	-	-
		1431-29대	162.0		-	-
		1431-10대	263.2	지정	지정	• 기개발지
		1431-11대				
		1431-16대	142.5	지정	-	-
		1431-17대	96.2		-	-
		1431-18대	177.2	권장	-	-
		1431-21대	192.7		-	-
		1431-19대	99.2	지정	-	-
		1431-20대	107.4		-	-
		1431-22대	164.7	권장	-	-
		1431-23대	176.9		-	-
		1431-24대	204.6	- 권장	- 권장	• 기개발지, 동일소유자 (1431-25, 26)
		1431-25대	244.3	지정	지정	

가구번호	면적(㎡)	지번	면적(㎡)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1431-26대				• 대지내 차량출입 곤란
		1431-27대	181.8	권장	-	-
		1431-28대	193.7		-	-
		1431-34대	200.7	지정	지정	• 기개발지, 동일소유자
		1431-35대				
		1431-38대	582.9	지정	지정	• 기개발지
		1431-39대				
		1431-40대				
		1431-41대	321.7	-	권장	• 과소필지(1431-44)
		1431-44대		지정		
		1431-43대	133.6		-	-
30 (신림동) (도곽D)	26,408.2	1432-1대	345.9	지정	지정	• 기개발지
		1432-8대				
		1432-2대	118.0	지정	-	-
		1432-5대	121.3		-	-
		1432-9대	115.7	지정	-	-
		1432-10대	136.2		-	-
		1432-64대	192.7	지정	지정	• 기개발지, 동일소유자
		1432-65대	159.7			
		1432-66대	198.0	지정	-	-
		1432-67대	200.6		-	-
		1432-70대	196.4	획지	-	-
		1432-71대	110.1		-	-
		1432-72대	188.4	획지	-	-
		1432-77대	120.0		-	-
		1432-73대	497.2	획지	-	-
		1432-74대	231.4		-	-
30 (신림동) (도곽D)	26,408.2	1432-75대	150.1	획지	-	-
		1432-76대	359.7		-	-
		1432-12대	243.3	지정	지정	• 기개발지
		1432-13대				
		1432-14대	153.7	지정	-	-
		1432-21대	121.3		-	-
		1432-16대	424.8	권장	-	-
		1432-17대			-	-
		1432-18대			-	-
		1432-19대	259.1	지정	지정	• 기개발지, 동일소유자

가구번호	면적(㎡)	지번	면적(㎡)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1432-20대				
		1432-25대	200.3	-	권장	• 과소필지(1432-177)
		1432-177대		-		
		1432-26대	215.7	-	권장	• 과소필지(1432-26)
		1432-27대		-		
		1432-28대	145.1	권장	-	-
		1432-29대	131.2		-	-
		1432-31대	168.9	지정	-	-
		1432-178대 (1432-36대)	277.7		-	• 합필(1432-35대, 1432-36대 → 1432-178대)
		1432-178대 (1432-35대)		권장	-	
		1432-34대	170.2		-	-
		1432-39대	425.8	지정	지정	• 동일소유자
		1432-40대				
		1432-38대		권장		
		1432-41대	173.6		-	-
		1432-47대	187.5	지정	지정	• 기개발지, 동일소유자
		1432-83대				
		1432-49대	129.6	지정	-	-
		1432-50대	136.2		-	-
		1432-174도	266.6	지정	지정	• 동일소유자
		1432-52대				
		1432-53대	75.7		-	-
		1432-170도(분)	44.65		-	-
		1432-54대	277.4	지정	지정	• 동일소유자
		1432-84대				
		1432-64대	352.4	-	지정	• 기개발지, 동일소유자
		1432-65대		-		
		1432-79대	583.1	-	지정	• 동일소유자
		1432-80대		-		
		1432-86대	107.8	지정	-	-
		1432-87대	113.7		-	-
30 (신림동) (도곡D)	26,408.2	1432-92대	352.4	지정	지정	• 기개발지, 동일소유자
		1432-163대				
		1432-164대				
		1432-93대	98.5	권장	-	-

가구번호	면적(㎡)	지번	면적(㎡)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1432-94대	148.4		-	-
		1432-95대	289.9	지정	지정	• 기개발지, 동일소유자
		1432-96대				
		1432-101대	279.7	권장	지정	• 기개발지
		1432-102대				
		1432-103대	157.0	-	-	-
		1432-115대	306.8	-	지정	• 기개발지
		1432-116대		-		
		1432-119대	270.1	-	지정	• 동일소유자
		1432-120대		-		
		1432-140대	360.3	-	권장	• 과소필지
		1432-141대		-		
		1432-148대	281.4	지정	권장	• 과소필지(1432-148)
		1432-150대				
31 (신림동) (도곽D)	3,719.4	1438-1대	192.7	지정	지정	• 동일소유자
		1438-2대				
		1438-14대	335.9	지정	지정	• 동일소유자
		1438-15대				
		1438-17대	334.5	지정	지정	• 기개발지, 동일소유자 • 과소필지(1438-30)
		1438-30대				
		1438-10대	414.5	지정	지정	• 동일소유자 • 과소필지(1438-31)
		1438-19대				
		1438-22대				
		1438-31대				
		1438-23대	397.3	권장	권장	• 맹지
		1438-24대				
		1438-27대	149.8	지정	-	-
		1438-28대	139.5		-	-
32 (신림동) (도곽D)	6,682.0	1459-1대	133.2	권장	-	-
		1459-2대	143.5		-	-
		1459-5대	240.3	-	지정	• 기개발지, 동일소유자
		1459-6대		-		
		1459-12대	215.5	지정	지정	• 기개발지, 동일소유자 • 과소필지(1459-13)
		1459-13대				
		1459-33대	298.5	지정	지정	• 기개발지, 동일소유자 • 과소필지(1459-33)
		1459-34대				

가구번호	면적(㎡)	지번	면적(㎡)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1459-35대				
33 (신림동) (도곽D)	4,274.9	1462-1대	279.3	지정	지정	• 기개발지, 동일소유자
		1462-3대				
		1462-40대	157.8	지정	지정	• 기개발지, 동일소유자 • 과소필지(1462-44)
		1462-44대				
		1462-20대	254.3	지정	지정	• 기개발지 • 과소필지(1462-24)
		1462-24대				
34 (신림동) (도곽D)	5,015.1	1460-1대	394.4	권장	지정	• 기개발지, 동일소유자
		1460-6대				
		1460-7대				
		1460-13대	270.1	권장	지정	• 기개발지 • 과소필지(1460-13, 15)
		1460-14대				
		1460-15대				
		1460-20대	235.2	-	지정	• 기개발지, 동일소유자
		1460-21대		-		
		1460-23대	227.1	-	지정	• 기개발지, 동일소유자
		1460-24대		-		
		1460-25대	257.9	지정	지정	• 기개발지, 동일소유자
		1460-26대				
		1460-32대	237.4	지정	권장	• 과소필지
		1460-34대				
		1460-35대	182.2	지정	지정	• 기개발지, 동일소유자 • 과소필지 (1460-35)
		1460-36대				
		1460-37대	259.1	-	지정	• 기개발지
		1460-38대		-		
		1460-39대	247.1	지정	지정	• 기개발지, 동일소유자
		1460-45대				
35 (신림동) (도곽D)	3,805.8	1437-1대	191.8	-	지정	• 기개발지, 동일소유자 • 과소필지(1434-1)
		1437-6대		-		
		1437-2대	313.7	권장	-	-
		1437-5대	130.2		-	-
		1437-12대	262.5	권장	-	-
		1437-14대	119.0		-	-
37	4,018.6	1461-17대	337.7	-	지정	• 기개발지

가구번호	면적(㎡)	지번	면적(㎡)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신림동) (도곽D)		1461-18대		지정 / 권장		• 과소필지(1461-31)
		1461-31대				
		1461-19대	139.8	-	-	-
		1461-23대	296.8	-	지정	• 기개발지, 동일소유자
		1461-24대		-		
38 (신림동) (도곽D)	7,213.0	1463-25대	233.4	-	지정	• 기개발지, 동일소유자
		1463-26대		-		
38 (신림동) (도곽D)	7,213.0	1463-30대	235.0	지정	지정	• 동일소유자 • 과소필지(1463-31)
		1463-31대				
		1463-35대	248.9	권장	지정	• 기개발지, 동일소유자
		1463-36대				
		1463-64대	189.8	지정	지정	• 동일소유자 • 과소필지(1463-67)
		1463-67대				
39 (신림동) (도곽D)	4,664.7	1435-10대	276.1	-	지정	• 기개발지
		1435-11대		-		
		1435-16대	287.9	-	권장	• 대지내 차량출입 곤란 • 과소필지(1435-16, 17)
		1435-17대		-		
		1435-20대	292.9	-	권장	• 대지내 차량출입 곤란 • 과소필지(1435-22)
		1435-22대		-		
40 (신림동) (도곽D)	2,883.9	1434-20대	422.8	-	지정	• 기개발지
		1434-21대		-		
41 (신림동) (도곽D)	31,669.7	1433-1대	3,376.6	획지	지정	• 기개발지, 동일소유자 • 과소필지(1433-2, 4, 225)
		1433-2대				
		1433-3대				
		1433-4대				
		1433-5대				
		1433-6대				
		1433-7대				
		1433-8대				

가구번호	면적(㎡)	지번	면적(㎡)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1433-9대				
		1433-10대				
		1433-11도				
		1433-12대				
		1433-13대				
		1433-14대				
		1433-197도				
		1433-225대				
		1433-17대	205.3	지정	지정	• 동일소유자 • 과소필지(1433-17)
		1433-18대				
		1433-19대	368.6	지정	지정	• 기개발지 • 과소필지(1433-19)
		1433-20대				
41 (신림동) (도곽D)	31,669.7	1433-28대	161.3	- 권장	-	-
		1433-29대	416.5	지정	지정	• 동일소유자 • 과소필지(1433-30)
		1433-30대				
		1433-54대			-	-
		1433-32대	236.0	획지		
		1433-33대	187.1		-	-
		1433-48대	181.8		-	-
		1433-49대	331.6		-	-
		1433-34대	697.5	획지	지정	• 동일소유자
		1433-35대				
		1433-45대				
		1433-46대				
		1433-51대	373.9	획지	-	-
		1433-59대	164.2		-	-
		1433-60대	288.6		-	-
		1433-58대	344.2		-	-
		1433-63대				
		1433-36대	978.7	획지	특별지정	• 중심지로서 적정규모개발 및 쾌적한 보행환경조성을 위한 지정
		1433-37대				
		1433-38대				

가구번호	면적(㎡)	지번	면적(㎡)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1433-41도(분)				
		1433-43대				
		1433-44대				
		1433-220대				
		1433-64대	165.6	지정	-	-
		1433-66대	186.8		-	-
		1433-69대	262.4	-	권장	• 과소필지(1433-70)
		1433-70대		지정		
		1433-71대	159.0		-	-
		1433-74대	261.2	지정	지정	• 기개발지
		1433-75대				
		1433-76대	250.5	지정	지정	• 기개발지, 동일소유자
		1433-77대				
		1433-90대	257.5	지정	지정	• 기개발지, 동일소유자
		1433-91대				
		1433-86대	408.9	획지	-	-
		1433-88대	248.3		-	-
		1433-89대	135.2		-	-
		1433-95대	404.4	-	지정	• 동일소유자
		1433-227대		-		
41 (신림동) (도곽D)	31,669.7	1433-99대	142.1	획지	-	-
		1433-100대	206.3		-	-
		1433-102대	261.1		-	-
		1433-109대	249.5	지정	지정	• 기개발지
		1433-110대				
		1433-113대	360.0	지정	지정	• 동일소유자 • 과소필지(1433-116)
		1433-114대				
		1433-116대		-		
		1433-122대	524.6	지정	지정	• 기개발지
		1433-123대				
		1433-124대				
		1433-134대	204.3	지정	권장	• 과소필지(1433-134)

가구번호	면적(㎡)	지번	면적(㎡)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1433-57대				
		1433-135대	248.9	지정	지정	• 기개발지, 동일소유자
		1433-145대				
		1433-136대	411.0	-	지정	• 기개발지, 동일소유자
		1433-137대		-		
		1433-138대		-		
		1433-139대	104.1	권장	-	-
		1433-141대	121.1		-	-
		1433-147대	179.3	지정	지정	• 동일소유자 • 과소필지(1433-148)
		1433-148대				
		1433-165대	113.6	지정	권장	• 과소필지(1433-165)
		1433-175대				
		1433-169대	146.1	지정 권장	권장	• 과소필지 (1433-169, 195)
		1433-195대				
		1433-170대	261.5	-	-	-
		1433-177대	157.7	지정	-	-
		1433-191대	157.3		권장	• 과소필지 (1433-183, 191)
		1433-183대		지정		
		1433-178대	134.5		-	-
		1433-180대	241.0	-	지정	• 기개발지
		1433-192대		-		
		1433-185대	146.2	지정	권장	• 과소필지 (1433-185, 194)
		1433-194대				
42 (신림동) (도곡E)	19,639.6	75-6대	2,885.6	지정	-	• 합필(75-6대,75-62대, 75-63대,75-38대, 1641-113대, 1641-7대) • 청년안심주택
		75-62대				
		75-63대				
		75-38대				
		1641-113대				
		1641-7대				
		1641-8대	217.4	지정	-	-

가구번호	면적(㎡)	지번	면적(㎡)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1641-107대	194.6		-	-
		10-206답	4,516.1	특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	• 신림생활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양지병원 증축을 위하여 공동개발(지정) 삭제 및 특별계획구역 지정
		10-207대				
		10-678도				
		1411-30대				
		10-345대				
		10-377종				
		10-501종				
		11-9종				
		10-715대				
		10-275대				
		10-355대	344.0	권장	-	-
		10-356대	162.0		-	-
		11-12대	591.0	권장	-	-
		11-13대	301.0		-	-
		11-17대	228.0	지정	-	-
		11-18대	225.0		-	-
		11-24대	235.0	지정	-	-
		11-25대	132.0		-	-
		11-48대	116.0		-	-
		산170-140임(분)	119.46	-	-	-
		1641-2대	2,873.8	획지	지정	• 기개발지, 동일소유자
		1641-3대				
		1641-6대				
		1641-101대				
		1641-104대				
		1411-9대	395.7	지정	지정	• 기개발지, 동일소유자
		1411-23대				
		1411-28대	743.1	지정	지정	• 기개발지, 동일소유자
		1411-29대				
		1641-9대	171.5	지정	-	-
		1641-10대	217.3		-	-
		1641-16대	1,501.4	지정	지정	• 기개발지
		1641-17대				
42 (신림동)	19,639.6	1411-11대	359.9	지정	지정	• 동일소유자 • 과소필지(1411-11, 12, 13, 14, 15, 16,
		1411-12대				

가구번호	면적(㎡)	지번	면적(㎡)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도곡E)		1411-13대				19, 20, 21, 22)
		1411-14대				
		1411-15대				
		1411-16대				
		1411-18대				
		1411-19대				
		1411-20대				
		1411-21대				
		1411-22대				
43 (신림동) (도곡E)	9,292.6	1640-1대	825.7	획지	권장	• 차량출입 곤란
		1640-2대				
		1640-3대	250.7		-	-
		1640-5대	790.0	획지	특별지정	• 중심지로서 적정규모개발 및 쾌적한 보행환경조성을 위한 지정 • 과소필지(1640-24)
		1640-6대				
		1640-24대				
		1640-25대				
		1640-26대				
		1640-7대	616.0	획지	특별지정	• 중심지로서 적정규모개발 및 쾌적한 보행환경조성을 위한 지정 • 과소필지(1640-7)
		1640-8대				
		1640-22대				
		1640-23대				
		1640-9대	1,915.9	획지	특별지정	• 중심지로서 적정규모개발 및 쾌적한 보행환경조성을 위한 지정 • 과소필지(1640-11, 20, 21)
		1640-10대				
		1640-11대				
		1640-12대				
		1640-13대				
		1640-14대				
		1640-16대				
		1640-20대				
		1640-21대				
		1640-29대	265.1	지정	-	-
		1640-30대	127.1		-	-
		1640-32대	150.5	권장	-	-
		1640-33대	155.2		-	-

가구번호	면적(㎡)	지번	면적(㎡)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1640-34대	276.1	지정	지정	• 기개발지, 동일소유자
		1640-35대				
		1640-36대	295.5	권장	-	-
		1640-42대	168.1		-	-
43 (신림동) (도곽E)	9,292.6	1640-38대	524.4	지정	지정	• 기개발지
		1640-39대				
		1640-40대	1,701.0	권장	-	-
		1640-41대	175.4		-	-
		1640-44대	841.3	지정 권장	지정	• 기개발지, 동일소유자
		1640-45대				
		1640-48대				
		1640-46대	162.1		-	-
		1640-47대	90.5	-	-	-
44 (신림동) (도곽E)	9,022.8	1639-2대	280.0	권장	-	-
		1639-4대	566.1		지정	• 기개발지
		1639-6대				
		1639-7대				
		1639-5대	146.3		-	-
		1639-12대	344.5	지정	지정	• 기개발지
		1639-50대				
		1639-16대	291.5	지정	-	-
		1639-21대	158.0		-	-
		1639-17대	348.3	획지	권장	• 과소필지(1639-18)
		1639-18대				
		1639-19대				
		1639-20대	155.9		-	-
		1639-23대	359.6	획지	지정	• 기개발지
		1639-24대				
		1639-29대	145.8	권장	-	-
		1639-30대	140.0	지정 권장	-	-
		1639-70도	19.1		-	-
		1639-31대	143.4	권장	-	-
		1639-32대	172.5		-	-

가구번호	면적(㎡)	지번	면적(㎡)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1639-33대	176.4		-	-
		1639-34대	1,327.0	권장	지정	• 기개발지 • 과소필지 (1639-42, 43, 45, 46) • 동일소유자
		1639-35대				
		1639-36대		-		
		1639-37대		지정		
		1639-41대				
		1639-43대				
		1639-42대		지정		
		1639-44대				
		1639-45대				
		1639-46대				
44 (신림동) (도곽E)	9,022.8	1639-51대	450.7	지정	지정	• 기개발지 • 과소필지(1639-52, 53)
		1639-52대				
		1639-53대				
		1639-55대				
		1639-56대	210.0	지정	권장	• 과소필지(1639-56)
		1639-57대				
		1639-59대	170.8	권장	-	-
		1639-60대	183.7		-	-
		1639-61대	172.8	지정	-	-
		1639-62대	218.2		-	-
		1639-64대	251.4	지정	-	-
		1639-65대	123.1		-	-
45 (신림동) (도곽E)	10,056.0	1638-1대	3,114.6	지정	지정	• 기개발지
		1638-2대				
		1638-3대	215.8	권장	권장	• 과소필지(1638-4)
		1638-4대				
		1638-6대	409.7	지정	지정	• 동일소유자 • 과소필지(1638-8)
		1638-7대				
		1638-8대				
		1638-11대	10.9	-	- 권장	• 기개발지(1638-12,13) • 동일소유자(1638-12,13) • 과소필지(1638-11,13)
		1638-12대	205.5	지정	지정	
		1638-13대				

가구번호	면적(㎡)	지번	면적(㎡)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1638-14대	90.3		-	-
		1638-15대	180.1	지정	지정	• 동일소유자 • 과소필지(1638-29)
		1638-29대				
		1638-17대	315.5	지정	지정	• 기개발지
		1638-18대				
		1638-19대	616.6	지정	-	-
		1638-20대	181.8		-	-
		1638-23대	317.2	지정	지정	• 기개발지
		1638-25대				
46 (신림동) (도곽E)	4,169.5	1637-1대	139.1	권장	-	-
		1637-2대	191.2		-	-
		1637-4대	492.4	지정	권장	• 간선변 대지내 차량출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 지정
		1637-5대				
		1637-6대	154.7	지정	-	-
		1637-7대	286.3		-	-
46 (신림동) (도곽E)	4,169.5	1637-29대	109.2	지정	지정	• 기개발지, 동일소유자
		1637-30대				
		1637-10대	146.5	지정	-	-
		1637-15대	204.4		권장	• 과소필지(1637-15)
		1637-14대		지정		
		1637-11대	271.3		-	-
		1637-18대	199.0	지정	지정	• 동일소유자
		1637-19대				
		1637-20대	269.9	지정	지정	• 기개발지, 동일소유자
		1637-21대				
		1637-22대	156.6	권장	지정	• 동일소유자
		1637-27대				
47 (신림동) (도곽F)	3,759.1	1587-3대	92.5	-	-	-
		1587-4대	168.9	지정	권장	• 과소필지(1587-4,5)
		1587-5대				
		1587-6대	119.5	-	-	-
		1587-7대	186.1	지정	지정	• 동일소유자
		1587-8대				

가구번호	면적(㎡)	지번	면적(㎡)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1587-10대	225.4	지정	-	-
		1587-41대	210.6		권장	• 과소필지(1587-12)
		1587-12대		권장		
		1587-13대	96.6		-	-
		1587-14대	160.1		-	-
		1587-20대	253.8	-	지정	• 기개발지
		1587-21대		지정		
		1587-22대	137.4		-	-
		1587-25대	135.7	권장	-	-
		1587-27대	101.0		-	-
		1587-28대	140.4		-	-
		1587-32대	118.1	권장	-	-
		1587-33대	109.0		-	-
		1587-34대	128.4		-	-
		1587-35대	291.9	지정	지정	• 기개발지 • 과소필지(1587-36)
		1587-36대				
		1587-37대				
48 (신림동) (도곽F)	8,470.7	1602-1대	1,986.1	지정	지정	• 기개발지
		1602-2대				
49 (신림동) (도곽F)	917.0	1586-1대	298.4	지정	지정	• 기개발지
		1586-4대				
51 (신림동) (도곽F)	6,991.4	1578-13대	177.0	지정	지정	• 기개발지 • 과소필지(1578-13)
		1578-14대				
		1578-16대	133.1	지정	지정	• 기개발지, 동일소유자
		1578-17대				
		1578-28대	167.6	권장	-	-
		1578-29대	144.7		-	-
		1578-30대	153.2	지정	-	-
		1578-31대	96.4		-	-
		1578-32대	213.1		권장	• 과소필지(1578-32)
		1578-33대				
		1578-1대	254.2	-	지정	• 기개발지
		1578-59대		-		

가구번호	면적(㎡)	지번	면적(㎡)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52 (봉천동) (도곽A)	1,118.0	729-4주	710.4	-	지정	• 기개발지, 동일소유자 • 과소필지(731-6)
		729-15주		-		
		731-6주		-		
53 (봉천동) (도곽A)	4,869.0	702-50대	144.0	-	지정	• 동일소유자
		702-51대		-		
		706-27대	185.0	-	권장	• 대지내 차량출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 지정
		706-28대		-		
54 (봉천동) (도곽A)	3,180.0	702-26대	655.0	-	지정	• 동일소유자
		702-39도		-		
		702-110대		-		
		702-111대		-		
55 (봉천동) (도곽A)	6,151.0	704-3대	130.0	-	지정	• 동일소유자 • 과소필지(704-14)
		704-14대		-		
		704-12대	250.0	-	지정	• 기개발지
		705-6대		-		
56 (봉천동) (도곽A)	500.0	698-3대	500.0	-	권장	• 과소필지(698-32)
		698-5대		-		
		698-32대		-		
57 (봉천동) (도곽A)	1,641.1	702-45대	828.2	-	지정	• 기개발지, 동일소유자
		971-1대		-		
		971-3대	386.1	-	지정	• 기개발지, 동일소유자
		971-4대		-		
58 (봉천동) (도곽A)	1,617.9	698-31대	190.0	-	권장	• 과소필지(698-52)
		698-52대		-		
58 (봉천동) (도곽A)	1,617.9	698-28대	218.4	-	지정 / 권장	• 동일소유자 (698-28,971-24) • 과소필지(971-20, 24)
		971-24대	10.4	-		
		971-20대	8.9	-	-	
		971-6대	185.9	-	권장	• 사유혼합 • 과소필지(971-18)
		971-18대		-		
		971-7대	194.8	-	권장	• 사유혼합

가구번호	면적(㎡)	지번	면적(㎡)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971-19대		-		• 과소필지(971-19)
		971-9대	115.6	-	지정	• 동일소유자 • 과소필지(971-21)
		971-21대		-		
59 (봉천동) (도곽A)	1,502.9	971-11대	352.1	-	지정	• 기개발지, 동일소유자
		971-12대		-		

1.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건축물의 용도계획(변경)

(1) 불허용도 결정(변경)조서

■ 기정

구분		불허용도	비고
기정	U1 (일반상업지역 간선가로변)	• 미관지구 불허용도 • 숙박시설(관광호텔 제외) • 기숙사, 종교집회장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제외)	-
		• 숙박시설(관광호텔 제외) • 기숙사 •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성인전용시설 (성인전용 전화방, 성인용품점, 사행성 게임장 등)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제외) •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제외)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제외) • 의료시설중 격리병원,정신병원,장례식장 • 위락시설	• 신림동 75-6, 75-38, 75-62, 75-63, 1641-7, 1641-113에 한함
	U2 (일반상업지역 이면부 및 내부)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제외)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장례식장	-
	U3 (주거지역 간선가로변)	• 미관지구 불허용도 • 기숙사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제외)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U4 (주거지역 이면부 및 내부1)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장례식장 • 주택(1층) (신원시장 연접필지에 한함) • 청소년보호법 제2조5호 가목 7)내지9)의 청소년 출입 · 고용금지업소	-
	U5 (주거지역 이면부 및 내부2)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장례식장 •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도료류판매소 • 자동차관련시설 중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정비학원 •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감화원 • 주택(1층) (문화의 거리변에 한함) • 청소년보호법 제2조5호 가목 7)내지9)의 청소년 출입 · 고용금지업소	-

주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참조

주2) 미관지구 불허용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주3)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비율은

용적률의 10% 이상 적용 (가구번호 47, 48, 49에 해당하는 필지 미적용)

- 다만 입지특성과 공공기여(기부채납 10%이상 등)를 감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허용용적률의 10% 이상 계획 가능
- 용적률 10% 이상의 설치는 지상부 설치를 의미
- 남부순환로, 신림로변에 접한 일반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축물 건축시 1~2층은(간선도로에 접한 동에 한함)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로 설치할 것

주4) 문화의 거리변 :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2-1호선에 접한 단위대지

주5) 신원시장 연접필지 : 가구 47, 48, 49호에 해당하는 단위대지

※ 전 구역을 대상으로 건축물 지하층의 주거용도 불허

※ 가구번호 47, 48, 49에 해당하는 필지(신원시장 일대)의 건축물 용도는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불허용도(U4)를 제외한 용도에 한하여 가능

■ 변경

구분		불허용도	비고
변경	U1 (일반상업지역 간선가로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2호라목 기숙사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나, 파목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러목 (종교집회장, 안마시술소)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다목 중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등에 해당하는 시설 - 제6호 종교시설 - 제9호의 의료시설 가목 중 정신병원, 나목 - 제12호 수련시설 (단, 청소년 수련관은 제외함) - 제13호의 운동시설 가목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제15호 숙박시설(단, 관광호텔은 제외함) - 제16호 위락시설 - 제17호 공장 - 제18호 창고시설 -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제외) -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제외) -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제22호 자원순환 관련 시설 - 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 - 제26호 묘지관련시설 - 제28호 장례시설	-
	U2 (일반상업지역 이면부 및 내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9호의 의료시설 가목중 정신병원, 나목 - 제15호 숙박시설(단, 관광호텔은 제외함) -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제외) - 제26호 묘지관련시설 - 제28호 장례시설	-
	U3 (주거지역 간선가로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2호라목 기숙사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파목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러목(안마시술소) - 제9호의 의료시설 가목 중 정신병원, 나목 - 제13호의 운동시설 가목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제16호 위락시설 - 제17호 공장 - 제18호 창고시설 -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제외) -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제외) -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제22호 자원순환 관련 시설 - 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 - 제26호 묘지관련시설 - 제28호 장례시설	-
	U4 (주거지역 이면부 및 내부1)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성인용품 판매점, 성인전용 전화방, 성인전용 PC방 및 이와 유사한 성인전용업 -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성인용품 판매장 등 유사용도 - 제9호의 의료시설 가목 중 정신병원, 나목 - 제26호 묘지관련시설 - 제28호 장례시설	-
	U5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구분		불허용도		비고
	(주거지역 이면부 및 내부2)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성인용품 판매점, 성인전용 전화방, 성인전용 PC방 및 이와 유사한 성인전용업 -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성인용품 판매장 등 유사용도 - 제9호의 의료시설 가목 중 정신병원, 나목 - 제16호 위락시설 - 제17호 공장	- 제18호 창고시설 -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사목 (도료류 판매소) -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라, 바, 사목 (검사장, 매매장, 운전학원) - 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 - 제26호 묘지관련시설 - 제28호 장례시설	
	U6 (일반상업지역 이면부 및 내부2)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성인용품 판매점, 성인전용 전화방, 성인전용 PC방 및 이와 유사한 성인전용업 -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성인용품 판매장 등 유사용도 - 제9호의 의료시설 가목중 정신병원, 나목	- 제15호 숙박시설(단, 관광호텔은 제외함) -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제외) - 제26호 묘지관련시설 - 제28호 장례시설	-

주1) 청년안심주택, 역세권 활성화사업, 시장정비사업 등 별도의 사업을 진행한 필지의 경우 해당 사업에서 고시한 건축물 용도에 따름

주2) 불허용도(U4) 중 신원시장, 별빛거리(구 문화의 거리) 연접필지에 한하여 1층 주택용도는 불허함

주3) 전 구역을 대상으로 건축물 (반)지하층의 주거용도 불허함

주4) 본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시설의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의 각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제한 조항에 따른다

<이하 여백>

(2) 권장용도 결정(변경)조서

■ 기정

구분			권장용도	비고
기정	1 [일반상업지역 남부순환로변, 신림역인근]	전층	•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집회장 - 제7호의 판매시설 (도매시장 제외) - 제9호의 의료시설 중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제외) - 제14호의 업무시설 (바닥면적 1,000㎡) 이상 ※ 신림동 1641-113, 7번지도 적용	
	2 [일반상업지역 신림로변]	전층	•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상점 - 제9호의 의료시설 중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제외)	
	3 [주거지역 간선가로변]	전층	•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아동센터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상점 (남부순환도로 및 신림로변에 한함) - 제11호 노유자시설	
	4 [순대타운 일대 (이면부 상업지역)]	1~2층	•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나항목 (휴게음식점 등)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아, 자항목 (일반음식점 등)	
		3층 이상	•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나항목 (휴게음식점 등)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아, 자항목 (일반음식점 등) -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상점	
	5 [문화의 거리변]	1~3층	•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3,4호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의 소매점 중 다음에 해당되는 용도 ※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문화 및 상품소매업종 1.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474) 2. 문화, 오락 및 여가용품 소매업 (476) 3. 의약품, 의료용 기구, 화장품 및 방향제 소매업 (4781) 4.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4783) 5. 예술품 및 선물용품 소매업 (4784)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6 [도림천변]	1~2층	•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 나항목 (소매점 및 음식점 등)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가, 라항목 (극장, 영화관, 음악당, 서점) - 제4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아, 자항목 (일반음식점 등)	

구분		권장용도		비고
		전층	•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7 [신원시장 일대] (가구번호 47,48,49 해당)	1~2층	•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 나항목 (소매점 및 음식점 등)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아, 자항목 (일반음식점 등)	
		전층	•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상점 -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 당해 용도가 차지하는 바닥면적의 합이 건물전체(특정층) 바닥면적(바닥면적 산정시 주차장 면적 제외)의 20%이상(상업지역은 30%이상)인 경우 권장용도가 수용된 것으로 본다.			

■ 변경

구분		권장용도		비고
변경	1 (남부순환로, 신림로변 남측 간선부)	전층	•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하목(일반업무시설 등) - 제14호 업무시설(단, 오피스텔은 제외함)	
	2 (신림로 간선부)	전층	•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사목 (마을공동작업소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공연장), 하목(일반업무시설)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 라목(공연장, 전시장) -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목(상점) - 제14호 업무시설 (단, 오피스텔은 제외함) • 문화예술진흥법 - 제3항 문화시설 바목(예술인이 창작활동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 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 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 1.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85613) 2. 무도장 운영업(91291) 3. 공연시설 운영업(90110)	
	3 (보라매로, 봉천로, 남부순환로변 간선부)	전층	•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하목(일반업무시설 등) -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목(상점)(남부순환로 및 신림로변에 한함) - 제14호 업무시설 (단, 오피스텔은 제외함)	
	4 (순대타운내부)	1~2층	•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나목(휴게음식점 등)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아, 자목(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구분			권장용도	비고
		3층 이상	•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목(상점 등)	
	5 (별빛거리 및 이면부보행축)	1~3층	•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나목 (휴게음식점 등)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아, 자목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6 (도림천변)	1~2층	•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 나목(소매점 및 휴게음식점 등)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라, 아, 자목(서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7 (신원시장 이면부)	1~3층	•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 나목(소매점 및 휴게음식점 등)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아, 자목(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나, 다목(소매시장, 상점 등)	
	• 연면적의 30%이상을 설치시에만 권장용도 계획 준수한 것으로 인정함 • 청년안심주택, 역세권 활성화사업, 시장정비사업 등 별도의 사업을 진행한 필지의 경우 해당 사업에서 고시한 건축물 용도에 따름 • 권장용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개발하는 경우, 건축인허가시 건축물대장 내 구체적인 권장용도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3) 지정용도 결정조서(신설)

구분		권장용도		비고
신설	1 (신원시장)	1층	•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 나목 (소매점 및 휴게음식점 등)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아, 자목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나, 다목 (소매시장, 상점)	

■ 지정용도 계획 결정 사유서

구분	결정내용	결정사유
신설	• 신원시장 일대에 지정용도 신설	• 신원시장일대 기능 유지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저층부에 시장기능을 지정용도로 결정

나. 건축물의 개발밀도 계획(변경)

(1) 건폐율 결정(변경)조서

1) 건축물의 건폐율(변경)

구분	건폐율		비고
	기정	변경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60% 이하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준용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이하	50% 이하	
준주거지역	60% 이하	60% 이하	
일반상업지역	60% 이하	60% 이하	

■ 건폐율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변경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60% 이하	• 당곡역 동측에 구역계 확장으로 인하여 편입구간에 건폐율 결정

2) 건폐율 완화항목 및 내용(변경)

적용지역		적용조건	건폐율 완화	비고
사업지구 전지역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 이하	• 공공시설부지제공(기부채납)에 의한 건폐율 완화는 용적률 완화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함
기정	문화의 거리변	신축시	• 일반상업지역 : 10% 이하 (60% 이하 → 70% 이하) • 준주거지역 : 5% 이하 (60% 이하 → 65% 이하)	• 신원시장 도림천변 선형필지의 건폐율은 해당 권장용도를 준수한 경우(해당 층 바닥 연면적의 30%이상)에 한해 건폐율 완화 • 건축물 외벽처리에 관한 민간부문 시행지침 준수 • 옥외광고물에 대한 민간부문 시행지침 준수 ※ 개축, 증축, 대수선 등 내외부 전체 보수 포함
	차없는 거리변		• 일반상업지역 : 10% 이하 (60% 이하 → 70% 이하)	
	신원시장 도림천변 선형필지		• 신원시장 도림천변 선형필지 : 10% 이하 (60% 이하 → 70% 이하)	
변경	별빛거리	신축시	• 일반상업지역 : 10% 이하 (60% 이하 → 70% 이하) • 준주거지역 : 5% 이하 (60% 이하 → 65% 이하)	• 신원시장 도림천변 선형필지의 건폐율은 지정용도를 준수한 경우에 한해 건폐율 완화 • 건축물 특화 관련하여 민간부문 시행지침 준수(외벽처리 등 형태 및 외관) • 옥외광고물에 대한 민간부문 시행지침 준수 ※ 개축, 증축, 대수선 등 내외부 전체 보수 포함
	차없는 거리변		• 일반상업지역 : 10% 이하 (60% 이하 → 70% 이하)	

적용지역	적용조건	건폐율 완화	비고
신원시장 도림천변 선형필지		• 신원시장 도림천변 선형필지 : 10% 이하 (60% 이하 → 70% 이하)	

■ 건폐율 완화항목 및 내용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 적용지역 명칭 변경 - 문화의거리 → 별빛거리	• 기정과 동일한 위치에 대하여 명칭 변경

(2) 용적률 결정(변경)조서

1) 건축물의 용적률(변경)

구분	적용지역		용적률			비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주1)	상한용적률 주2)	
기정	일반상업지역	간선부	600%	800%	공공시설을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에 따른 산정식 적용	기존 용도지역을 고려한 기준용적률설정
			기본용적률: 724.40% 이하	기본용적률: 724.86% 이하	법적용적률 이하	신림동 1745, 1745-1에 한함 ※ 확정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지번 재부여로 75-6, 75-38, 75-62, 75-63,1641-7, 1641-113→1745, 1745-1로 변경
기정	일반상업지역	이면부	450%	660%	공공시설을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에 따른 산정식 적용	기존 용도지역을 고려한 기준용적률설정
	준주거지역	접도조건양호	300%	400%		
		접도조건불량	250%	330%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도시설계시 용도상향)	접도조건양호	300%	360%		
		접도조건불량	250%	300%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접도조건양호	250%	350%		
		접도조건불량	250%	300%		
		신원시장일대	200%	250%		

구분	적용지역		용적률			비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주1)	상한용적률 주2)	
	제2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접도조건양호	200%	300%		
		접도조건불량	200%	250%		
	제3종일반주거지역		200%	250%		
변경	일반상업지역	간선부주3)	600%	800%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기존 용도지역을 고려한 기준용적률설정
		이면부	450%	660%		
	준주거지역	접도조건양호	300%	400%		
		접도조건불량	250%	350%	400%이하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도시설계시 용도상향)	접도조건양호	300%	360%		
		접도조건불량	250%	300%		
	제3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접도조건양호	250%	350%		
		접도조건불량	250%	300%		
		신원시장일대	200%	250%주4)		
	제2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접도조건양호	200%	300%		
		접도조건불량	200%	250%		
	제3종일반주거지역		200%	250%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180%	200%		

※ 접도조건양호 : 주거지역 8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 접도조건불량 : 주거지역 8m 미만 도로에 접한 대지

※ 용도지역 변경 시기 : 1991. 5. 11일 이후 적용

※ 서로 다른 용적률 규제를 받는 단위대지 간 공동개발에 의하여 하나의 대지로 개발이 되는 경우 기준용적률 및 허용용적률은 다음과 같음

① 가구 및 획지계획 등의 변경에 의해 대지에 서로 상이한 지침이 적용될 경우에는 폭이 넓은 도로에 면한 대지에 적용되는 지침을 적용하고, 이면부로 위치가 변경되는 대지(필지분할 포함)는 이면부 지침을 적용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면적이 큰 대지에 적용되는 지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당해 지구단위계획 또는 운영지침에서 별도의 계획 또는 지침이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함.

② 용도지역이 다른 필지들이 필지간 공동개발에 의하여 하나의 대지로 개발이 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따름

※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비율은 아래에 따르며, 신축에 한하여 적용함.

- 일반상업지역 중 간선변(용적률600%/800%결정구역): 전체 용적률의 20%이상 & 연면적의 20%이상
- 일반상업지역 중 간선변 외(용적률 400%/660%결정구역):전체 용적률의 15%이상 & 연면적의 20%이상
- 준주거지역 중 간선변: 전체용적률의 15%이상
- 준주거지역 이면부는 비주거비율 10%이상 조성한 경우에 허용용적률 적용이 가능하며, 비주거비율 10%미만 조성한 경우에는 허용용적률의 90%까지만 적용 가능

- 용적률의 20% 또는 15% 또는 10% 이상 설치는 지상부 설치를 의미
- 남부순환로, 신림로변에 접한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 건축시 간선도로에 접한 동에 한하여 저층부 (1~2층)에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로 설치할 것
- 용도지역 조정가능지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변경시, 용적률의 15%를 비주거용도로 설치하여야 함

주1)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

주2) 상한용적률 산정방식

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적용)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1+1.3×가중치×a) 이내

-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제공부지의 용적률(2개 이상의 용도지역인 경우에는 면적대비 가중평균한 용적률) 비율
- a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② (친환경 상한용적률 적용)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1+ 0.7 X Σ친환경 건축물 인증 완화비율(ß))

- 의무기준을 초과하는 친환경 건축물 조성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최대한도에서 120%이내 적용 가능
- 친환경건축물 기준은 ⓐ ZED 인증(녹색건축법) ⓑ녹색건축 및 건축물에너지효율 인증(녹색건축법)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녹색건축법) ⓓ 장수명주택인증(주택법)
- ⓐ 및 ⓑ 항목은 중복 적용 불가
- ⓐ ~ ⓒ 항목 중복 적용시 완화비율의 합은 15% 이내 (0.7 X Σ(ⓐ~ⓒ) ≤ 15%)

주3) 청년안심주택, 역세권 활성화사업, 시장정비사업 등 별도의 사업을 진행한 필지의 경우 해당 사업에서 고시한 용적률 체계를 따름

주4) **신원시장 일대에 공동개발계획의 2필지이상 공동개발(권장)계획을 이행하는 경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시에만 기준/허용용적률은 200%/350%를 적용**하며, 허용용적률 완화를 위하여 별도의 인센티브 체계를 적용함.

- 15% 이상을 공공기여 하여야 함

- 신원시장 구역 내 신축 시, 시장기능을 유지하는 계획을 포함하여야 함((예시)시장시설물(아케이드, 문주 등)를 보존, 1층부 지정용도 이행, 신원시장 건축가이드라인 이행 등)

■ 용적률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적용지역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변경	준주거지역	접도조건불량	• 허용용적률 상향 - 330% → 350%	• 용도지역에 부합하는 적정 용적률 체계 수립
	제3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신원시장일대	• 공동개발계획 이행시, 허용용적률 상향 - 250% → 350%	• 공동개발시, 지역필요시설을 제공하고, 용도지역에 부합하는 적정 용적률 계획 수립

■ 일반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물 입지 시 기준 · 허용용적률(변경없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12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양재지구 지구단위계획 외 101개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물의 용적률계획" 결정 변경]('19.9.19)

①기준용적률 600%, 허용용적률 800%를 적용받는 필지	②기존용적률 450%, 허용용적률 660%를 적용받는 필지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름 - 상한용적률은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3항 관련 [별표3]제2호가목에 따라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330%이하(허용용적률의 50%)로 한다. ([별표3] 제2호나목의 공공주택 추가 확보 시 주거용적률은 495%이하(허용용적률의 75%)로 한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3]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과 제2호나목에 따른 공공주택 추가 확보에 따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용적률 기준은 같은 조례 부칙(제7093호, 2019.3.28.)제2호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나면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유효기간에 대해 도시계획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3] 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과 제2호나목에 따른 공공주택 추가확보에 따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용적률 기준은 같은 조례 부칙(제7093호, 2019.3.28.)제2목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나면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유효기간에 대해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개정규정은 2025년 3월 27일까지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까지 적용)

(3) 용적률 완화항목 및 내용(변경)

1) 인센티브 적용기준

■ 기정

① 허용용적률 산정 : 기준용적률 + Σ(각 항목별 용적률 인센티브) ≤ 허용용적률

② 공동개발 또는 맞벽건축은 중복하여 적용받지 않음

③ 미관지구 내 건축한계선(벽면한계선 포함) 후퇴부분은 인센티브 면적 산정 시 제외

④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시 대지 내 공지 및 대지 내 통로 등의 인센티브는 중복하여 사용하지 아니함(예,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 후퇴부분에 보차혼용통로 및 공공보행통로 조성시 등)

⑤ 전층 권장용도는 주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가 지상부 전체 연면적(주차장 제외)의 주거지역 20% 이상, 일반상업지역 30% 이상 설치시 수용된 것으로 봄

⑥ 허용용적률 산정을 위한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은 친환경 인센티브 100분의 30이상, 계획유도 인센티브 합은 100분의 70 이내로 하고, 기준용적률과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의 합은 허용용적률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⑦ 친환경 인센티브는 해당 인센티브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 준수를 통하여 부족한 친환경 인센티브의 대체 적용은 인정하지 않음. 단,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계획한 경우에는 계획유도 인센티브 미달량에 대하여 친환경 인센티브로 대체 적용 가능

■ 변경

① 허용용적률 산정 : 기준용적률 + Σ(각 항목별 용적률 인센티브) ≤ 허용용적률

②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19-36호(2019.4.18.)」으로 도로명 기준의 건축선이 지정된 구역내 건축한계선(벽면한계선 포함) 후퇴부분은 인센티브 면적 산정시 제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018.4.19.)으로 미관지구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의 미관지구내 건축선 유지를 위하여 도로명 기준으로 건축선을 변경·지정함

③ 성격이 유사한 계획요소가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항목을 선택하여 적용가능하나, 중복적용은
불가능함 (예시: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 후퇴부분에 보차혼용통로 및 공공보행통로 조성시 유리한 한가지 항목에 관하여만 적용)

④ 전층 권장용도는 해당용도의 바닥면적 합계가 전체 연면적(주차장 제외)의 30%이상 설치시 수용된 것으로 봄

⑤ 허용용적률 산정을 위한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은 중점 인센티브 100분의 30 이상, 계획유도 인센티브 합은 100분의 70 이내로 하고, 기준용적률과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의 합은 허용용적률 범위 초과 불가

⑥ 중점 인센티브는 해당 인센티브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 준수를 통하여 부족한 중점 인센티브의 대체 적용은 인정하지 않음. 단,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계획한 경우에는 계획유도 인센티브 미달량에 대하여 중점 인센티브로 대체 적용 가능

⑦ 청년안심주택, 역세권활성화사업, 시장정비사업등의 개별사업을 시행하는 필지는 해당 사업에서 고시한 인센티브 적용 기준을 따른다

2)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적용기준

①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상한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및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및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적용」에 따라 산정

② **서울시 녹색건축물설계기준에서 정한 의무인증 기준을 초과 획득한 건축물의 경우, 상한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최대 한도의 120%이내로 완화 가능하고, 산정식은 다음과 같음.

상한용적률 산정 : 허용용적률 × (1+ 0.7 × (Σ친환경 건축물 인증 완화비율(ß))

- 친환경 건축물 인증 완화비율(ß)

※ ① 및 ②항목은 중복 적용불가. ①~③ 항목 중복 적용시 완화비율의 합은 15% 이내 (0.7 × (Σ①~③) ≤ 15%)

① ZEB 인증(녹색건축법)

ZEB등급	ZEB1	ZEB2	ZEB3	ZEB4	ZEB5
완화비율	15%	14%	13%	12%	11%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1++ 획득하고, 에너지 자립율이 20%미만인 경우 완화비율 : 10%

② 녹색건축 및 건축물에너지효율 인증(녹색건축법)

녹색건축인증 / 에너지효율인증	최우수 (그린1등급)	우수 (그린2등급)
1+등급	9%	6%
1 등급	6%	3%

③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녹색건축법)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량의 용적비율	15%이상	20%이상	25%이상
완화비율	5%	10%	15%

④ 장수명주택인증(주택법)

장수명주택 인증등급	최우수	우수
완화비율	15%	10%

③ 공동개발(특별지정)계획상 대지내 지하철출입구 등 건물 또는 대지내 설치 및 보행로 설치 등 공공기여를 통해 상한용적률 완화. 구체적인 공공기여 계획은 표기에 따르며, 용적률완화 범위는 공동개발 필지수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18항 적용
- 공공보도의 보행환경개선과 도시미관향상을 위하여 지하철 출입구 등을 건물 또는 대지내 설치하여 기부채납하거나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 대지에 설치할 경우: 허용용적률 ×(지하철출입구 또는 환기구의 건폐면적/대지면적)이내
- 건물에 설치할 경우: 허용용적률 ×(지하철출입구 또는 환기구의 연면적/건물연면적)이내

※ 향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변경사항 발생시 해당 변경사항에 따름

※ 관악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통해 사업계획 · 인센티브 최종 결정

④ 신원시장 이면부 일대에 공공임대주택 설치시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가능

⑤ 다만, 부득이하게 공공기여계획 변경하는 경우,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지역여건상 필요한 공공시설을 제공하며, 도로는 통행여건을 고려하여 연속적으로 조성

⑥ 그 외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항목은 관련 지침에 따르며, 관련지침의 제 · 개정시에는 그에 따름

3)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신설)

연번	항목		권장설치물	완화조건	항목별점수
1	도시안전개선	범죄예방설계 (CPTED) 기법 도입	공동현관 미러시트	기준용적률 X 적용항목별 점수 X α	0.2
2			공동현관 반사경 / 센서등		0.2
3			필로티주차장 천장 모서리거울		0.3
4			필로티주차장 전면부 센서등		0.2
5			도어클로저		0.1

※ 권장설치물 항목은 중복합산하여 산정가능함

예시) 공동현관 미러시트 + 필로티주차장 천장 모서리 거울 =

(200%×0.2×0.08)+(200%×0.3×0.08) = 8.0

→ 도시안전개선 항목에서 완화되는 최종 인센티브의 양 = 8.0%

4) 용적률 완화항목 및 내용(변경)

■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유형(기정)

유형구분	용도지역	입지특성	위치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A	일반상업지역	간선부	신림역세권 간선부 일대	600%이하	800%이하
			도림천변(순대타운 일대)		
		이면부	신림역세권 이면부 일대	450%이하	660%이하
B	일반상업지역	간선부	신림동길 (문화의 거리)변	450%이하	660%이하
	준주거지역	간선부	남부순환로변 (동측)	300%이하	400%이하
			신림동길(문화의 거리)변		
		이면부	도림천변(순대타운 남측)	300%이하	400%이하
			신림동길(문화의거리)변	200%이하	300%이하
			신원시장 일대(도림천변)	200%이하	250%이하
C	준주거지역	이면부	신원시장 일대(내부)	200%이하	250%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D	준주거지역	간선부	봉천로변 (동측)	300%이하	400%이하
			신림로변 (남측)		
			남부순환로변 (동측)	250%이하	350%이하
E	준주거지역	간선부	남부순환로 191번길	250%이하	350%이하
		이면부	남부순환로-신림로 이면부 일대 (서측)	300%이하	400%이하
			봉천로-신림로 이면부 일대 (동측)		
			남부순환로-신림로 이면부 일대 (서측)	250%이하	330%이하
			봉천로-신림로 이면부 일대 (동측)		
			도림천변 (북측)	200%이하	300%이하
			봉천로 6길변		
F	준주거지역	간선부	신림로변 (북측)	300%이하	360%이하
		이면부			

유형구분	용도지역	입지특성	위치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G	준주거지역	간선부	봉천로-신림로 (북측)	300%이하	360%이하
		이면부	봉천로-신림로 이면부 일대	250%이하	300%이하
			남부순환로 이면부 일대		
			남부순환로 191길 이면부 일대		
			신림동길(문화의거리) 이면부 일대	200%이하	250%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간선부	신원시장 일대 (남부순환로변)	200%이하	250%이하

■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공통적용)(기정)

연변	세분	세부계획기준		비고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그린1등급) : 기준용적률 X 0.12 우수(그린2등급) : 기준용적률 X 0.08 우량(그린3등급) : 기준용적률 X 0.0	세기준 모두 1등급 만족시: 기준용적률 X 0.4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물 인증 기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 준용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른 의무 대상 준수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에너지 효율 1등급 : 기준용적률 X 0.08 에너지 효율 2등급 : 기준용적률 X 0.06 에너지 효율 3등급 : 기준용적률 X 0.04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대	신재생에너지 1등급 : 기준용적률 X 0.12 신재생에너지 2등급 : 기준용적률 X 0.10 신재생에너지 3등급 : 기준용적률 X 0.08 신재생에너지 4등급 : 기준용적률 X 0.06 신재생에너지 5등급 : 기준용적률 X 0.04		※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준용 건축물 인증 심사기준 ※ 공급률로 등급판정 대체 가능
	중수도 시설설치	기준용적률 X 0.04		총 사용량의 10%이상 처리시설 설치시 적용 관련법상 의무 시설인 경우 제외
	빗물관리 시설설치	기준용적률 X 0.04		빗물저류·이용시설 용량(ton) 및 빗물침투시설 침투량(ton/hr)의 합이 건축면적X 0.05 또는 대지면적 X 0.02 이상이 되도록 설치
	옥상녹화	기준용적률 X (녹화면적/대지면적) X 0.1		법정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녹화면적은 대지면적 30%까지만 허용
	자연지반 보존	기준용적률 X (보존면적/대지면적) X 0.2		자연토양 및 투수성 포장 지하구조물 미설치시

연변	세분	세부계획기준	비고
	녹색 주차장	기준용적률 X (설치면적/대지면적) X 0.2	기준용적률 X 0.05 이내

<이하 여백>

■ 용적률 완화구역 A(기정)

유형구분	용도지역	입지특성	위치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A	일반상업지역	간선부	신림역세권 간선부 일대	600%이하	800%이하
			도림천변(순대타운 일대)		
		이면부	신림역세권 이면부 일대	450%이하	660%이하

구분	항목			완화용적률(%)	비고
기정	획지계획	획지단위개발/공동개발(지정)	준수시	기준용적률×α	2필지 : a=0.25 3필지 : a=0.27 획지 및 4필지 이상 : a=0.3
		맞벽건축			
		공동개발(권장)			2필지: a=0.22 3필지 이상:a=0.25
		자율적 공동개발			a=0.22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규모 준수시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 /대지면적×2	
		쌈지형공지, 침상형 공지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2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2.5	제공면적 산정시 건축법에 의한 의무면적은 제외함
		공공보행통로(보차혼용통로)		기준용적률×(조성면적-의무면적) /대지면적×2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용도 준수시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연면적)×0.5	
	보행개선	지하연결통로 설치	준수시	기준용적률×0.07	
	도시경관 개선	건축물 등 형태	준수시	기준용적률×0.07	1층부 전면투시처리 (간선부에 한함, 70%이상) 폭 15m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함
	주차계획	공동주차출입구	준수시	기준용적률×0.05	
	건축물내 공공시설 제공 시	건물내 일정공간을 공공에 사용권(구분지상권)으로 제공할 경우	준수시	기준용적률×(제공면적/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a (제공면적/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의 계수는 0.1을 넘을 수 없음	지상1층 : a=5 지하1층, 지상 2,3층 : a=4 기타층 : a=3

<이하 여백>

■ 용적률 완화구역 B(기정)

유형구분	용도지역	입지특성	위치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B	일반상업지역	간선부	신림동길 (문화의 거리)변	450%이하	660%이하
	준주거지역	간선부	남부순환로변 (동측)	300%이하	400%이하
			신림동길(문화의 거리)변		
		이면부	도림천변(순대타운 남측)	300%이하	400%이하
			신림동길(문화의거리)변	200%이하	300%이하
			신원시장 일대(도림천변)	200%이하	250%이하

구분	항목			완화용적률(%)	비고
기정	획지계획	공동개발(지정)	준수시	기준용적률×a	• 2필지 : a=0.25 • 3필지 : a=0.27 • 획지 및 4필지 이상 : a=0.3
		맞벽건축			• 2필지 : a=0.22 • 3필지 이상 : a=0.25
		공동개발(권장)			
		자율적 공동개발			• a=0.22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규모 준수시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 /대지면적×2	
		쌈지형공지, 침상형 공지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2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2	• 제공면적 산정시 건축법에 의한 의무면적은 제외함
		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통로)		기준용적률×(조성면적-의무면적) /대지면적×2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용도 준수시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 연면적)×0.5	
	도시경관 개선	건축물 등 형태	준수시	기준용적률×0.07	• 1층부 전면투시처리 (간선부에 한함, 70%이상) • 폭 15m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함
	주차계획	공동주차출입구	준수시	기준용적률×0.07	
	건축물내 공공시설 제공 시	건물내 일정공간을 공공에 사용권(구분지상권)으로 제공할 경우	준수시	기준용적률×(제공면적/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a (제공면적/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의 계수는 0.1을 넘을 수 없음	• 지상1층:a=5 • 지하1층, 지상 2,3층:a=4 • 기타층:a=3

<이하 여백>

■ 용적률 완화구역 C(기정)

유형구분	용도지역	입지특성	위치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C	준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이면부	신원시장 일대(내부)	200%이하	250%이하

구분	항목			완화용적률(%)	비고
기정	획지계획	공동개발(지정)	준수시	기준용적률×a	• 2필지 : a=0.25 • 3필지 : a=0.27 • 획지 및 4필지 이상 : a=0.3
		맞벽건축			• 2필지 : a=0.22 • 3필지 이상 : a=0.25
		공동개발(권장)			
		자율적 공동개발			• a=0.22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규모 준수시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 /대지면적×2	
		쌈지형공지, 침상형 공지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2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3	• 제공면적 산정시 건축법에 의한 의무면적은 제외함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용도 준수시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 연면적)×0.5	
	주차계획	공동주차출입구	준수시	기준용적률×0.1	
	건축물내 공공시설 제공 시	건물내 일정공간을 공공에 사용권(구분지상권)으로 제공할 경우	준수시	기준용적률×(제공면적/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a (제공면적/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의 계수는 0.1을 넘을 수 없음	• 지상1층:a=5 • 지하1층, 지상 2,3층:a=4 • 기타층:a=3

<이하 여백>

■ 용적률 완화구역 D(기정)

유형구분	용도지역	입지특성	위치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D	준주거지역	간선부	봉천로변 (동측)	300%이하	400%이하
			신림로변 (남측)		
			남부순환로변 (동측)	250%이하	350%이하

구분	항목			완화용적률(%)	비고
기정	획지계획	공동개발(지정)	준수시	기준용적률×a	• 2필지 : a=0.25 • 3필지 : a=0.27 • 획지 및 4필지 이상 : a=0.3
		맞벽건축			• 2필지 : a=0.22 • 3필지 이상 : a=0.25
		공동개발(권장)			• a=0.22
		자율적 공동개발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규모 준수시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 /대지면적×2	
		쌈지형공지, 침상형 공지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2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3	• 제공면적 산정시 건축법에 의한 의무면적은 제외함
		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통로)		기준용적률×(조성면적-의무면적) /대지면적×2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용도 준수시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 연면적)×0.5	
	도시경관 개선	건축물 등 형태	준수시	기준용적률×0.1	• 1층부 전면투시처리(간선부에 한함, 70%이상) • 폭 15m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함
	주차계획	공동주차출입구	준수시	기준용적률×0.1	
	건축물내 공공시설 제공 시	건물내 일정공간을 공공에 사용권(구분지상권)으로 제공할 경우	준수시	기준용적률×(제공면적/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a (제공면적/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의 계수는 0.1을 넘을 수 없음	• 지상1층 : a=5 • 지하1층, 지상 2,3층 : a=4 • 기타층 : a=3

<이하 여백>

■ 용적률 완화구역 E(기정)

유형구분	용도지역	입지특성	위치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E	준주거지역	간선부	남부순환로 191번길	250%이하	350%이하
		이면부	남부순환로-신림로 이면부 일대 (서측)	300%이하	400%이하
			봉천로-신림로 이면부 일대 (동측)		
			남부순환로-신림로 이면부 일대 (서측)	250%이하	330%이하
			봉천로-신림로 이면부 일대 (동측)		
			도림천변 (북측)	200%이하	300%이하
			봉천로 6길변		

구분	항목			완화용적률(%)	비고
기정	획지계획	공동개발(지정)	준수시	기준용적률×a	• 2필지 : a=0.25 • 3필지 : a=0.27 • 획지 및 4필지 이상 : a=0.3
		맞벽건축			• 2필지 : a=0.22 • 3필지 이상 : a=0.25
		공동개발(권장)			
		자율적 공동개발			• a=0.22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규모 준수시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 /대지면적×2	
		쌈지형공지, 침상형 공지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2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3	• 제공면적 산정시 건축법에 의한 의무면적은 제외함
		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통로)		기준용적률×(조성면적-의무면적) /대지면적×2	
	건축물내 공공시설 제공 시	건물내 일정공간을 공공에 사용권(구분지상권)으로 제공할 경우	준수시	기준용적률×(제공면적/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a (제공면적/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의 계수는 0.1을 넘을 수 없음	• 지상1층 : a=5 • 지하1층, 지상 2,3층 : a=4 • 기타층 : a=3

<이하 여백>

■ 용적률 완화구역 F(기정)

유형구분	용도지역	입지특성	위치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F	준주거지역	간선부	신림로변 (북측)	300%이하	360%이하
		이면부			

구분	항목			완화용적률(%)	비고
기정	획지계획	공동개발(지정)	준수시	기준용적률×a	• 2필지 : a=0.25 • 3필지 : a=0.27 • 획지 및 4필지 이상 : a=0.3
		맞벽건축			• 2필지 : a=0.22 • 3필지 이상 : a=0.25
		공동개발(권장)			• a=0.22
		자율적 공동개발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규모 준수시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 /대지면적×1	
		쌈지형공지, 침상형 공지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1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2	• 제공면적 산정시 건축법에 의한 의무면적은 제외함
		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통로)		기준용적률×(조성면적-의무면적) /대지면적×2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용도 준수시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 연면적)×0.25	
	도시경관 개선	건축물 등 형태	준수시	기준용적률×0.05	• 1층부 전면투시처리 (간선부에 한함, 70%이상) • 폭 15m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함
	건축물내 공공시설 제공 시	건물내 일정공간을 공공에 사용권(구분지상권)으로 제공할 경우	준수시	기준용적률×(제공면적/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a (제공면적/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의 계수는 0.1을 넘을 수 없음	• 지상1층 : a=5 • 지하1층, 지상 2,3층 : a=4 • 기타층 : a=3

<이하 여백>

■ 용적률 완화구역 G(기정)

유형구분	용도지역	입지특성	위치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G	준주거지역	간선부	봉천로-신림로 (북측)	300%이하	360%이하
		이면부	봉천로-신림로 이면부 일대	250%이하	300%이하
			남부순환로 이면부 일대		
			남부순환로 191길 이면부 일대		
			신림동길(문화의거리) 이면주 일대	200%이하	250%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간선부	신원시장 일대 (남부순환로변)	200%이하	250%이하

구분	항목			완화용적률(%)	비고
기정	획지계획	공동개발(지정)	준수시	기준용적률×a	• 2필지 : a=0.25 • 3필지 : a=0.27 • 획지 및 4필지 이상 : a=0.3
		맞벽건축			• 2필지 : a=0.22 • 3필지 이상 : a=0.25
		공동개발(권장)			
		자율적 공동개발			• a=0.22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규모 준수시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 /대지면적×2	
		쌈지형공지, 침상형 공지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2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3	• 제공면적 산정시 건축법에 의한 의무면적은 제외함
		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통로)		기준용적률×(조성면적-의무면적) /대지면적×2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용도 준수시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 연면적)×0.3	
	주차계획	공동주차출입구	준수시	기준용적률×0.1	
	건축물내 공공시설 제공 시	건물내 일정공간을 공공에 사용권(구분지상권)으로 제공할 경우	준수시	기준용적률×(제공면적/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a (제공면적/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의 계수는 0.1을 넘을 수 없음	• 지상1층 : a=5 • 지하1층, 지상 2,3층 : a=4 • 기타층 : a=3

<이하 여백>

■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유형(변경)

유형구분	용도지역	입지특성	위치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비고
A	일반상업지역	간선부	신림역세권일대	600%이하	800%이하	공동개발(특별지정)필지
B	일반상업지역	간선부	신림역세권 간선부일대	600%이하	800%이하	-
		이면부	신림동길(별빛거리)변	450%이하	660%이하	-
	준주거지역	간선부	신림로변(북측)	300%이하	360%이하	-
			당곡역세권 간선부일대(서측)	300%이하	360%이하	기정봉천로-신림로(북측)
	제3종일반주거지역	간선부	당곡역세권 신림로변(남측)	200%이하	250%이하	-
C	일반상업지역	이면부	신림역세권 이면부일대	450%이하	660%이하	-
	준주거지역	간선부	신림로~봉천로변 간선부일대(동측)	300%이하	360%이하	-
D	준주거지역	간선부	남부순환로변(북측)	300%이하	400%이하	-
			신림로~봉천로변 간선부일대(동측)	300%이하	360%이하	-
			신림역세권 간선부일대(동남측 일부), 남부순환로변(남측)	250%이하	350%이하	-
		이면부	신림로~봉천로변 이면부일대(동측), 남부순환로변 이면부(남측)	250%이하	300%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간선부	신원시장 일대(남부순환로변)	200%이하	250%이하	-
		간선부	당곡역세권 신림로변(북측)	200%이하	250%이하	-
E	준주거지역	간선부	신림로변(남측) / 관천로변(남측)/ 관천로변(도림천변)	300%이하	400%이하	-
		이면부	신림동길(별빛거리) 이면부일대(남측)			
			신림동길(별빛거리) 이면부일대(동측)	300%이하	360%이하	-
			신림동길(별빛거리) 이면부일대(북측)	200%이하	300%이하	-
F	준주거지역	이면부	당곡역세권 이면부 일대(서측)	250%이하	300%이하	-
	준주거 · 제3종일반주거지역		신원시장 일대(내부)	200%이하	250%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당곡역세권 이면부일대(동측)	200%이하	250%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당곡역세권 이면부일대(동측)	180%이하	200%이하	-

유형구분	용도지역	입지특성	위치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비고
G	준주거지역	이면부	남부순환로~신림로이면부일대 (서측)/ 남부순환로변 이면부	300%이하	400%이하	신림로 동측
			남부순환로191길변	250%이하	350%이하	-
			봉천로~신림로 이면부 일대(동측)			
			남부순환로~신림로이면부일대(서측)			
			봉천로~신림로 이면부 일대(동측)/ 남부순환로191길 이면부 일대	250%이하	300%이하	-
			도림천변(북측)	200%이하	300%이하	-
			신림동길(별빛거리) 이면부 일대(북측)	200%이하	250%이하	-
H	준주거지역	이면부	신원시장 일대(도림천변)	200%이하	250%이하	-
I	일반상업지역	간선부	신림역세권 간선부 일대(순대타운)	600%이하	800%이하	-
		이면부	신림역세권 이면부일대 (순대타운 내부)	450%이하	660%이하	-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 인센티브 적용유형 및 적용필지 변경 • 허용용적률 완화항목 및 완화량 조절	• 재정비 목표에 부합한 인센티브 구역 및 항목 변경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재정비에 따라 인센티브계획 재정비

<이하 여백>

■ 용적률 완화구역 A(변경)

유형구분	용도지역	입지특성	위치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A	일반상업지역	간선부	신림역세권일대	600%이하	800%이하

구분	항목			완화조건	비고
중점 계획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용도 준수시	기준용적률× (권장용도 면적/연면적)×α	-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건축지침	준수시	기준용적률×α	• 투시벽 및 투시형셔터 항목은70%이상 설치시 인정
계획 유도	가로 활성화	1층 필로티주차장 제한	준수시	기준용적률×α	• 건축물 수평투영면적 50%이하 필로티주차장 조성하는 경우
	주차계획	공유주차장	준수시	기준용적률×α×개방주차면수	• 법정주차대수를 제외한 자주식 또는 옥외주차장 3면이상 제공시에 한하여 인정 •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설치 및 신청시에 한하여 인정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쌈지형 · 침상형공지	규모 준수시	기준용적률×{(조성면적-의무면적) /대지면적}×α	• 개방형 대비 침상형구조는1/2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		기준용적률×{(조성면적-의무면적) /대지면적}×α	• 제공면적 산정시 건축법에 의한 의무면적은 제외함

구분	항목			α
				600%/800%
중점 계획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0.35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건축지침		0.08
계획 유도	가로활성화	1층 필로티 주차장 제한	- 주차장 비율 0%	0.07
			- 1~30%	0.05
			- 31~50%	0.03
	주차계획	공유주차장		0.03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쌈지형 · 침상형공지		0.50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		1.00

<이하 여백>

■ 용적률 완화구역 B(변경)

유형구분	용도지역	입지특성	위치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B	일반상업지역	간선부	신림역세권 간선부일대	600%이하	800%이하
		이면부	신림동길(별빛거리)변	450%이하	660%이하
	준주거지역	간선부	신림로변(북측)	300%이하	360%이하
			당곡역세권 간선부일대(서측)	300%이하	360%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간선부	당곡역세권 신림로변(남측)	200%이하	250%이하

구분	항목			완화조건	비고
중점 계획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용도 준수시	기준용적률× (권장용도 면적/연면적)×α	-
	획지계획	공동개발(지정)	준수시	기준용적률×α	-
		공동개발(권장)			
		자율적 공동개발			
계획 유도	가로 활성화	1층 필로티주차장 제한	준수시	기준용적률×α	• 건축물 수평투영면적 50%이하 필로티주차장 조성하는 경우
	주차계획	공유주차장	준수시	기준용적률×α×개방주차면수	• 법정주차대수를 제외한 자주식 또는 옥외주차장 3면이상 제공시에 한하여 인정 •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설치 및 신청시에 한하여 인정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건축지침	준수시	기준용적률×α	• 투시벽 및 투시형셔터 항목은 70% 이상 설치시 인정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쌈지형·침상형공지	규모 준수시	기준용적률×{(조성면적-의무면적) /대지면적}×α	• 개방형 대비 침상형구조는1/2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		기준용적률×{(조성면적-의무면적) /대지면적}×α	• 제공면적 산정시 건축법에 의한 의무면적은 제외
		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통로)		기준용적률× (조성면적/대지면적)×α	-

<이하 여백>

구분	항목			α				
				600%/800%	450%/660%	300%/360%	200%/250%	250%/350%
중점계획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0.34	0.54	0.20	0.30	0.40
	획지계획	공동개발(지정)	- 2필지	0.04	0.08	0.02	0.02	0.06
			- 3필지	0.06	0.10	0.03	0.03	0.08
			- 4필지 이상	0.08	0.12	0.04	0.04	0.10
		공동개발(권장)	- 2필지	0.06	0.10	0.03	0.03	0.08
			- 3필지 이상	0.08	0.12	0.04	0.04	0.10
		자율적 공동개발		0.04	0.08	0.02	0.02	0.06
계획유도	가로활성화	1층 필로티 주차장 제한	- 주차장 비율 0%	0.08	0.12	0.06	0.06	0.10
			- 1~30%	0.06	0.10	0.04	0.05	0.08
			- 31~50%	0.04	0.08	0.02	0.04	0.06
	주차계획	공유주차장		0.016	0.025	0.012	0.014	0.03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건축지침		0.04	0.05	0.03	0.03	0.03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쌈지형·침상형공지		0.30	0.60	0.20	0.30	0.50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		0.60	0.80	0.40	0.50	0.80
		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통로)		0.30	0.60	0.20	0.30	0.50

※ 용도지역 조정가능지의 경우, 변경된 용적률 체계에 대한 계수를 적용함

※ 용도지역 조정가능지 내 공동개발의 경우, 자율적 공동개발에 대한 계수를 적용함

<이하 여백>

■ 용적률 완화구역 C(변경)

유형구분	용도지역	입지특성	위치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C	일반상업지역	이면부	신림역세권 이면부일대	450%이하	660%이하
	준주거지역	간선부	신림로~봉천로변 간선부일대(동측)	300%이하	360%이하

구분	항목			완화조건	비고
중점계획	도시안전개선	범죄예방설계 (CPTED)기법 도입	준수시	기준용적률×적용항목별 점수×α	-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쌈지형·침상형공지	규모 준수시	기준용적률×{(조성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α	• 개방형 대비 침상형구조는 1/2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		기준용적률×{(조성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α	• 제공면적 산정 시 건축법에 의한 의무면적은 제외함
		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통로)		기준용적률× (조성면적/대지면적)×α	-
계획유도	획지계획	공동개발(지정)	준수시	기준용적률×α	-
		공동개발(권장)			
		자율적 공동개발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건축지침	준수시	기준용적률×α	• 투시벽 및 투시형셔터 항목은 70% 이상 설치 시 인정
	주차계획	공유주차장	준수시	기준용적률×α×개방주차면수	• 법정주차대수를 제외한 자주식 또는 옥외주차장 3면이상 제공시에 한하여 인정 • 주차정보제공시스템설치 및 신청시에 한하여 인정

구분	항목			α	
				450%/660%	300%/360%
중점계획	도시안전개선	범죄예방설계 (CPTED)기법 도입		0.15	0.06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쌈지형·침상형공지		0.60	0.40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		1.50	0.60
		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통로)		0.60	0.40
계획유도	획지계획	공동개발 (지정)	- 2필지	0.10	0.02
			- 3필지	0.12	0.04
			- 4필지 이상	0.14	0.06
		공동개발 (권장)	- 2필지	0.12	0.04
			- 3필지 이상	0.14	0.06
		자율적 공동개발		0.10	0.02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건축지침		0.08	0.04
	주차계획	공유주차장		0.04	0.017

■ 용적률 완화구역 D(변경)

유형구분	용도지역	입지특성	위치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D	준주거지역	간선부	남부순환로변(북측)	300%이하	400%이하
			신림로~봉천로변 간선부일대(동측)	300%이하	360%이하
			신림역세권 간선부일대(동남측 일부), 남부순환로변(남측)	250%이하	350%이하
		이면부	신림로~봉천로변 이면부일대(동측), 남부순환로변 이면부(남측)	250%이하	300%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간선부	신원시장 일대(남부순환로변)	200%이하	250%이하
		간선부	당곡역세권 신림로변(북측)	200%이하	250%이하

구분	항목			완화조건	비고
중점계획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용도 준수시	기준용적률× (권장용도 면적/연면적)×α	-
	획지계획	공동개발(지정)	준수시	기준용적률×α	-
		공동개발(권장)			
		자율적			
계획유도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건축지침	준수시	기준용적률×α	• 투시벽 및 투시형셔터 항목은 70% 이상 설치 시 인정
	도시안전개선	범죄예방설계 (CPTED)기법 도입	준수시	기준용적률×적용항목별 점수×α	-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쌈지형·침상형 공지	준수시	기준용적률×{(조성면적-의무면적) /대지면적}×α	• 개방형 대비 침상형구조는1/2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		기준용적률×{(조성면적-의무면적) /대지면적}×α	• 제공면적 산정시 건축법에 의한 의무면적은 제외함
		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통로)		기준용적률× (조성면적/대지면적)×α	-

구분	항목			α				
				300%/400%	300%/360%	250%/350%	250%/300%	200%/250%
중점계획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0.25	0.15	0.30	0.15	0.18
	획지계획	공동개발(지정)	- 2필지	0.02	0.02	0.03	0.02	0.03
			- 3필지	0.04	0.03	0.05	0.03	0.04
			- 4필지 이상	0.06	0.04	0.07	0.04	0.05
		공동개발(권장)	- 2필지	0.04	0.03	0.05	0.03	0.04
			- 3필지 이상	0.06	0.04	0.07	0.04	0.05
		자율적 공동개발		0.02	0.02	0.03	0.02	0.03
계획유도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건축지침		0.11	0.06	0.13	0.07	0.08
	도시안전개선	범죄예방설계(CPTED)기법 도입		0.08	0.05	0.10	0.05	0.06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쌈지형 · 침상형공지		0.60	0.30	0.74	0.30	0.40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		1.00	0.60	1.20	0.60	0.80
		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통로)		0.60	0.30	0.70	0.30	0.40

※ 용도지역 조정가능지의 경우, 변경된 용적률 체계에 대한 계수를 적용

※ 용도지역 조정가능지 내 공동개발의 경우, 자율적 공동개발에 대한 계수를 적용함

※ 용도지역 조정가능지내에서 인센티브 적용유형이 동일하지 아니한 이면 필지와 공동개발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구역 D의 인센티브 체계를 적용

■ 용적률 완화구역 E(변경)

유형구분	용도지역	입지특성	위치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E	준주거지역	간선부	신림로변(남측) / 관천로변(남측)/ 관천로변(도림천변)	300%이하	400%이하
		이면부	신림동길(별빛거리) 이면부일대(남측)		
			신림동길(별빛거리) 이면부일대(동측)	300%이하	360%이하
			신림동길(별빛거리) 이면부 일대(북측)	200%이하	300%이하

구분	항목			완화조건	비고
중점계획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용도 준수시	기준용적률× (권장용도 면적/연면적)×α	-
	가로 활성화	1층 필로티주차장 제한	준수시	기준용적률×α	• 건축물 수평투영면적 50%이하 필로티주차장 조성하는 경우
계획유도	획지계획	공동개발 (지정)	준수시	기준용적률×α	-
		공동개발 (권장)			
		자율적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쌈지형·침상형공지	규모 준수시	기준용적률×{(조성면적-의무면적) /대지면적}×α	• 개방형 대비 침상형 구조는 1/2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		기준용적률×{(조성면적-의무면적) /대지면적}×α	• 제공면적 산정 시 건축법에 의한 의무면적은 제외함
		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통로)		기준용적률× (제공면적/대지면적)×α	-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건축지침	준수시	기준용적률×α	• 투시벽 및 투시형셔터 항목은 70% 이상 설치 시 인정

구분	항목			α		
				300%/400%	300%/360%	200%/300%
중점계획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0.30	0.17	0.44
	가로활성화	1층 필로티주차장 제한	- 주차장 비율 0%	0.07	0.04	0.11
			- 1~30%	0.05	0.03	0.09
			- 31~50%	0.03	0.02	0.07
계획유도	획지계획	공동개발(지정)	- 2필지	0.07	0.03	0.13
			- 3필지	0.09	0.05	0.15
			- 4필지 이상	0.11	0.07	0.17
		공동개발(권장)	- 2필지	0.09	0.05	0.15
			- 3필지 이상	0.11	0.07	0.17
		자율적 공동개발		0.07	0.03	0.13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쌈지형·침상형공지		0.60	0.40	1.00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		1.00	0.60	1.50
		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통로)		0.06	0.40	1.00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건축지침		0.08	0.05	0.12

■ 용적률 완화구역 F(변경)

유형구분	용도지역	입지특성	위치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F	준주거지역	이면부	당곡역세권 이면부 일대(서측)	250%이하	300%이하
	준주거 · 제3종일반주거지역		신원시장 일대(내부)	200%이하	250%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당곡역세권 이면부 일대(동측)	200%이하	250%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당곡역세권 이면부 일대(동측)	180%이하	200%이하

구분	항목			완화조건	비고
중점계획	도시안전개선	범죄예방설계 (CPTED)기법 도입	준수시	기준용적률×적용항목별 점수×α	-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쌈지형 · 침상형공지	규모 준수시	기준용적률×{(조성면적-의무면적) /대지면적}×α	• 개방형 대비 침상형구조는 1/2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		기준용적률×{(조성면적-의무면적) /대지면적}}×α	• 제공면적 산정 시 건축법에 의한 의무면적 제외함
		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통로)		기준용적률× (조성면적/대지면적)×α	-
계획유도	획지계획	공동개발(지정)	준수시	기준용적률×α	-
		공동개발(권장)			
		자율적 공동개발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용도 준수시	기준용적률× (권장용도 면적/연면적)×α	-
	친환경	자연지반보존	준수시	기준용적률×α	• 법적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 지하구조물 미설치시, 자연토양 및 식생가능시 (자연토양 및 투수성포장)
	주차계획	공유주차장	준수시	기준용적률×α×개방주차면수	• 법정주차대수를 제외한 자주식 또는 옥외주차장 1면이상 제공시에 한하여 인정 •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설치 및 신청시에 한하여 인정

구분	항목			α		
				250%/300%	200%/250%	180%/200%
중점계획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0.06	0.08	0.04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쌈지형·침상형공지		0.30	0.40	0.18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		0.60	0.80	0.36
		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통로)		0.30	0.40	0.18
계획유도	획지계획	공동개발(지정)	- 2필지	0.03	0.03	0.01
			- 3필지	0.05	0.06	0.02
			- 4필지 이상	0.07	0.08	0.03
		공동개발(권장)	- 2필지	0.05	0.06	0.02
			- 3필지 이상	0.07	0.08	0.03
		자율적 공동개발		0.03	0.03	0.01
	건축물 용도	권장, 지정용도		0.08	0.10	0.04
	친환경	자연지반보존		0.09	0.12	0.05
	주차계획	공유주차장		0.03	0.04	0.02

※ 용도지역 조정가능지내에서 인센티브 적용유형이 동일하지 아니한 간선 필지와 공동개발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구역 D의 인센티브 체계를 적용

※ 용도지역 조정가능지 내 공동개발의 경우, 자율적 공동개발에 대한 계수를 적용함

※ 주차소외지역으로서 공유주차장 설치를 권장, 다만, 대지규모가 작은 편으로 이행이 부득이하게 어려운 경우에 대지내공지, 획지계획, 도시안전개선 이행을 통해 허용 도달이 가능하도록 인센티브계획 수립

※ 신원시장일대에 공동개발계획을 이행하여 상향된 용적률체계 적용시, 아래의 인센티브 계획을 적용함

구분	완화항목			완화용적률(%)	비고
중점계획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용도 준수시	기준용적률× (권장용도면적/연면적)×α	-
	시설유지	시장시설물 확충 및 보존	준수시	기준용적률×α	-
계획유도	획지계획	공동개발(권장)	준수시	기준용적률×α	-
	주차계획	공유주차장	준수시	기준용적률×α×개방주차면수	• 법정주차대수를 제외한 자주식 또는 옥외주차장 3면이상 제공시에 한하여 인정 • 주차정보제공 시스템 설치 및 신청시에 한하여 인정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건축지침	준수시	기준용적률×α	• 투시벽 및 투시형셔터 항목은70%이상 설치시 인정

※ 신원시장 일대에 공동개발계획 이행시, 2필지를 초과하여 개발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동개발 인센티브 부여
※ 신원시장(완화구역H)과 이면부 필지(완화구역F)가 공동개발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구역F(신원시장에 공동개발계획 이행시)를 따르며 주차장설치완화구역 제외
※ 주차장 설치의무 면제필지(50%)와 비면제필지 공동개발시, 주차장 설치 의무완화구역에서 제외하며 해당필지에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함

구분	항목			α
				200%/350%
중점계획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0.50
	대지내 공지	시장시설물 확충 및 보존		0.21
계획유도	획지계획	공동개발(권장)	- 3필지	0.25
			- 4필지 이상	0.32
	주차계획	공유주차장		0.05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건축지침		0.07

<이하 여백>

■ 용적률 완화구역 G(변경)

유형구분	용도지역	입지특성	위치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G	준주거지역	이면부	남부순환로~신림로이면부일대 (서측)/ 남부순환로변 이면부	300%이하	400%이하
			남부순환로191길변	250%이하	350%이하
			봉천로~신림로이면부일대(동측)		
			남부순환로~신림로이면부일대(서측)		
			봉천로~신림로 이면부 일대(동측)/ 남부순환로191길 이면부 일대	250%이하	300%이하
			도림천변(북측)	200%이하	300%이하
			신림동길(별빛거리) 이면부 일대(북측)	200%이하	250%이하

구분	완화항목			완화용적률(%)	비고
중점계획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쌈지형 · 침상형공지	규모 준수시	기준용적률X{(조성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X α	• 개방형 대비 침상형구조는1/2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		기준용적률X{(조성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X α	• 제공면적 산정시 건축법에 의한 의무면적은 제외함
		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통로)		기준용적률X (조성면적/대지면적)X α	-
	도시안전개선	범죄예방설계 (CPTED)도입	준수시	기준용적률X적용항목별 점수X α	-
계획유도	획지계획	공동개발(지정)	준수시	기준용적률X α	-
		공동개발(권장)			
		자율적 공동개발			
	친환경	자연지반보존	준수시	기준용적률X α	• 법적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 지하구조물 미설치시, 자연토양 및 식생가능(자연토양 및 투수성포장)
	주차계획	공유주차장	준수시	기준용적률X α X 개방주차면수	• 법정주차대수를 제외한 자주식 또는 옥외주차장 1면 이상 제공시에 한하여 인정 •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설치 및 신청시에 한하여 인정

구분	항목			α			
				250%/350%	250%/300%	200%/300%	200%/250%
중점계획	대지내공지	공개공지, 쌈지형·침상형공지		0.70	0.40	0.90	0.50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		1.40	0.80	1.80	0.90
		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통로)		0.70	0.40	0.90	0.50
	도시안전개선	범죄예방설계(CPTED)도입		0.14	0.06	0.17	0.08
계획유도	획지계획	공동개발(지정)	- 2필지	0.08	0.02	0.10	0.03
			- 3필지	0.10	0.04	0.12	0.05
			- 4필지 이상	0.13	0.06	0.14	0.07
		공동개발(권장)	- 2필지	0.10	0.04	0.12	0.05
			- 3필지 이상	0.13	0.06	0.14	0.07
		자율적 공동개발		0.08	0.02	0.10	0.03
	친환경	자연지반보존		0.26	0.13	0.32	0.16
	주차계획	공유주차장		0.03	0.015	0.04	0.02

■ 용적률 완화구역 H(변경)

유형구분	용도지역	입지특성	위치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H	준주거지역	이면부	신원시장 일대(도림천변)	200%이하	250%이하

※ 신원시장일대에 공동개발계획을 이행시, 기준/허용용적률은 250%/350% 적용

구분	완화항목			완화용적률(%)	비고
중점계획	건축물 용도	지정용도	용도 준수시	기준용적률×α	-
	시설유지	시장시설물 확충 및 보존	준수시	기준용적률×α	• 아케이드 등 시장시설물 유지하는 경우에 적용
계획유도	획지계획	공동개발(지정)	준수시	기준용적률×α	-
		공동개발(권장)			
		자율적 공동개발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건축지침	준수시	기준용적률×α	• 투시벽 및 투시형셔터 항목은 70%이상 설치시 인정

구분	항목			α
				200%/350%
중점계획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0.10
	시설유지	시장시설물 확충 및 보존		0.30
계획유도	획지계획	공동개발(지정)	- 2필지	0.06
			- 3필지 이상	0.08
		공동개발(권장)	2필지 이상	0.08
		자율적공동개발	- α	0.06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건축지침		0.07

※ 신원시장일대에 공동개발계획을 이행하여 상향된 용적률체계 적용시, 아래의 인센티브 계획을 적용함

<이하 여백>

구분	완화항목			완화용적률(%)	비고
중점계획	건축물 용도	지정용도	용도 준수시	기준용적률×α	-
	시설유지	시장시설물 확충 및 보존	준수시	기준용적률×α	-
계획유도	획지계획	공동개발(권장)	준수시	기준용적률×α	-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건축지침	준수시	기준용적률×α	• 투시벽 및 투시형셔터 항목은 70%이상 설치시 인정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침상형·쌈지형 공지	규모 준수시	기준용적률×{(조성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α	-
		건축지정선,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		기준용적률×{(조성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α	• 제공면적 산정 시, 건축법에 의한 의무면적은 제외함
		공공보행통로(보차혼용로)		기준용적률× (조성면적/대지면적)×α	-

※ 신원시장 일대에 공동개발계획 이행 시, 2필지를 초과하여 개발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동개발 인센티브 부여
※ 신원시장(완화구역H)과 이면부 필지(완화구역F)가 공동개발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구역F(신원시장에 공동개발계획 이행시)를 따르며 주차장설치완화구역 제외
※ 주차장 설치의무 면제필지(50%)와 비면제필지 공동개발시, 주차장 설치 의무완화구역에서 제외하며 해당필지에 주차장을 설치해야함

구분	항목			α 200%/350%
중점계획	건축물 용도	지정용도		0.15
	시설유지	시장시설물 확충 및 보존		0.20
계획유도	획지계획	공동개발(권장)	- 3필지	0.25
			- 4필지 이상	0.32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건축지침		0.12
	대지 내 공지	공개공지, 쌈지형·침상형 공지		1.80
		건축지정선,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		2.20
		공공보행통로(보차혼용통로)		1.80

<이하 여백>

■ 용적률 완화구역 I(변경)

유형구분	용도지역	입지특성	위치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I	일반상업지역	간선부	신림역세권 간선부 일대(순대타운)	600%이하	800%이하
		이면부	신림역세권 이면부 일대(순대타운 내부)	450%이하	660%이하

구분	완화항목			완화용적률(%)	비고
중점계획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쌈지형 · 침상형공지	규모 준수시	기준용적률×{(조성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α	• 개방형 대비 침상형구조는1/2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		기준용적률×{(조성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α	• 제공면적 산정시 건축법에 의한 의무면적은 제외함
		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통로)		기준용적률× (조성면적/대지면적)×α	-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건축지침	준수시	기준용적률×α	• 투시벽 및 투시형셔터 항목은70%이상 설치시 인정
계획유도	획지계획	공동개발(지정)	준수시	기준용적률×α	-
		공동개발(권장)			
		자율적 공동개발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용도 준수시	기준용적률× (권장용도면적/연면적)×α	-

구분	항목			α	
				600%/800%	450%/660%
중점계획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쌈지형 · 침상형공지		0.80	1.20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		1.30	1.80
		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통로)		0.80	1.20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건축지침		0.09	0.13
계획유도	획지계획	공동개발 (지정)	- 2필지	0.06	0.10
			- 3필지	0.10	0.15
			- 4필지 이상	0.14	0.20
		공동개발 (권장)	- 2필지	0.10	0.15
			- 3필지 이상	0.14	0.20
		자율적 공동개발		0.06	0.10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0.32	0.45

<이하 여백>

다. 건축물의 높이계획

(1) 건축물 높이 결정(변경)조서

구분		적용지역	높이계획	비고
기정	일반상업지역	남부순환로변	70m이하	• 가로구역별 높이기준 설정에 따른 높이 적용 (건축법 제51조제3항에 의한 도로사선제한 (H≤1.5D)을 적용하지 아니함)
		신림로변	70m/60m이하	
		도림천변	60m이하	
		이면블록	40m/30m이하주1)	
	준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남부순환로변	60m이하	
		봉천로변(동측)	60m이하	
		봉천로변	40m이하	
		신림로변	40m/35m이하	
		도림천변	35m이하	
		남부순환로 이면블록(동남측)	30m이하	
		8~20m 도로변	25m이하	
		8m 미만 도로변	20m이하	
변경	일반상업지역	남부순환로변, 신림로변, 도림천변	70m/80m/90m이하주2)	-
		이면블록	40m/60m이하주3)	-
		순대타운 이면블록	40m/60m이하주3)	-
	준주거지역	남부순환로변, 신림로변, 봉천로변, 보라매로변(서측)	40m/60m이하주3)	-
		8~20m 도로변	40m이하	-
		8m이하 도로변	30m이하	-
		남부순환로 이면블록(동북측), 도림천변(신원시장방면)	35m이하	-
		이면블록(신원시장)	30m이하주4)	-
	제3종일반주거지역	남부순환로변(서측)	40m이하	-
		보라매로변(동측), 남부순환로(서측)	25m이하주5)	신설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보라매로변(동측)	20m이하	신설

※ 건축물의 높이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높이로 적용하며,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의 사용을 위한 경비실 · 계단실 · 승강기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최고높이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 가구 및 획지계획 등의 변경에 의해 대지에 상이한 지침이 적용될 경우에는 폭이 넓은 도로에 면한 대지에 적용되는 지침을 적용하고, 이면부로 위치가 변경되는 대지(필지분할 포함)는 이면부 지침을 적용한다

※ 청년안심주택, 역세권 활성화사업, 시장정비사업 등 개별사업을 시행하는 필지는 해당 사업계획에서 고시한 높이계획에 따른다

주1) 일반상업지역 이면블록 중 접도조건이 양호한 지역(6m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 최고높이 40m를 적용하며, 접도조건이 불량한 지역(6m미만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 최고높이 30m를 적용한다. 다만, 단위대지 500㎡이상 개발시 접도조건이 양호한 지역(6m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 최고높이 48m를 적용하며, 접도조건이 불량한 지역(6m미만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 최고높이 36m를 적용한다.

주2) 일반상업지역 간선부에서 단위대지 500㎡이상 개발시 최고높이 80m를 적용하고, 1,000㎡이상 개발시 최고높이 90m를 적용한다.

주3) 일반상업지역 이면부 및 준주거지역 간선부에서 단위대지 500㎡이상 개발시, 최고높이 60m를 적용한다.

주4) 신원시장 후면부는 공동개발계획을 이행하여 2필지이상 공동개발(권장) 이행 및 공공기여시설(공공임대상가, 청년지원시설, 공공주택 등) 제공하는 경우, 30m → 35m 적용한다.

주5) 용도지역 조정가능지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변경시, 최고높이는 25m → 60m를 적용한다.

■ 건축물 높이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신설	• 제3종일반주거지역 - 보라매로변(동측) : 25m 이하	• 당곡역 동측에 구역계 편입구역에 대하여 해당 용도지역에 부합하는 높이계획 결정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 보라매로변(동측) : 20m 이하	• 당곡역 동측에 구역계 편입구역에 대하여 해당 용도지역에 부합하는 높이계획 결정
변경	• 일반상업지역 간선부 - 남부순환로변, 신림로변, 도림천변 : 60m, 70m 이하 → 70m/80m/90m 이하 ※ 개발규모 1,000㎡ 이상은 90m 이하 적용/ 개발규모 500㎡ 이상은 80m 이하 적용/ 500㎡ 이하는 70m 이하 적용 • 일반상업지역 이면부, 준주거지역 간선부 - 남부순환로변, 신림로변, 봉천로변, 보라매로변 : 60m, 40m, 35m, 30m 이하 → 40m/60m 이하 ※ 개발규모 500㎡ 이상은 60m 이하 적용/ 500㎡ 이하는 40m 이하 적용	• 용도지역에 부합하는 높이계획을 설정하고, 개발단위별 높이계획 차등을 두어 적정규모의 개발을 유도 - 남부순환로변, 신림로변, 도림천변은 최고높이 달성을 위하여 적정규모의 대지에서 개발 필요
	• 준주거지역 이면블록 - 8~20m 도로변 : 25m 이하 → 40m 이하 - 8m미만 도로변 : 20m 이하 → 30m 이하 - 남부순환로 이면블록(동북측) : 25m이하 → 35m이하 - 이면블록(신원시장):20m 이하 → 30m 이하	• 준주거지역으로서 용도지역에 부합하고, 용적률 계획과 상호 호응하는 세부 높이계획을 수립
	• 제3종일반주거지역 이면블록 - 남부순환로(서측) : 20m 이하 → 25m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서 용도지역에 부합하고, 용적률 계획과 상호 호응하는 높이계획 결정

<이하 여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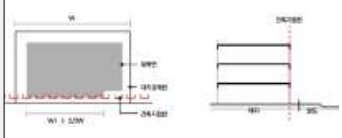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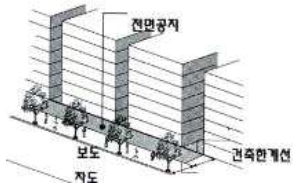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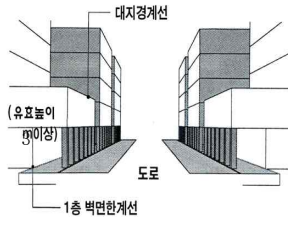
라. 건축물의 배치계획(변경)

(1)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계획기준

- 주요 간선가로변이나 결정부의 건축선 계획에 의한 정연한 가로경관 조성으로 도시 이미지 제고 및 건축한계선을 통한 보행공간 조성 유도
- 보행 및 차량통행을 위한 최소기준 폭원(4m)의 도로 및 보차혼용통로 확보
- 차량통행의 용이 및 보행통행의 안전을 위한 시계확보 등을 목적으로 가구 모서리의 교차지점에 건축선 가각정리

2) 계획요소

구분	건축지정선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
정의	• 건축물 또는 부대시설의 지상층의 외벽면이 넘어서 건축할 수 없는 선	•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돌출되지 못하는 선	• 건축물의 1층 또는 특정층에 있어서 벽면의 위치가 넘어서는 안되는 선
계획 방향	• 도로에 의하여 개방감 확보, 건축물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 • 주요한 가로에 대하여 건축물의 위치를 정돈하기 위하여 결정 • 정연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가로활성화를 위하여 도림천변 전면부에 건축물 외벽면의 2/3이상을 접하도록 건축하여야 함	• 건축물을 도로에서 일정길이 후퇴시켜 보행자로 하여금 개방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 지정 • 가로경관상 정연한 도시경관 확보와 도로 관리시설물로부터 전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부구획 도로변과 블록외곽부에 계획	• 특정층에 보행공간(공공보행통로)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벽면의 위치가 넘어서지 못하게 하여 개방감있는 보행공간의 조성 • 주요지점간 보행연계성 및 접근성 제고
예시도			

<이하 여백>

■ 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기정	건축한계선/벽면한계선	간선부	남부순환로, 신림로, 봉천로변 일대	3m후퇴	-
		이면부	상업지역	1~2m후퇴	• 4m미만 도로: 4m통로 확보 • 4~6m 도로 : 6m통로 확보 • 6m 도로 : 8m통로 확보
			준주거지역	1m후퇴	
		도림천변	상업지역	2m후퇴	-
			신원시장 일대	1m후퇴	-
변경	건축지정선/건축한계선/벽면한계선 (1~2층)	간선부	남부순환로, 신림로, 봉천로, 보라매로변 일대	3m후퇴	-
		이면부	상업지역	1~2m후퇴	• 4m미만 도로: 4m통로 확보 • 4~6m 도로 : 6m통로 확보 • 6m 도로 : 8m통로 확보
			준주거지역	0.5~1.5m후퇴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0.5~1m후퇴	
		도림천변	상업지역	2m후퇴	-
			신원시장 일대주1)	0.5~2m후퇴	• 4m미만 도로 : 4m통로 확보 • 4~6m 도로 : 6m통로 확보 • 6m 도로 : 8m통로 확보 • 도림천변 전면부 : 1m 건축지정선 확보 • 공동개발계획 이행의 경우 '신원시장 일대 공동개발계획도' 참조하여 건축선 확보

주1) 신원시장일대에서 공동개발계획의 2필지이상 공동개발(권장)을 이행하는 경우, 해당 계획의 건축선계획에 따름

※ 본 지구단위계획 고시 이전 신고된 기존 가설건축물은 적용에서 제외

■ 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변경	• 보라매로변 간선부 건축선 지정 - 건축한계선 3m • 보라매로변 이면부 건축선 지정 - 건축한계선 1m	• 간선변에 통경축 확보를 위한 건축한계선 결정 • 당곡역 동측 신규 편입 구역내에 4m이상의 통행로의 폭원 확보를 위한 건축한계선 결정
	• 준주거지역 이면부 건축선 확폭 - 건축한계선 1m → 0.5~1.5m 변경	• 준주거지역 이면부에 4m 이상 통행로 폭원 확보를 위한 건축한계선 결정
	• 신원시장 도림천변 건축지정선 결정 - 건축한계선 1m → 건축지정선 1m 변경	• 도림천변의 시장 전면부의 활성화 및 가로경관 조성을 위한 건축지정선 결정 • 시장~도림천~순대타운 등 주변과의 보행연계 강화를 위하여 통행로 환경개선을 하고자 결정
	• 신원시장 이면부 건축선 확폭 - 건축한계선 1m → 0.5~2m 변경	• 신원시장 내부에 4m 이상 통행로 폭원 확보를 위한 건축한계선 결정

구분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 신원시장 일대에 공동개발시, 밀도상향에 따라 통행량 증가가 예상되므로 시장일대에 충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하여 결정
	• 순대타운 등 과소필지 밀집구역에 건축한계선을 벽면한계선으로 변경 - 건축한계선 1m → 벽면한계선 1m	• 과소필지에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라 개발제약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벽면한계선(저층부)으로 변경하여 합리적 토지이용 도모

마. 건축물의 형태와 색채 등에 관한 계획(변경)

(1) 건축물의 형태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기정

구분		계획내용	비고
건축물 형태	1층 바닥높이	• 상업용 건물의 경우 1층 바닥높이는 접한 보도/도로와 10cm 이내의 차이로 제한	-
	층고/기존 건물과의 조화	• 연접대지에 기존 건물이 있는 경우 신축건물의 층고 특히, 1층 개구부의 높이는 기존 건물과 10cm 이내의 차이로 제한	-

■ 변경

구분		계획내용	항목	비고
건축물 형태	1층 바닥높이	•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접한 보도 또는 도로로부터 일반인 및 장애인의 진출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함 • 경사지의 경우, 접한 보도 또는 도로의 높이는 높은 쪽 기준으로 함	규제	-
	층고/기존 건물과의 조화	• 연접 대지에 기존 건축물들이 있을 경우 신축건물의 층고, 특히, 1층 개구부의 높이는 기존 건물과 10cm 이내의 차이로 제한 • 건축물의 1층 개구부 및 1층 창문은 안쪽으로 개폐되도록 설치 • 폭 10m 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은 개구부가 없는 벽면을 가로에 노출하여서는 안되며, 다만, 벽면 조경, 벽화 등 장식적 처리를 하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함	규제	-
	건축설비의 노출	• 폭 20m 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옥탑, 냉각탑, 굴뚝 등의 건축 설비는 도로변에 노출하여 설치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차폐형태로 설치할 것을 권장	권장	-
		• 에어컨 실외기 등의 설치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및 '서울특별시 에어컨 실외기 설치 방법 개선' 에 따름	규제	

(2) 건축물의 색채 · 외관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기정

구분		계획내용	비고
건축물 외관	재료/색채	• 외벽의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인접건물과 조화 도모	-
	투시벽 및 투시형셔터	• 폭 20m 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은 1층 전면 벽면의 50% 이상을 투시벽으로 처리 • 폭 12m 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사용	-
	측면공지 차폐	• 대지의 측면경계선과 건물사이의 이격거리가 3m 미만이고 이격부분이 통로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이격공지는 차폐조경, 담, 문 등으로 차폐	-
기타 사항	야간조명	• 폭 20m 이상의 도로에 면한 대지에 10층 이상 신축 또는 재건축되는 건물은 가로변 외벽 및 주변환경(조형물, 수목, 보도바닥)에 조명을 투사하여 심야경관 제고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옥외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의 경우 야간조명의 설치 권장	-
	옥외 광고물	•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및 자치구 관련규정에 따름	-

■ 변경

구분		계획내용	항목	비고
건축물 외관	재료/색채	• 외벽면의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인접건물과 조화를 도모하고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 재료 사용 시 재료들 간의 조화 고려 • 외벽 재료는 반사성 재료(금속, 타일, 반사유리 등)의 사용을 금지하며, 원색계열의 페인트 및 마감재료 금지 • 주변지역의 현황을 고려하여 이질적 소재의 사용을 지양하고 「서울색 정립 및 체계화」 및 「서울시 상징색 적용 가이드라인」 등 관련 기준을 준수하며, 관계 기준의 제·개정 또는 변경될 경우에는 제·개정된 관계 기준을 준수	규제	-
	투시벽 및 투시형셔터	• 폭 20m 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전면의 50% 이상을 투시형으로 설치 • 폭 12m 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셔터는 투시형 셔터 설치	규제	-
	측면공지 차폐	• 대지의 측면경계선과 건물사이의 이격거리가 3m 미만이고 이격부분이 통로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이격공지는 조경 등으로 차폐 • 그 외 3m 이상의 이격공지는 보행자를 위한 보행공간으로 조성	권장	-
기타 사항	야간조명	• 쇼윈도 및 건축물 외부에서 1층 전면을 투사하는 야간조명 등의 설치 • 폭 20m 이상의 도로에 면한 대지에 10층 이상 신축 또는 증·개축 되는 건물은 가로변 외벽 및 주변환경(조형물, 수목, 보도바닥)에 상향식 야간조명 등의 설치 • 옥외에 설치하는 미술 장식품의 경우 야간조명 등의 설치	권장	-
	옥외 광고물	• 옥외광고물의 설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며, 해당 기준이 제·개정 또는 변경될 경우에는 제·개정된 기준을 준수 •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에 해당하는 구역은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 내용을 준수하며 변경이 있을 경우 그 변경을 적용	규제	-

(3) 가로활성화방안에 관한 결정조서(신설)

구분		계획내용	항목	비고
가로 활성화	1층 필로티 주차장 제한	• 신림로, 남부순환로, 보라매로 간선로변에 면한 건축물 1층 전면의 50% 이하로 필로티 주차장 조성을 권장	규제	간선로변

<이하 여백>

구분		계획내용	항목	비고
특화구역 건축물 외관	개구부	• 가로활성화를 위해 건축물 1층 전면은 투시형태의 개구부 설치 • 1층부 개별 근린생활시설은 가로에 접하는 부분의 폭원을 10m이하로 하거나 3m~5m 간격으로 수직 분절요소 적용	규제	신원시장, 순대타운일대, 별빛거리
	재료 및 색채	• 건축물 특화를 위해 신축 또는 리모델링시 권장색채 범위내의 색채적용 • 권장색채 사용범위를 참고하여 동일조화, 유사조화, 무채색 조화를 통해 주변 건축물과 어울리는 색채계획을 적용 • 건축물의 면적 중 가장 적은 면적을 차지하는 강조색의 경우, 사용 면적을 10% 이내로 제한하여 포인트로 느껴지도록 적용 • 도료가 아닌 건축자재의 경우 색채는 자유롭게 선택	권장	신원시장, 순대타운일대, 별빛거리
		• 남부순환로, 신림로, 남부순환로176길, 신림로59길에 접하는 건축물 중 3층 이하 저층부의 외벽은 흑색벽돌(전벽돌), 석재, 목재 등 자연재료 및 전통적인 패턴 사용(전면부 창호 및 개구부를 제외한 면적의 80% 이상 적용)	권장	순대타운일대
		• 신림동길에 접하는 건축물 중 3층 이하 저층부의 외벽은 보행자의 시선을 배려하여 시각적인 깊이와 입체감이 있는 소재(벽돌, 루버, 송판 노출콘크리트, 스터코(stucco) 등 질감 및 패턴이 있는 소재) 사용을 권장(전면부 창호 및 개구부를 제외한 면적의 80% 이상 적용)	권장	별빛거리
		• 관천로 및 신원로3길에 접하는 건축물 중 2층 이하 저층부의 외벽은 흑색벽돌(전벽돌), 석재, 목재 등 자연재료 및 전통적인 패턴 사용을 권장(전면부 창호 및 개구부를 제외한 면적의 80% 이상 적용)	규제	신원시장
	투시벽 및 투시형 셔터	• 건축물 1층 전면의 50%이상을 투시형으로 설치	규제	신원시장, 순대태운일대, 별빛거리
기타사항	시장 시설물	• 시장기능 유지를 위하여 신원시장내 아케이드, 문주, 간판 등의 시장 시설물은 보존하고, 불가피하게 해체 또는 철거시, 그에 상응하는 시설을 설치 및 제공	규제	신원시장
	옥외 광고물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및 자치구 관련규정에 따름	규제	신원시장, 순대타운일대, 별빛거리
	데크 및 테라스	• 가로 활성화를 위한 외부 데크 및 테라스를 조성하고 상부 차양 및 폴딩도어 등 설치	권장	
	친환경 가로환경	• 친환경 가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옥상녹화 및 벽면녹화 조성	권장	

※ 특화구역은 아래와 같으며, 해당 필지는 도면 참조
- 순대타운 : 신림동 1640-31일대(신림역 남서측 블록)
- 별빛거리 : 신림동길 일대(신림동길, 신림동7길, 봉천로6길 인접필지)
- 신원시장 : 신림동 1587-39일대(신원시장 및 인접필지)

※ 신원시장은 건축설계 가이드라인에 적용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가령, 신축, 증개축, 리모델링 등과 같은 일체의 건축행위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건축에 대한 기준으로서 시장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사항임.

(4) 특화구역 건축물 색채 · 외관 등에 관한 결정조서(신설)

(5)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에 관한 결정조서(신설)

1)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기법 반영(신설)

적용위치	구분	계획내용		항목	비고
		내용	반영		
주거 및 상업지역 이면부 등	용도	• 영역성 및 공간활성화를 위한 위치 선정	• 사람들의 이용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근린시설 유치	규제	-
	배치	• 가시성과 이웃교류를 고려한 시설 및 공간배치	• 건축물이 가로나 보행로를 향하도록 배치 • 자연감시를 촉진시키는 공간계획	규제	-
	주차장	• 가시성과 접근통제를 고려한 시설배치와 밝은 색채의 재료 선택	• 사각지대 없는 CCTV 설치로 안전성 확보 • 주차장내 시야 확보 및 개인간 인식을 위한 적절한 조명 계획	규제	-
	외관	• 가시성, 영역성을 고려한 입면계획	• 시야를 가리지 않는 투시형 외관 및 높은 명도색채 권장 • 범죄자의 침입을 돕는 장식적 요소나 시설 제거	규제	-
	범죄예방 시설물	• 공동현관 미러시트	• 출입시에 미러시트 등을 통하여 보행자 뒤의 범죄 기회 감소	권장	2022년 서울시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사업 기본설계 아이템
		• 공동현관 반사경/센서등	• 공동현관문 양 옆 사각지대 해소 • 공동현관문 내부에서 움직임 감지시 외부 센서등 사전 점등	권장	
		• 필로티주차장 천장 모서리거울	• 필로티 주차장 내 공간감 파악 지원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천장 모서리 거울	권장	
		• 필로티주차장 전면부 센서등	• 주차장진입 전에 미리 켜지는 주차장 예측 센서등	권장	
		• 도어클로저	• 대문을 자동으로 닫히게 하여 침입범죄를 예방하는 '도어클로저' 또는 이외 유사한 기능으로 현관문등이 자동으로 닫히게 하는 시설물	권장	

※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설계시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국토교통부 기준과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가이드라인」 서울시 기준을 준용하여 계획하고,
구체적인 시설 및 형태 등은 「관악구 안심골목길 디자인」에 따라 관내 통일성있는 계획 적용

※ 건축주는 개발계획시, 규제항목에 대하여 해당 대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가능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요소들을 최대한 반영하되, 인허가권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항목 조정 가능

※ 건축주는 개발계획시, 권장항목에 대하여 「관악구 안심골목길 디자인사업」에 따른 '서울시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사업 기본설계아이템' 을 설치
단, 해당사업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사항으로 시설물 등을 변경하여 적용
또한 관련부서는 해당기업에 근거하여 범죄예방에 보다 효과적인 시설물을 권장시설을 대체하여 설치토록 요청할 수 있음

※ 인허가권자는 필요시 관련 전문기관의 자문 또는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범죄예방 환경설계 이행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2)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원칙별 계획기준(신설)

구분	주요기준	가이드라인 내용	비고
도로	• 공간별 영역구분 및 공간배치 • 보행자공간 배치 및 시설 설치기준	• 가시성과 영역성 확보를 위한 환경정리 및 시설배치 • 가시성과 영역성을 고려한 도로의 형태 결정	• 이면부 교통사고 경감
가로 조명	• 조명시설 설치 및 디자인 기준	• 가시성과 내구성 고려한 조도·위치·높이	• 사각지대 해소 ※ 골목길 움직임 감지스마트 가로등 등
조경	• 조경수목 식재 및 간격기준 등	• 가시성과 영역성을 고려한 수종·식재선택과 관리	• 수목, 조경 등의 요소 활용하여 자연적 접근통제
사인 시스템	• 안내시설설치 및 디자인기준	• 쉽고 명확한 표시와 내구성 있는 재료의 선택	• 전달력이 강한 명료한 디자인
공용 시설	• 방범 : 방범시설 배치 및 디자인 기준 • 휴게 및 운동시설 설치 • 교통시설 : 정류장 배치 및 디자인 • 기타가로 : 관리시설, 지하공간, 공중전화 등	• 용도별 규모조절 및 취약지역 배치·시설관리	• 특정시설 소외지역에 우선 조성
용도 및 배치	• 용도별 영역구분 및 배치	• 영역성 및 공간활성화를 위한 위치 선정 • 가시성과 이웃교류를 고려한 시설 및 공간계획	• 자연적 감시활동으로서 시야선 확보 • 오픈스페이스와 함께 조성·제공
주차장	• 노상주차장 구획 및 설치 • 지하 및 필로티형주차장 가이드라인	• 가시성과 접근통제를 고려한 시설배치와 재료선택	• 사방접근이 쉽게 배치
외관	• 건축물 계획 및 디자인	• 가시성, 영역성을 고려한 입면계획, 시설배치, 재료선택	• 투시형외관 및 높은 명도·색채 권장

※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가이드라인, 서울시 주거환경과

<이하 여백>

바.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1) 특별계획(가능)구역 적용 공통사항(신설)

① 특별계획구역은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별도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입안 및 결정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② 특별계획구역 지침에서 제시한 기반시설의 설치 및 조성 등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며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변경)토록 한다.

③ 특별계획구역에 건축물을 건축시,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을 기준으로 상세한 계획안을 작성하되, 설계 초기 구상 단계에서부터 입안자와 협의토록 한다.

④ 특별계획구역 내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 노후 및 안전상의 이유로 철거, 증축, 개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이 필요한 경우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등이 필요한 경우,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60조(기존건축물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의 적용)을 적용하되, 세부개발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철거,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리모델링 및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쳐 건축제한의 완화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⑤ 특별계획구역의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세부개발계획지침의 용도계획을 준용한다.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17조(가설건축물) 등 관련법 규정에 따르며, 향후 관련 지침 및 법령이 제·개정 또는 변경될 경우, 변경된 법령 및 지침을 적용함

<이하 여백>

(2)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양지병원 특별계획구역	관악구 신림동 10-715번지 일대	4,516.1	-	4,516.1	서고시 제2022-539호 (2022.12.29.)	-

(3)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및 세부개발계획(변경없음)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도면번호		• 양지병원 특별계획구역	• 양지병원 특별계획구역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4,321.1㎡)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준주거지역(195㎡)	• 준주거지역 (4,516.1㎡)
면적		• 4,516.1㎡	• 4,516.1㎡
공공기여		• 기부채납 수분담 25% 이상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에 한함) - 공공기여면적 = 195㎡ X 25% = 48.75㎡이상 • 양지병원 이용객 및 주변시민 이용을 위한 필요 공공시설 조성	• 기반시설(도로) 제공토지 : 174㎡
건축물용도		• 불허용도 U3 / 권장용도 3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준주거 간선부 계획을 따름)	• 불허용도 U3 / 권장용도 3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준주거 간선부 계획을 따름)
건폐율		• 60% 이하	• 60% 이하 (계획건폐율 59.54%)
용적률	기준	• 247.84% 이하	• 247.84% 이하
	허용	• 345.68%이하	• 345.68%이하
	상한	• 400% 이하	• 358% 이하 (계획용적률 357.41%)
최고높이		• 60m 이하	• 60m 이하
건축한계선		• 남부순환로(광로2-19호선) 변 - 도시계획시설로부터 3m • 남부순환로 184길(소로3-343호선) 변 - 도시계획시설로부터 3m ※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전면공지는 보도부속형으로 조성	• 남부순환로(광로2-19호선) 변 - 도시계획시설로부터 3m • 남부순환로 184길(소로3-343호선) 변 - 도시계획시설로부터 3m ※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전면공지는 보도부속형으로 조성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기타 사항	대지내 공지	• 쌈지형공개공지 2개소 (세부위치는 계획지침도 참조)	• 쌈지형공개공지 2개소 (위치지정된 쌈지형 공개공지 설치 및 조성)
	차량 진출입	• 남부순환로변 공동차량출입구 지정 • 차량출입구 외 남부순환로에서 차량진출입 금지 (단, 응급의료센터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진출입만 허용)	• 남부순환로변 공동차량출입구 지정 • 차량출입구 외 남부순환로에서 차량진출입 금지 (단, 응급의료센터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진출입만 허용)
	공공 통로	• 보차혼용통로 (세부위치는 계획지침도 참조)	• 보차혼용통로 (위치 지정된 보차혼용통로 설치 및 조성)
	기타	• 이면부 외부인의 통행이 가능한 보행로 조성	• 이면부 외부인의 통행이 가능한 보행로 조성

4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1.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가. 대지내 공지 및 통로계획

구분		계획내용	적용기준	비고
전면 공지	보도부속형	• 건축지정선/건축한계선/벽면한계선을 통한 전면공지 확보 • 보행로 미관증진 및 보행공간 확보 • 접하는 보도와 단차를 없애고, 보행자 통행이 원활한 구조로 설치 • 건축한계선 부분 경계석 설치로 보행로 구분 및 시인성 강화 • 통행방해물, 화단, 담장, 노상주차장 등 설치 금지	간선변, 보행자 우선도로, 이면도로 중 보도 또는 보행로가 기설치된 도로에 면한 필지	-
	차도부속형	• 건축지정선/건축한계선/벽면한계선을 통한 전면공지 확보 • 인접차도와 단차를 없애고 동일한 포장재료 사용 권장 • 통행방해물, 화단, 담장, 노상주차장등의 지장물설치 금지 • 차량통행이 원활한 구조로 설치	그 외 도로에 면한 필지 및 보차혼용통로 지정된 필지	-
공개 공지	공개공지의 위치	• 공개공지 위치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결정도에 표시된 위치 주변에 공개공지 조성 • 공개공지 위치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요 보행결절점 및 전면도로 가각부, 전면도로변에 설치 • 공개공지 조성시 「건축법」 제43조, 동법 시행령113조,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 26조 및 관련 지침을 준용하여 계획한다	지침도 위치준수 (쌈지형 공지 의무)	-
	공개공지의 조성	• 공개공지는 「건축법시행령」 제27조의2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 조성 • 공개공지는 소공원(쌈지공원)의 형태로 조성토록 권장 •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조성토록 한다. (2007년 재정비시 용도지역 변경된 지역 포함) - 대상 : 건축 연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다음 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 조성규모 : 총연면적 2,000㎡ 이상 - 대지면적의 3% 총연면적 4,000㎡ 이상 - 대지면적의 5% (※ 단, 조성의무면적이 45㎡에 미달될 경우 45㎡를 조성의무면적으로 함) - 설치기준 : 가. 일반인이 도로에서 접근·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형태로 설치 나.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면적이 최소 45제곱미터 이상 다. 최소폭은 5미터 이상 라.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6미터 이상 마. 조경·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 ·소규모 공중화장실(33㎡미만으로서 허가권자와 건축주가 협의된 경우에 한함)·소규모 주민편의 시설(간이도서관, 인포메이션 센터 등)과 같은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	-	-

나. 교통처리계획(변경)

(1) 차량출입불허구간(변경)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 간선도로(폭 20m 이상)에서 대지로의 직접 차량출입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이면도로에서의 진입 유도 • 불가피한 경우 공동주차출입구 및 주차출입방향으로 차량출입 (교차로에서 10m 이내에는 설치 제한) • 순대타운 차없는 거리 연접대지 및 신원시장 도림천변 선형필지 -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으로 설정함과 함께 차량출입 불허구간으로 지정	-
변경	• 간선도로(폭20m이상)에서 대지로의 직접 차량출입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이면도로에서의 진입 유도하나, 획지해제 등 사유로 인해 간선도로 외 대지출입이 불가한 경우는 차량출입을 허용함 • 불가피한 경우 공동주차출입구 및 주차출입방향으로 차량출입 (교차로에서 10m이내에는 설치 제한) • 순대타운 차없는거리 연접대지 및 신원시장 -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으로 설정함과 함께 차량출입 불허구간으로 지정	-

※ 공동개발 방식의 변경 또는 획지의 분할 등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차량출입불허구간에서 차량의 출입이 허용되어야 할 경우 당해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 이행을 통해 변경할 수 있음 (단, 차량출입구의 변경이 되면 공동차량출입구에 대한 인센티브는 부여되지 않음)

(2) 주차장 설치기준의 완화(변경)

■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완화내용	비고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	기정	• 순대타운 차없는거리 연접대지 • 신원시장 도림천변 선형필지	• 구역 내에서 대지 안으로의 차량출입이 불허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기존 주차장 외의 신설 또는 추가 설치를 금지함	• 주차장 설치기준을 50% 완화하고 미완화분은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	-
	변경	• 순대타운 차없는거리 연접대지 • 신원시장 전체 필지	• 해당 필지 내 신축하는 건축물에 한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	• 주차장 설치기준을 50% 완화하고 미완화분은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	-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에 의한 시설물의 용도 및 규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6조(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에 의한 감액기준을 준용할 것

※ 신원시장의 경우, 신축 시 저층부에 시장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시설 도입 시 완화구역에서 제외

※ 주차장 설치의무 면제필지(50%)와 비면제필지 공동개발시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에서 제외하며, 해당필지에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함

※ 간선변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지하철 시설물 설치와 같은 제반사정 변경 등의 사유로 부설주차장 설치가 어려운 대지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에 따라 주차장 설치 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변경	•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 확대 - 전체 신원시장으로 주차장설치 완화	• 시장이 조성된 대지는 시장기능 유지하면서 주차공간 설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 확대

다. 가설건축물에 관한 계획(신설)

(1) 가설건축물 결정조서(신설)

구분	계획내용	비고
가설 건축물	•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축조할 때에는 본 지구단위계획 중 건축물 배치에 관한 계획에 한하여 적용한다.	-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17조(가설건축물) 등 관련법 규정에 따르며, 향후 관련 지침 및 법령이 제·개정 또는 변경될 경우, 변경된 법령 및 지침을 적용함

<이하 여백>

5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

1.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관리계획의 입안)제4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18조(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처리 등) 및 제 68조(권한의 위임) 등의 규정에 의한다.

경미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 · 용도지구 또는 도시 · 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영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2. 가구(영 제42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지구단위계획으로 최대·최소개발규모를 정하는 경우 그 범위안에서 제46조제7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6.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7. 건축물의 배치 · 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8.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를 말한다)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 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9. 법 제5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처리계획 중 주차장 출입구 · 차량출입구 · 보행자출입구의 위치 변경 및 보행자출입구의 추가 설치

※ 향후 관련지침 및 법령이 제정 · 개정 또는 변경될 경우 제정 · 개정 또는 변경된 지침 및 법령을 적용함

■ 영 제25조제4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

1. 대지의 분할 · 교환에 관한 사항
2. 공개공지, 쌈지형공지, 대지내 통로의 위치 및 조성방법의 변경(신설, 폐지 포함)
3. 전면공지의 조성방법의 변경
4. 수종 · 조경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
5. 구역과 연접한 필지의 공동개발(지구단위계획에 따를 것을 전제함)
6. 건축선에 접해야 하는 건축물 벽면에 관한 사항
7. 필지면적의 20% 이내에서의 필지분할가능선의 변경
8. 통로의 성격 · 설계계획 (보행자 및 차량전용 통로의 위치 변경 및 신규 설치)

Ⅳ. 관계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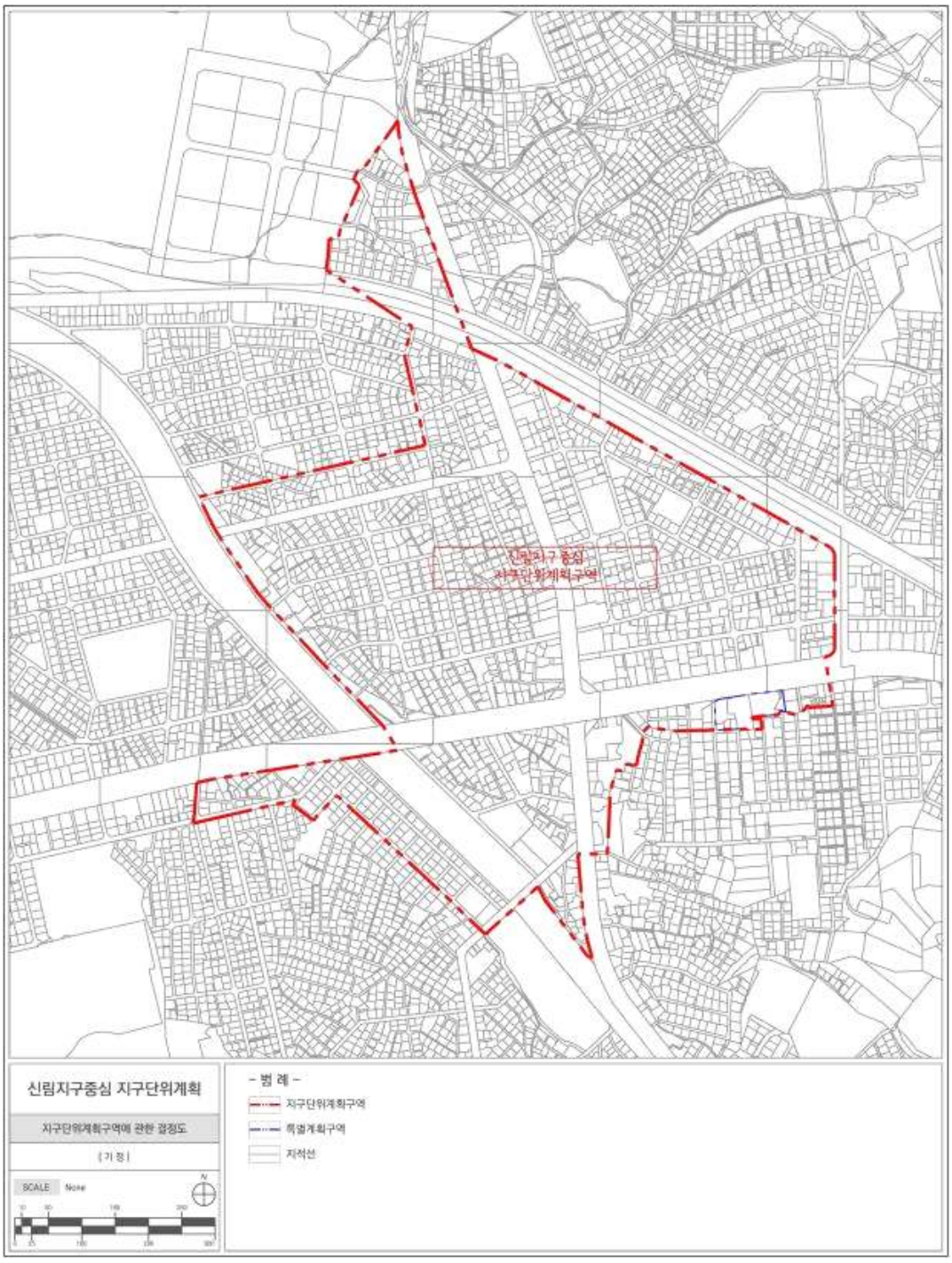
Ⅴ.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결정도서(관계도면 등 지형도면 포함) 참조

Ⅵ.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02-2133-8389) 및 관악구 도시계획과(☎02-879-6361)에 관련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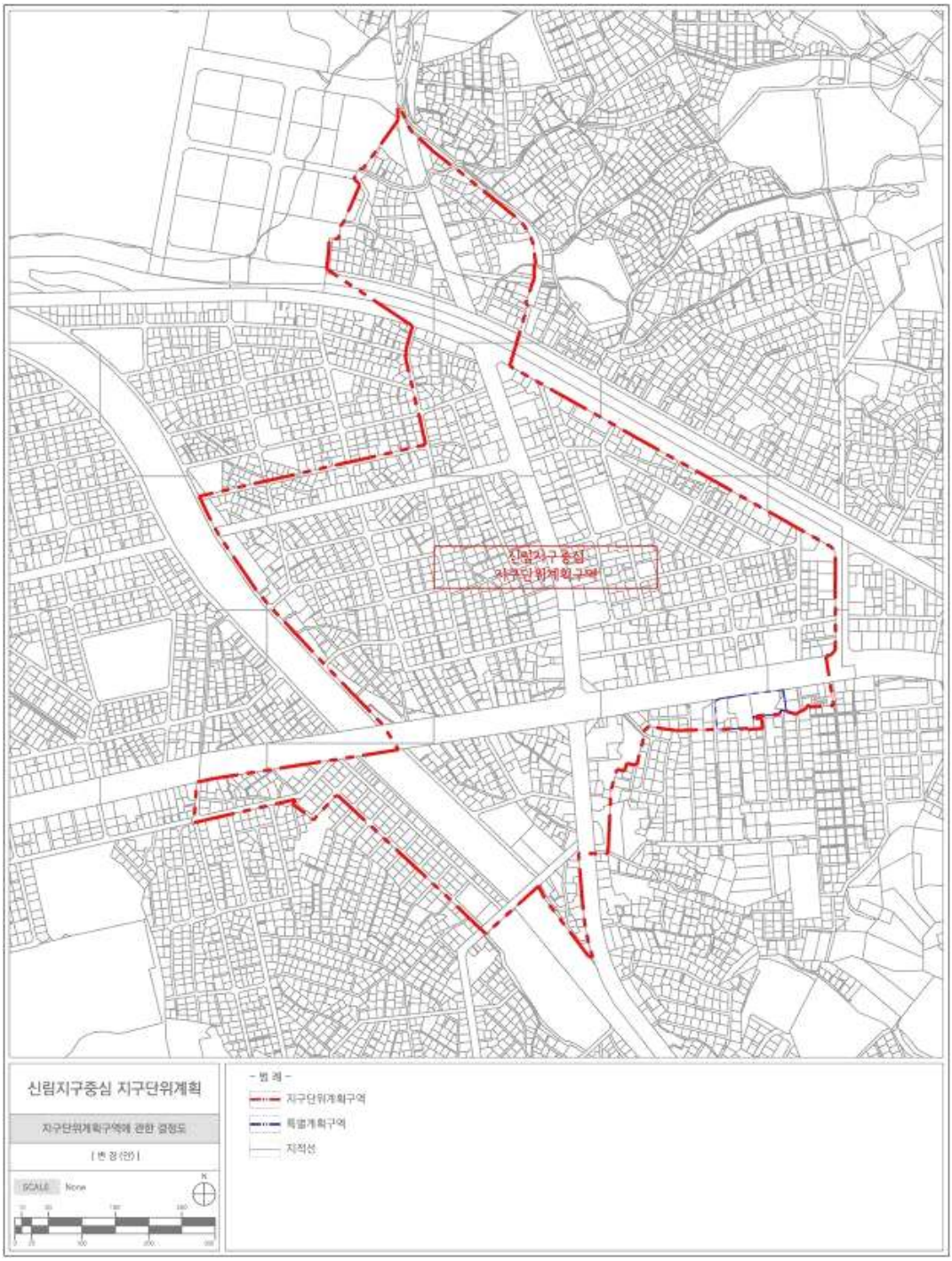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 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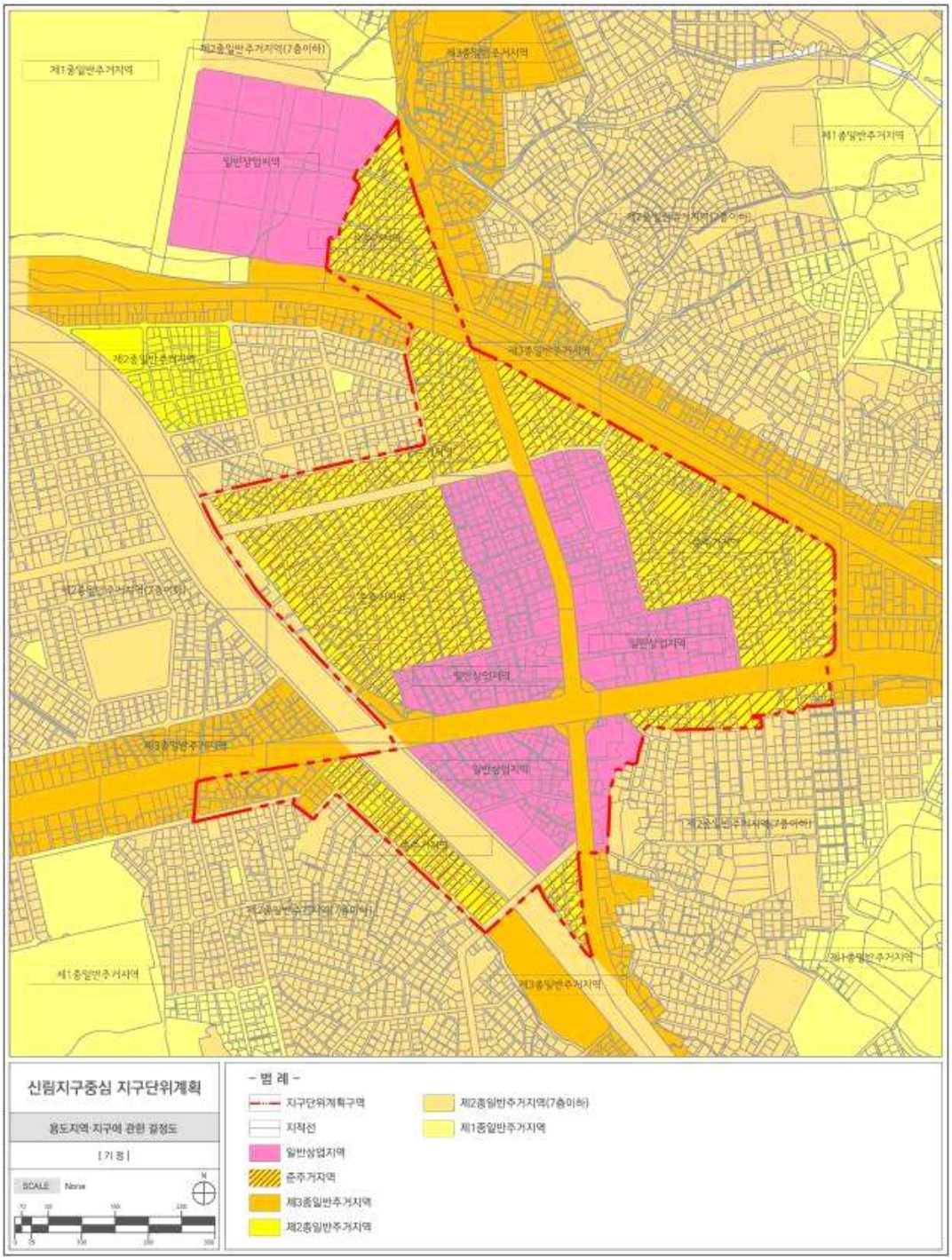
■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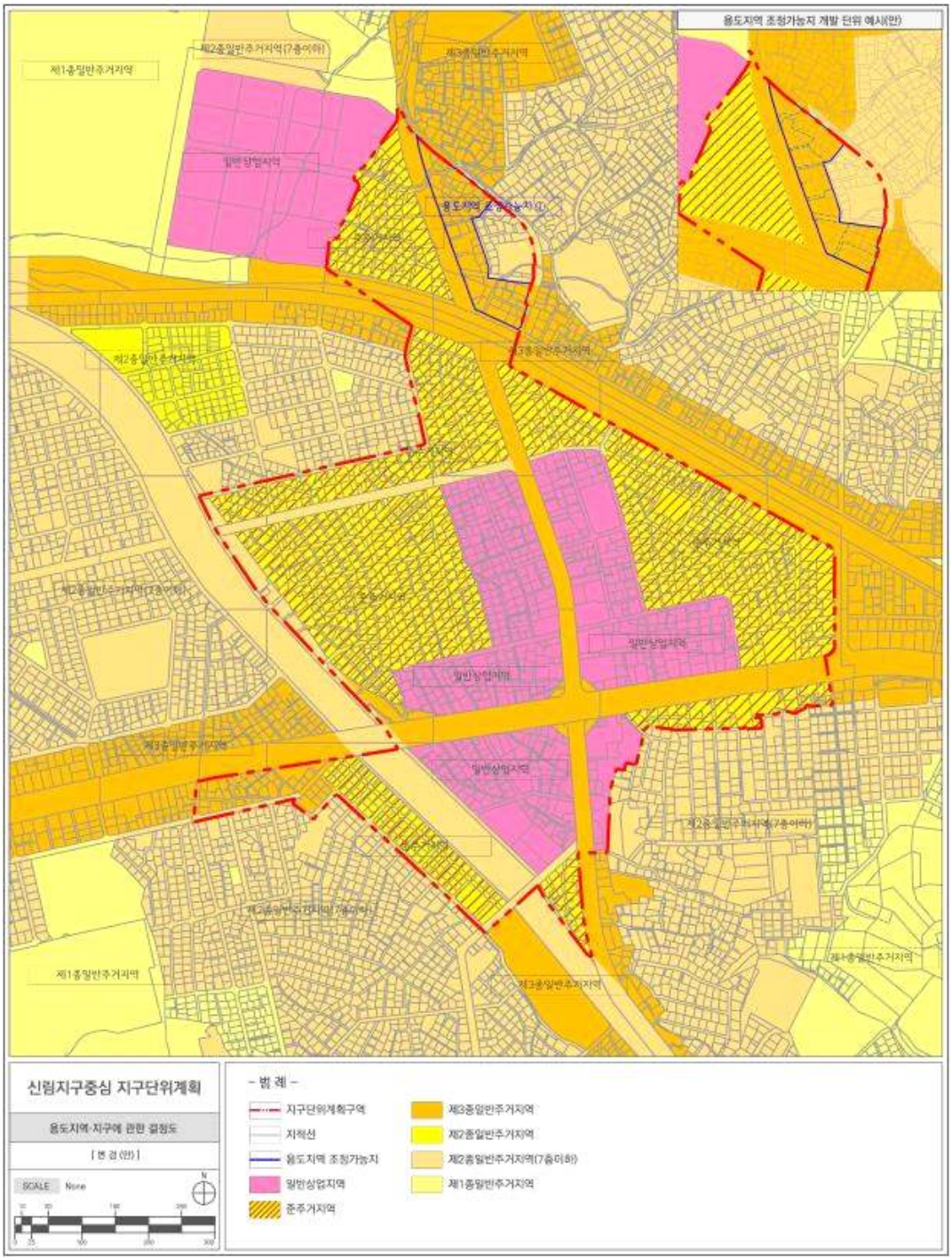
■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도



■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결정(기정)도



■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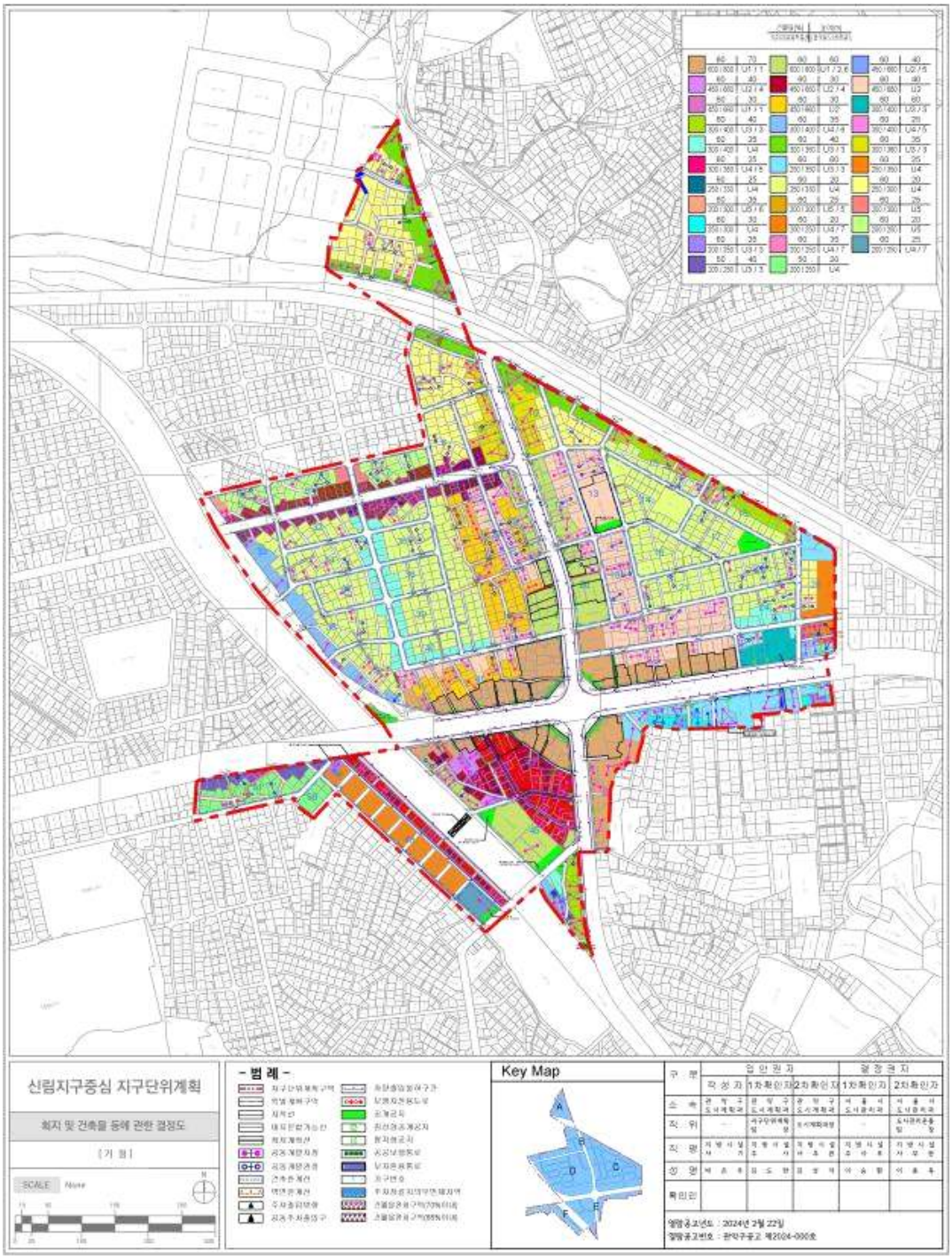
■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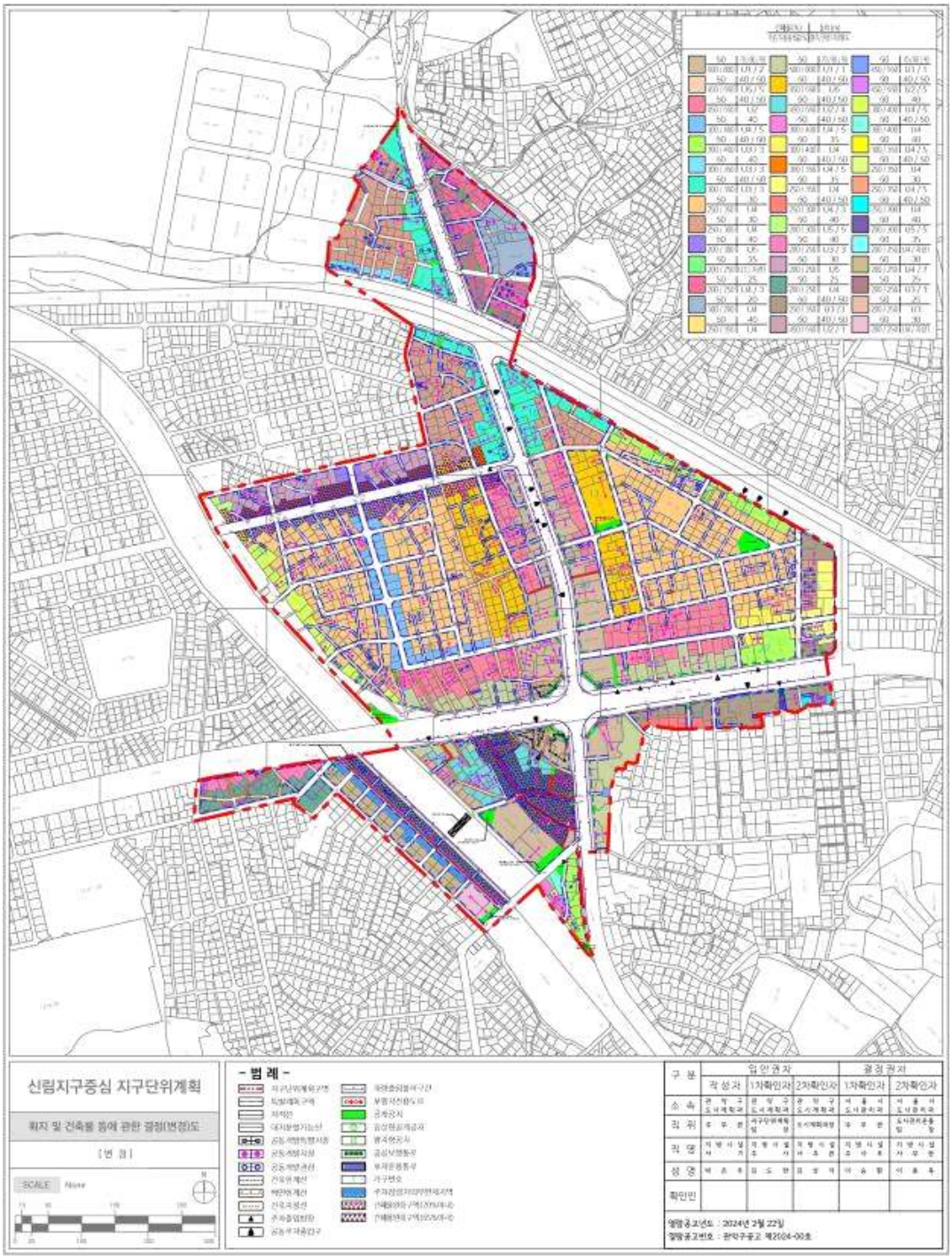
■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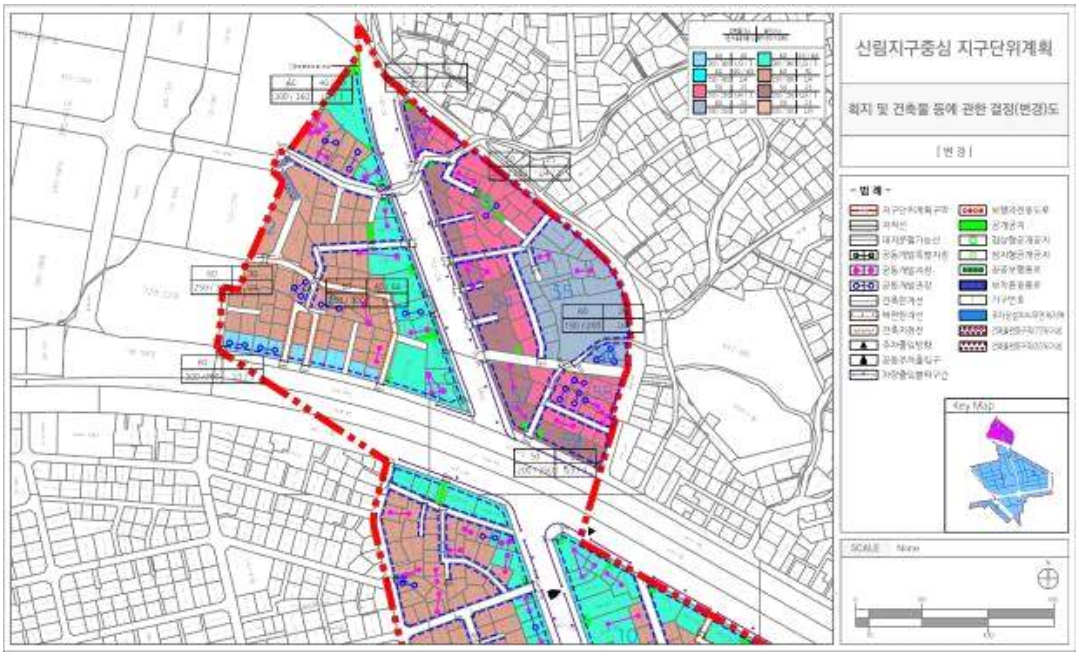
■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기정)도



■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A



■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B



■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C



■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D



■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E



■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F



■ 양지병원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종합결정도(변경없음)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056호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과태료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수취인 불명, 이사,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 송달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제30조(자동차 운행의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자동차의 운행의 제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지방세기본법 제31조(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같은 법 제33조(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4.4.11.~2024.4.25.

5. 공고내용
   가. 이의제기기간 :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까지
   나. 이의제기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서식은 별첨 '이의제기 작성예시' 참조), 의견제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교통지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 이의제기 접수처 및 이의제기방법
   (이의제기 접수처)
   - 주 소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2층 교통지도과 과태료과징팀)
   - 전화번호 : 02-2133-4570~4572
   (이의제기 방법)
   - 팩스 제출 : 02-2133-1446

- 이메일 제출 : green5@seoul.go.kr
- 인터넷 제출 : https://oksign.seoul.go.kr

6. 유의사항
- 공고대상자는 납부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3%의 가산금이 발생하고 매 1개월이 경과 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의 중가산금이 가산되며, 아울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재산에 대한 압류 등)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납부기한 : 2024.5.31.
- 공고대상자는 서울특별시청 교통지도과에서 고지서(가상계좌)를 발부받아 은행(인터넷뱅킹 포함),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기) 등으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납부 : https://etax.seoul.go.kr. (*공인인증서 필요, 신용카드 납부가능)

※ 납부기한, 체납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교통지도과(☎02-2133-4570~45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 주요 이의제기 대상 및 이의제기 작성서식 1부.

순번	수취인주민번호	성명	주소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구분	과세번호	차량번호	과세금액	부과일자	납기일자	단속일	단속장소
1	691010-*******	김*락	충청북도	청주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4-02	수시분	000081	86*6596	100,000	2024-02-06	2024-03-31	2023-12-02	장충체육관(동호로, 진입)
2	680215-*******	심*근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4-02	수시분	000082	01*9930	200,000	2024-02-06	2024-03-31	2023-12-02	시청역 2호선(서소문로, 진입)
3	830222-*******	박*민	경기도	오산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4-02	수시분	000088	88*2976	200,000	2024-02-06	2024-03-31	2023-12-12	남산3호터널(녹사평대로)
4	710204-*******	송*수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4-02	수시분	000089	52*3740	100,000	2024-02-06	2024-03-31	2023-12-14	장충체육관(동호로, 진입)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 안내

□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행정청(서울시 교통지도과)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이의제기 신청서는 당사자 주소지의 관할법원으로 이송되며, 관련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8조에 의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습니다.

○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통보하고 당사자에게 그 처리사실을 통보해 드립니다.

□ 제출서류

○ 이의제기 신청서(아래붙임), 과태료고지서, 이의제기 관련 적법·타당성을 증명할만한 자료

□ 제출방법

○ 우편(등기), 팩스, 이메일을 통해 제출 가능합니다. 다만, 팩스로 접수하신 민원인께서는 반드시 접수여부를 유선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주소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1동 2층 교통지도과(과태료과징팀)
- 팩스번호 : 02-2133-1446, 전화번호 : 02-2133-4570~2
- Email 주소 : green5@seoul.go.kr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 위반 과태료 처분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table>
<tr><td rowspan="2">신 청 인</td><td>성 명
※ 법인일 경우 법인명 또는 사업자명</td><td></td><td>주 민 번 호
※ 법인일 경우 법인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td><td colspan="2"></td></tr>
<tr><td>주 소</td><td colspan="2">(Email)</td><td>연락처</td><td></td></tr>
<tr><td rowspan="2">위반차량</td><td>차량번호</td><td></td><td>차 종</td><td colspan="2"></td></tr>
<tr><td>소 유 자</td><td colspan="4">(신청인과의 관계)</td></tr>
<tr><td rowspan="3">과 태 료
처 분</td><td>처분근거</td><td colspan="4">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 시행령 제48조,시행규칙 제7조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458호(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공고)</td></tr>
<tr><td>납부번호
(부과일자)</td><td>(년 월 일)</td><td>과태료 금액</td><td colspan="2"></td></tr>
<tr><td>위반일시</td><td></td><td>처분사유</td><td colspan="2">서울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td></tr>
<tr><td>과 태 료
처 분
불복사유</td><td colspan="5">※ 내용이 많을 경우 요약 기재후 별지에 작성

※ 증빙자료 1. 과태료 부과 고지서
2. 이의제기에 대한 증빙자료 등</td></tr>
</table>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제외)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동의함 □ 동의안함 □)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변경시에는 사전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058호

의료해외진출법 위반 유치기관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공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위반 기관에 대하여 제22조(시정명령)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기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의료해외진출법 위반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근거 법령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같은 법 제22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구분	기관명	위반내역	예정된 행정처분
유치업자	주식회사 예미뷰티(인*찌)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아니함	시정명령 2차
	시카고게라지(김*철)		
	주식회사 나우여행(전*민)		
	주식회사 카리스비즈(조*래)		
	납세정의신문(주)(박*천)		

4. 공고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의견제출 안내
가. 의견제출 기한 : 공고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10일간
나. 본 사전통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의견제출서 양식을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방법
- 메일 제출 : hyunewh@seoul.go.kr
- 우편 제출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보건의료정책과(의약무팀)

라. 공시송달 대상기관에서는 행정절차법 제27조에 근거하여 처분 전에 서면이나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의견제출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 기한 내에 의견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됩니다.

6. 문의처

-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청 보건의료정책과(☎02-2133-75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시정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대상 1부.
2.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table>
<tr><td rowspan="2">의견제출인</td><td colspan="2">성명</td></tr>
<tr><td>주소</td><td>전화번호</td></tr>
<tr><td rowspan="4">의견제출 내용</td><td colspan="2">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td></tr>
<tr><td rowspan="2">당사자</td><td>성명(명칭)</td></tr>
<tr><td>주소
(전화번호:)</td></tr>
<tr><td>의 견</td><td></td></tr>
<tr><td>기 타</td><td></td></tr>
</table>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059호

녹색교통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자동차 운행의 제한)를 위반한 차량의 소유주에게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독촉)에 따라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과태료 고지서 교부(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니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자동차 운행의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자동차의 운행의 제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독촉),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3. 공시송달 대상 : 붙임 내역서 참조
4. 공고기간 : 2024.4.11. ~ 2024.4.25.
5. 공고내용
   가. 공고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서울특별시청 교통지도과 과태료과징팀에서 독촉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대상자는 납부기한내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경과 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 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의 중가산금이 가산되며, 아울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공고기간 만료일부터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납부안내
   가. 납부기한 : 2024.4.30.
   나. 납부방법 : 서울특별시청 교통지도과에서 고지서(가상계좌)를 발부받아 은행(인터넷뱅킹 포함),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기) 등으로 납부
   다. 인터넷 납부 : https://etax.seoul.go.kr (*공인인증서 필요, 신용카드 납부가능)
7. 공고 확인 및 안내 : 서울특별시청 교통지도과(☎02-2133-4570~4572)

붙임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순번	고지	수취인주민번호	성명	주소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구분	과세번호	차량번호	과세금액	단속일	단속장소
1	독촉	571226-*******	박*수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3-11	수시분	001791	01*2985	100,000	2023-09-16	경희궁(새문안로)
2	독촉	710122-*******	조*일	경기도	화성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3-11	수시분	001802	경기*0사5462	100,000	2023-09-26	회현역(퇴계로)
3	독촉	870702-*******	김*진	경상남도	거제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3-11	수시분	001805	76*4945	100,000	2023-09-29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을지로, 진입)
4	독촉	610608-*******	곽*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3-11	수시분	001801	서울*5더2160	100,000	2023-09-23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을지로, 진입)
5	독촉	840407-*******	황*선	인천광역시	서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3-11	수시분	001799	92*0814	100,000	2023-09-23	시청역 2호선(서소문로, 진입)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061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압류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인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4. 4. 11. ~ 2024. 4. 24.

2. 공시송달 내역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납 기			
		과 목	납 기	횟수	금 액(원)
021916109	관악구 낙성대역14가길 12-4(봉천동)	상하수도요금	23.06 ~ 23.12	4	1,184,240

나. 압류 내역

압류구분	압류물건	물건소유자		압류금액(원)	압류일
		성 명	주 소		
부동산 (건물)	관악구 봉천동 196-198	주식회사다○빌라엔지니어링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로, 104동 202호(언남동, 스파팰리스 리가)	1,184,240	'24.3.12.

3.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남부 수도사업소 요금과 김혜리(☎02-3146-449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073호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수취인 불명, 이사,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 송달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자동차 운행의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자동차의 운행의 제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3.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4.4.11.~2024.4.25.(15일간)

5. 의견제출 안내 : 위 공고대상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가. 의견제출기간 : 2024.4.11.~2024.5.10.
   나. 의견제출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서식은 별첨 '의견진술서 작성예시' 참조), 의견제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교통지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됩니다.
   다. 의견제출처 및 의견제출방법
   (의견제출 첩수처)
   - 주 소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2층 교통지도과 과태료과징팀)
   - 전화번호 : 02-2133-4570~4572
   (의견제출 방법)
   - 팩스제출 : 02-2133-1446 / 이메일 제출 : green5@seoul.go.kr
   - 인터넷 제출 : https://oksign.seoul.go.kr

6. 유의사항

가. 사전의견제출기한내 과태료를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청 교통지도과 과태료과징팀에서 사전통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전통지서에 고지된 과태료 금액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에서 100분에 20이 감경된 금액입니다.

다. 공고기간 만료일부터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7. 과태료 자진 납부

- 납부기한 : 2024.5.10.
- 납부방법 : 공고대상자는 서울특별시청 교통지도과에서 고지서(가상계좌)를 발부받아 은행(인터넷뱅킹 포함),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기) 등으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납부: https://etax.seoul.go.kr. (*공인인증서 필요, 신용카드 납부가능)

※ 의견제출, 납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교통지도과 과태료과징팀(☎ 02-2133-4570~45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 주요 의견제출대상 및 의견제출서 작성서식 1부.

연번	과태료	납세자주민번호	발송납세자명	차량번호	본세금액	주소		단속일자	단속장소
1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630321-1******	이**	07루4804	80000	경기도	고양시	2024-01-31 14:18	혜화문(창경궁로, 진입)
2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830506-6******	김*	92러4552	160000	경기도	고양시	2024-01-31 10:27	자하문터널 남측(자하문로)
3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680610-2******	함**	01나4449	160000	서울특별시	중구	2024-02-01 11:51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4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550205-1******	장**	15나9411	80000	경기도	성남시	2024-02-04 11:31	남산1호터널(삼일대로)
5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440127-1******	박**	05어5193	80000	경기도	고양시	2024-02-04 11:18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퇴계로, 진입)
6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570817-1******	이**	11러5119	80000	경기도	용인시	2024-02-03 08:28	흥인지문(종로, 진입)
7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670110-1******	이**	80서7783	160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4-02-05 09:24	흥인지문(종로, 진입)
8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671010-1******	김**	04우6820	16000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4-02-06 15:27	흥인지문(종로, 진입)
9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660617-1******	정**	07수9838	80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02-10 08:21	백범광장(소월로3길)
10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110111-2******	주-인성아이엔티	서울32러3120	80000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4-02-10 09:21	남산2호터널 북측(녹사평대로58길)
11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680920-1******	김**	08어8061	80000	충청남도	천안시	2024-02-10 14:49	남산1호터널(삼일대로)
12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691005-1******	하**	08더4588	80000	전라북도	익산시	2024-02-10 15:20	남산3호터널(녹사평대로)
13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124-8*-*****	가교 디엔씨(주)	10주2973	160000	경기도	화성시	2024-02-11 10:15	혜화문(창경궁로, 진입)
14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970410-5******	RAHAL ****	97두8198	160000	경기도	화성시	2024-02-11 16:35	흥인지문(청계천로, 진입)
15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110111-3******	(주)포커스이엔티	70조2859	160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02-12 13:08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16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730614-1******	전**	02더3401	80000	경기도	평택시	2024-02-12 13:34	한양도성박물관(율곡로)
17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110111-8******	(주)디**오	37모6601	80000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4-02-12 16:11	남산3호터널(녹사평대로)

연번	과태료	납세자주민번호	발송납세자명	차량번호	본세금액	주소		단속일자	단속장소
18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110111-2******	(주)신**엔에프	06거9189	160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02-13 14:23	반얀트리(장충단로, 진입)
19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601022-1******	민**	80나4509	160000	경기도	수원시	2024-02-08 20:23	남산3호터널(녹사평대로)
20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124-8*-*****	(주) 에이**	71누5592	80000	경기도	화성시	2024-02-07 07:36	백범광장(소월로3길)
21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920719-5******	VIT ****	75가9433	160000	전라남도	무안군	2024-02-15 15:46	숭례문 서측(세종대로, 진입)
22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110111-6******	(주)한**소년교육방송	56소8831	16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4-02-18 14:20	경희궁(새문안로)
23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134311-0******	으**합건설주식회사	27루1348	80000	충청남도	아산시	2024-02-19 15:33	경희궁(새문안로)
24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670110-1******	이**	80서7783	160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4-02-20 11:33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퇴계로, 진입)
25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120111-0******	주식회사 물**	70더4368	80000	경기도	용인시	2024-02-22 12:41	남산1호터널(삼일대로)
26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621005-1******	이**	70조2079	8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4-02-19 14:03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퇴계로, 진입)
27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621005-1******	이**	70조2079	16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4-02-22 08:38	장충체육관(동호로, 진입)
28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761127-1******	한**	95두9824	160000	충청남도	천안시	2024-02-22 10:32	백범광장(소월로3길)
29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931018-5******	KHIN *****	72고6070	80000	충청남도	아산시	2024-02-22 13:11	반얀트리(장충단로, 진입)
30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671010-1******	김**	04우6820	16000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4-02-22 13:23	흥인지문(종로, 진입)
31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730221-1******	김**	07로5927	160000	경기도	이천시	2024-02-22 16:28	흥인지문(종로, 진입)
32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150111-0******	(주)성**업개발	95루6508	80000	충청북도	청주시	2024-02-24 14:43	남산1호터널(삼일대로)
33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710307-1******	김**	37루6116	80000	서울특별시	강북구	2024-02-24 10:48	한양도성박물관(율곡로)
34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761127-1******	한**	95두9824	160000	충청남도	천안시	2024-02-27 10:19	숭례문 서측(세종대로, 진입)

연번	과태료	납세자주민번호	발송납세자명	차량번호	본세금액	주소		단속일자	단속장소
35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131111-0******	주식회사선**엔지	80거5739	160000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4-02-27 10:10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퇴계로, 진입)
36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680610-2******	함**	01나4449	160000	서울특별시	중구	2024-02-28 09:47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37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125-8*-*****	정**설(주)	89무2736	80000	경기도	안성시	2024-02-28 07:32	남산1호터널(삼일대로)
38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031205-7******	LE *** ***	79저3895	80000	전라북도	익산시	2024-02-28 20:09	남산1호터널(삼일대로)
39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671010-1******	김**	04우6820	16000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4-03-01 18:42	흥인지문(종로, 진입)
40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840412-1******	이**	78라4184	80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4-03-01 14:03	남산2호터널 북측(녹사평대로58길)
41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630407-1******	이**	97다0321	160000	충청남도	홍성군	2024-03-01 06:48	경희궁(새문안로)
42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860710-1******	김**	11주2247	80000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4-02-29 18:27	장충체육관(동호로, 진입)

주요 의견제출 대상 및 의견제출서 작성서식

□ 주요 의견제출 대상(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준거)

구 분	증빙서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하는 저공해 조치를 취한 차량	인증시험 확인서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중인 자동차)	긴급자동차 지정증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복지카드(장애인증명서)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補綴用)·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관련법령에 따른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국가유공자사용자동차 표지
경찰·소방·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기관장 확인서 (해당기관 공문)
주한 외국공관 또는 외교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사람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로서 외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기관장 확인서 (해당기관 공문)
주한 외국군대의 구성원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기관장 확인서 (해당기관 공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	기관장 확인서 (해당기관 공문)
그 밖에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정하는 자동차	기관장 확인서 (해당기관 공문)
2019.10.31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자동차(2020.6.30일까지 적용 보류) ※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자동차’라 함은 각 지자체의 저공해 사업 지침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저공해 조치 신청 완료를 통보받은 차량을 의미함	기관장 확인서 (해당기관 공문)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 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않은 자동차와 저감장치 장착불가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동차는 2020.12.31.일까지 적용보류(단,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보류하지 않는다.) ※ ‘저감장치 장착불가확인서’이라 함은 저감장치 제작사가 발급하는 확인서를 의미함	기관장 확인서 (해당기관 공문)

□ 의견제출서 작성서식(예시)

의 견 제 출 서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20 년 월 일 시 분	
제출의견 (단속된 사안 및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내용을 기재)		
※의견제출방법 1. 팩스 2133-1446 2. 이메일 green5@seoul.go.kr 3. 인터넷 https://oksign.seoul.go.kr		
제 출 자		
○ 성 명 : ○ 주 소 : ○ 연락처(휴대전화번호) : ○ 제출일 :		

서울특별시장 귀하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제외)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동의함 □ 동의안함 □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변경시에는 사전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074호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292호(2021.6.24.)호로 결정된 종합의료시설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를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공공의료추진단에 비치되었으며,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열람하오니 본 열람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공공의료추진단, ☎ 02-2133-92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사업내용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동작구 신대방동 722-1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사업
   - 명 칭 :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전문센터 건립
3. 사업 면적 또는 규모
   - 대지면적 : 6,646.9㎡
   - 규 모 : 지하2층/지상2층, 연면적 7,230.87㎡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2024.8.31.로부터 38개월
6.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공공의료추진단(2133-9242)
7.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열람시간 09:00~18:00)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086호

2024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시비 보조금 지원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248호(2024.3.14.) 「2024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2024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시비 보조금 지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원규모 : 1백만원

2. 지원대상 : 대상기간 동안 주택에 새로 설치된 태양열 · 지열 설비

3. 대상기간 : 2023. 12. 01. ~ 2024. 11. 30.
   - 신재생에너지센터 설치확인서 발급일 기준

4. 지원자격(①, ②, ③ 모두 충족)
   ① 서울 소재이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 따른 단독 ·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 예정자
   ② 대상기간 내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 사업의 정부 보조금을 수급
   ③ 설치 에너지원에 대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설치확인을 받은 자

5. 접수기간 : 공고일 ~ 2024. 11. 30.(예산한도 내 선착순 마감)

6. 시보조금 지원기준

구 분	지원 용량	시 보조금	비고
태 양 열	20㎡ 이내	㎡당 80천원	호(세대) 당 지원
지 열	17.5㎾ 이내	㎾당 100천원	

※ 1. 시보조금 지원신청 접수 순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2. 지원예산은 사업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7. 사업신청 및 지원절차

설비 설치	⇨	설치확인 신청	⇨	설치확인서 발급	⇨	시보조금 신청	⇨	보조금 지급
신청자, 참여기업		참여기업 →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센터 → 참여기업		신청자 → 市		市 → 신청자

8. 지원 신청서 제출 안내

가. 접수기간 : 공고일 ~ ’ 24.11.30. 중 선착순 마감(평일 9~18시/토,일,공휴일 제외)

나.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02-2133-3562)

※ 이메일 주소 : jaynsoul@seoul.go.kr

※ 우편접수 주소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5층 녹색에너지과 열에너지사업팀

다.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우편 접수

- 지원신청서 제출자 중 선착순 접수 마감(접수 순번이 지급 순위)
- 이메일 제출의 경우, 담당자의 접수 완료 통지를 이메일로 받은 날짜순으로 접수 순번 인정 (이메일로 선 접수 후 원본 우편발송 필요)
- 우편 제출의 경우 담당자 접수날짜로 접수 순번 인정
- 시공기업이 대리 신청 가능하고, 여러 건을 일괄 제출 시, 순번 정해서 제출 (시 지원금액이 예산 한도에 다다를 경우, 자체 순번 미기재 건은 접수 불가)
- 이메일, 우편으로 신청서 제출 시, 사전에 담당자에게 전화 통보 요망 (만일의 사고, 전달 착오 등으로 이메일, 우편 제출 신청서가 담당자에게 전달되지 않을 경우 접수 순번에 불이익을 받거나, 시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음)

9. 시보조금 지급방법

○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발급한 설치확인서 등 구비서류 확인 후, 하자가 없을 시 신청자(또는 공동주택 대표자) 계좌로 입금

○ 시보조금은 매월 접수된 지급신청서를 취합한 후 수시 지급

10. 시보조금 신청 시 구비서류

가. 2023년 태양열 · 지열 주택지원사업 시보조금 지급신청서[서식1]

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서 1부(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발급)

다. 전력 등 에너지사용량 정보제공 동의서[서식2] 1부

라. 현장 주요사진 작성 양식(설비 준공 전 · 후 사진)[서식3]

라. 보조금 지급 통장 사본(신청인 명의) 1부

마. 에코마일리지 가입확인서 1부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ecomileage.seoul.go.kr)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좌측 메뉴) 증명서 ‘에코마일리지 가입확인서’ → 출력하기)

11. 주의사항

○ 보조금 수령에 필요한 통장계좌는 지원대상자(또는 공동주택 대표자) 계좌로 하되, 보조금 수령을 위한 신청 등 절차는 대행(시공기업에 한함) 가능함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기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 보조금 지원 주택 사업 전·후 에너지사용 현황은 사업의 효율성 분석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음

○ 지원 규모·단가 및 지원 비율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공고일부터 효력이 발생함

○ 에코마일리지 가입일은 별도 제한 없음(신청서 제출일 가입도 인정)

○ 서울특별시는 설비 설치에 따른 시보조금 지원으로 인해 신청자와 참여기업 간에 발생하는 문제(설비성능 보장, A/S 및 비용 발생, 채권·채무 관계 등), 관련 법규 미준수에 따른 문제, 소음 발생 등의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이 없음

12. 기타사항

○ 정부보조금 지원 관련 문의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https://www.knrec.or.kr) 및 그린홈(https://nr.energy.or.kr)으로 문의

※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1855-3020)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02-2071-3816)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기타 사항은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02-2133-3562)로 문의

붙임 1. [서식1] 2024년 주택지원사업(태양열·지열) 시보조금 지급신청서 1부.
2. [서식2] 전력 등 에너지사용량 정보제공 동의서 1부.
3. [서식3] 현장 주요 사진 작성 양식 1부. 끝.

[서식 1]

「2024년 주택지원사업(태양열 · 지열)」 시보조금 지급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E-mail
설치장소				
설치기간		~	센터설치확인일	20 . . .
신청분야·규모		□ 태 양 열 ㎡	□ 지 열	kW
공 사 비 (단위 : 원)	총공사비	국고보조금	시 보조금	자부담
시비 신청액	금 원			
보조금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시공업체	업체명 :	담당자 :	전화 :	

위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24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확인서 1부(신·재생에너지센터 발급)
2. 전력 등 에너지사용량 정보제공동의서 1부
3. 설비 준공사진 1식(전·후 사진)
4. 보조금 지급 통장 사본(신청인 명의) 1부
5. 에코마일리지 가입확인서 1부

[서식2]

2024년 태양열 · 지열 주택지원사업

전력 등 에너지사용량 정보제공 동의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본인은 2024년도 서울시 주택지원사업(태양열 · 지열)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한국전력, 일반도시가스 공급사 등을 통한 에너지 사용량 자료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4 년 월 일

신청인(동의인) :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 및 이용방법>

○ 개인정보 DB 수집의 목적
-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의 정책개발 연구를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며, 동 사업과 관련되어 전력 및 도시가스 사용량 등의 자료를 제공받을 때 활용

○ 이용방법: 신재생에너지 설치 전 · 후 비교 및 보급 통계 등의 업무처리 시 사용

○ 수집내용: 보조금 지급 대상자 정보(주소, 성명, 전화번호), 에너지 사용량(전기, 가스 등),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관련 정보(설치업체, 설치용량, 이용률 및 에너지생산량 등)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10년간

※ 신청자는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그 경우 보급사업 실적관리 등 어려움으로 인해 시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서식3]

현장 주요 사진

□ 설치장소 : 서울시 ○○구 ○○동
□ 소 유 자 : ○○○

설치 전	설치 후
집열기(태양열), 히트펌프(지열) 등	축열조, 기계실내부(지열) 등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119호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사항 공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및 제3항, 제29조 제3항에 따라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를 처리하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사항

신 고 인					변 경 내 역		
연번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구분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1	(주)아이엠글로벌넷	서울 제798호	김영빈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비동 1312호(가산동, 우림라이온스밸리)	상호 ('24.3.13)	(주)메디어스코리아	(주)아이엠글로벌넷
2	㈜휴먼네이처코리아	서울 제911호	변은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길 28-11, 5층 5133호 (역삼동, 조이빌딩)	소재지 ('24.3.20)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75길 10, 5층 (역삼동, 영창빌딩)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길 28-11, 5층 5133호 (역삼동, 조이빌딩)
3	(유)포라이프리서치코리아	서울 제394호	라이언커티스우드, 이태훈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76, 14층 (잠실동, 제이타워)	전화번호 ('24.3.22)	02-6022-4200	02-6410-8481
4	인셀덤 강동상일대리점	서울 후 제1852호	이정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83길 54, 1층 101호(고덕동)	소재지 ('24.3.22)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83길 26, 1층 6호 (고덕동, 백두쇼핑)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83길 54, 1층 101호(고덕동)
5	(주)에이피	서울 제735호	이상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 9층 (방배동, 이수파이브)	소재지 ('24.3.2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 8층, 9층 (방배동, 이수파이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 9층 (방배동, 이수파이브)
6	진주인셀덤	서울 후 제1502호	이현주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1218, 310동 510호(방이동,올림픽선수촌,기자촌아파트)	소재지 ('24.3.23)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1218, 322동 1002호(방이동,올림픽선수촌, 기자촌아파트)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1218, 310동 510호(방이동,올림픽선수촌, 기자촌아파트)
7	지지탑뷰티	서울 후 제2834호	김미화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로7길 30(녹번동)	소재지 ('24.3.29)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포승원정길 35-10, 10동 101호(화이트타운)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로7길 30(녹번동)

신 고 인					변 경 내 역		
연번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구분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8	대광통상	서울 후 제2302호	이길복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22길 39, 102동 401호 (석관동, 누리마루)	폐업 ('24.3.26)		
9	(주)보러스	서울 후 제2388호	이현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2길 53(서초동)	폐업 ('24.3.31)		
10	인셀덤 운수대통	서울 후 제1974호	견운수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51길 36-9(길동)	폐업 ('24.4.1)		
11	방주 인셀덤	서울 후 제1756호	김순애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6길 18-7(개포동)	폐업 ('24.4.1)		
12	실로암	서울 후 제2350호	김정순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학사로6길 29 현대파크빌 301호	폐업 ('24.4.1)		
13	하연인셀덤	서울 후 제2351호	김하연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440-13 천우빌라10차 302호	폐업 ('24.4.1)		
14	영웅 대리점	서울 후 제1939호	문성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4길 37, 201동 1110호(중계동, 중앙하이츠아파트)	폐업 ('24.4.1)		
15	인셀덤 강남점 벨라(Bella)	서울 후 제958호	박주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3길 122 1층 103호(방배동)	폐업 ('24.4.1)		
16	인셀덤 역삼점	서울 후 제817호	배영남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07길 22, 2층 (역삼동)	폐업 ('24.4.1)		
17	화이트닝뷰티	서울 후 제2475호	손순필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로23길 12-3 에이원 A동 301호	폐업 ('24.4.1)		
18	인셀덤 블리스	서울 후 제1845호	이기현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1마길 45-3(신당동)	폐업 ('24.4.1)		
19	인셀덤 타임	서울 후 제2778호	이상미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로 119 (길음동, 길음뉴타운) 207동 902호	폐업 ('24.4.1)		
20	인셀덤 시그니엘 대리점	서울 후 제2442호	이정우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4가길 6 (봉천동) 303호	폐업 ('24.4.1)		

신 고 인					변 경 내 역		
연번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구분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21	미센터 (MI CENTER)	서울 후 제2487호	정미진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42가길 30-12 302호	폐업 ('24.4.1)		
22	백연뷰티	서울 후 제2488호	정은숙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24길 30 3층	폐업 ('24.4.1)		
23	우버뷰티 (Uber beauty)	서울 후 제2105호	조민식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17길 8 (사당동) A동 1층 101호	폐업 ('24.4.1)		
24	신현 인셀덤	서울 후 제1178호	조병화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08길 20 (중계동, 무지개아파트) 211동1115호	폐업 ('24.4.1)		
25	인셀덤 은하수	서울 후 제2543호	조수경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30길 40(상도동, 상도2차두산위브트레지움아파트) 204동 1202호	폐업 ('24.4.1)		
26	수현 인셀덤	서울 후 제887호	조수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59길 13 백운플러스타워 607호	폐업 ('24.4.1)		
27	뱀부 인셀덤	서울 후 제2597호	진미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로22마길 56(북아현동) 3층 301호	폐업 ('24.4.1)		
28	넘버원인셀덤	서울 후 제2450호	최혜림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문화로 102-23 B동 103호	폐업 ('24.4.1)		
29	인셀덤(Leap) 비약	서울 후 제2113호	한순화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 252, 104동 2006호(면목동, 면목현대아파트)	폐업 ('24.4.1)		
30	인셀덤 나래	서울 후 제2676호	임나래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208-13(가산동) 301호	폐업 ('24.4.1)		
31	노원스타 인셀덤	서울 후 제2291호	남궁성순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31가길 38, 301호(상계동)	폐업 ('24.4.3)		
32	인셀덤-MINA	서울 후 제2344호	김미나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10라길 10, 1층 101호(미아동, 론다빌라)	폐업 ('24.4.3)		

신 고 인					변 경 내 역		
연번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구분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33	해맑음 뷰티샵	서울 후 제2347호	김민재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74길 14, 302호(고덕동)	폐업 ('24.4.3)		
34	인셀덤뷰티	서울 후 제1571호	이영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112길 1, 201호(도림동)	폐업 ('24.4.3)		
35	㈜인트로케이	서울 후 제1269호	김도현,박유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316,지하1층(역삼동)	폐업 ('24.4.1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민원담당관(☎ 02-2133-7917) 또는 공정경제담당관(☎ 02-2133-53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121호

지방보조사업자 보조금 반납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같은 법 제19조(지방보조금의 금액 확정) 규정에 따라 정산 결과를 확정하고 반납고지서를 발송하고자 하나, 소재지 불명 ·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명: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보조금 반납고지서 공시송달

2. 근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같은 법 제19(지방보조금의 금액 확정),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3. 공시송달 대상

단체명 (대표자)	소재지	내용	반납 대상액	사유
오그린 (임*원)	불명	지방보조사업 보조금 반납 안내 (집행잔액 등 반납 및 환수)	19,977천원	소재지 불명으로 송달 불능

4. 공고기간: 2023. 4. 11. ~ 2024. 4. 24.(14일간)

5. 유의사항
   가. 공고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서울특별시청 시민협력과 공익활동지원팀에서 반납고지서를 발부받아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반납고지서 발급 및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시청 시민협력과(☎02-2133-63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 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시민협력과 공익활동지원팀
   - 제출방법: 전자우편 gnuj0813@seoul.go.kr / 팩스 02-768-8891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126호

정보공개서 (직권) 등록취소 사실 통지문 공시송달 공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동법”) 제6조의2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정기) 변경등록을 미이행하여 중요사항이 누락된 경우(동법 제6조의4제1항 제3호) 및 가맹본부가 폐업 신고를 한 경우(동법 제6조의4제1항 제4호)에 해당되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하고 통지문을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이사(주소 확인 불가) 등 사유로 문서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년 4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시송달 대상

연번	상호	영업표지	대표	주소	등록취소 사유	반송사유
1	(주)가치와기술	가보자#(샵)	한OO	0727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57-5, -이하생략-	폐업	이사불명
2	(주)공감커머스	이른 베이커리 베이커리&카페 (BAKERY&CAFE)	김OO	16662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1190번길100, -이하생략-	중요사항 누락	기타
3	(주)굿맨브랜딩컴퍼니	폰더샐러드(PONDERSALAD)	주OO	05669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23길14, -이하생략-	중요사항 누락	기타
4	(주)더뉴웨이스	랭스터디카페(LANG STUDY CAFE)	곽OO	0258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22, -이하생략-	폐업	이사불명
5	(주)마스터에프앤비	몽컵, 평화시장떡볶이, 그·집, 터키즈피자, HOT치킨, 가화만사성, 평화국수, 토핑카츠, 푸닭발, 10000족발, 커브웨이, 불고기찜닭	박OO	39183 경상북도 구미시 옥계북로 69, -이하생략-	중요사항 누락	기타
6	(주)보광유니온	현미박사누룽지	박OO	05342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113길 16, -이하생략-	폐업	수취인불명
7	(주)비비앤	도니버거	김OO	12821 경기도 광주시 새말길146, -이하생략-	폐업	기타

연번	상호	영업표지	대표	주소	등록취소 사유	반송사유
8	(주)비케이푸드	풀초롱맛술사	김OO	08393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2가길 16, -이하생략-	중요사항 누락	이사불명
9	(주)세컨드라이프	한컴말랑말랑행복케어 주간보호센터	김OO	05855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이하생략-	폐업	이사불명
10	(주)셀핀다	Cellpinda(셀핀다), 발효가바김치찌개	정OO	10071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0로133번길127, -이하생략-	중요사항 누락	폐문부재
11	(주)스타셀러	별을 품은 곱창	이OO	06343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로9길 38, -이하생략-	폐업	이사불명
12	(주)승승장구홀딩스	닭찬들	최OO	18237 경기도 화성시 수노을1로148, -이하생략-	중요사항 누락	기타
13	(주)씨아이씨씨	88	허OO	0734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40, -이하생략-	폐업	기타
14	(주)아미에프엔비	로지몬스터	장OO	08753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70길 13, -이하생략-	폐업	이사불명
15	(주)에프티프랜즈	제주가정식초밥, 에프티프렌즈파머스테이블	정OO, 박OO	13831 경기도 과천시 부림로2, -이하생략-	중요사항 누락	수취인불명
16	(주)엠에스케이	뉴핏샵 20201828	김OO	10111 경기도 김포시 사우로51, -이하생략-	중요사항 누락	폐문부재
17	(주)와이엔에스홀딩스	스시메이진	김OO	08584 서울특별시 금천구 두산로 70, -이하생략-	폐업	수취인불명
18	(주)와이케이커리어	홈프리	이OO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26-26, -이하생략-	폐업	기타
19	(주)와이코퍼레이션	뚝딱설렁탕	윤OO, 윤OO	06922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152, -이하생략-	폐업	수취인불명
20	㈜요기독강아지랑 고양이랑 강남본점	요기독	신OO	04572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400, -이하생략-	폐업	기타
21	(주)우리짐	우리짐	유OO	04023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9, -이하생략-	중요사항 누락	수취인불명
22	(주)원데이즈웰	아니벌써	임OO	08594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 -이하생략-	폐업	수취인불명

연번	상호	영업표지	대표	주소	등록취소 사유	반송사유
23	(주)유씨컴퍼니	크루아상148	조OO	22748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울로67번길, -이하생략-	중요사항 누락	수취인불명
24	(주)이너라인코퍼레이션	이너라인	송OO	04919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37길 29, -이하생략-	폐업	수취인불명
25	(주)일마레카페앤파스타	일마레	윤OO	06959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대로1길 9, -이하생략-	폐업	수취인불명
26	(주)잠백이샐러드	잠백이샐러드	김OO	05611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49길 50, -이하생략-	폐업	수취인불명
27	(주)전략과실행	닭가슴살마트	홍OO	0431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47나길 4, -이하생략-	중요사항 누락	폐문부재
28	(주)전성에프앤비	북경상회	전OO	06168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3길 11, -이하생략-	폐업	수취인불명
29	㈜제이케이 파트너스그룹	위드맘, 청담오마카세, 위드파티, 위드카페	김OO	06158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9길 6, -이하생략-	중요사항 누락	수취인불명
30	(주)쭈소반	쭈소반	이OO	04739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당로40길 39, -이하생략-	폐업	수취인불명
31	(주)천년종가집	천년종가, 배달천국	최OO, 정OO	07721 서울특별시 강서구 초록마을로 8, -이하생략-	중요사항 누락	기타
32	(주)코스메인	피톤씨엘	이OO	04990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46, -이하생략-	폐업	이사불명
33	(주)쿠소이	쿠소이	서OO	04735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림말길 33, -이하생략-	폐업	수취인불명
34	(주)티랩	티랩스튜디오	박OO	12962 경기도 하남시 신장로38번길, -이하생략-	중요사항 누락	기타
35	(주)피자꾼	피자꾼	강OO, 이OO	01851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밭로 134, -이하생략-	중요사항 누락	수취인불명
36	(주)한마음스마트	빅스버(VIXBER), 베리베리	김OO	31912 충청남도 서산시 충의로1839, -이하생략-	중요사항 누락	폐문부재
37	(주)핫픽	1974냉면, 수유감자탕, 만두판	전OO	01014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로 45, -이하생략-	중요사항 누락	기타
38	(주)해야	골똘	이OO	05043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49길 32, -이하생략-	중요사항 누락	기타
39	노벨바이그루메	육회왕연어해적단	이OO	05855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4길 6, -이하생략-	폐업	수취인불명

연번	상호	영업표지	대표	주소	등록취소 사유	반송사유
40	마테호른	슈퍼막셰	이OO	04419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 60, -이하생략-	폐업	폐문부재
41	먼치오케이	먼치오케이샐러드클럽	김OO	07586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41길 65, -이하생략-	중요사항 누락	기타
42	반딧불오징어	반딧불오징어	김OO	04612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9길 45, -이하생략-	폐업	이사불명
43	베러댄와플협동조합	베러댄와플	이OO	10090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2로 11, -이하생략-	중요사항 누락	폐문부재
44	부밀리앤파트너스(주)	부밀리	전OO	22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송로70, -이하생략-	중요사항 누락	수취인불명
45	삼성혈컴퍼니	삼성혈 해물탕	김OO	06128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6길 39, -이하생략-	폐업	기타
46	서울김바비	서울김바비	유OO	06531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91길 13, -이하생략-	폐업	이사불명
47	쏜다치킨영등포점	쏜다치킨	송OO	27856 충청북도 진천군 합목3길 61, -이하생략-	중요사항 누락	주소불명
48	아바이토종순대국	알바이토종순대국	박OO	02855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71, -이하생략-	폐업	기타
49	에스와이씨(SYC)	올리브스터디카페	송OO	04580 서울특별시 중구 왕십리로 415, -이하생략-	중요사항 누락	기타
50	에이치더블유 푸드시스템	올더플레이트 (ALL THE PLATE)	황OO	03975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로9길 11-10, -이하생략-	폐업	수취인불명
51	에프앤에스 코퍼레이션(주)	위퍼스트스터디카페	박OO	17370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97번길 27, -이하생략-	중요사항 누락	폐문부재
52	엘에스리테일	국보미역, 우스블랑	임OO	06627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51길 10, -이하생략-	폐업	수취인불명
53	영계푸드1988옛날통닭	영계푸드1988'옛날통닭	김OO	0253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59길 26, -이하생략-	중요사항 누락	기타
54	잇츠초밥	잇츠초밥	김OO	08813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23길 25, -이하생략-	폐업	수취인불명

연번	상호	영업표지	대표	주소	등록취소 사유	반송사유
55	천사에듀(주)	토킹뮤즈	전OO	06174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04길 12, -이하생략-	중요사항 누락	수취인불명
56	치킨공방외식사업부	치킨공방	박OO	08759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597-11, -이하생략-	폐업	수취인불명
57	키바글로벌에듀(주)	키바AI바둑카페	권OO	06593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31길 20, -이하생략-	폐업	수취인불명
58	키즈룹(주)	바다나무잉글리시	OO NORTH AM	04405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00, -이하생략-	중요사항 누락	수취인불명
59	킹플(주)	킹플(KINGFFLE)	서OO	04903 서울특별시 광진구 면목로 182, -이하생략-	폐업	이사불명
60	타이거글로벌(주)	어남선생	조OO	13449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18, -이하생략-	중요사항 누락	주소불명
61	토스티토스트	토스티토스트	조OO	07802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13, -이하생략-	폐업	수취인불명
62	파티아이디어	잇츠 그린(it's green), 케이빙수(k-빙수)	홍OO	05666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42길 11, -이하생략-	중요사항 누락	기타
63	푸드시티(주)	의리감자탕	신OO	06030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28길 22-11 3층(신사동)	폐업	기타
64	해피마루	행복은간장밥	홍OO	0248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239, -이하생략-	중요사항 누락	기타
65	헤베샵(HebeShop) 동대문점	헤베샵(Hebe Shop)	강OO	04561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225, -이하생략-	폐업	수취인불명
66	화채로와	후레쉬플레잇, 샐러드맨, 화채로와	전OO	03388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18길 19, -이하생략-	폐업	이사불명

2. 제목: 정보공개서 (직권) 등록취소 사실 통지문 공시송달 공고

3. 공시송달 기간 : 2024. 4. 11. ~ 2024. 4. 25.(15일간)

4. 내용

가맹본부는 제6조의2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한 영업표지에 대한 변경사항을 법령에 정해진 기한에 등록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6조의4제1항 3호의 ‘중요사항 누락’으로 판단하여 등록기관의 직권으로 영업표지가 등록취소되며

동법 제6조의4제1항 4호에 따라 ‘가맹본부가 폐업 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될 경우에도 해당 영업표지가 등록 취소됨.

우리시는 동법 각호에 해당되는 영업표지에 대하여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하고 이를 통지하였으나(등기우편 발송), 수취인불명 및 이사(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문서 송달이 불가능한바 본 공시송달을 시행하고자 함

※ 등록취소된 정보공개서를 사용하여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희망자와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되어 같은법 제33조 · 제35조 · 제41조 제3항 등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 · 과징금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만약 귀사가 다시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그 전에 정보공개서를 다시 등록해야 함

※ 동 처분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며, 당해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27조)을, 또는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행정소송법 제20조)을 제기할 수 있음.

※ 문의처 : 서울특별시 공정경제담당관 공정거래팀(02-2133-5403)

서울특별시교육청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제2024-159호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4월 11일
서울특별시교육감

1. 개정 이유
  - 교명제정심의위원회 구성 조항에서 성별 균형 내용 신설
  - 2024. 9. 1.자 고등학교 1개교(휘경공업고등학교) 교명 변경
  - 2024. 9. 1.자 유치원 1개원(서울남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신설

2. 주요 내용
  가. 제5조(위원회의 구성) (안 본문)
    □ 조항 개정
      ○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교육행정국장, 학교지원과장, 중등교육과장, 진로직업교육과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신설> 교육감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나. 고등학교 명칭 (안 별표 3)
    □ 교명 변경: 1개교
      ○ 휘경공업고등학교 → 서울반도체고등학교

  다. 유치원 명칭 및 위치 (안 별표 7)
    □ 신설: 1개원
      ○ 서울남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중구 퇴계로22길 17)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1) 「교육기본법」 제11조(학교 등의 설립)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

나. 사전절차(성별영향평가, 학생인권영향평가 등) 2024년 4월 이행 예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교육청 (담당부서: 학교지원과)

O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 (신문로 2가)

O 연락처: 전화 02-2282-8358, FAX 02-6973-9944

O 이메일: jibin27@sen.go.kr

5. 붙임 입법안(다음 페이지)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②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 사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한 사람” 으로 한다.

별표 3 명칭란 중 “휘경공업고등학교”를 “서울반도체고등학교”로 한다.

구 분	교육지원청	자치구명	명 칭	위 치
본청	동부	동대문구	서울반도체고등학교	동대문구 겸재로 21

별표 7 구분란 중 “중부교육지원청(13교)”를 “중부교육지원청(14교)”로, “중구(4교)”를 “중구(5교)”로 하고, 중부교육지원청의 명칭란 중 “서울광희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 다음에 “서울남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을, 위치란 중 “중구 다산로 269(신당동)” 다음에 “중구 퇴계로 22길 17”을 신설한다.

구 분	자치구명	명 칭	위 치
중부교육지원청	중구	서울남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중구 퇴계로22길 1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명칭 변경은 2024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본문]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교육행정국장, 학교지원과장, 중등교육과장, 진로직업교육과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후략)</td><td>[본문]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교육행정국장, 학교지원과장, 중등교육과장, 진로직업교육과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u>성별 균형을 고려하여</u> 교육감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후략)</td></tr>
<tr><td>[별표 3]
고등학교 명칭 (제3조 관련)
<table>
<tr><th>구 분</th><th>교육지원청</th><th>자치구명</th><th>명 칭</th><th>위 치</th></tr>
<tr><td rowspan="3">본청
(115교)</td><td rowspan="3">동부
(8교)</td><td rowspan="3">동대문구
(3교)</td><td>〈생 략〉</td><td></td></tr>
<tr><td>휘경공업고등학교</td><td>동대문구 겸재로 21</td></tr>
<tr><td>〈생 략〉</td><td></td></tr>
</table></td><td>[별표 3]
고등학교 명칭(제3조 관련)
<table>
<tr><th>구 분</th><th>교육지원청</th><th>자치구명</th><th>명 칭</th><th>위 치</th></tr>
<tr><td rowspan="3">본청
(115교)</td><td rowspan="3">동부
(8교)</td><td rowspan="3">동대문구
(3교)</td><td>〈현행과 같음〉</td><td></td></tr>
<tr><td>서울반도체
고등학교</td><td>동대문구 겸재로 21</td></tr>
<tr><td>〈현행과 같음〉</td><td></td></tr>
</table></td></tr>
<tr><td>[별표 7]
유치원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table>
<tr><th>구 분</th><th>자치구명</th><th>명 칭</th><th>위 치</th></tr>
<tr><td rowspan="3">중부
교육지원청
(13교)</td><td rowspan="3">중구
(4교)</td><td>〈생 략〉</td><td></td></tr>
<tr><td>서울광희초등학교
병설유치원</td><td>중구 다산로 269
(신당동)</td></tr>
<tr><td>〈신 설〉</td><td></td></tr>
</table></td><td>[별표 7]
유치원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table>
<tr><th>구 분</th><th>자치구명</th><th>명 칭</th><th>위 치</th></tr>
<tr><td rowspan="3">중부
교육지원청
(14교)</td><td rowspan="3">중구
(5교)</td><td></td><td></td></tr>
<tr><td>〈현행과 같음〉</td><td></td></tr>
<tr><td>서울남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td><td>중구 퇴계로 22길
17</td></tr>
</table></td></tr>
</table>

[붙임 입법예고 의견제출 서식]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견 제출

성 명 : (인)
단체명 : (단체인 경우) 대표자 성 명 :
주 소 : 전화번호 :

개정안	수정요구안	사 유
제0조(00)	제0조(00)	○ –

2024 년 월 일

◈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제2024-161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4월 11일
서울특별시교육감

1. 개정 이유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의 적절성 검토를 통한 공정하고 타당성 있는 금고 선정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7조(금고지정 평가기준) 수정
- '별표'를 '별표 1 및 별표 2'로 수정, 제6호 신설
나. 조례 [별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7조 관련) 수정
- 항목 3의 배점 조정, 항목 5의 일부 문구 삭제, 항목 6의 신설
다. 조례 [별표 2] 평가 세부기준 및 방법(제7조 관련) 신설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교육청 (담당부서: 교육재정과)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 (신문로 2가)
○ 연락처 : 전화 02-399-9629, FAX 02-6973-9945
○ 이메일 : kimo120@sen.go.kr
다. 이 조례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en.go.kr) [행정정보-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4. 붙임 1. 입법안
2. 의견제출서식

서울특별시교육청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를 “별표 1 및 별표 2”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기타사항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같은 표(종전의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제7조(금고지정의 평가기준) ① 공개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1. ~ 5. (생 략)

<신 설>

[별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7조 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계	총계	100
1. ~ 2.	(생 략)	(생략)
3. 교육수요자 및 교육기관의 이용 편의성	소계	20
	가. 관내지점의 수, 교육수요자 및 교육기관의 이용 편리성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8)
	나. (생 략)	(생 략)
	다. (생 략)	(생 략)
4.	(생 략)	(생 략)
5. 교육기관 기여 및 교육청과 협력사업	소계	7
	가. 교육기관에 대한 기여실적 ※ 사회적 책임 경영의 교육기여 효과, 생태전환 교육 연계 탈석탄 선언 실적 포함	(5)
	나. (생 략)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개 정 안

제7조(금고지정의 평가기준) ---

---- ----

------- -----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1. ~ 5. (현행과 같음)

6. 기타사항

[별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7조 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계	총계	100
1. ~ 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 교육수요자 및 교육기관의 이용 편의성	소계	19
	가. 관내지점의 수, 교육수요자 및 교육기관의 이용 편리성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7)
	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5. 교육기관 기여 및 교육청과 협력사업	소계	7
	가. 교육기관에 대한 기여실적 ※ 사회적 책임 경영의 교육기여 효과 포함	(5)
	나. (현행과 같음)	(현행과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같음)
6. 기타사항	소계	1
	가. 녹색금융 추진실적	(1)

< 신 설>

[별표 2]

평가 세부기준 및 방법(제7조 관련)

Ⅰ. 일반원칙

1. 평가 세부항목별 점수 부여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차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대상 금융기관을 등급별로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평가 세부항목별(1- 가, 나의 경우는 평가세세부 항목별)로 대상 금융기관이 부여받는 최소 점수는 배점상한의 60% 이상으로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및 등급 간 점수편차는 배점상한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로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 평가한다. 다만, 평가항목 2(교육청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와 평가항목 5(교육기관 기여 및 교육청과 협력사업)의 순위 및 등급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서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Ⅱ.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평가항목	평가 세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 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5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점) ◦ 평가기준: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평가항목	평가 세부기준 및 방법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7점)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ㆍ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률 (수익성, 5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 교육청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25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6점)
	◦ 보통예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교육청 대출금리(4점)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

평가항목	평가 세부기준 및 방법
	에 따라 점수 부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5점)
	◦ MMDA 운용 금리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마. 정기예금 만기경과시 적용금리(3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만기경과 후 적용하는 기간별 금리수준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3. 교육수요자 및 교육기관의 이용 편의성 (19점)	가. 관내지점의 수, 교육수요자 및 교육기관의 이용 편의성(7점)
	◦ 교육수요자 및 교육기관(각급학교 포함)이 세입금 납부와 공금 입출금 등의 업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 시내 유인영업점의 수와 해당 금융기관과 전산시스템을 통합 운영하는 서울 시내 유인영업점의 수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단, 지점, 출장소는 포함하되 무인점포 및 365일 코너,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지정되는 지점 등은 제외
	나. 세입금 수납 처리능력(5점)
	◦ 최근 수년간 서울시내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공납금을 전자수납 매체를 이용하여 수납 처리한 실적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세입금 납부편의 증진 방안(7점)
	◦ 교육기관이 세입금을 편리하게 수납 및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스쿨뱅킹 구축, 가상계좌 활용 등) 구축 현황 및 구축 계획,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부 편의(전자납부 등) 증진 방안, 금고업무 중단 사태·사고 등을 대비한

평가항목	평가 세부기준 및 방법
	운영대책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3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 관리능력(6점)
	◦ 자금운용 및 집행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현금흐름(Cash-flow)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계획, 교육청(NEIS, K-에듀파인 등)과 금고 간 연계시스템 구축 및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금고업무 관리능력 (8점)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9점)
	◦ 전산보안시스템(H/W, S/W)의 도입 및 운영 방안, 교육청 금고에 대한 보안계획 및 이행계획(개인·금융정보 보호 포함), 전자금융사고 발생 건수 등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5. 교육기관 기여 및 교육청과 협력사업 (7점)	가. 교육기관에 대한 기여실적(5점)
	◦ 금융기관이 서울 시내 교육기관에 각종 교육사업을 지원한 실적과 금융기관의 사회책임금융지원 및 사회공헌활동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교육청과의 협력사업계획 (2점)
	◦ 출연금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6. 기타사항 (1점)	가. 녹색금융 이행실적 (2점)
	◦ 금융기관의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 현황 및 ESG채권 발행금액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견 제출

성 명 : (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 : 대표자 성 명 :
주 소 : 전화번호 :

제(개)정안	수정요구안	사 유
제0조(00)	제0조(00)	○ –

2024년 월 일

구 고 시

◈ 구로구고시 제2024-66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171-2 일원 주상복합 신축공사를 위한 건축허가 신청과 관련,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7-136(1997.5.6.)호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1-30(2001.2.7.)호, 제2012-256(2012.9.27.)호, 제2020-601(2020.12.31.)호, 구로구 고시 제2023-181(2023.10.26.)호, 제2023-217(2023.12.14.)호로 도시관리계획「개봉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구로구 개봉동 171-2 일원에 신설되는 도시계획시설(도로) 신설사업에 대하여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건축법」제11조제5항에 의거 의제처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11일
구 로 구 청 장

가. 사업의 위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171-2, 171-24, 171-18, 416-276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2) 명 칭 : 도시계획시설(소로 3-18-1) 사업
다. 사업의 규모 : 소로 3-18-1 (B=6m, L=67m, 397㎡)
라. 사업시행자의 법인명 및 주소
  1) 법인명 : ㈜ 무궁화신탁
  2)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1) 착 수 일 : 실시계획인가 의제 처리일
  2) 준공예정일 : 2024. 6. 20.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조서 : 열람도서 참조 (구로구청 건축과 비치)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건축과(☎ 860-294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작구고시 제2024-44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23-42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하며,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11일
동 작 구 청 장

1. 사업의 명칭 : 동작하이팰리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변경없음)
 가. 성명 : 동작하이팰리스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윤명석
 나. 주소 : 서울시 동작구 만양로 8, 2층(상도동)
 ※ 공동사업주체 : 현대건설(주) 윤영준(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3. 사업시행자의 위치 · 면적 및 규모
 가. 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23-42번지 일원
 나. 면적 및 규모

구분	용도	규 모			대지면적 (㎡)	건축 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조경면적 (㎡)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사용검사 예정일)
		층수 (지상/지하)	동	세대수							
기정	아파트	35/6	4	608	13,843.00	90,423.11	27.36	396.63	4,544.11	541,343,887	2026.05
변경					13,851.80	90,334.14	28.02	398.11			

4. 사업시행기간 : 2020.12. ~ 2026.05.

5. 주택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사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의 결정
 ※ 기타 의제 사항 표기 생략

6. 관계도서 : 생략[동작구청 도시정비2과(☎02-820-9946)에 비치함]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상도동 상도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상도동 23-42번지 일원	14,574.0	증) 34.0	14,608.0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위치	면적(㎡)	변경사유
변경	상도동 23-42번지 일원	14,608.0	구역계 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구역면적 변경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4,574.0	증) 34.0	14,608.0	100.0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14,574.0	증) 34.0	14,608.0	100.0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위치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
변경	상도동 23-42번지 일원	준주거지역	34.0	구역계 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구역면적 변경

나. 용도지구 : 해당없음

다.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 총괄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기정	3	1,016 (203)	21,742 (731)	-	-	-	1	145 (145)	1,152 (323)	2	871 (58)	20,590 (408)
	변경	3	1,016 (203)	21,742 (756.2)	-	-	-	1	145 (145)	1,152 (324.2)	2	871 (58)	20,590 (432.0)
대로	기정	1	750 (58)	18,750 (175)	-	-	-	-	-	-	1	750 (58)	18,750 (175)
	변경	1	750 (58)	18,750 (177.2)	-	-	-	-	-	-	1	750 (58)	18,750 (177.2)
중로	기정	1	121	1,840 (233)	-	-	-	-	-	-	1	121	1,840 (233)
	변경	1	121	1,840 (254.8)	-	-	-	-	-	-	1	121	1,840 (254.8)
소로	기정	1	145 (145)	1,152 (323)	-	-	-	1	145 (145)	1,152 (323)	-	-	-
	변경	1	145 (145)	1,152 (324.2)	-	-	-	1	145 (145)	1,152 (324.2)	-	-	-

주) ( )는 구역 내 사항이며, 측량결과에 따라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 도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3	184	25~29 (29)	주간선 도로	750 (58)	상도동 370-14	상도1동 706	일반 도로	-	총고시 제722호 ('36.12.26)	
기정	중로	3	1	12	국지 도로	121	상도동 23-6	상도동 24-97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145	상도동 22-188	상도동 22-21	일반 도로	-		

주)(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해당 사항임

2) 공공 · 문화체육시설

가) 공공청사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위치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변경	①	공공청사	상도동 23-42번지 일원	면적(㎡)		1,166.37	증)104.17	1,270.54	동작구고시 제2020-130호	-
				연면적	계	2,254.33	감)32.79	2,221.54		
					지상3층	-	증)29.24	29.24		
					지상2층	217.33	증)1.06	218.39		
					지상1층	1,152.14	증)53.54	1,205.68		
					지하1층	691.92	감)72.57	619.35		
					지하2층	84.54	감)11.37	73.17		
					지하3층	108.40	감)32.69	75.71		
				높이		지하3~1층 지상1~2층	지상3층	지하3~1층 지상1~3층		

주) 입체적 결정하는 공공청사 면적은 수평투영 면적이며, 공공청사 연면적은 전용 · 공용 · 부대시설을 합한 면적이고 향후 건축계획에 따라 기반시설 순부담률 기준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음

주) 공공청사 제공위치, 성능수준, 설비, 세부용도 등은 관할 관리청과 협의하여 사업계획승인 시 확정하여 준공 시 기부채납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위치	면적(㎡)	변경사유
변경	상도동 23-42번지 일원	1,270.54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변경에 따른 변경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획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공동주택용지	①	동작구 상도동 23-42번지 일원	13,843.0	증) 8.8	13,851.8	

나.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①	상도동 23-42번지 일원	권장용도 A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다음 각 항목 - 제2호의 공동주택(주상복합건물) - 제3호의 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의 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제외)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제7호의 판매시설 -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제13호의 운동시설 - 제14호의 업무시설	◦ 좌동	
		불허용도 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다음 각 항목 - 제4호의 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제17호의 공장 - 제18호의 창고시설 -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제외) -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제외) -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제28호의 장례식장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 좌동	
		건폐율		◦ 60% 이하	◦ 좌동	
		용적률	기준	◦ 206.99%	◦ 206.81%	
			허용	◦ 400%	◦ 좌동	
			상한	◦ 400% 이하	◦ 좌동	
		최고높이		◦ 최고높이 120m 이하	◦ 좌동	
		최고층수		◦ 최고층수 35층 이하	◦ 좌동	

2) 배치 · 색채 및 외관 : 변경없음

도면표시 번호	위 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①	상도동 23-42번지 번지 일원	배 치	◦ 탑상형 위주 배치	
		색 채	◦ 주조색: 밝은색의 2차색 이상의 혼합색 ◦ 보조색: 2가지 이내의 2차색 이상의 혼합색	

도면표시 번호	위 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 강조색: 원색 또는 강한색	
		담 장	◦ 투시형구조로 설치	

다. 비주거시설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도면 표시	운영기준	계획내용
①	◦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여 지상1층과 2층은 비주거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 경우 지상층 주택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90%미만으로 지상층에 건축하고 주택외의 시설은 지상층에 다음기준에 따라 건축을 권장한다. ◦ 지상층 연면적 10%이상의 비주거시설의 설치를 권장한다. ◦ 자치구청장이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입지여건을 고려 지하층에 설치 가능하다. 단, 지상층 비주거시설이 입지하는 건물의 지상1층과 2층에 비주거 설치를 권장한다.	◦ 지상층 연면적 : 54,904.99㎡ ◦ 법정 비주거시설 면적 : 5,490.49㎡이상 ◦ 비주거시설 확보면적 : 7,125.06㎡ - 지상층 비주거시설 : 1,369.47㎡ - 지하층 비주거시설 : 5,755.59㎡ ∴5,490.49㎡(10.0%) < 7,125.06㎡(12.98%)

주) 계획내용은 사업계획승인 기준이며, 향후 건축계획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운영기준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변경

도면 표시	운영기준	계획내용
①	◦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여 지상1층과 2층은 비주거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 경우 지상층 주택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90%미만으로 지상층에 건축하고 주택외의 시설은 지상층에 다음기준에 따라 건축을 권장한다. ◦ 지상층 연면적 10%이상의 비주거시설의 설치를 권장한다. ◦ 자치구청장이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입지여건을 고려 지하층에 설치 가능하다. 단, 지상층 비주거시설이 입지하는 건물의 지상1층과 2층에 비주거 설치를 권장한다.	◦ 지상층 연면적 : 55,145.86㎡ ◦ 법정 비주거시설 면적 : 5,514.58㎡이상 ◦ 비주거시설 확보면적 : 7,198.63㎡ - 지상층 비주거시설 : 1,453.30㎡ - 지하층 비주거시설 : 5,745.32㎡ ∴5,514.58㎡(10.0%) < 7,198.63㎡(13.53%)

주) 계획내용은 사업계획승인 기준이며, 향후 건축계획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운영기준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라.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계획 : 변경없음

도면표시	운영기준	계획내용
①	◦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전용 60㎡ 이하 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하는 의무 용적률을 임대주택으로 공급되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비율로 공급하여야 한다. 전용면적 45㎡ 이하 : 60%~80% 전용면적 45㎡ 초과 60㎡ 이하 : 20%~40%	◦ 전용면적 45㎡ 이하 - 72.5%(131세대) ◦ 전용면적 45㎡ 초과 60㎡ 이하 - 27.5%(51세대)

주) 계획내용은 사업계획승인 기준이며, 향후 건축계획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운영기준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마. 허용용적률에 관한 계획

■ 기정

구분		운영기준	계획내용	비고
필수항목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건축법 제8조에 의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 각 세대는 인접한 세대와 수직 또는 수평방향으로 통합하거나 분할 할 수 있을 것 - 구조체에서 건축설비, 내부 마감재료 및 외부 마감재료를 분리할 수 있을 것 - 개별 세대 안에서 구획된 실의 크기, 개수 또는 위치 등을 변경할 수 있을 것	철근콘크리트 라멘조(무량판구조) 리모델링이 가능한 비내력벽체 부분설치	건축위원회 결정 사항
	커뮤니티 지원 시설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주택수가 300세대 이상인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지상층 공동주택 연면적의 3%(최소 450㎡)이상	◦ 지상층 공동주택 연면적 : 53,535.52㎡ ◦ 법정 커뮤니티면적 : 1,606.06㎡ 이상 ◦ 커뮤니티 확보면적 : 1,607.74㎡ ∴1,606.06㎡(3.0%)<1,607.74㎡(3.0%)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시 이행
	에너지 효율 건축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의한 에너지 성능지표 검토서의 평점합계가 86점 이상이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에 의한 "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 인증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 인증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시 이행

구분		운영기준	계획내용	비고
	친환경 건축물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건축·주택사업은 최우수 등급, 기타 건축·주택사업은 우수등급 이상의 친환경 예비인증	우수 등급 이상 인증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시 이행
선택항목	신재생 에너지 사용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에 따라 공동주택은 표준건축공사비의 1% 이상을 일반건축물은 3%이상을 설치	표준건축공사비의 1%이상 설치	1개 항목 선택 적용
	공공 기여 방안	공공기여방안을 지구단위계획 및 건축설계에 반영한 경우로서 위원회(또는 건축위원회)에서 공공에 기여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역사 문화 보전 계획	사업대상지가 문화재보호법상 지정 및 등록문화재 또는 역사문화 보전이 필요한 지구 등에 포함된 경우 보전 계획을 준수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건축계획에 반영한 경우	-	

주) 계획내용은 사업계획승인 기준이며, 향후 건축계획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운영기준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변경

구분		운영기준	계획내용	비고
필수항목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건축법 제8조에 의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 각 세대는 인접한 세대와 수직 또는 수평방향으로 통합하거나 분할 할 수 있을 것 - 구조체에서 건축설비, 내부 마감재료 및 외부 마감재료를 분리할 수 있을 것 - 개별 세대 안에서 구획된 실의 크기, 개수 또는 위치 등을 변경할 수 있을 것	철근콘크리트 라멘조(무량판구조) 리모델링이 가능한 비내력벽체 부분설치	건축위원회 결정 사항
	커뮤니티 지원 시설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주택수가 300세대 이상인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지상층 공동주택 연면적의 3%(최소 450㎡)이상	◦ 지상층 공동주택 연면적 : 53,692.55㎡ ◦ 법정 커뮤니티면적 : 1,610.77㎡ 이상 ◦ 커뮤니티 확보면적 : 1,620.10㎡ ∴1,610.77㎡(3.0%)<1,620.10㎡(3.0%)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시 이행

구분		운영기준	계획내용	비고
	에너지 효율 건축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의한 에너지 성능지표 검토서의 평점합계가 86점 이상이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에 의한 "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 인증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 인증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시 이행
	친환경 건축물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건축·주택사업은 최우수 등급, 기타 건축·주택사업은 우수등급 이상의 친환경 예비인증	우수 등급 이상 인증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시 이행
선택항목	신재생 에너지 사용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에 따라 공동주택은 표준건축공사비의 1% 이상을 일반건축물은 3%이상을 설치	표준건축공사비의 1%이상 설치	1개 항목 선택 적용
	공공 기여 방안	공공기여방안을 지구단위계획 및 건축설계에 반영한 경우로서 위원회(또는 건축위원회)에서 공공에 기여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역사 문화 보전 계획	사업대상지가 문화재보호법상 지정 및 등록문화재 또는 역사문화 보전이 필요한 지구 등에 포함된 경우 보전 계획을 준수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건축계획에 반영한 경우	-	

주) 계획내용은 사업계획승인 기준이며, 향후 건축계획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운영기준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바. 공공시설 부담계획(변경)

■ 기정

구분	합계	제2종일반 주거지역(7층)	제3종일반 주거지역	비고
면적	14,443.0㎡	12,474.0㎡	1,969.0㎡	국공유지 131㎡ 제외
공공시설부담율	-	25%	15%	
공공시설의무면적	3,413.9㎡	3,118.5㎡	295.4㎡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합계</th><th>제2종일반
주거지역(7층)</th><th>제3종일반
주거지역</th><th>비고</th></tr>
<tr><td rowspan="3">공공시설
확보면적</td><td>도로</td><td>600.00㎡</td><td>558.00㎡</td><td>42.00㎡</td><td rowspan="3">12.64%</td></tr>
<tr><td>공공청사</td><td>1,225.12㎡</td><td>398.65㎡</td><td>826.47㎡</td></tr>
<tr><td>소계</td><td>1,825.12㎡</td><td>956.65㎡</td><td>868.47㎡</td></tr>
<tr><td rowspan="4">세대수
및 면적</td><td colspan="5"><table>
<tr><th>구분</th><th>합계</th><th>60㎡ 이하</th><th>60㎡~85㎡</th><th>대지면적(㎡)</th></tr>
<tr><td>합계(세대)</td><td>608
(100.0%)</td><td>441
(72.5%)</td><td>167
(27.5%)</td><td>12,336.03
(100.0%)</td></tr>
<tr><td>분양(세대)</td><td>426
(100.0%)</td><td>259
(60.8%)</td><td>167
(39.2%)</td><td>9,460.01
(76.7%)</td></tr>
<tr><td>공공임대주택
(세대)</td><td>182
(100.0%)</td><td>182
(100.0%)</td><td>-</td><td>2,876.02
(23.3%)</td></tr>
</table></td></tr>
<tr><td rowspan="2">공공시설
부담률 산정</td><td colspan="4">◦ 공공시설 부담률을 산정함에 있어 임대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하는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면적의 1/2을 부담률로 갈음할 수 있음</td><td rowspan="2">전체
기부채납 면적
: 1,825.12㎡
(순부담율
: 12.64%)
+
2,876.02㎡
(공공임대주택
: 19.91%)
= 4,701.14㎡
(계획 : 32.55%)</td></tr>
<tr><td colspan="4">◦ 공공시설 부담률 산정
- 순부담 확보면적 : 공공시설 의무면적의 1/2 이상
⇒ 3,413.9㎡의 ½
= 1,706.9㎡(11.82%) ≤ 1,825.12㎡(12.64%)
- 공공임대주택 확보면적 : 공공시설 부담율의 1/2 갈음
⇒ 확보면적 : 2,876.02㎡(19.91%) 확보

◦ 본 사업대상지는 공공시설 의무면적의 1/2이상으로 도로(600㎡), 공공청사 건축물기부채납(1,225.12㎡) 등의 순부담 면적(1,825.12㎡)을 설치하였으며,
◦ 공공시설 의무면적의 1/2은 무상양여한 공공임대주택의 부속토지(2,876.02㎡)를 확보함으로서 공공시설 의무면적 이상으로 계획하였음</td></tr>
</table>

■ 변경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합계</th><th>제2종일반
주거지역(7층)</th><th>제3종일반
주거지역</th><th>비고</th></tr>
<tr><td colspan="2">면적</td><td>14,477.0㎡</td><td>12,503.1㎡</td><td>1,973.9㎡</td><td>국공유지
131㎡ 제외</td></tr>
<tr><td colspan="2">공공시설부담율</td><td>-</td><td>25%</td><td>15%</td><td></td></tr>
<tr><td colspan="2">공공시설의무면적</td><td>3,421.9㎡</td><td>3,125.8㎡</td><td>296.1㎡</td><td></td></tr>
<tr><td rowspan="3">공공시설
확보면적</td><td>도로</td><td>625.20㎡</td><td>539.20㎡</td><td>86.00㎡</td><td rowspan="3">12.56%</td></tr>
<tr><td>공공청사</td><td>1,220.47㎡</td><td>305.85㎡</td><td>914.62㎡</td></tr>
<tr><td>소계</td><td>1,845.67㎡</td><td>845.05㎡</td><td>1,000.62㎡</td></tr>
<tr><td colspan="2" rowspan="4">세대수
및 면적</td><td colspan="2">구분</td><td>합계</td><td>60㎡ 이하</td><td>60㎡~85㎡</td><td>대지면적(㎡)</td></tr>
<tr><td colspan="2">합계(세대)</td><td>608
(100.0%)</td><td>441
(72.5%)</td><td>167
(27.5%)</td><td>12,253.13
(100.00%)</td></tr>
<tr><td colspan="2">분양(세대)</td><td>426
(100.0%)</td><td>259
(60.8%)</td><td>167
(39.2%)</td><td>9,409.42
(79.47%)</td></tr>
<tr><td colspan="2">공공임대주택
(세대)</td><td>182
(100.0%)</td><td>182
(100.0%)</td><td>-</td><td>2,843.71
(20.53%)</td></tr>
<tr><td colspan="2" rowspan="2">공공시설
부담률 산정</td><td colspan="4">◦ 공공시설 부담률을 산정함에 있어 임대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하는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면적의 1/2을 부담률로 갈음할 수 있음</td><td rowspan="2">전체
기부채납 면적
: 1,845.67㎡
(순부담율
: 12.75%)
+
2,843.71㎡
(공공임대주택
: 19.64%)
= 4,689.38㎡
(계획
: 32.39%)</td></tr>
<tr><td colspan="4">◦ 공공시설 부담률 산정
- 순부담 확보면적 : 공공시설 의무면적의 1/2 이상
⇒ 3,421.9㎡의 ½
= 1,710.9㎡(11.82%) ≤ 1,845.67㎡(12.75%)
- 공공임대주택 확보면적 : 공공시설 부담율의 1/2 갈음
⇒ 확보면적 : 2,843.71㎡(19.64%) 확보

◦ 본 사업대상지는 공공시설 의무면적의 1/2이상으로 도로(625.20㎡), 공공청사 건축물기부채납(1,220.47㎡) 등의 순부담 면적(1,845.67㎡)을 설치하였으며,
◦ 공공시설 의무면적의 1/2은 무상양여한 공공임대주택의 부속토지(2,843.71㎡)를 확보함으로서 공공시설 의무면적 이상으로 계획하였음</td></tr>
</table>

사. 상한용적률 산정(변경)

■ 기정

구분	산출결과	산출내역	비고
공공시설 제공면적	1,825.12㎡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956.65㎡ ◦ 제3종일반주거지역 : 868.47㎡	
가중치	1.016	= 공공시설 제공부지 용적률 / 사업부지 용적률 = 439.52% / 432.78% = 1.016	
α토지	0.070	= 공공시설 제공부지 면적 / 공공시설 제공 후의 대지면적 = 945.69㎡ / 13,497.31㎡ = 0.070	
α건축물	0.065	= 공공시설 제공 면적 / 공공시설 제공 후의 대지면적 = 879.43㎡ / 13,497.31㎡ = 0.065	
기준용적률	206.96%	= [(2종일반주거(7층)×200%)+(3종일반주거×250%)] / 구역면적 = [(11,916.0㎡×200%)+(1,927.0㎡×250%)]/13,843.0㎡=206.96%	
허용용적률	400.0%	= [(2종일반주거(7층)×430%)+(3종일반주거×450%)] / 구역면적 = [(11,916.0㎡×430%)+(1,927.0㎡×450%)]/13,843.0㎡=432.78% ⇒ 400.0% 이하 적용	
상한용적률	400.0%	= 432.78%×(1+1.3×1.016×0.070+0.7×0.065)=492.56% ⇒ 400% 이하 적용	
설계용적률	396.63%	-	
공공임대 주택용적률	94.83%	= (설계용적률 - 기준용적률) × 1/2 이상 = (396.63% - 206.96%) × 1/2 = 94.83% 이상	

주) 용적률 및 순부담률 산정시 국공유지 131㎡ 제외

■ 변경

구분	산출결과	산출내역	비고
공공시설 제공면적	1,845.66㎡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845.05㎡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000.61㎡	
가중치	1.019	= 공공시설 제공부지 용적률 / 사업부지 용적률 = 440.84% / 432.72% = 1.019	
α토지	0.073	= 공공시설 제공부지 면적 / 공공시설 제공 후의 대지면적 = 979.02㎡ / 13,497.98㎡ = 0.073	
α건축물	0.064	= 공공시설 제공 면적 / 공공시설 제공 후의 대지면적 = 866.65㎡ / 13,497.98㎡ = 0.064	
기준용적률	206.81%	= [(2종일반주거(7층)×200%)+(3종일반주거×250%)] / 구역면적 = [(11,963.9㎡×200%)+(1,887.9㎡×250%)]/13,851.8㎡=206.815%	

구분	산출결과	산출내역	비고
허용용적률	400.0%	= [(2종일반주거(7층)×430%)+(3종일반주거×450%)] / 구역면적 = [(11,963.9㎡×430%)+(1,887.9㎡×450%)]/13,851.8㎡=432.72% ⇒ 400.0% 이하 적용	
상한용적률	400.0%	= 432.72%×(1+1.3×1.019×0.073+0.7×0.064)=493.74% ⇒ 400% 이하 적용	
설계용적률	398.11%	-	
공공임대 주택용적률	95.65%	= (설계용적률 - 기준용적률) × 1/2 이상 = (398.11% - 206.81%) × 1/2 = 95.65%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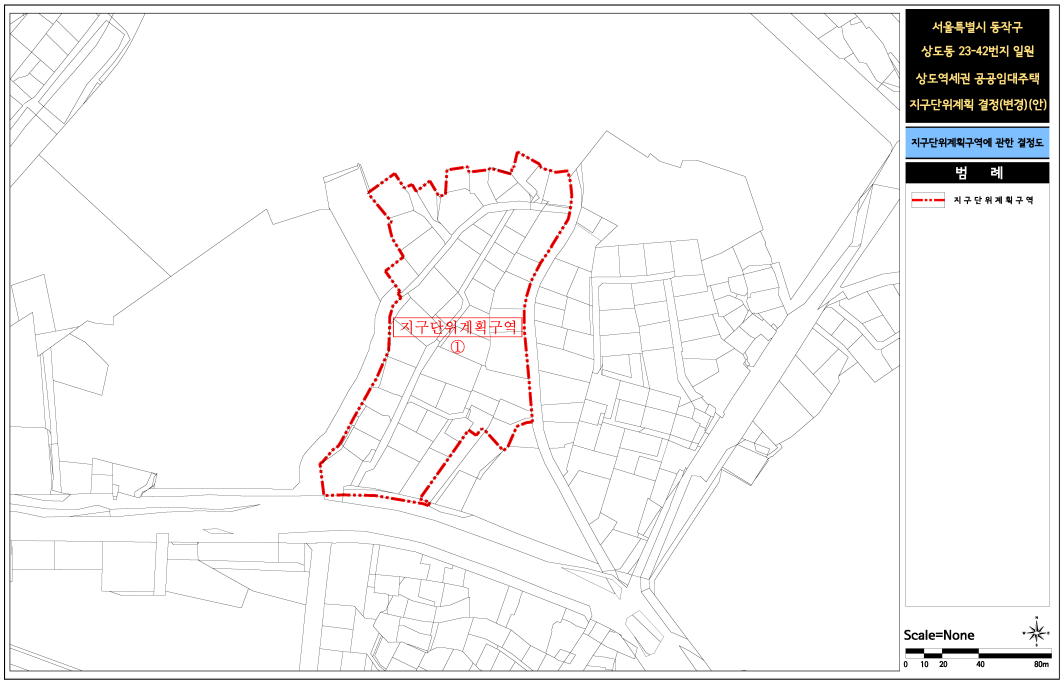
주) 용적률 및 순부담률 산정시 국공유지 131㎡ 제외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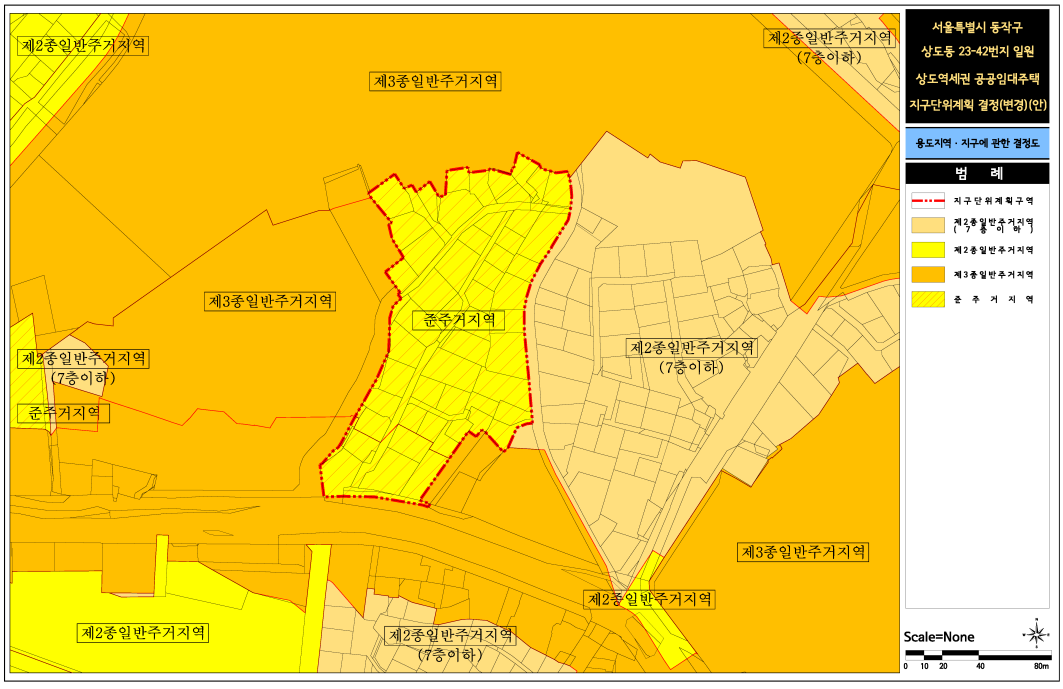
가. 대지 내 공지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나. 차량 동선 계획 :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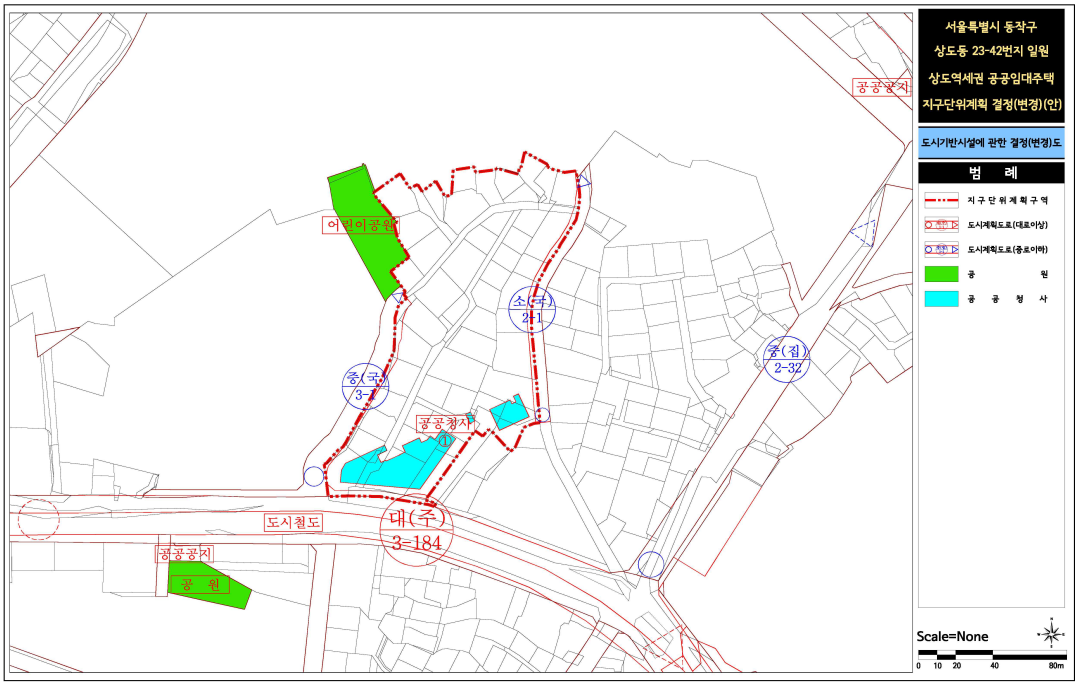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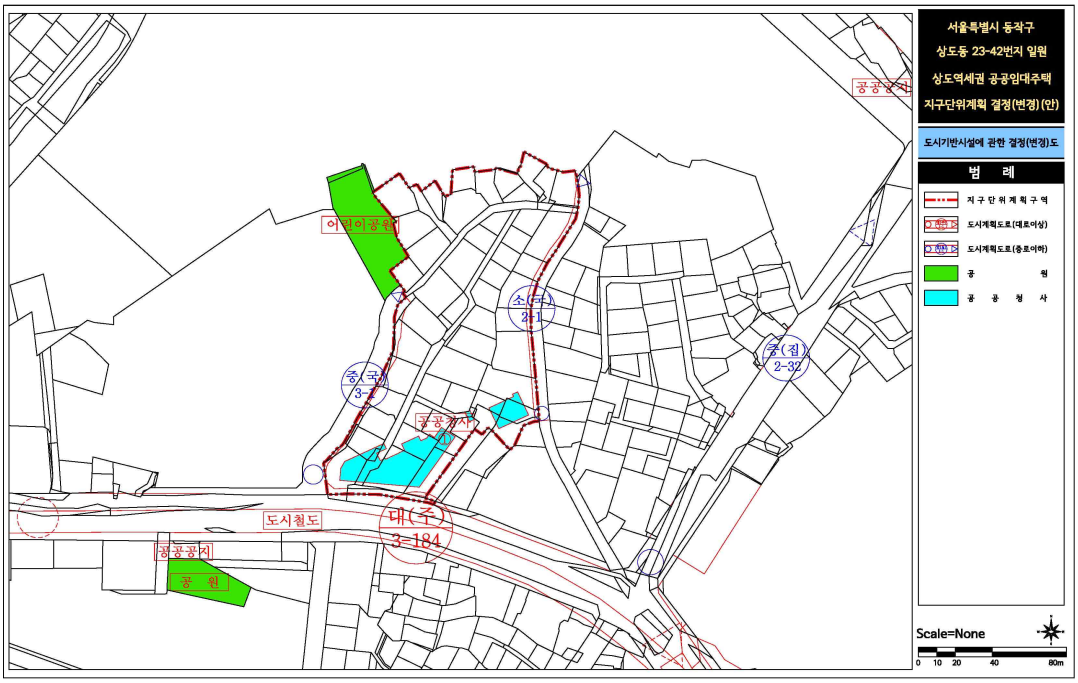
■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도 :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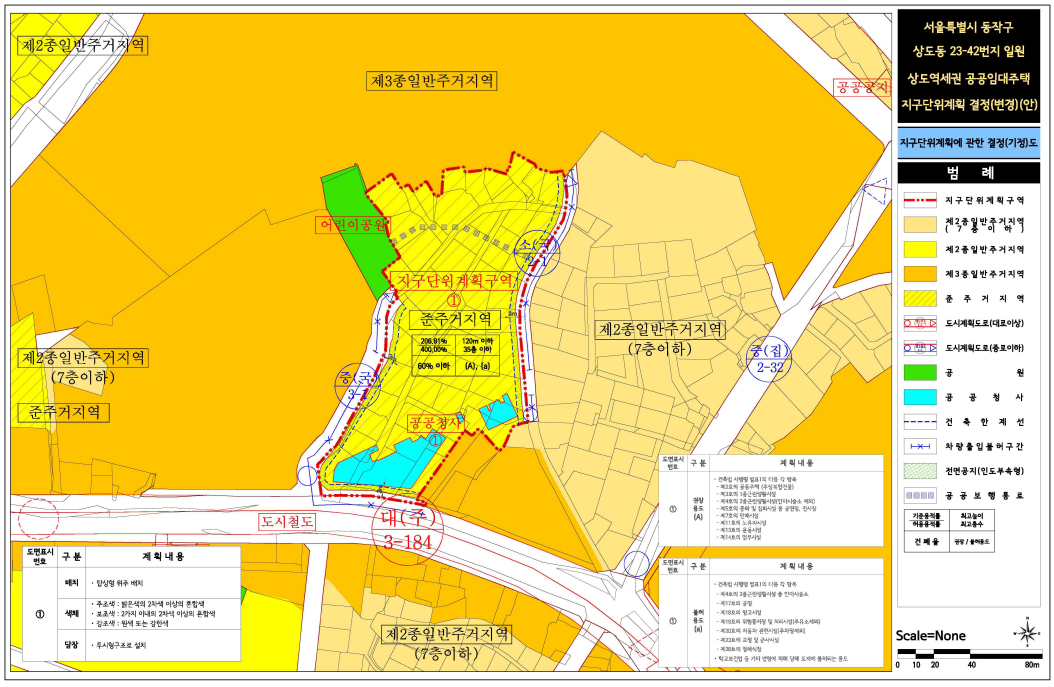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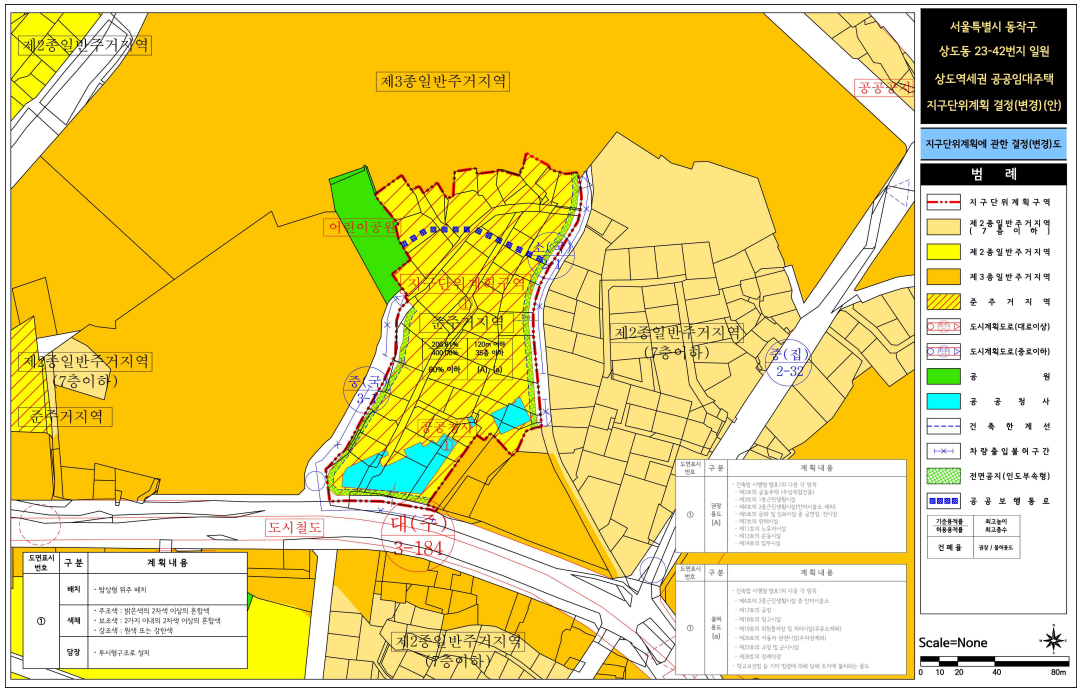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기정)도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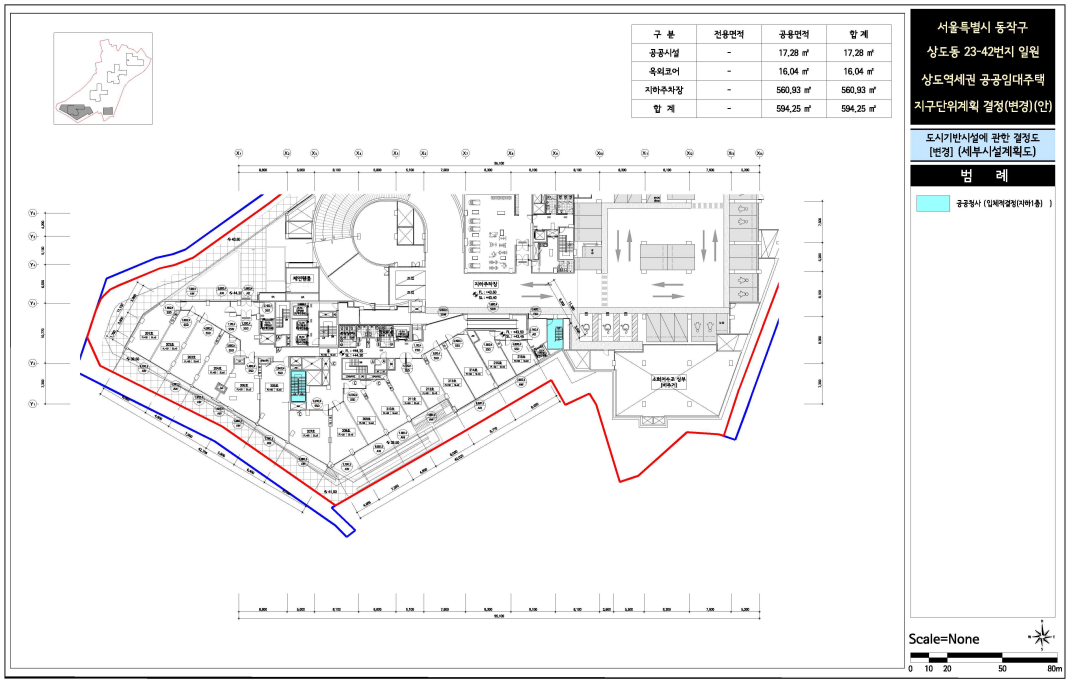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기정)도(세부시설계획-지하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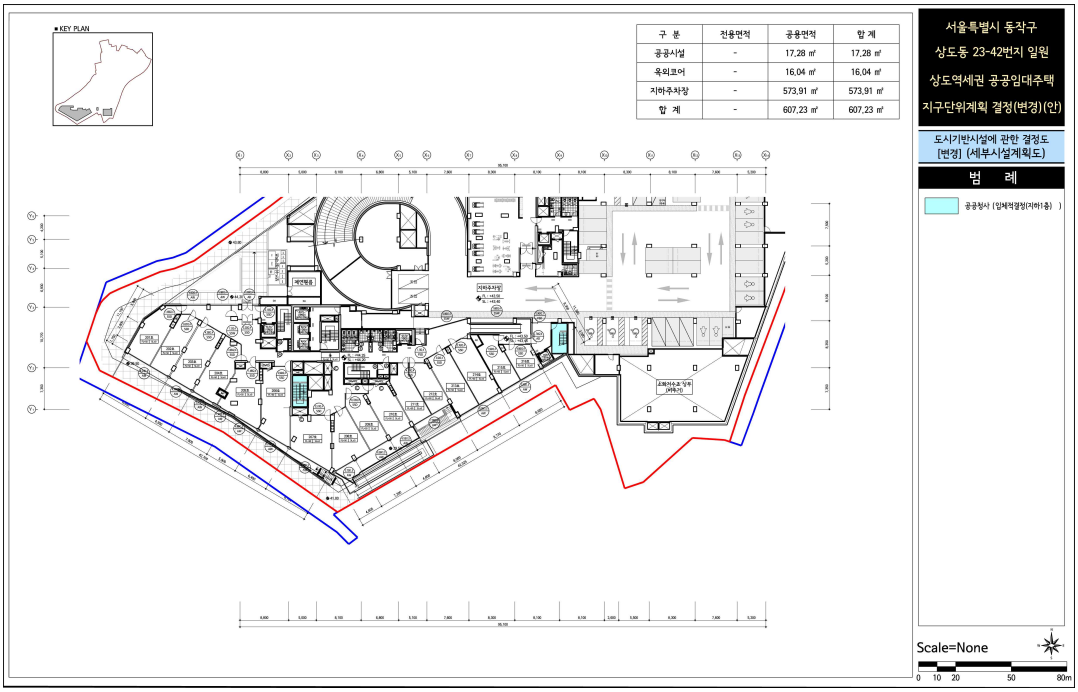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세부시설계획-지하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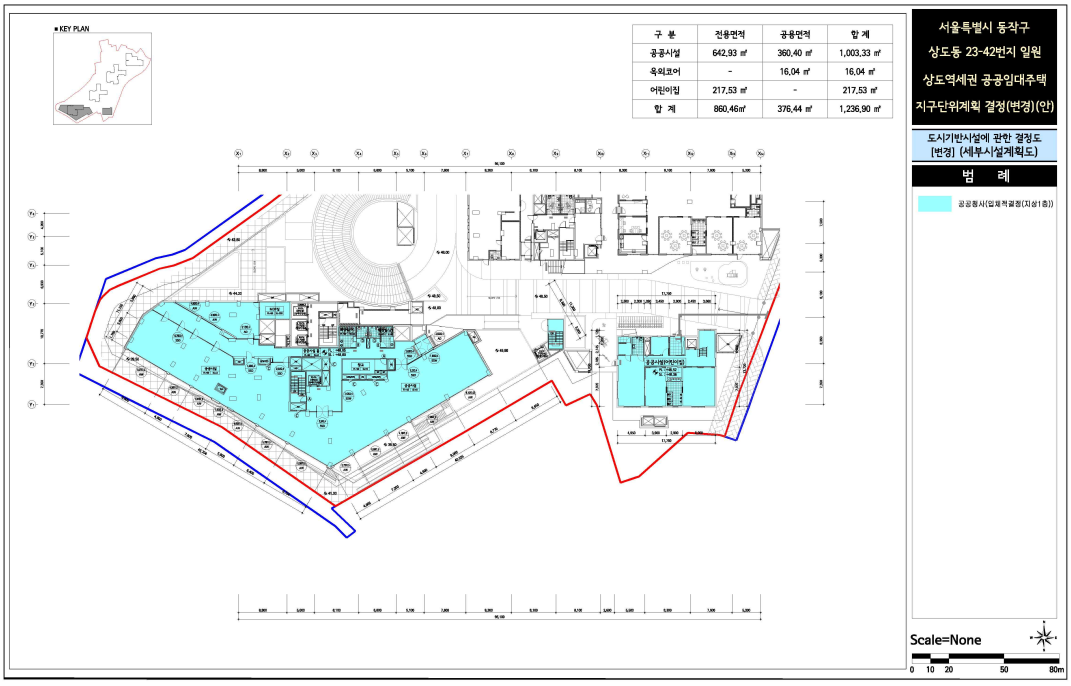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기정)도(세부시설계획-지하1층)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세부시설계획-지하1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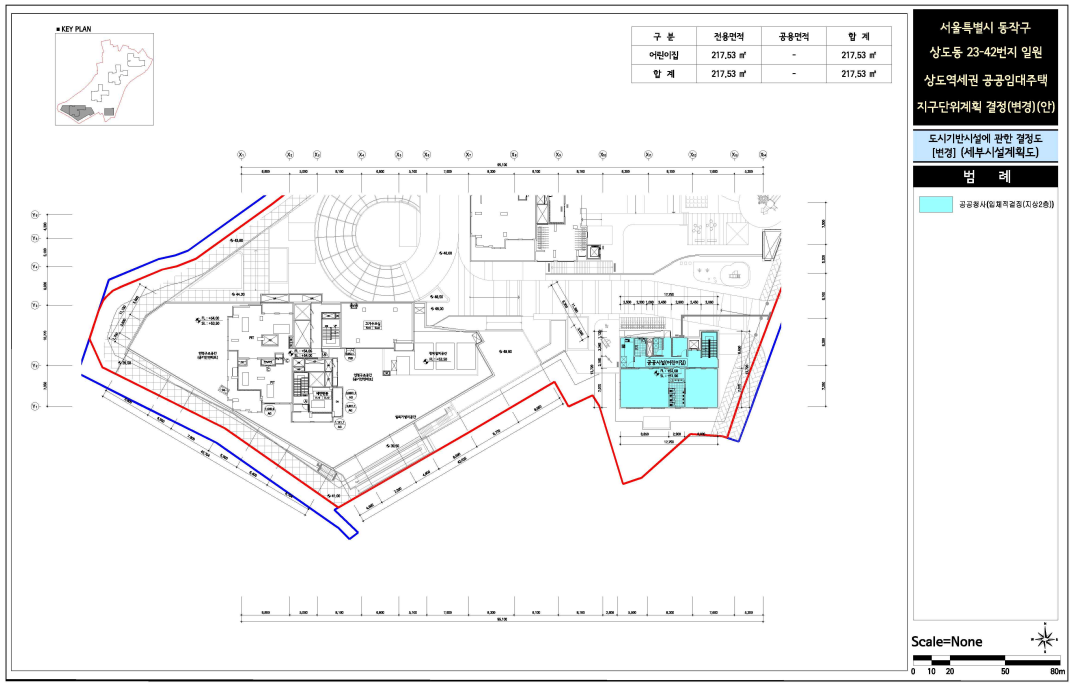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기정)도(세부시설계획-지상1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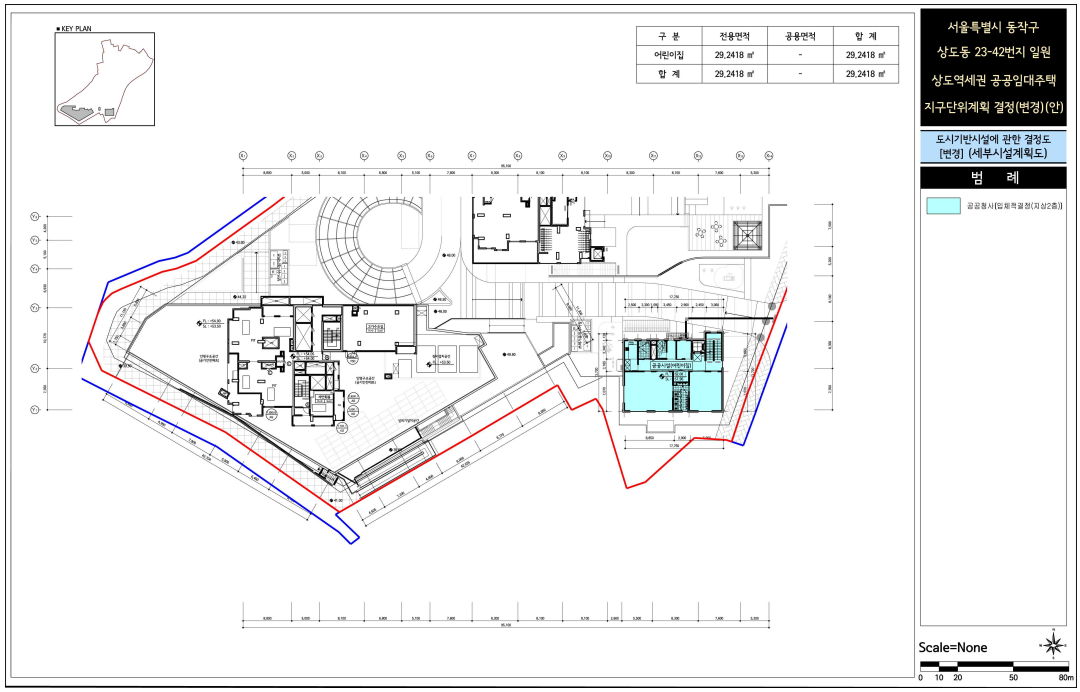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세부시설계획-지상1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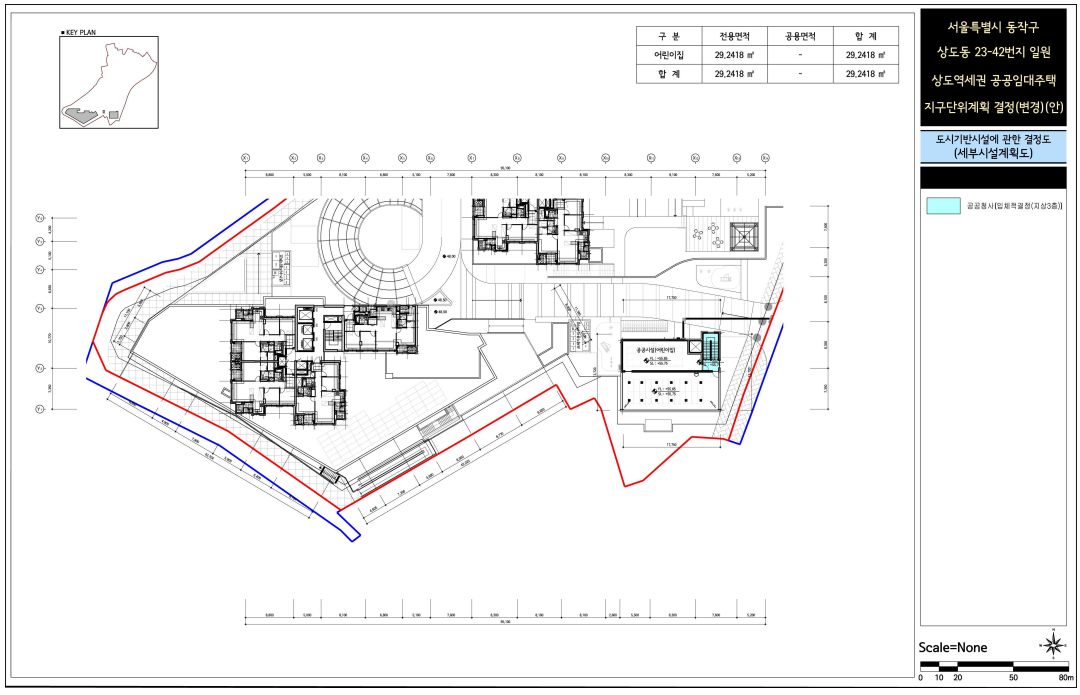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기정)도(세부시설계획-지상2층)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세부시설계획-지상2층)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세부시설계획-지상3층)



◈ 강남구고시 제2024-49호

도시계획시설(봉은역사공원 조성)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고시

1. 건설부고시 제465(1971. 8. 6.)호로 최초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16(2009. 5. 28.)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세분변경 결정(근린→역사),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346(2023. 8. 17.)호로 봉은역사공원 조성계획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된 강남구 봉은역사공원에 대하여

2.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4-683(2024. 3. 14.)호로 도시계획시설사업(봉은역사공원 조성)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위한 열람공고를 마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 제10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3.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관계서류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공원녹지과(☎3243-6243)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4월 11일
강 남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73번지 외 3필지(73-1, 73-2, 73-3)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명 칭: 봉은역사공원 조성사업(시왕전 및 향로전 건립)

다.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공원면적 75,405㎡ 중 170.33㎡
※ 구유지 9,174.7㎡ / 민간공원(봉은사) 66,230.3㎡ 중 170.33㎡
- 내 용: 시왕전 및 향로전 신축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성 명: 대한불교 조계종 봉은사 [대표 주지 원명(김종민)]
·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531

마. 사업 준공예정일: 2025년 6월 30일까지

바.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강남구청 공원녹지과 (02-3423-6243)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이용 사항	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 면적	성 명	공유지분	주 소	성 명	주 소	관리종류 및 내용	
1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73번지	종	종	61,428.00	61,428.00	대한불교 조계종 봉은사	100/100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 531	-	-	-	

사업위치도 및 공원조성계획도

▢ 봉은역사공원(강남구 삼성동 73번지 일대)



사업 위치도



공원조성계획도

◈ 강남구고시 제2024-52호

도시계획시설(광장)사업 실시계획(최초)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29호(2023.11.30.)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공고 제2024-513호(2024.2.29.)로 실시계획 열람공고 된 강남구 수서동 727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광장) 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최초) 고시합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률 제91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02-3423-69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11일
강 남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727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광장
 - 사업명칭: 수서역 6번 출구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다. 사업규모: 대지면적 2,963.5㎡, 건축면적 105.96㎡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성 명: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바. 열람장소: 강남구청 공원녹지과 (02-3423-6993)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이용 사항	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 면적	성 명	공유지분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및 내용
1	강남구 수서동 727	주차장	주차장	2,963.5	2,963.5	서울특별시	100/10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국토교통부	-	구분지상권(철도시설)
2	강남구 수서동 727-2번지	주차장	주차장	107.0	107.0	국토교통부	100/100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	-

사업위치도 및 조성계획도

▢ 광장(강남구 수서동 727번지 일대)



사업 위치도



광장 조성계획도

구 공 고

◈ 동대문구공고 제2024-468호

도시계획시설(배봉산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7.14.)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148호(2024.3.28.)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배봉산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관련내용은 동대문구 정원도시과에 비치하여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열람하오니 이 사업시행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공고 기한 내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11일
동 대 문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산32-20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도시계획시설(배봉산근린공원)사업
  2) 명　　칭: 배봉산근린공원 인공폭포 조성사업
다. 사업규모: 463㎡
라. 사업의내용: 인공폭포 조성
마.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동대문구청장(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바. 사업기간: 인가일로부터 2024년 9월까지
사. 열람기간: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아.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원도시과(☎ 2127-4772)

◈ 강북구공고 제2024-517호

도시관리계획(화계역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안) 재열람 공고

1.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18-1320호(2018.12.20.)로 열람공고한 우리구 화계사입구 사거리 일대 「도시관리계획(화계역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한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의견청취를 위하여 재열람하고자 합니다.
3. 본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장소 등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11일
강 북 구 청 장

가. 재열람사유: 지구단위계획 주요내용 변경 등
나. 공 고 일 : 2024. 4. 11.(목)
다.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2024.04.25.까지)
라.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도시계획과(☎02- 901-6872)
마.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 분	구역명	위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화계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강북구 수유동 472-678번지 일대	-	증) 111,179	111,179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 분	구역명	위치	내용	결정사유
신설	화계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강북구 수유동 472-678번지 일대	•위치: 강북구 수유동 472-678번지 일대 • 면적: 111,179㎡	• 우이신설선 개통에 따른 신규 역세권(화계역)에 다양한 생활서비스기능 제공 및 수유지구중심 중심성 확대를 위한 신규 생활권 거점 육성

※ 기타 세부구역의 범위,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등은 붙임문서(요약) 및 열람장소 등 비치도서와 같음

바. 관계도면 : 게재생략(붙임 및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 서대문구공고 제2024-596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총독부고시 제208호(1940.3.12.)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최초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54호(2020.6.29.)로 최종 변경 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216호(2021.5.6.)로 공원조성계획 최종 결정된 궁동근린공원에 대하여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20-117호(2020.6.29.)로 최초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궁동근린공원) 조성」에 대하여 사업대상지 분할시행에 따른 변동내역을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열람공고 합니다.

3. 아울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내 의견서를 열람장소인 서대문구청 푸른도시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송달불능 등 미수령 시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4년 4월 11일
서 대 문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산118-103 1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2) 사업의 명칭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궁동근린공원) 조성

다. 사업의 내용 및 면적(변경)
  - 변경 전: 토지보상 171㎡ (2필지)
  - 변경 후: 토지보상 7㎡ (1필지)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2) 주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청

마. 시설관리청 : 서울특별시장

바.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고시일 ~ 2025. 6. 28.까지

사.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아. 열람장소 : 서대문구청 푸른도시과

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의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변경) : 별첨

차. 토지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및 성명 : 별첨

카.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대문구청 푸른도시과(☎330-1907)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토지 등의 감정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공고되는 내용과 달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보상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	편입면적 (㎡)	지분	소 유 자		소유권외의 권리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내용	
계	1필지	7	7							
연희동 산118-103	임야	7	7	1	김*호	서울시 은평구 불광천길 388-**	서울특별시 은*구	서울 은평구 은평로 ***	압류	
							국민** **공단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	압류	

◈ 금천구공고 제2024-691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369호(1980.11.15.)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54호(2020.6.29.)로 도시관리계획(공원) 변경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645호(2021.12.2.)로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된 관악산근린공원(금천삼각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열람공고 합니다.
2.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송달불능 등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하며,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청 공원녹지과(02-2627-1653)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열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11일
금 천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 공익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나. 사업의 명칭 : 관악산근린공원(금천삼각지구) 조성사업
다. 사업의 면적 및 내용
  ○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산100-8번지 일대(舊궁도장)
  ○ 면 적 : 9,448.7㎡
  ○ 내 용 : 토지(3필지) 보상(3필지 중 2필지 분할)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시 행 자 :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금천구종합청사
마. 시설관리청 : 금천구청장
바.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6. 12. 31까지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소재지 지번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붙임참조
아. 토지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및 성명 : 붙임참조
자.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차. 열람장소 : 금천구청 공원녹지과(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2627-16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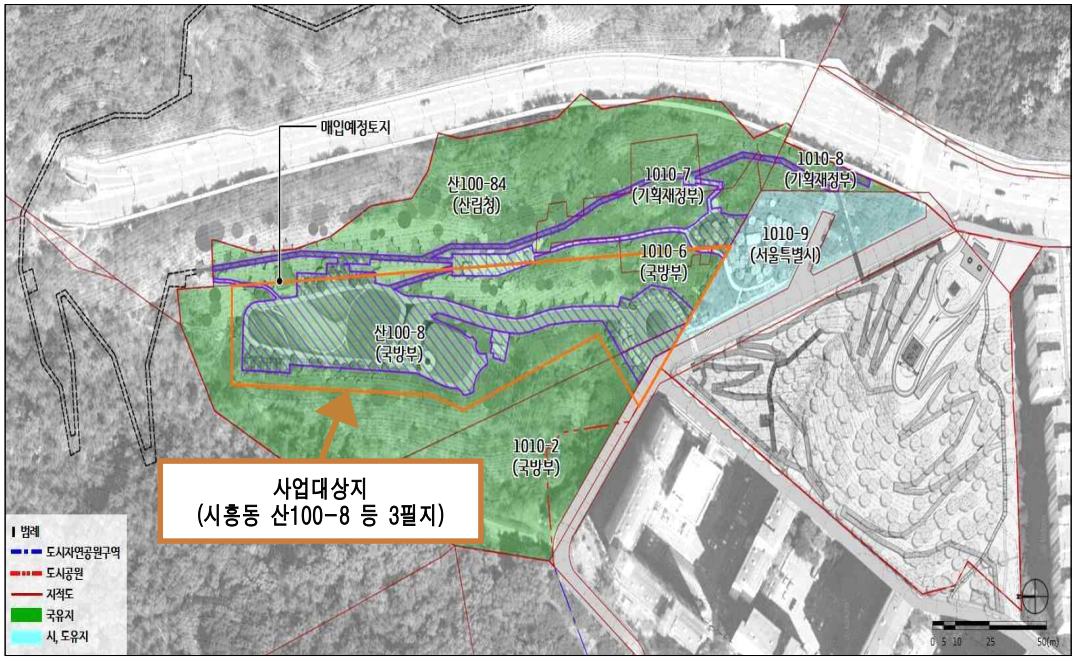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계		18,551.2	9,448.7							
1	시흥동 산100-8	임야	13,047	8,855	서울 용산구 용산동3가 1	국유지 (국방부)					
2	시흥동 1010-2	공원	5,230.1	319.6	서울 용산구 용산동3가 1	국유지 (국방부)					
3	시흥동 1010-6	공원	274.1	274.1	서울 용산구 용산동3가 1	국유지 (국방부)					

사용 또는 수용할 물건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실제이용 상황	무허가 건물대장 면적(㎡)	현황측량상 면적(㎡)	소유자(건물주)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계												
1							“해 당 없 음”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구역도



◈ 강남구공고 제2024-1015호

개포주공5·6·7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따른 소공원(개포25) 조성계획(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31호(2017.11.23.)로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7,8 지구단위(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 고시되고, 강남구고시 제2023-205호(2023.12.01.)로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7,8 지구단위(세부개발)계획 및 개포주공6·7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된 개포25 소공원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공원조성계획(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공원녹지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11일
강 남 구 청 장

가. 열람내용
  1) 위　　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85번지 일대
  2) 면　　적: 4,423.60㎡
  3) 조성내용: 소공원 조성
나. 조성계획 결정 조서(안) 및 도면(안): 별첨
다.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라. 열람장소: 강남구 공원녹지과(☎02-3423-6994)
마. 관계도서: 열람장소에 비치

개포주공5 · 6 · 7단지 주택재건축사업 소공원(개포25) 조성계획결정(최초) 조서

1. 총괄표(강남구 개포동 185번지)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 고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4,423.60	877.25				9	
기반 시설	소 계	429.80	429.80				-	
	도 로	429.80	429.80				-	
휴 양 시 설		447.45	447.45				7	
관 리 시 설		-	-				2	
녹지 및 기타		3,546.35	-				-	
시 설 율 (법정 20%)		(877.25 / 4,423.60) × 100 = 19.83%						
건 폐 율 (법정 5%)		(0.00 / 4,423.60) × 100 = 0.00%						

2. 시설조서

구 분		변경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4,423.60	877.25					9	
기반시설	소 계			429.80	429.80					-	
	도 로			429.80	429.80					-	
휴양시설	소 계			152.68	152.68					7	
	휴게소	가		447.45	447.45					-	
		나-1	개포동 185대	(250.67)	(250.67)					-	
		나-2	〃	(196.78)	(196.78)					-	
	파고라	①		-	-					(3)	
	앉음벽	②		-	-					(4)	
관리시설	소 계			-	-					2	
	안내판	③		-	-					(1)	
		④		-	-					(1)	
녹지 및 기타	소 계			3,546.35	-					-	
	녹지 및 기타			3,546.35	-					-	

3. 도로조서

– 공원시설 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 계				204.71	543.04				
당초	산책로	소 계			204.71	543.04				
당초	산책로	–	1	3	100.09	303.89	진입로	대지경계	휴게소-2	가각부면적 3.62㎡포함
당초		–	2	2.5	15.76	39.40	진입로	대지경계	산책로 1	
당초		–	3	2	29.19	86.51	진입로	대지경계	산책로 1	가각부면적 28.13㎡포함

개포주공5 · 6 · 7단지 주택재건축사업 소공원(개포25) 조성계획(최초) 도면

조 성 계 획 도

개 포 25 소 공 원

SCALE : 1/300(A1)



▣ 조 성 계 획 총 괄 표

구 분	기호	시 설 명			부지면적 (㎡)	수량	건축면적 (㎡)	비 고
휴 계					4,423.60	9		
시설면적휴계					877.25	9		19.83%
도 로	종별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 점	종 점	비 고
	소 계			145.04	429.80			
	산책로 1	3.0	100.09	303.89	진입로	대지경계	휴계소-2	
	산책로 2	2.5	15.76	39.40	진입로	대지경계	산책로 1	
	산책로 3	2.0	29.19	86.51	진입로	대지경계	산책로 1	
휴양시설	소 계				447.45	7		
	가	휴계소			447.45			
	가-1	휴계소-1			(250.67)			
	가-2	휴계소-2			(196.78)			
	①	파고라				3		
	②	양음벽				4		L=34.0m
관리시설	소 계					2		
	③	공원안내판				1		
	④	공원명안내판				1		
녹지 및 기타	소 계				3,546.35	-		80.17%
	녹 지				3,546.35			

◈ 강남구공고 제2024-1021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 389번지~율현동 300-18번지 일원(방죽마을~못골마을)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안)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 기간 내에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4년 4월 11일
강 남 구 청 장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안) 조서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안)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폭원(m)								
신설	소로	3	4~8	국지	80	중로2-4 자곡동 389임	율현동 300-18도	일반도로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사유
-	소로 3-	▪ 노선신설 - 폭원: 4~8m - 연장: 80m	▪ 도로 폭 협소로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한 밤고개로 24번길(자곡동 389번지 일원~율현동 300-18번지 일원) 현황도로에 대한 도로확장을 위하여 노선신설

나. 열람기간 : 2024. 4. 11. ~ 2024. 4. 26.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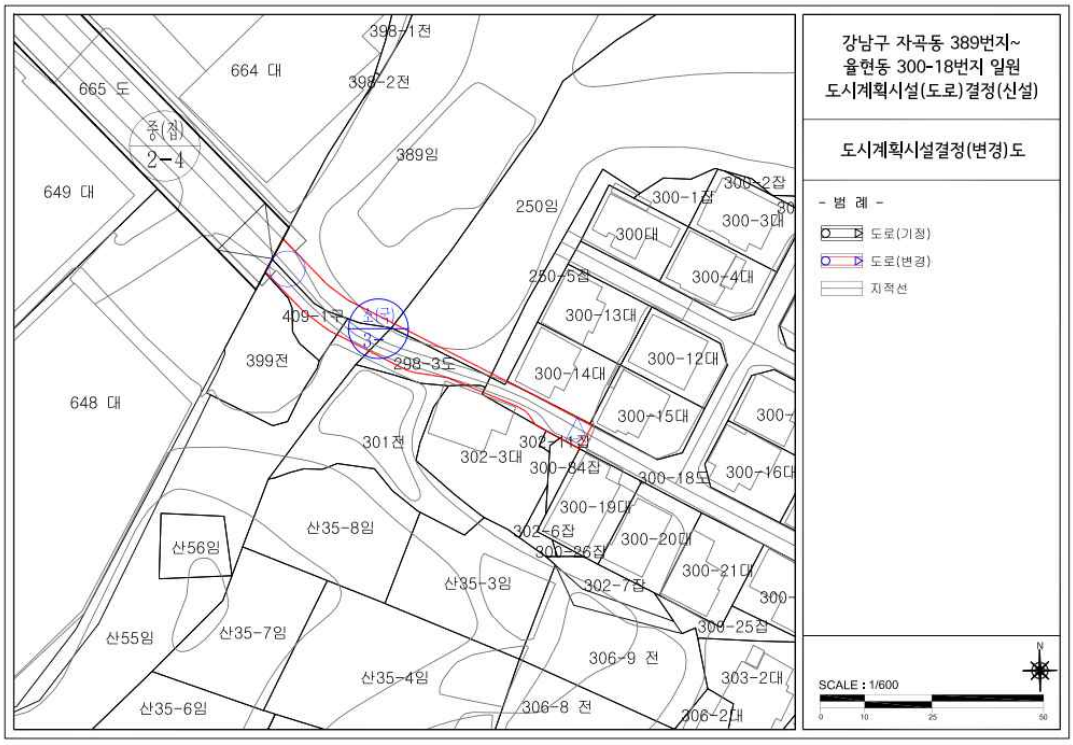
다. 열람장소: 강남구청 도로관리과(☎02-3423-6552), 도시계획과(☎02-3423-6105)

라. 관계도서: 공고문, 홈페이지 게시자료 및 열람장소에 비치된 자료 참고

마. 본 결정(안)은 확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추후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절차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도로관리과(☎02-3423-6552), 도시계획과(☎02-3423-61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도시계획시설 결정(안)도

❍ 도시계획시설결정(신설)도



◈ 송파구공고 제2024-720호

도시관리계획(오금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1. 송파구 공고 제2022-1731호(2022. 10. 6.)로 열람공고한 '오금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안)' 에 대하여 ' 24. 1. 24. 개최된 2024년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열람하오니, 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며,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청 도시계획과(☎02-2147-30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11일
송 파 구 청 장

가. 재열람사유: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반영하여 재열람

나. 열람기간 : 2024. 4. 12. ~ 2024. 4. 25.(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 이상)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오금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송파구 가락동 161번지 일원	-	증) 141,106.3	141,106.3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역명	결정내용	결정 사유
오금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 신규지정 : 141,106.3㎡	• 오금역세권의 상업·업무 기능강화 및 성동구치소, 경찰기동대 등 대규모 이전적지 개발추진에 따른 주변지역의 연계개발 및 체계적 도시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지구단위계획 결정 내용: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서 참조)

라.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마. 기타사항 : 세부내용은 열람장소(송파구청 도시계획과)에 비치된 도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청 도시계획과(☎02-2147-30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소고시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4-11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11일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일
성 명	주 소	허가 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한국 해양소년단 서울연맹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35 (봉천동)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504일대	육상 822㎡	수상레저활동을 위한 부대시설 설치	2024.4.1.~ 2025.3.31.	2024. 3.29.
			수상 331㎡			
			수상(간접) 200㎡			
		잠실대교~ 성수대교	구조선 1 SUP 5 카약 10	수상레저사업	2024.4.1.~ 2025.10.31.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4-11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11일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 윈드서핑 연맹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2236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504일대	육상 6,240.52㎡ 수상 1,352.5㎡ 수상(간접) 1,498㎡	수상 레저활동을 위한 부대시설 설치	2024.4.1.~ 2025.3.31.	2024. 3.29.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4-11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11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점용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현대요트(주) (대표 이철웅)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6가 451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6가 451	선박 2척 (19톤, 3.4톤)	마리나 선박·대여업	2024. 4. 1. ~ 2024.12.31.	2024. 3.29.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4-11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11일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일
성 명	주 소	운항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한강레져스포츠 양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화동 47	성산대교 ~ 당산대교	구조선 1 동력선 3 1스키 1 2스키 1 웨이크보드 1 오리배 15 카약 1 바나나보트 1	수상 레저 사업	2024. 3.28.~ 2024.11.30	2024. 3.27.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4-11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11일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일
성 명	주 소	운항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한강레져스포츠 여의도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73-240	마포대교 ~ 한강대교	구조선 1 동력선 2 1스키 1 2스키 1 웨이크보드 1 바나나보트 1 플라이피쉬 1 땅콩보트 1	수상 레저 사업	2024. 3.30.~ 2024.10.31	2024. 3.29.

사업소공고

◈ 미래한강본부공고 제2024-116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사전통지분)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규정을 위반한 위반자들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사전통지분)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1일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장

1. 건　　명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행위자(사전통지 과태료 부과고지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및 제20조

3. 공시송달 대상 : “세부내역 별첨 참조”

4. 공 고 기 간 : 2024. 04. 11 ~ 2024. 04. 24 (14일)

5. 자진납부기간 : 2024. 04. 25 ~ 2024. 05. 08(14일)

6. 수령방법
-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운영총괄과에서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수령하시기바랍니다.

7. 공지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운영총괄과(☏02-3780-08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송(사진)통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선택	세목코드	세목명	통지번호	반송순번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자진납부금액	부과금액	반송일자	반송사유	납세자기본주소	위반장소
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0092	1	680516-*******	이*종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서울85자****)자동차	2024-01-24 13:13	40,000	50,000	2024-02-20	기타	서울특별시강서구 양천로57길	여의도한강공원 이랜드크루즈선 착장주변
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0093	1	650510-******	장*경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강서카****)이륜차	2024-02-03 14:08	40,000	50,000	2024-02-22	기타	서울특별시강서구 화곡로63가길	강서한강공원내
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0096	1	870228-******	문*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경기수원사****)이륜차	2024-02-04 08:51	40,000	50,000	2024-02-21	기타	경기도수원시권선구	여의도한강공원 배달존2주변
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0097	1	780505-******	이*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경기남양주사****)이륜차	2024-02-04 16:33	40,000	50,000	2024-02-21	폐문부재	경기도고양시덕양구	여의도한강공원 제3주차장주변통행로
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0098	1	881125-******	송*륭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67다****)자동차	2024-02-05 00:10	40,000	50,000	2024-02-21	기타	충청북도증평군증평읍	여의도한강공원 샛강생태공원진입로주변
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0099	1	010810-******	김*송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경기부천아****)이륜차	2024-02-05 00:36	40,000	50,000	2024-02-21	기타	경기도부천시오정구	여의도한강공원 한강르네상스4호매점주변
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0100	1	110111-******	(주***이산업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81루****)자동차	2024-02-05 13:34	40,000	50,000	2024-02-21	폐문부재	서울특별시용산구 장문로9길	여의도한강공원 제2주차장진.출입로주변
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0106	1	981220-******	송*승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동대문다****)이륜차	2024-01-25 14:43	40,000	50,000	2024-02-26	기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전농로11길	잠원한강공원 내 1주차장 보행로주변

선택	세목코드	세목명	통지번호	반송순번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자진납부금액	부과금액	반송일자	반송사유	납세자기본주소	위반장소
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0107	1	571028-*******	신*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35거****)자동차	2024-01-28 14:35	40,000	50,000	2024-02-28	기타	경기도파주시교하로	잠원한강공원 내 테니스장주변
1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0108	1	134111-******	주*회사제***모터스이*선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경기안양아****)이륜차	2024-02-01 18:37	40,000	50,000	2024-02-26	폐문부재	경기도안양시동안구	잠실한강공원내 4호매점 옆 보도
1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0113	1	820520-******	이*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서대문자****)이륜차	2024-02-14 16:56	40,000	50,000	2024-02-26	기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성산로7길	망원한강공원내 GS1호점 주변 보도
1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0117	1	980828-******	AB******VIZZATILLOAKHADKHONUGLI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경기안성가****)이륜차	2024-01-11 15:11	40,000	50,000	2024-03-04	기타	서울특별시강남구봉은사로48길	뚝섬한강공원 뚝섬유원지역 주변
1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0118	1	930427-******	CA****AN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중타****)이륜차	2024-01-13 15:12	40,000	50,000	2024-03-04	기타	서울특별시중구다산로39가길	뚝섬한강공원 긴급차량출입소 주변
1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0121	1	910704-******	김*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93마****)자동차	2024-01-28 14:14	40,000	50,000	2024-03-04	기타	경기도용인시처인구	뚝섬한강공원 제3주차장 주변
1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0125	1	000224-******	최*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경기안산사****)이륜차	2024-02-10 14:29	40,000	50,000	2024-03-04	기타	서울특별시동작구상도로63길	여의도한강공원 서강대교하부
1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0128	1	800621-******	하*민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거****)자동차	2024-02-14 20:21	40,000	50,000	2024-03-04	기타	서울특별시동작구보라매로15길	여의도한강공원 수질정화원주변
1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0132	1	110111-******	기***회경영연구소주식회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23오****)자동차	2024-02-13 22:33	40,000	50,000	2024-02-28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강남구봉은사로109길	잠실한강공원 내

선택	세목코드	세목명	통지번호	반송순번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자진납부금액	부과금액	반송일자	반송사유	납세자기본주소	위반장소
1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0133	1	861004-******	박*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169오****)자동차	2023-06-18 17:43	40,000	50,000	2024-03-05	기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답십리로1길	잠실한강공원내 종합운동장나들목인근
1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0134	1	920327-******	박*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경기고양파****)이륜차	2024-02-08 16:24	40,000	50,000	2024-03-06	폐문부재	서울특별시은평구갈현로19길	반포한강공원내 잠수교 하류 달빛광장2주변
2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0145	1	800711-******	서*숙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212저****)자동차	2024-02-25 09:59	40,000	50,000	2024-03-08	폐문부재	인천광역시연수구랜드마크로	뚝섬한강공원 제3주차장 주변
2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0146	1	691127-******	김*대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11저****)자동차	2024-02-25 10:10	40,000	50,000	2024-03-08	기타	경기도남양주시화도읍	뚝섬한강공원 제3주차장 주변
2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0149	1	840706-******	류*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21더****)자동차	2024-02-25 10:10	40,000	50,000	2024-03-11	폐문부재	경기도의정부시장곡로	뚝섬한강공원 제3주차장 주변
2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0154	1	840131-******	김*인(0.99),『여정엽(1%)』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13머****)자동차	2024-02-25 10:10	40,000	50,000	2024-03-11	폐문부재	인천광역시중구은하수로	뚝섬한강공원 제3주차장 주변
2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0157	1	791221-******	문*훈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230버****)자동차	2024-02-25 10:03	40,000	50,000	2024-03-08	기타	서울특별시양천구중앙로55길	뚝섬한강공원 제3주차장 주변
2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0161	1	760525-******	최*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51소****)자동차	2024-02-25 10:13	40,000	50,000	2024-03-11	폐문부재	경기도김포시김포한강1로	뚝섬한강공원 윈드서핑장 주변
2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0162	1	861007-******	최*성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60마****)자동차	2024-02-25 09:59	40,000	50,000	2024-03-11	기타	서울특별시송파구양산로4길	뚝섬한강공원 제1축구장 주변

선택	세목코드	세목명	통지번호	반송순번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자진납부금액	부과금액	반송일자	반송사유	납세자기본주소	위반장소
2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0163	1	861012-*******	오*영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371러****)자동차	2024-02-25 09:59	40,000	50,000	2024-03-08	기타	서울특별시강서구 양천로	뚝섬한강공원 제1축구장 주변
2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0165	1	800605-*******	김*연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68두****)자동차	2024-02-25 10:00	40,000	50,000	2024-03-11	기타	경기도시흥시배곧3로	뚝섬한강공원 제1축구장 주변
2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0166	1	730720-*******	김*현(0.99),『강*규(1%)』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60수****)자동차	2024-02-25 10:01	40,000	50,000	2024-03-11	기타	경기도시흥시능곡로	뚝섬한강공원 제1축구장 주변
3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0169	1	650715-*******	이*철(0.99),『함*자(1%)』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31부****)자동차	2024-02-25 10:08	40,000	50,000	2024-03-08	기타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마장길	뚝섬한강공원 윈드서핑장 주변
3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0171	1	750815-*******	고*영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07나****)자동차	2024-02-25 10:00	40,000	50,000	2024-03-08	폐문부재	인천광역시계양구 효서로	뚝섬한강공원 제3주차장 주변
3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0174	1	650710-*******	박*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68구****)자동차	2024-02-25 10:05	40,000	50,000	2024-03-11	기타	서울특별시성북구 종암로36길	뚝섬한강공원 제3주차장 주변
3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0177	1	850126-*******	이*은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24모****)자동차	2024-02-25 10:13	40,000	50,000	2024-03-08	기타	인천광역시미추홀구염전로	뚝섬한강공원 제3주차장 주변
3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0180	1	120111-*******	주*회사제이지엔터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52더****)자동차	2024-02-25 09:37	40,000	50,000	2024-03-08	폐문부재	인천광역시연수구 컨벤시아대로42번길	뚝섬한강공원 뚝섬안내센터 주변
3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0181	1	800506-*******	이*성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62부****)자동차	2024-02-25 09:39	40,000	50,000	2024-03-11	기타	서울특별시강북구 노해로27길	뚝섬한강공원 뚝섬안내센터 주변

선택	세목코드	세목명	통지번호	반송순번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자진납부금액	부과금액	반송일자	반송사유	납세자기본주소	위반장소
36	10-2887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0182	1	730124-*******|	심*두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17머****)자동차	2024-02-25 09:39	40,000	50,000	2024-03-11	폐문부재	인천광역시중구두미포로	뚝섬한강공원 뚝섬안내센터 주변
37	10-2887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0183	1	780510-*******|	염*애(0.99),『윤영식(1%)』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52두****)자동차	2024-02-25 09:39	40,000	50,000	2024-03-06	수취인불명	경기도남양주시화도읍	뚝섬한강공원 뚝섬안내센터 주변
38	10-2887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0191	1	720609-*******|	임*화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경북포항타****)이륜차	2024-02-12 15:59	40,000	50,000	2024-03-12	기타	경상북도포항시북구	뚝섬한강공원 제1배달존 주변
39	10-2887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0192	1	891011-*******|	최*순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53구****)자동차	2024-02-14 02:48	40,000	50,000	2024-03-08	기타	서울특별시송파구 백제고분로19길	뚝섬한강공원 제4주차장 주변
40	10-2887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0215	1	164711-*******|	주*회사*릉이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86저****)자동차	2024-03-01 10:05	40,000	50,000	2024-03-13	폐문부재	세종특별자치시가름로253,	뚝섬한강공원 긴급차량출입소 주변
41	10-2887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0219	1	521109-*******|	유*원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91무****)자동차	2024-03-01 09:25	40,000	50,000	2024-03-15	기타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	뚝섬한강공원 제3주차장 주변
42	10-2887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0221	1	570814-*******|	차*석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06러****)자동차	2024-03-01 09:30	40,000	50,000	2024-03-13	폐문부재	경기도안양시동안구	뚝섬한강공원 제3주차장 주변
43	10-2887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0223	1	591015-*******|	아*철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53수****)자동차	2024-03-01 09:21	40,000	50,000	2024-03-13	기타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	뚝섬한강공원 제3주차장 주변
44	10-2887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0225	1	600815-*******|	정*숙(0.99),『김*규(1%)』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36수****)자동차	2024-03-01 09:22	40,000	50,000	2024-03-14	기타	인천광역시부평구 수변로19번길	뚝섬한강공원 제3주차장 주변

선택	세목코드	세목명	통지번호	반송순번	주민/법인 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자진납부 금액	부과금액	반송일자	반송사유	납세자기본주소	위반장소
45	10-2887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0229	1	660621-* ******	최*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62포****)자동차	2024-03-01 09:21	40,000	50,000	2024-03-14	기타	경기도시흥시목감초등길	뚝섬한강공원 제3주차장 주변
46	10-2887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0236	1	710814-* ******	박*상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23조****)자동차	2024-03-01 09:23	40,000	50,000	2024-03-13	기타	경기도남양주시와부읍	뚝섬한강공원 제3주차장 주변
47	10-2887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0237	1	720720-* ******	조*옥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53무****)자동차	2024-02-27 15:43	40,000	50,000	2024-03-14	기타	서울특별시광진구 동일로58길	뚝섬한강공원 윈드서핑장 주변
48	10-2887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0240	1	730221-* ******	임*택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31바****)자동차	2024-02-25 10:15	40,000	50,000	2024-03-14	폐문부재	경기도김포시김포한강2로	뚝섬한강공원 윈드서핑장 주변
49	10-2887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0241	1	730915-* ******	최*영(0.5), 『고*미(50%)』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59마****)자동차	2024-03-01 09:35	40,000	50,000	2024-03-15	기타	경기도남양주시오남읍	뚝섬한강공원 제2축구장 주변
50	10-2887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0242	1	731205-* ******	이*용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07부****)자동차	2024-03-01 09:30	40,000	50,000	2024-03-14	폐문부재	경기도남양주시순화궁로	뚝섬한강공원 제2축구장 주변
51	10-2887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0244	1	760319-* ******	신*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256노****)자동차	2024-03-01 09:27	40,000	50,000	2024-03-15	폐문부재	충청남도서산시고북면	뚝섬한강공원 제3주차장 주변
52	10-2887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0253	1	801202-* ******	한*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334조****)자동차	2024-03-01 09:36	40,000	50,000	2024-03-14	폐문부재	서울특별시강동구 고덕로	뚝섬한강공원 제3주차장 주변
53	10-2887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0256	1	820322-* ******	안*돈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285주****)자동차	2024-03-01 09:22	40,000	50,000	2024-03-14	기타	경기도평택시진위면	뚝섬한강공원 제3주차장 주변

선택	세목코드	세목명	통지번호	반송순번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자진납부금액	부과금액	반송일자	반송사유	납세자본주소	위반장소
54	10-2887706	[서울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0260	1	830412-* ******	윤*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45포****)자동차	2024-03-01 09:23	40,000	50,000	2024-03-14	폐문부재	경기도용인시수지구	뚝섬한강공원 제3주차장 주변
55	10-2887706	[서울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0261	1	830608-* ******	조*신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36저****)자동차	2024-03-01 09:22	40,000	50,000	2024-03-13	기타	서울특별시송파구 올림픽로8길	뚝섬한강공원 제3주차장 주변
56	10-2887706	[서울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0267	1	861014-* ******	조*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153더****)자동차	2024-03-01 09:35	40,000	50,000	2024-03-14	폐문부재	서울특별시강동구 성안로25길	뚝섬한강공원 제2축구장 주변
57	10-2887706	[서울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0269	1	891031-* ******	김*윤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567*****)자동차	2024-03-01 09:35	40,000	50,000	2024-03-13	기타	서울특별시서초구 강남대로83길	뚝섬한강공원 제2축구장 주변
58	10-2887706	[서울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0271	1	900207-* ******	최*선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107어****)자동차	2024-03-01 09:50	40,000	50,000	2024-03-14	기타	경기도양주시독바위로	뚝섬한강공원 X계임장 주변
59	10-2887706	[서울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0273	1	910419-* ******	손*겸(0.99 『홍*순[1 %]』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56고****)자동차	2024-03-01 09:48	40,000	50,000	2024-03-15	기타	경기도남양주시오남읍	뚝섬한강공원 X계임장 주변
60	10-2887706	[서울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0274	1	920105-* ******	최*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56로****)자동차	2024-03-01 09:18	40,000	50,000	2024-03-14	기타	서울특별시도봉구 노해로63다길	뚝섬한강공원 제3주차장 주변
61	10-2887706	[서울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0276	1	920918-* ******	정*욱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23소****)자동차	2024-03-01 09:50	40,000	50,000	2024-03-13	기타	서울특별시강서구 까치산로6길	뚝섬한강공원 X계임장 주변
62	10-2887706	[서울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0280	1	940608-* ******	박*원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용산차****)이륜차	2024-02-28 22:42	40,000	50,000	2024-03-13	기타	서울특별시서초구 서운로9길	뚝섬나들목 주변

선택	세목코드	세목명	통지번호	반송순번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자진납부금액	부과금액	반송일자	반송사유	납세자기본주소	위반장소
63	10-2887706	[서울반사]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0281	1	951228-* ******	백*윤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357모****)자동차	2024-03-01 09:20	40,000	50,000	2024-03-14	기타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양로40길	뚝섬한강공원 제2주차장 주변
64	10-2887706	[서울반사]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0283	1	960420-* ******	김*선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182고****)자동차	2024-03-01 09:25	40,000	50,000	2024-03-14	기타	경기도파주시파주읍	뚝섬한강공원 제2주차장 주변
65	10-2887706	[서울반사]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0284	1	960912-* ******	최*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1560허****)자동차	2024-03-01 09:35	40,000	50,000	2024-03-18	폐문부재	경기도파주시월롱면	뚝섬한강공원 제2축구장 주변
66	10-2887706	[서울반사]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0288	1	900706-* ******	노*형(0.5), 『노*호(50%)』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141어****)자동차	2024-02-15 13:37	40,000	50,000	2024-03-15	폐문부재	경기도용인시처인구	여의도한강공원 제2별의점열화장실앞 자전거도로주변
67	10-2887706	[서울반사]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0295	1	941109-* ******	김*영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서울강서가****) 이륜차	2024-03-03 08:58	40,000	50,000	2024-03-15	기타	서울특별시양천구 곰달래로5길	양화 한강공원내 축구장 옆
68	10-2887706	[서울반사]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0296	1	940513-* ******	이*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서울양천아****) 이륜차	2024-03-03 08:45	40,000	50,000	2024-03-15	기타	서울특별시강서구 강서로	양화 한강공원내 축구장 옆
69	10-2887706	[서울반사]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0298	1	110111-* ******	주*회사엘바라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258노****)자동차	2024-02-25 09:37	40,000	50,000	2024-03-18	기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양평로30길	여의도한강공원 마포대교아래보행로주변
70	10-2887706	[서울반사]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0300	1	460929-* ******	김*원(0.99), 『김태연(1%)』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89누****)자동차	2024-02-26 13:13	40,000	50,000	2024-03-15	기타	서울특별시강서구 화곡로66길	여의도한강공원 2주차장진출입로주차 금지구역
71	10-2887706	[서울반사]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0341	1	491020-* ******	조*관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111보****)자동차	2024-03-01 09:28	40,000	50,000	2024-03-22	기타	인천광역시부평구 수변로98길	뚝섬한강공원 윈드서핑장 주변

선택	세목코드	세목명	통지번호	반송순번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자진납부금액	부과금액	반송일자	반송사유	납세자본주소	위반장소
72	10-2887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0343	1	700819-* ******	김*성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40노****)자동차	2024-03-01 09:33	40,000	50,000	2024-03-22	기타	경상남도양산시삼호로	뚝섬한강공원 자양중앙나들목 주변
73	10-2887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0348	1	850313-* ******	김*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57무****)자동차	2024-03-01 09:35	40,000	50,000	2024-03-22	폐문부재	경기도고양시덕양구	뚝섬한강공원 자양중앙나들목 주변
74	10-2887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0350	1	850701-* ******	김*표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19머****)자동차	2024-03-01 09:38	40,000	50,000	2024-03-26	폐문부재	경기도안산시단원구	뚝섬한강공원 제2축구장 주변
75	10-2887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0354	1	821017-* ******	배*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370주****)자동차	2024-03-01 09:20	40,000	50,000	2024-03-22	기타	강원특별자치도원주시로아노크로	뚝섬한강공원 윈드서핑장 주변
76	10-2887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0357	1	610924-* ******	아*규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용산차****) 이륜차	2024-02-24 23:00	40,000	50,000	2024-03-22	폐문부재	서울특별시용산구장문로45라길	이촌한강공원내 한남나들목 진입로
82	10-2887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0372	1	740611-* ******	정*철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용산자****) 이륜차	2024-03-07 09:33	40,000	50,000	2024-03-25	폐문부재	경기도안성시서운면	이촌한강공원내 동작대교 하부 보도위
77	10-2887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0362	1	930811-* ******	조*민(0.99), 『조*석(1%)』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112부****)자동차	2024-03-01 09:17	40,000	50,000	2024-03-21	기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천호대로77가길	뚝섬한강공원 윈드서핑장 주변
78	10-2887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0365	1	751105-* ******	최*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32머****)자동차	2024-03-01 09:12	40,000	50,000	2024-03-21	폐문부재	경기도용인시기흥구	뚝섬한강공원 윈드서핑장 주변
79	10-2887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0366	1	770209-* ******	김*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30고****)자동차	2024-03-01 09:13	40,000	50,000	2024-03-22	기타	서울특별시관악구호암로18가길	뚝섬한강공원 윈드서핑장 주변

선택	세목코드	세목명	통지번호	반송순번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자진납부금액	부과금액	반송일자	반송사유	납세자본주소	위반장소
8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0367	1	690520-* ******	박*선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27우****)자동차	2024-03-01 09:08	40,000	50,000	2024-03-21	기타	인천광역시서구마전로99번길	뚝섬한강공원 윈드서핑장 주변
8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0370	1	940123-* ******	이*섭(0,99『이*문(1 %)』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383수****)자동차	2024-03-01 09:10	40,000	50,000	2024-03-25	기타	경기도시흥시배들기공원7길	뚝섬한강공원 윈드서핑장 주변
8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0377	1	780926-* ******	김*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55고****) 자동차	2024-03-11 08:50	40,000	50,000	2024-03-22	기타	서울특별시강북구 인수봉로31길	이촌한강공원내 강변북로 진입로 안전지대

◈ 미래한강본부공고 제2024-117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수시분)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규정을 위반한 위반자들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사전통지분)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1일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장

1. 건 명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행위자(사전통지 과태료 부과고지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및 제20조

3. 공시송달 대상 : “세부내역 별첨 참조”

4. 공고기간 : 2024. 04. 11. ~ 2024. 04. 24. (14일)

5. 납부기간 : 2024. 05. 31.

6. 수령방법
-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운영총괄과에서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수령하시기바랍니다.

7. 공지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운영총괄과(☏02-3780-08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송(부과고지)통지서 공시송달 대상자//공시송달 수시분 등록내역서(건)

선택	반송구분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발송지 주소	과세금액	세목코드	세목명	과세대상	과세년월	과세번호	반송일자	반송사유
3	부과고지	970618-*******	김*영	광주광역시남구봉선1로	50,00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강서타****) 이륜차	2024-03	000120	2024-03-26	폐문부재
4	부과고지	740330-*******	AB********** KHMUDMAMA	서울특별시용산구우사단로4길	50,00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용산카****) 이륜차	2024-03	000121	2024-03-26	폐문부재
5	부과고지	030704-*******	NG********** DAT	서울특별시중구다산로39길	50,00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중타****) 이륜차	2024-03	000125	2024-03-26	기타
2	부과고지	551010-*******	최*희	경기도하남시위례순환로	50,00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07마****) 자동차	2024-03	000127	2024-03-25	폐문부재
6	부과고지	920326-*******	최*혁	서울특별시광진구능동로36길	50,00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광진하****) 이륜차	2024-03	000128	2024-03-26	기타
7	부과고지	650911-*******	이*남	서울특별시중랑구상봉로25길	50,00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중랑하****) 이륜차	2024-03	000130	2024-03-26	기타
1	부과고지	700405-*******	임*봉	경기도광주시회안대로71번길	50,00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서울중랑파****) 이륜차	2024-03	000134	2024-03-25	폐문부재
8	부과고지	721022-*******	황*창	서울특별시마포구방울내로	50,00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마포타****) 이륜차	2024-03	000135	2024-03-26	기타

기 타

◈ 강남소방서공고 제2024-18호

청문 실시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소방시설법」 위반 소방시설관리업체에 행정처분 청문 실시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장 부재 및 연락 두절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1일
강 남 소 방 서 장

예정된 행정처분	**2차 행정처분 [영업정지 3개월]**	
당사자	상호	동화지엠(주)
	대표자	최*영
	업종	소방시설관리업
	등록번호 (등록일자)	제강남2005-2호 (2005-01-19)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62, ***호(일원동)
위반사항	**등록기준(기술인력) 미달된 상태로 30일 경과**	
위반법규	소방시설법 제29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제2항	
적용법규	○ 소방시설법 제35조제1항 -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후 30일이 경과한 경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별표8] 2. 개별기준의 “나”의 3) 2차 -1차 경고(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3개월**, - 3차 등록취소	

의견제출	기관명	강남소방서	부서명	예방과	담당자	정 도 영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4층 예방과 (삼성동)			전화 번호	02)6981-7523
	전자우편	yoyo8889@seoul.go.kr			팩스 번호	02)2052-0177
	제출기한	2024년 4월 21일까지 ※청문일: 2024.4.22.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강남소방서 위험물안전팀(☎02-6981-75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4-12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1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성수동1가)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동 498-1 일대

 - 면 적 : 7,50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놀빛광장 조성

5. 점용기간 : 2024.04.03.~ 2029.04.02.
 - (공사기간) 2024.04.03. ~ 2024.12.31.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4-127호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1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안양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유림이씨(주)
 -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김포대로2385번길 111, 비동3층

3. 점용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40-2, 614-41, 562-2, 340-5,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800-8
 - 면 적 : 당초 A=153.6㎡, L=192.0m / 변경 A= 115.18㎡, L=192.0m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안양천 가산 아이윌 데이터센터 내 전력공급을 위한 전력관로 매설
 - 내 역 : 당초 전력관(D800mm, L=192m) 1공
 변경 전력관(D200mm, L=192m) 3공

5. 점용기간 : 당초 2023.12.06. ~ 2028.12.05.
 변경 2024.04.04. ~ 영구

6. 공사기간 : 당초 2023.12.06. ~ 2024.03.04.
 변경 2024.04.04. ~ 2024.06.30.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4-13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1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안양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수문자료디지털자동화추진단)
 -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 11층 · 12층

3. 점용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871-20 등 4필지
 - 면 적 : 60.4㎡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오금교 유량관측소 구축
 - 내 역 : 전자파표면유속계 10개, 센서케이블 L=280m, 제어시스템(2m×1m) 1기

5. 점용기간 : 2024.04.08. ~ 2029.04.07.

6. 공사기간 : 2024.04.08. ~ 2024.05.14.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4-13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1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목감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수문자료디지털자동화추진단)
 -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 11층 · 12층

3. 점용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시 구로구 천왕동 62-1 등 2필지
 - 면 적 : 18.6㎡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너부대교 유량측정기 설치
 - 내 역 : 전자파표면유속계 4개, 센서케이블 L=90m

5. 점용기간 : 2024.04.08. ~ 2029.04.07.

6. 공사기간 : 2024.04.08. ~ 2029.05.14.

기 타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142호

서울특별시 조례 일련번호 정정 공고

서울시보 제3960호(2024. 3. 15.), 제3961호(2024. 3. 20.), 제3963호(2024. 3. 26.), 제3965호(2024. 3. 29.)에서 기공포한 조례의 일련번호 정정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2024년 4월 11일

○ 서울시보 제3960호(2024. 3. 15.)

연번	자치법규명	일련번호	
		변경 전	변경 후
1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624	9121
2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625	9122
3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4626	9123
4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4627	9124
5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	4628	9125
6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4629	9126
7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630	9127
8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631	9128
9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632	9129

연번	자치법규명	일련번호	
		변경 전	변경 후
10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4633	9130
11	서울특별시 어르신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4634	9131
12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635	9132
13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	4636	9133
14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637	9134
15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테니스장 관리·운영 조례	4638	9135
16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	4639	9136
17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640	9137
18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641	9138
19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642	9139
20	서울특별시 임대형기숙사 건립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4643	9140
21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644	9141
22	서울특별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4645	9142
23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4646	9143
24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4647	9144
25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4648	9145
26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4649	9146

연번	자치법규명	일련번호	
		변경 전	변경 후
27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650	9147

○ 서울시보 제3961호(2024. 3. 20.)

연번	자치법규명	일련번호	
		변경 전	변경 후
1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651	9148

○ 서울시보 제3963호(2024. 3. 26.)

연번	자치법규명	일련번호	
		변경 전	변경 후
1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9121	9149
2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122	9150
3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123	9151
4	서울특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9124	9152
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9125	9153
6	서울특별시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	9126	9154
7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127	9155
8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9128	9156
9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9129	9157
10	서울특별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에 관한 조례	9130	9158

연번	자치법규명	일련번호	
		변경 전	변경 후
11	서울특별시 성균관 · 향교 · 서원전통문화의 계승 ·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9131	9159
12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9132	9160
13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9133	9161
14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134	9162
15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135	9163
16	서울특별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9136	9164
17	서울특별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9137	9165
18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9138	9166
19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139	9167
20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9140	9168
21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9141	9169
22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142	9170
23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143	9171
24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144	9172
25	서울특별시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	9145	9173
26	서울특별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	9146	9174

연번	자치법규명	일련번호	
		변경 전	변경 후
27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147	9175
28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9148	9176
29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149	9177
30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150	9178
31	서울특별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9151	9179
32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152	9180
33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 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153	9181
34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154	9182
35	서울특별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 지역회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9155	9183
36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9156	9184
37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9157	9185
38	서울특별시 위기가구 지역사회 발굴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9158	9186
39	서울특별시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9159	9187
40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160	9188
41	서울특별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9161	9189
42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9162	9190
43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163	9191

연번	자치법규명	일련번호	
		변경 전	변경 후
44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164	9192
45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9165	9193
46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9166	9194

○ 서울시보 제3965호(2024. 3. 29.)

연번	자치법규명	일련번호	
		변경 전	변경 후
1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167	9195



기관의 장
선람

공람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편집인 홍보기획관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02-2133-6431 문의 : ☎120